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 토 보 고 서

【 산 업 통 상 부 소 관 】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고 등 · 평 생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산 업 기 술 진 흥 및 사 업 화 촉 진 기 금
무 역 보 험 기 금
【 지 식 재 산 처 소 관 】
책 임 운 영 기 관 특 별 회 계
일 반 회 계
고 등 · 평 생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2026.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신 항 진

목 차

【 산업통상부 소관 】

Ⅰ. 결산 총괄 ····· 1

1. 산업통상부 결산 개요 ····· 1

(1) 세 입 ····· 1

(2) 세 출 ····· 2

(3) 기 금 ····· 3

(4) 예비비 ····· 4

(5) 재무제표 ····· 5

2. 총괄 검토의견 ····· 14

(1)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결산 총괄 현황 ····· 14

(2) 회계·기금별 주요 검토내용 ····· 19

Ⅱ. 일반회계 ····· 28

1. 세입결산 ····· 28

(1) 세입징수 결정 ····· 28

(2) 세입징수 현황 ····· 29

2. 세출결산 ····· 30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 30

(2) 예산변경 내역 ····· 33

(3) 예비비 ····· 36

(4) 다음연도 이월내역 ····· 37

(5) 불용내역 ····· 38

3. 재무제표 ····· 39

4. 검토의견 ····· 46

(1) 기본경비: 집행시 이·전용 과다 및 편성시 환류 부족 ····· 46

(2) 결산 일반: 비목편성 및 세목조정 절차 관리강화 필요 ····· 51

(3)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무역안보관리원 기능 확대에 대응한 재정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 58

(4)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 성과를 저하하는 신청요건 변경 지양 필요 ····· 67

(5) 수출지원기반활용: 지사화사업 모집시기·선정기준 개선을 통한 성과 제고 필요 ····· 73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조직망운영비 예산 편성 기준 개선 필요 ····· 78

(7) 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사업: 내역사업 통합운영 및 홍보체계 개편필요 ····· 84

(8)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사업집행 구조 점검필요 ····· 90

(9)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 보완 필요 등 ····· 99

(10) 한국세라믹기술원출연(R&D): 성과지표 재고 필요 ····· 105

(11)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체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111

(12)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인·허가 절차 미비 등 추경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등 ····· 117

(13)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R&D): 장비의 적기 도입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124

(14)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R&D): 기업연구소 지원정책의 정책성과 관리 및 환류 강화 필요 ····· 129

(15)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R&D): 시범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 검증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강화 필요 ····· 135

(16)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구조 설계 필요 ····· 141

(17)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대규모 불용 방지 필요 ····· 147

(18) 로봇산업기술개발(R&D): 신규과제 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 필요 ····· 153

(19) 국가필수전략기술고도화를 위한 고부가정밀화학소재개발(R&D): 연구개발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157

(20)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 인력수 제고 필요 ····· 162
(21) 친환경차보급지원을위한이차보전사업: 사업편성시 타 부처사업 대비 효용성 고려 필요 ····· 169
(22)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R&D): 과제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 175
(23)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과 선발 방식의 균형적 관리 필요 ····· 180
(24)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국제표준 개발과제 중단사례 분석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185
(25)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계량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의 고도화 필요 ····· 192
(26)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 지속적인 정책수요를 고려한 사업 운영방식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198
(27)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과제별 면밀한 사업관리·감독으로 집행 부진 최소화 필요 ····· 206
(28) 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수행 과업 내실화 필요 등 ····· 212
(29)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집행률 부진 및 사업성과 달성 미흡 ····· 221
(30) 자유무역지역관리: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 계획적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228

Ⅲ.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34

1. 세입결산 ····· 234

(1) 세입징수 결정 ····· 234
(2) 세입징수 현황 ····· 236

2. 세출결산 ····· 238

(1)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 238
(2) 예산변경 내역 ····· 242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244
(4) 불용내역 ····· 244

3. 재무제표 ····· 245
4. 검토의견 ····· 254
(1) 법정부담금: 수납실적 저조에 따른 에특회계 재원 부족 문제 시정 필요 ····· 254
(2) 석유비축사업출자: 석유비축계획 수립 과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259
(3)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비축기지 구축 사업의 출자금 실집행 부진 문제 ····· 264
(4) 읍·면단위(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보조사업비 정산 부실에 따른 과다 교부 시정 필요 ····· 267
(5) 천연가스 배관망 수소 혼입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R&D): 연구비 조달 애로사항에 따른 집행지연 재발방지 필요 ····· 273

Ⅳ.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80
1. 세입결산 ····· 280
(1) 세입징수 결정 ····· 280
(2) 세입징수 현황 ····· 281
2. 세출결산 ····· 282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 282
(2) 예산변경 내역 ····· 285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286
(4) 불용내역 ····· 287
3. 재무제표 ····· 288
4. 검토의견 ····· 295
(1) 기타 기반시설지원: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필요 ····· 295
(2) 산업단지환경조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수익금 관리 강화 필요 등 ····· 302
(3) 지역균형발전지원: 비R&D 과제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간접비 계상 필요 ····· 311
(4)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예산 집행률 저조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17

(5)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이월 및 불용 과다에 따른 사업수요 사전 점검 강화 필요 ····· 322
(6) 투자유치기반조성: 금전적 유인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후 현금지원
규모 확대 여부 결정 필요 ····· 327

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332

1. 세입결산 ····· 332
(1) 세입징수 결정 ····· 332
(2) 세입징수 현황 ····· 333

2. 세출결산 ····· 334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 334
(2) 예산변경 내역 ····· 334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335
(4) 불용내역 ····· 335

3. 재무제표 ····· 336

4. 검토의견 ····· 340
(1)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R&D):
성과지표 항목 개선 필요 ····· 340
(2) 소재부품기술개발(R&D):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하반기 집행 집중 ····· 346
(3) 투자연계형기술확보지원사업: 테크파인더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351

Ⅵ.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56

1. 세입결산 ····· 356

2. 세출결산 ····· 357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 357
(2) 예산변경 내역 ····· 358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358

(4) 불용내역 ····· 358
3. 재무제표 ····· 359

Ⅶ.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 364
1. 수입결산 ····· 364
(1) 기금수입 현황표 ····· 364
2. 지출결산 ····· 366
3. 재무제표 ····· 368
4. 검토의견 ····· 371
(1) 기술성과활용촉진(R&D): 국가기술은행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체계적인 이행 및 활용 필요 ····· 371

Ⅷ. 무역보험기금 ····· 377
1. 수입결산 ····· 377
(1) 기금수입 현황표 ····· 377
2. 지출결산 ····· 379
3. 재무제표 ····· 380
4. 검토의견 ····· 384
(1) 무역보험금지급: 재보험에 따른 보험책임잔액 모니터링 필요 ····· 384
(2) 기타경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확보를 위한 연례적 기금운용계획변경 방지 필요 ····· 389

【 지식재산처 소관 】

Ⅰ. 지식재산처 결산 개요 ····· 397

1. 총괄 ····· 397

(1) 세 입 ····· 397

(2) 세 출 ····· 398

2. 세입 결산 ····· 399

(1) 세입징수 결정 ····· 399

(2) 세입징수 현황 ····· 400

3. 세출 결산 ····· 401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 401

(2) 예산변경 내역 ····· 403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405

(4) 불용내역 ····· 405

4. 재무제표 ····· 406

5. 검토의견 ····· 412

(1) WIPO 국제분담금(ODA): 의무분담금 차년도 지연지급 최소화 필요 ····· 412

(2) 지식재산 창출지원: 일부 지역의 높은 수요 대응 및 지방비 매칭 협력 강화 필요 ····· 416

(3) 여성발명진흥: 내역사업 유형의 다양화 노력 필요 ····· 421

(4)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해외 국유특허권 연차료 지연지급 문제 개선 필요 ·· 426

(5) 모태조합 출자: IP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대 편성 필요 ····· 431

(6)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 설치 국가 확대 필요 ····· 436

(7)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공백기간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등 ····· 442

(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450

산업통상부 소관

Ⅰ. 결산 총괄

1. 산업통상부 결산 개요

(1) 세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감 (C-A)
일반회계	188,570	186,458	172,920	-	13,538	△15,65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4,390,707	3,968,298	3,964,241	-	4,057	△426,46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3,044	84,228	82,234	-	1,995	29,19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2,284,287	2,331,814	2,331,814	-	-	47,527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	128	95	-	33	95
합 계	**6,916,608**	**6,570,926**	**6,551,304**	**-**	**19,623**	**△365,304**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현액 총액은 6조 9,166억 800만원이며, 6조 5,709억 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조 5,513억 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196억 2,3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	불용액
		전년이월	이체	전용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일반회계	6,782,799	1,813	△7,019	±6,528	-	1,995	6,779,588	6,743,085	1,187	35,3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703,929	260	△345,967	±586	-	-	2,358,222	2,320,202	18,768	19,25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288,670	4,392	-	±74	-	-	1,293,062	1,108,323	125,892	58,84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1,822,812	-	-	-	-	-	1,822,812	1,822,803	-	9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5,700	-	-	-	-	-	5,700	5,700	-	-
합 계	**12,603,910**	**6,465**	**△352,986**	**±7,188**	**-**	**1,995**	**12,259,384**	**12,000,113**	**145,847**	**113,425**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12조 6,039억 1,000만원이었으나, 예산변경을 통한 예산현액은 12조 2,593억 8,400만원이었고, 이 중 12조 1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58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134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3) 기 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실적	'25년			증 감(△)	
		당초 (A)	변경[1] (B)	실적[2] (C)	(C-B)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92,237	235,212	235,212	241,718	6,506	2.8
무역보험기금	5,166,654	5,780,733	6,080,733	4,818,593	△1,262,140	△21.8
합 계	**5,358,891**	**6,015,945**	**6,315,945**	**5,060,311**	**△1,255,634**	**△20.9**

주1) 최종변경
주2) 순계기준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무역보험기금이며, 각 기금별 운용규모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2,417억 1,800만원, 무역보험기금 4조 8,185억 9,300만원 등 총 5조 603억원 1,100만원임.

(4) 예비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예 산 변 경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	불용액
		지출 결정액	전용 증감액	이용 및 이체액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위원회	1,995	1,995	-	△1,995	-	-	-	-
합 계	**1.995**	**1.995**	-	**△1,995**	-	-	-	-

2025년도 산업통상부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고준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하였으나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액 이체하였음.

(5)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산업통상부 (단위: 원)

	2025	2024
자산		
Ⅰ.금융자산	**11,546,983,926,189**	**11,343,299,473,007**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5,084,137,771	148,693,254,171
2. 금융상품	2,075,000,000,000	1,840,000,000,000
3. 투자증권	5,958,469,456,633	4,652,959,589,828
4. 정부출자금	1,189,526,399,150	1,092,546,399,150
5. 대여금	1,328,486,759,947	2,583,929,232,716
6. 미수채권	704,191,450,753	845,391,409,244
7. 기타금융자산	76,225,721,935	179,779,587,898
Ⅱ.유·무형자산	**3,929,067,381,435**	**3,902,501,006,831**
1. 일반유형자산	3,911,028,125,436	3,878,744,276,716
2. 무형자산	18,039,255,999	23,756,730,115
Ⅲ.기타자산	**35,098,630,056**	**30,096,668,275**
자산계	**15,511,149,937,680**	**15,275,897,148,113**
부채		
Ⅰ.차입부채	**483,447,858,626**	**3,632,609,312,324**
1. 차입금	270,223,000,000	3,487,202,000,000
2. 기타차입부채	213,224,858,626	145,407,312,324
Ⅱ.충당부채	**622,829,363,251**	**619,875,655,858**
1. 보증충당부채	24,526,418,064	30,180,211,107
2. 보험충당부채	564,997,959,231	560,299,392,749
3. 기타충당부채	33,304,985,956	29,396,052,002
Ⅲ.기타부채	**2,348,347,438,346**	**2,244,363,012,531**
부채계	**3,454,624,660,223**	**6,496,847,980,713**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7,797,635,976,400**	**17,802,314,622,442**
Ⅱ.적립금및잉여금	**(6,779,954,448,449)**	**(9,945,449,657,301)**
Ⅲ.순자산조정	**1,038,843,749,506**	**922,184,202,259**
순자산계	**12,056,525,277,457**	**8,779,049,167,400**
부채와순자산계	**15,511,149,937,680**	**15,275,897,148,113**

산업통상부의 2025년도 총자산은 15조 5,111억원으로, 전기 15조 2,759억원 대비 2,353억원(1.5%) 증가하였음.

'25년도 산업통상부 통합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자 산	부 채	비 고
□ 총 계	15,511,151	3,454,625	
① 일반회계	3,217,737	1,207	
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14,831	6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04,990	73,364	
④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440,019	-	
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3	-	
⑥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285,322	270,656	
⑦ 무역보험기금	9,048,219	3,109,392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 (단위: 원)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9,739,739,247,405**	**(1,448,757,117,334)**	**8,290,982,130,071**	**9,227,548,863,245**	**(1,837,442,409,086)**	**7,390,106,454,159**
1.무역진흥	628,586,047,200	(31,913,490)	628,554,133,710	512,809,018,496	-	512,809,018,496
2.무역구제	1,720,114,401	-	1,720,114,401	1,818,464,310	-	1,818,464,310
3.무역보험지원	830,121,930,929	(1,137,162,635,746)	(307,040,704,817)	1,042,752,842,493	(1,461,370,902,235)	(418,618,059,742)
4.통상협력지원	103,984,397,561	-	103,984,397,561	122,319,175,944	-	122,319,175,944
5.에너지자원정책	690,035,350,739	(45,866,065,198)	644,169,285,541	877,297,369,216	(54,509,291,984)	822,788,077,232
6.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65,643,100,000	(2,050,047,720)	63,593,052,280	57,829,222,062	(690,277,246)	57,138,944,816
7.에너지공급체계구축	1,017,907,243,416	(95,093,262,450)	922,813,980,966	895,666,623,722	(169,701,965,227)	725,964,658,495
8.에너지기술개발	225,917,176,000	(2,944,619,350)	222,972,556,650	294,940,000,000	(10,792,013,102)	284,147,986,898
9.에너지기술기반확충	67,243,543,810	(3,621,161,580)	63,622,382,230	73,106,942,790	(8,907,760,858)	64,199,181,932
10.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5,391,519,500	(638,424,810)	4,753,094,690	5,376,000,000	(4,938,606,319)	437,393,681
11.산업경쟁력기반구축	1,317,892,133,021	-	1,317,892,133,021	965,327,062,112	-	965,327,062,112
12.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1,822,812,871,846	(68,988,232,420)	1,753,824,639,426	1,739,094,287,242	(47,377,208,195)	1,691,717,079,047
13.지역경제활성화	657,507,987,181	(68,027,196,771)	589,480,790,410	650,683,099,608	(65,478,515,615)	585,204,583,993
14.주력산업진흥	1,241,911,569,530	(606,760,340)	1,241,304,809,190	960,157,741,430	(76,894,701)	960,080,846,729
15.신산업진흥	492,203,000,000	-	492,203,000,000	487,020,000,000	-	487,020,000,000
16.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120,991,073,706	-	120,991,073,706	99,977,531,650	-	99,977,531,650
17.중견기업육성	65,669,121,260	-	65,669,121,260	48,270,077,240	-	48,270,077,240
18.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296,993,190,700	(15,372,254,485)	281,620,936,215	310,276,324,320	(4,425,103,964)	305,851,220,356
19.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31,610,982,195	(7,215,476,772)	24,395,505,423	29,523,972,669	(3,045,911,876)	26,478,060,793
20.포항지진 피해관리	13,252,000,000	-	13,252,000,000	7,544,000,000	-	7,544,000,000
21.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42,344,894,410	(1,139,066,202)	41,205,828,208	45,759,107,941	(6,127,957,764)	39,631,150,177
Ⅱ.관리운영비	-	-	**258,279,221,853**	-	-	**253,243,728,721**
Ⅲ.비배분비용	-	-	**242,310,778,439**	-	-	**140,164,339,037**
Ⅳ.비배분수익	-	-	**746,743,061,762**	-	-	**674,866,256,192**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8,044,829,068,601**	-	-	**7,108,648,265,725**
Ⅵ.비교환수익 등	-	-	**1,648,461,870**	-	-	**1,991,275,890**
1.사회보험수익	-	-	-	-	-	-
2.부담금수익	-	-	1,648,461,870	-	-	1,991,275,890
3.제재금수익	-	-	-	-	-	-
4.기타이전수익	-	-	-	-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8,043,180,606,731**			**7,106,656,989,835**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프로그램총원가 9조 7,397억원, 관리운영비 2,583억원 및 비배분비용 2,423억원 등을 투입하였으며, 프로그램수익 1조 4,488억원, 비배분수익 7,467억원 및 비교환수익 16억원 등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8조 432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수익(I+II)		**2,197,148,640,966**	**2,514,299,941,168**
Ⅰ.이전수익	12	**1,648,461,870**	**1,991,275,890**
1. 부담금수익	12-2	1,648,461,870	1,991,275,890
Ⅱ.국가운영수익	13	**2,195,500,179,096**	**2,512,308,665,278**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3-1	127,396,886,082	92,414,150,633
2. 이자수익	13-3	404,986,450,502	504,731,628,240
3. 배당수익	13-4	37,081,297,940	19,869,521,980
4. 자산처분이익	13-5	143,283,669,579	45,869,110,991
5. 자산평가이익	13-6	9,974,715,969	207,468,945,208
6. 기타국가운영수익	13-7	1,472,777,159,024	1,641,955,308,226
비용(III+IV)		**10,240,329,247,697**	**9,620,956,931,003**
Ⅲ.이전비용	14	**8,273,041,045,653**	**7,682,931,416,304**
1. 국고보조사업비	14-1	2,226,480,288,750	2,293,424,523,660
2. 출연사업비	14-2	5,862,193,317,000	5,237,649,156,000
3. 기타이전비용	14-5	184,367,439,903	151,857,736,644
IV.국가운영비용	15	**1,967,288,202,044**	**1,938,025,514,699**
1. 재화및용역제공원가	15-1	1,285,889,732	166,161,189
2. 인건비	15-3	228,084,177,447	217,977,905,518
3. 이자비용	15-4	96,262,468,821	77,616,762,289
4. 운영비	15-5	95,713,017,127	95,439,561,706
5. 감가상각비	15-6	26,482,153,665	25,293,967,474
6. 자산평가손실	15-7	42,418,446,242	55,874,185,755
7. 기타국가운영비용	15-8	1,477,042,049,010	1,465,656,970,768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8,043,180,606,731**	**7,106,656,989,835**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10조 2,403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2조 1,971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8조 432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4.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 (단위: 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17,802,314,622,442**	**(9,405,590,964,814)**	**947,072,098,503**	**9,343,795,756,131**
1. 보고금액	17,802,314,622,442	4,230,961,979,016	979,011,336,622	23,012,287,938,080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	(13,636,552,943,830)	(31,939,238,119)	(13,668,492,181,949)
Ⅱ.재정운영결과	**-**	**7,106,656,989,835**	**-**	**7,106,656,989,835**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6,478,598,297,348**	**-**	**6,478,598,297,348**
1. 재원의조달	-	13,807,224,962,858	-	13,807,224,962,858
(1) 국고수입	-	11,060,021,323,430	-	11,060,021,323,430
(2) 부담금수익	-	1,395,988,823,310	-	1,395,988,823,310
(3) 제재금수익	-	1,878,018,530	-	1,878,018,530
(4) 기타이전수익	-	1,349,336,797,588	-	1,349,336,797,588
2. 재원의이전	-	7,328,626,665,510	-	7,328,626,665,510
(1) 국고이전지출	-	7,328,626,665,510	-	7,328,626,665,510
Ⅳ.조정항목	**-**	**88,200,000,000**	**(24,887,896,244)**	**63,312,103,756**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22,601,560,381)	(22,601,560,381)
2. 자산재평가이익	-	-	(2,286,335,863)	(2,286,335,863)
3. 기타순자산의증감	-	88,200,000,000	-	88,200,000,000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7,802,314,622,442**	**(9,945,449,657,301)**	**922,184,202,259**	**8,779,049,167,400**
Ⅵ.당기 기초순자산	**17,802,314,622,442**	**(9,945,449,657,301)**	**922,184,202,259**	**8,779,049,167,400**
1. 보고금액	17,802,314,622,442	(9,945,449,657,301)	922,184,202,259	8,779,049,167,400
Ⅶ.재정운영결과	**-**	**8,043,180,606,731**	**-**	**8,043,180,606,731**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7,653,501,174,394**	**-**	**7,653,501,174,394**
1. 재원의조달	-	14,171,762,269,335	-	14,171,762,269,335
(1) 국고수입	-	12,000,111,073,870	-	12,000,111,073,870
(2) 국고이전수입	-	-	-	-
(3) 사회보험수익	-	-	-	-
(4) 부담금수익	-	1,365,995,957,260	-	1,365,995,957,260
(5) 제재금수익	-	6,323,571,810	-	6,323,571,810
(6) 기타이전수익	-	799,331,666,395	-	799,331,666,395

산업통상부 (단위: 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2. 재원의이전	-	6,518,261,094,941	-	6,518,261,094,941
(1) 국고이전지출	-	6,518,174,667,620	-	6,518,174,667,620
(2) 세출예산지출액	-	-	-	-
(3) 기타이전비용	-	86,427,321	-	86,427,321
IX.조정항목	**(4,678,646,042)**	**3,555,174,641,189**	**116,659,547,247**	**3,667,155,542,394**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126,831,238,806	126,831,238,806
2. 자산재평가이익	-	-	1,749,405,811	1,749,405,811
3.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4,678,646,042)	3,449,524,641,189	(11,921,097,370)	3,432,924,897,777
4. 기타순자산의증감	-	105,650,000,000	-	105,650,000,000
X.당기 기말순자산 (VI-VII+VIII+IX)	**17,797,635,976,400**	**(6,779,954,448,449)**	**1,038,843,749,506**	**12,056,525,277,457**

산업통상부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12조 565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8조 7,790억원 대비 3조 2,775억원 증가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8조 432억원 및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6조 5,183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부담금수입·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14조 1,718억원 및 조정항목 3조 6,672억원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5. 현금흐름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 (단위: 원)

	주석	2025	2024
Ⅰ.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	**554,021,171,233**	-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6,104,048,226,506	-
(1) 부담금제재금수입		1,362,016,602,990	-
(2) 이자수입		337,820,122,693	-
(3) 기타유입		2,404,100,426,953	-
(4) 국고수입		12,000,111,073,870	-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5,550,027,055,273	-
(1) 보조금지급		2,193,524,265,110	-
(2) 출연금지급		5,862,193,317,000	-
(3) 인건비지급		222,392,689,004	-
(4) 이자지급		70,191,942,430	-
(5) 기타유출		683,550,174,109	-
(6) 국고이전지출		6,518,174,667,620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2	**(2,186,780,287,633)**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2,991,188,775,458	-
(1) 금융상품, 투자증권처분		2,710,548,862,594	-
(2) 대여금회수		277,839,550,160	-
(3)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처분		60,209,451	-
(4) 기타유입		2,740,153,253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5,177,969,063,091	-
(1) 금융상품, 투자증권취득		4,614,040,237,090	-
(2) 대여금지급		480,417,750,000	-
(3)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취득		77,895,060,081	-
(4) 무형자산취득		3,618,070,522	-
(5) 기타유출		1,997,945,398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3	**1,699,150,000,000**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709,150,000,000	-
(1) 차입금차입		1,603,500,000,000	-
(2) 기타유입		105,650,0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0,000,000,000	-
(1) 차입금상환		10,000,000,000	-
Ⅳ.현금의증감(Ⅰ+Ⅱ+Ⅲ)		**66,390,883,600**	-
Ⅴ.기초의현금		**148,693,254,171**	-
Ⅵ.기말의현금(Ⅳ+Ⅴ)		**215,084,137,771**	-

산업통상부에서는 2025년도 중 운영활동으로 5,540억원, 재무활동으로 1조 6,992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나, 투자활동으로 2조 1,868억원의 현금이 유출되어, 현금이 664억원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기초현금 1,487억원에서 기말현금은 2,151억원이 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7,548,905**	**-**
1. 국가채권현재액	2,655,095	-
2. 국유재산현재액	4,886,787	-
3. 물품현재액	7,023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15,511,150**	**3,454,625**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7,962,245**	**3,454,625**
1. 보고대상기관차이(A)	9,048,219	3,109,392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9,000	270,223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1,146,094)	74,632
4. 대상차이(D)	51,120	377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무역보험기금 자산 9,048,219백만원 및 무역보험기금 부채 3,109,392백만원

② 국가기관상호간채권·채무차이 : 정부내대여금 9,000백만원, 정부내차입금 270,223백만원

③ 결산조정항목차이 :
- 선급금 1,456백만원, 선급비용 142백만원, 미수채권 118,357백만원, 대손충당금 및 융자보조원가충당금 (-)1,266,049백만원,
- 미지급금 74,141백만원, 선수수익 5백만원, 미지급비용 453백만원, 충당부채 34백만원

④ 대상차이 :
- 미수제재금수익 7,324백만원, 건설중인자산 24,721백만원,
저장품 22,449백만원, 정부미술품 343백만원, 기타금융자산 416백만원, 대여금 (-)10,133백만원
- 기타예수금 447백만원

⑤ 기타차이 : 해당없음

2. 총괄 검토의견

(1)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결산 총괄 현황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회계의 세입 예산 규모는 8조 4,364억원, 징수결정액은 6조 5,709억원, 수납액은 6조 5,513억원이며, 전체 세입예산 대비 수납률은 77.7%로, 2024년도(88.7%)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회계별 세입 결산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A)	징수결정	수 납(B)	불납결손	미수납	예산 대비 수납률 (B/A*100)
합 계	'24	8,610,334	7,654,684	7,637,881	-	16,803	88.7
	'25	8,436,399	6,570,926	6,551,304	-	19,623	77.7
	차이	△173,935	△1,083,758	△1,086,577	-	2,820	
일 반	'24	157,872	168,545	155,387	-	13,158	98.4
	'25	188,767	186,458	172,920	-	13,538	91.6
	차이	30,895	17,913	17,533	-	380	
에 특	'24	6,216,101	5,201,992	5,198,910	-	3,081	83.6
	'25	5,910,301	3,968,298	3,964,241	-	4,057	67.1
	차이	△305,800	△1,233,694	△1,234,669	-	976	
지 특	'24	70,818	87,219	86,656	-	563	122.4
	'25	53,044	84,228	82,234	-	1,995	155
	차이	△17,774	△2,991	△4,422	-	1,432	
소 특	'24	2,165,543	2,196,929	2,196,929	-	-	101.4
	'25	2,284,287	2,331,814	2,331,814	-	-	102.1
	차이	118,744	134,885	134,885	-	-	
고 특	'24	-	-	-	-	-	-
	'25	-	128	95	-	33	-
	차이	-	128	95	-	33	

일반회계의 예산 대비 수납률은 2024년도 98.4%에서 2025년도 91.6%로 감소하였고, 이는 주로 연말 징수결정분 납기 미도래 및 기관 예산부족, 체납자 재력부족 등에 기인함. 전체 세입규모는 1,554억원에서 1,729억원으로 증가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대비 수납률은 2024년도 83.6%에서 2025년도 67.1%로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규모는 5조 1,989억원에서 3조 9,642억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자 재정악화 및 납부기한 미도래 등에 기인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대비 수납률은 2024년도 122.4%에서 2025년도 155%로 증가하였고, 이는 기타재산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함. 전체 세입규모는 867억원에서 822억원으로 감소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예산 대비 수납률은 2024년도 101.4%에서 2025년도 102.1%로 상향되었고, 전체 세입규모는 2조 1,969억원에서 2조 3,318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세계잉여금, 출자 배당금 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함.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회계의 세출 예산 규모는 12조 6,039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5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체 예산 △3,53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12조 2,594억원 중 12조 1억원을 지출하고 1,45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134억원을 불용하였음.

전년대비 차년도 이월 규모는 증가하였고 불용규모는 감소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외투 기업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투자유치기반조성(1,156억원), 세수부족으로 인한 석유비축사업출자(188억원) 이월 등이 있고, 주요 불용 사유로는 지역투자촉진(581억원) 사업비 집행 잔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폐광대책비(192억원),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190억원) 사업 지연 등이 있음.

회계별 세출 결산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전년 이월	변 경			예산현액	지 출	차년 이월	불용
				이체	전용	예비비				
합	'24	11,333,943	22,384	△15,293	±1,745	-	11,341,034	11,060,021	6,465	274,548
계	'25	12,603,910	6,465	△352,986	±7,188	1,995	12,259,384	12,000,113	145,847	113,425
일	'24	5,545,535	20,998	△15,293	±1,447	-	5,551,240	5,508,722	1,813	40,705
반	'25	6,782,799	1,813	△7,019	±6,528	1,995	6,779,588	6,743,085	1,187	35,316
에	'24	2,807,514	913	-	±228	-	2,808,427	2,576,933	260	231,235
특	'25	2,703,929	260	△345,967	±586	-	2,358,222	2,320,202	18,768	19,252
지	'24	1,225,970	444	-	±50	-	1,226,414	1,219,418	4,392	2,604
특	'25	1,288,670	4,392	-	±74	-	1,293,062	1,108,323	125,892	58,848
소	'24	1,738,998	28	-	±20	-	1,739,026	1,739,022	-	4
특	'25	1,822,812	-	-	-	-	1,822,812	1,822,803	-	9
고	'24	15,926	-	-	-	-	15,926	15,926	-	-
특	'25	5,700	-	-	-	-	5,700	5,700	-	-

특히, 회계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97.9%로 전년(97.5%) 대비 0.4%p 증가하였음.

회계별 집행률

(단위: %)

구 분		예산 대비 집행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전 체	'24	97.6	97.5
	'25	95.2	97.9
일반회계	'24	99.3	99.2
	'25	99.4	99.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4	91.8	91.8
	'25	85.8	98.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4	99.5	99.4
	'25	86.0	85.7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4	100.0	100.0
	'25	100.0	100.0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24	100.0	100.0
	'25	100.0	100.0

다음, 산업통상부 소관 1개 기금[1]까지 포함한 총지출[2] 기준 결산을 보면, 2025년도 총지출 결산액은 9조 8,958억 4,300만원으로 2025년도 총지출 예산액 10조 2,412억 2,700만원 대비 96.6%가 지출되었음.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4 결산(A)	'25 예산	'25 결산(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3,486,378	4,599,858	4,560,144	1,073,766	30.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446,270	2,382,166	2,256,832	△189,438	△7.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219,358	1,288,616	1,108,289	△111,069	△9.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1,739,022	1,822,812	1,822,803	83,781	4.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926	5,700	5,700	△10,226	△64.2
산업기술진흥및 사업화촉진기금	112,913	142,075	142,075	29,162	25.8
합 계	**9,019,867**	**10,241,227**	**9,895,843**	**875,976**	**9.7**

2024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산업통상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8,759억 7,600만원(약 9.7%) 증가하였음.

1) 금융성 기금인 무역보험기금을 제외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의미함.

2) 총지출이란 예산과 기금(금융성 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총계에서 회계·기금·계정 간 '내부거래'와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 기금의 여유자금운용지출 등을 제외한 지출규모로서, 중앙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모두 지출로 보는 재정지표임.

(2) 회계·기금별 주요 검토내용

① 일반회계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1,885억 7,000만원)의 91.7%, 징수결정액(1,864억 5,800만원)의 92.7%인 1,729억 2,0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6조 7,827억 9,900만원)의 99.4%인 6조 7,430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음.

‘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의 내역사업을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탁·운영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매년 큰 폭으로 이용자가 줄고 있는 국가통계포털 등 유사 서비스에 비해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은 산업통계분석시스템의 홍보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은 연구용역사업의 지속적인 지연발주로 전체 예산 대비 18.9%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 및 불용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 대비 59.4%에 해당하는 예산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사업 집행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을 통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였

음. 이에 따라 지역유망전시회 28개 중 24개의 전시회와, 지역신규무역전시회 35개 중 33개의 전시회가 해외참가업체·해외 바이어 참여 규모 등에 있어서 기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동 사업 운영 시 신청요건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의 성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은 2025년 편성된 284억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로 실제 집행한 금액은 예산액 대비 6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집행 부진은 연례적인 경향이 있음.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에 대한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해 과제별 사업비 집행 부진 현상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은 4개 지역에서 과업을 수행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지역상권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를 대형마트가 단순 홍보해주는데 그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과업이 실시되지 못함. 향후 유사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과업 수행 현황을 관리·감독하는 등 상생협력에 관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은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온라인 실태조사의 장기·반복 미응답 기관 관리와 현

장방문조사에서 확인된 취약·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적기에 확인·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온라인 실태조사 미응답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현장방문조사 이후 개선계획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 사업은 신진연구자의 경력개발 기회 제공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신규과제 선정을 사업 첫해에만 실시하도록 설계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신규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반도체아카데미구축'은 성과지표를 교육 수료인원으로만 설정하고 있어 교육 이후 실제 인력공급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28개 교육과정 중 취업연계 과정은 5개에 불과하며 모두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미취업자의 반도체 관련 직무 취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비수도권에서도 취업연계되는 교육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노융합생태계조성촉진’의 내역사업인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은 교육생 중 여성 비율을 성인지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성인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여성 교육수요를 모집 단계에서 충분히 발굴할 필요가 있음.

‘로봇산업기술개발(R&D)’은 2025년도 신규과제 27건에 대하여 4월 협약체결을 전제로 9개월분인 242억 6,000만원의 국비를 편성하였으나 25건이 9월에 협약이 체결되고 국비도 대부분 12월에 교부되어 연말 실집행률이 13.4%에 그쳐, 향후 하반기 협약체결이 예상되는 과제는 실제 집행 가능한 연구기간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과 회계연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4조 3,907억 700만원) 대비 90.3%, 징수결정액(3조 9,682억 9,800만원) 대비 99.9%인 3조 9,642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2조 7,039억 2,900만원) 대비 85.8%인 2조 3,202억 200만원이 지출되었음.

‘석유비축사업출자’는 2026년도 비축유 구입을 위한 정부 출자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야 제5차 석유비축계획이 수립·발표되어 국회가 비축계획에 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차년도 출자금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간 연차별 비축유 구매비용의 분담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석유 비축계획 수립시기를 개선하고 정부출자금과 공사 자체재원 간 분담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의 내역사업인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실시설계 등이 지연되면서 공사비 및 감리비가 전액 미집행되었고 2026년 6월까지도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음. 공사비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자금을 전액 교부한 것은 특별회계의 재원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출자금 교부 시 출자기관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교부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530억 4,400만원) 대비 155.0%, 징수결정액(842억 2,800만원) 대비 97.6%인 822억 3,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1조 2,886억 7,000만원) 대비 86.0%인 1조 1,083억 2,300만원이 지출되었음.

‘지역균형발전지원’의 내역사업인 ‘균형발전 정보협력 및 성과확산’과 ‘균형발전사업 조사·분석·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출연금임에도 자체 사업비의 15%를 간접비로 계상하여 기관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간접비 기준을 비(非)R&D 사업출연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중심으로 적정 수준의 간접비가 계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역투자촉진’의 내역사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투자유보와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집행률이 71.2%에 그쳤으며, 당초 70%였던 보조금 선지급률을 80%로 상향하였음에도 상당한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지자체의 투자유치 수요와 재정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수요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타 기반시설지원’은 2025년 예산이 편성된 12개 내역사업 중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내역사업이 8개에 해당하는 등 연례적으로 지자체의 보조사업비 실집행이 부진하고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각 내역사업의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분할 교부하는 등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④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2조 2,842억 8,700만원) 대비 102.1%, 징수결정액(2조 3,318억 1,400만원) 대비 100.0%인 2조 3,318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1조 8,228억 1,200만원) 대비 100.0%인 1조 8,228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음.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R&D)’은 소재개발단계에서 성과지표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시범생산단계에서부터는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시범생산단계에서도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1억 2,800만원) 대비 74.2%인 9,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57억원) 대비 100%인 57억원이 지출되었음.

⑥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2025년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417억 1,8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운용규모의 58.8%인 1,420억 7,500만원이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109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 257억 9,400만원 등 366억 9,400만원을 전출하였고, 629억 4,900만원은 여유자금(사업성 대기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

'기술성과활용촉진(R&D)' 사업은 국가기술은행(NTB)의 지능형 통합 플랫폼 전환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는 ISP에서 제시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2026년에는 향후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되는 국가기술은행 데이터 정비 및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동 사업이 ISP에서 제시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으로 차질 없이 연계되고 핵심 개선과제가 적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⑦ 무역보험기금

2025년도 무역보험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당초 계획액 5조 7,807억 3,300만원 대비 6.9% 감소한 4조 8,185억 9,300만원으로, 여유자금운용

을 제외한 6,157억 500만원이 무역보험지원운영, 무역보험환급금, 기금운영비로 지출되었음.

‘무역보험금지급’은 최근 중장기성 수출보험을 통한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 가입 및 그에 따른 재보험료 지출이 확대되고 있음. 무역보험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실제 위험을 파악하고 재보험료 지출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재보험 가입에 따라 재보험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정도를 유효계약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보험책임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비’는 그동안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해당하는 ‘민간기금출연금(350-04)’을 0원으로 편성하였고, 매년 연말에 여유자금 중 일부를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출연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이 반복되었음. 해당 항목에 대한 국회 심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계획안에 편성하고, 정확한 금액의 출연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Ⅱ. 일반회계

1. 세입결산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증 감 (B-A)	증 감 사 유
합 계	188,767	186,458	△2,309	
재산수입	46,475	65,517	19,040	
- 토지대여료	18,178	25,575	7,397	외투지역, 자유무역지역 토지대여료
- 건물대여료	4,358	5,074	716	자유무역지역 건물대여료
- 기타민간이자수입	-	2	△2	행정소송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 기타재산이자수입	23,939	34,866	10,927	출연·보조금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	-	행정소송 수수료 수익
경상이전수입	132,890	119,832	△13,058	
- 벌금및과료	-	73	△73	법령 위반 과태료, 제재부가금 등
- 과태료	364	194	△170	법령 위반 과태료
- 과징금	756	11,848	11,092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부가금 등
- 변상금	-	444	△444	무단 점유 변상금
- 가산금	12	227	215	과태료, 과징금 등 미납부 가산금
- 징계부과금	-	34	△34	징계 등에 의한 환수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131,758	107,011	△24,747	출연·보조금의 정산·환수금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2	29	△3	
- 기타잡수입	32	29	△3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공과금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870	1,081	211	
- 기타잡수입	870	1,081	21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공동부담금
기타자산매각대	8,500	-	△8,500	
- 기타자산매각대	8,500	-	△8,500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887억 6,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64억 5,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 23억 900만원(1.2%) 감액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며, 주요 과목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1,070억원), 기타재산이자수입(348억원), 토지대여료(255억원) 등이 있음.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불납결손 및 미수납 사유
합 계	186,458	172,920	-	13,538	
재산수입	65,517	61,452	-	4,064	
- 토지대여료	25,575	22,576	-	2,999	업체 폐업, 파산, 경영악화 등
- 건물대여료	5,074	4,021	-	1,053	업체 폐업, 파산, 경영악화 등
- 기타민간이자수입	2	-	-	2	납부자 재력부족
- 기타재산이자수입	34,866	34,856	-	10	업체 폐업, 파산, 경영악화 등
- 기타재산이자와수입	-	-	-	-	
경상이전수입	119,832	110,595	-	9,237	
- 벌금및과료	73	-	-	73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 과태료	194	164	-	30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 과징금	11,848	4,718	-	7,130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 변상금	444	9	-	435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 가산금	227	-	-	226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 징계부과금	34	-	-	34	
- 기타경상이전수입	107,011	105,703	-	1,30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	28	-	1	
- 기타잡수입	29	28	-	1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수입대체경비수입	1,081	845	-	236	
- 기타잡수입	1,081	845	-	236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기타자산매각대	-	-	-	-	
- 기타자산매각대	-	-	-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1,729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864억 5,800만원 대비 92.7%가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35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음. 주요 미수납과목으로는 과징금(71억원), 토지대여료(30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13억원) 등이 있으며 주로 연말 징수결정분 납기 미도래 및 기관 예산부족, 체납자 재력부족 등으로 발생하였음.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5년도 일반회계의 추경포함 예산액은 6조 7,827억 9,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18억 1,200만원) 및 이체액(△70억 1,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조 7,795억 8,700만원 중 6조 7,430억 8,5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 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53억 1,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단위: 백만원)

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예산	전년이월	변경			예산현액	지출	차년이월	불용
			이체	전용	예비비				
합 계	6,782,799	1,812	△7,019	±6,528	1,995	6,779,587	6,743,085	1,187	35,31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0)>	6,782,799	1,812	△7,019	±6,528	1,995	6,779,587	6,743,085	1,187	35,316
□무역및투자유치(113)	1,104,848	204	△466	±460	-	1,112,951	1,110,789	514	1,648
○무역진흥(1100)	996,069	-	-	-	-	1,004,435	1,004,267	-	168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1133)	11,098	-	-	-	-	11,098	11,098	-	-
·대한상사중재원지원(1136)	743	-	-	-	-	743	743	-	-
·무역금융지원(1138)	380,000	-	-	-	-	380,000	380,000	-	-
·수출역량강화(1139)	604,228	-	-	-	-	612,594	612,426	-	168
○무역구제(1200)	1,793	-	-	-	-	1,793	1,747	15	31
·무역구제지원(1233)	1,793	-	-	-	-	1,793	1,747	15	31
○통상협력지원(1900)	106,986	204	△466	±460	-	106,723	104,775	499	1,449
·양자간통상협력지원(1931)	56,978	-	-	±150	-	56,978	56,669	196	113
·다자간통상협력지원(1932)	13,096	65	△466	295 -310	-	12,680	12,323	113	244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1935)	11,293	19	-	-	-	11,312	11,097	22	193
·통상분쟁대응(1936)	18,031	68	-	-	-	18,099	17,754	-	345
·자유무역협정체결(1937)	7,588	52	-	15	-	7,654	6,932	168	554
□에너지및자원개발(115)	2,250	-	-	-	-	2,250	2,250	-	-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5200)	2,250	-	-	-	-	2,250	2,250	-	-
·에너지신산업(5201)	2,250	-	-	-	-	2,250	2,250	-	-
□산업·중소기업일반(116)	187,224	359	△6,552	±5,705	1,995	183,025	179,503	323	3,198
○산업통상부행정지원(7100)	187,224	359	△6,552	±5,705	1,995	183,025	179,503	323	3,198
·본부인건비(7101)	97,729	-	△3,393	5,366	-	99,702	98,965	-	737

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예산	전년 이월	변경			예산 현액	지출	차년 이월	불용
			이체	전용	예비비				
·소속기관인건비(7102)	37,661	-	-	-3,967	-	33,694	32,933	-	760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인건비(7103)	-	-	△662	-	662	-	-	-	-
·본부기본경비(7111)	22,209	-	△1,141	+80 -1,375	-	19,773	19,369	20	384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기본경비(7112)	-	-	△1,333		1,333	-	-	-	-
·소속기관기본경비(7118)	6,428	-	-	+69 -95	-	6,402	6,119	-	283
·산업통상행정정보시스템구축(7131)	2,983	109	-	190	-	3,282	3,056	103	123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7132)	1,898	211	△17	-58	-	2,033	1,863	106	65
·본부정책수립운영(7133)	1,965	-	△6	-	-	1,959	1,888	-	70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7134)	2,269	-	-	-25	-	2,244	2,194	-	50
·소속기관기타행정지원(7135)	11,814	39	-	-185	-	11,668	10,919	94	655
·공동시설관리수입대체경비(7136)	861	-	-	-	-	861	791	-	70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7142)	1,407	-	-	-	-	1,407	1,406	-	1
□산업혁신지원(117)	5,488,477	1,250	-	±363	-	5,481,361	5,450,543	351	30,468
○산업경쟁력기반구축(3100)	1,350,413	207	-	±320	-	1,342,254	1,317,981	142	24,131
·산업경쟁력분석(3133)	3,414	110	-	±320	-	3,524	2,944	142	438
·글로벌환경규제대응및자원생산성기반구축(3147)	9,361	-	-	-	-	9,361	9,361	-	-
·생산성향상지원(3160)	6,494	-	-	-	-	6,494	6,494	-	-
·인력양성(일반회계)(3161)	231,299	-				231,299	231,222	-	77
·대중소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3162)	2,020	-	-	-	-	2,020	2,020	-	-
·산업기술기반구축(3171)	901,004	97	-	-	-	892,735	873,319	-	19,416
·공공기술개발(3173)	18,403	-	-	-	-	18,403	18,403	-	-
·우수기술역량강화(3174)	178,418	-	-	-	-	178,418	174,218	-	4,200
○지역경제활성화(3300)	21,369	777	-	-	-	22,146	20,731	209	1,207
·자유무역지역조성(3331)	7,914	777	-	-	-	8,691	7,276	209	1,207
·기업입지환경개선(3333)	7,530	-	-	-	-	7,530	7,530	-	-
·지방시대위원회운영(3334)	-	-	-	-	-	-	-	-	-
·지역환경개선(3335)	5,925	-	-	-	-	5,925	5,925	-	-
○주력산업진흥(3500)	1,241,387	-	-	-	-	1,241,387	1,237,874	-	3,513
·주력산업국제협력(3534)	117	-	-	-	-	117	117	-	-
·섬유패션생활용품산업육성(3535)	18,490	-	-	-	-	18,490	18,451	-	39
·제조기반기술개발(3541)	324,367	-	-	-	-	324,367	324,367	-	-
·방산수출 및 민·군협력 기반조성(3544)	1,317	-	-	-	-	1,317	1,317	-	-
·수송기기기술개발(3551)	617,508	-	-	-	-	617,508	617,508	-	-
·스마트전자기술개발(3561)	171,097	-	-	-	-	171,097	171,097	-	-
·시스템산업기술개발(3571)	3,083	-	-	-	-	3,083	3,083	-	-
·뿌리산업육성지원(3574)	105,408	-	-	-	-	105,408	101,934	-	3,474
○신산업진흥(3600)	492,203	-	-	-	-	492,203	492,203	-	-

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예산	전년 이월	변경			예산 현액	지출	차년 이월	불용
			이체	전용	예비비				
· 탄소산업진흥(3637)	48,759	-	-	-	-	48,759	48,759	-	-
· 바이오산업육성(3649)	52,349	-	-	-	-	52,349	52,349	-	-
· 바이오헬스기술개발(3651)	278,579	-	-	-	-	278,579	278,579	-	-
· 로봇산업진흥(3672)	64,390	-	-	-	-	64,390	64,390	-	-
· 산업융합및창의산업진흥(3688)	44,326	-	-	-	-	44,326	44,326	-	-
· 창의산업기술개발(3691)	3,800	-	-	-	-	3,800	3,800	-	-
○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3700)	120,389	-	-	±43	-	120,389	120,003	-	386
·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3731)	89,290	-	-	-	-	89,290	88,989	-	301
·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3732)	15,072	-	-	-	-	15,072	15,029	-	43
·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3736)	16,027	-	-	±43	-	16,027	15,985	-	42
○ 중견기업육성(4300)	66,523	266	-	-	-	66,789	65,558	-	1,231
· 중견기업역량강화(4301)	59,970	266	-	-	-	60,236	60,203	-	33
· 유통물류기반조성(일반)(4302)	6,553	-	-	-	-	6,553	5,355	-	1,198
○ 포항지진 피해관리(6000)	13,252	-	-	-	-	13,252	13,252	-	-
· 포항지진 피해구제(6031)	13,252	-	-	-	-	13,252	13,252	-	-
○ 회계간거래(8100)	2,182,941	-	-	-	-	2,182,941	2,182,941	-	-
· 회계간거래(8101)	2,182,941	-	-	-	-	2,182,941	2,182,941	-	-

(2) 예산변경 내역

① 전년도 이월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다음연도 이 월	1,813	○ 용역 관련 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사업비 이월 1,761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월 52
합 계	1,813	

2025년도의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액은 18억 1,300만원이며, 주요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용역 관련 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사업비 17억 6,100만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5,200만원을 이월하였음.

② 이 용 : 해당없음

③ 이 체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이체	△7,019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체 인력 인건비 등 예산 이체 - 본부인건비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인건비	△4,055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 사업 예산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이체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수임국활동지원 - 본부기본경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등	△466 △2,498
합 계	△7,019		△7,019

2025년도 일반회계 이체액은 △70억 1,900만원이며,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에 관한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인원 인건비(△40억 5,500만원) 및 사업비 예산 집행잔액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29억 6,400만원)을 이체하였음.

④ 전 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전 용	±6,528	○ 본부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전용 - 본부, 소속기관 인건비 -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6,015
		○ 사업계획 변경, 업무량 증가 대응 등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전용	±513
합 계	±6,528		±6,528

2025년도 일반회계 전용액은 65억 2,800만원으로, 주요 전용요인 및 전용규모를 살펴보면,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60억 1,5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 및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5억 1,300만원을 전용하였음.

(3) 예비비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예 비 비	1,995	○ 고준위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고준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비비 편성 1,995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인건비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기본경비
합 계	1,995	1,995

2025년도 산업통상부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고준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하였으나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액 이체하였음.

(4)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다음연도 이 월	1,187	○ 용역 관련 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사업비 이월	1,187
합 계	1,187		1,187

2025년도의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8,700만원이며, 주요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용역 관련 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이월이었음.

(5)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불 용	35,316	○ 사업계획 및 설계지연으로 공사비 미집행	28,729
		○ 낙찰차액, 수요부족,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	4,435
		○ 본부·소속기관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2,152
합 계	35,316		35,316

2025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353억 1,6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및 설계 지연으로 공사비 미집행 287억 2,900만원, 낙찰차액, 수요부족,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 44억 3,500만원,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21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

3.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자산			
Ⅰ.금융자산	2	340,499,839,841	336,037,248,861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	987	5,653
2. 정부출자금	2-4	268,676,837,000	268,676,837,000
3. 미수채권	2-6	68,315,213,604	63,486,071,703
4. 기타금융자산	2-7	3,507,788,250	3,874,334,505
Ⅱ.유·무형자산	3	2,875,934,373,754	2,900,710,905,710
1. 일반유형자산	3-1	2,867,545,598,917	2,889,295,929,650
2. 무형자산	3-4	8,388,774,837	11,414,976,060
Ⅲ.기타자산	4	1,302,350,687	1,617,838,521
자산계		3,217,736,564,282	3,238,365,993,092
부채			
Ⅰ.차입부채	5	1,176,036,216	465,996,466
1. 기타차입부채	5-4	1,176,036,216	465,996,466
Ⅱ.충당부채	6	29,600,000	46,055,084
1. 기타충당부채	6-5	29,600,000	46,055,084
Ⅲ.기타부채	7	1,468,986	2,661,069
부채계		1,207,105,202	514,712,619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228,982,956,777	1,233,661,602,819
Ⅱ.적립금및잉여금		714,172,171,952	717,311,025,224
Ⅲ.순자산조정	18	1,273,374,330,351	1,286,878,652,430
순자산계		3,216,529,459,080	3,237,851,280,473
부채와순자산계		3,217,736,564,282	3,238,365,993,092

일반회계의 2025년도 총자산은 3조 2,177억원으로 전기 3조 2,384억원 대비 207억원(0.6%) 감소하였음.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16-1**	**4,009,011,023,694**	**-**	**4,009,011,023,694**	**3,232,687,154,452**	**-**	**3,232,687,154,452**
1.무역진흥		626,172,047,200	-	626,172,047,200	510,127,018,496	-	510,127,018,496
2.무역구제		1,720,114,401	-	1,720,114,401	1,818,464,310	-	1,818,464,310
3.통상협력지원		103,984,397,561	-	103,984,397,561	122,319,175,944	-	122,319,175,944
4.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2,250,000,000	-	2,250,000,000	6,541,655,902	-	6,541,655,902
5.산업경쟁력기반구축		1,317,892,133,021	-	1,317,892,133,021	965,327,062,112	-	965,327,062,112
6.지역경제활성화		27,003,567,015	-	27,003,567,015	25,812,427,368	-	25,812,427,368
7.주력산업진흥		1,237,873,569,530	-	1,237,873,569,530	957,929,741,430	-	957,929,741,430
8.신산업진흥		492,203,000,000	-	492,203,000,000	487,020,000,000	-	487,020,000,000
9.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120,991,073,706	-	120,991,073,706	99,977,531,650	-	99,977,531,650
10.중견기업육성		65,669,121,260	-	65,669,121,260	48,270,077,240	-	48,270,077,240
11.포항지진 피해관리		13,252,000,000	-	13,252,000,000	7,544,000,000	-	7,544,000,000
Ⅱ.관리운영비	**16-2**			**207,380,746,338**			**205,007,161,932**
Ⅲ.비배분비용	**16-3**			**815,538,740**			**901,368,500**
Ⅳ.비배분수익	**16-3**			**172,639,301,776**			**154,980,544,833**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4,044,568,006,996**			**3,283,615,140,051**
Ⅶ.재정운영결과(Ⅴ-Ⅵ)				**4,044,568,006,996**			**3,283,615,140,051**

일반회계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프로그램총원가 4조 90억원, 관리운영비 2,074억원 및 비배분비용 8억원 등을 투입하였으며, 비배분수익 1,726억원 등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4조 446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수익(I+II)		**172,639,301,776**	**154,980,544,833**
Ⅰ.이전수익	**12**	**-**	**-**
Ⅱ.국가운영수익	**13**	**172,639,301,776**	**154,980,544,833**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3-1	28,125,110,683	29,130,729,534
2. 이자수익	13-3	1,179,982,898	104,999,082
3. 자산처분이익	13-5	578,515,000	1,185,766,300
4. 기타국가운영수익	13-7	142,755,693,195	124,559,049,917
비용(III+IV)		**4,217,207,308,772**	**3,438,595,684,884**
Ⅲ.이전비용	**14**	**3,926,771,084,273**	**3,159,539,709,840**
1. 국고보조사업비	14-1	868,277,179,780	716,503,999,690
2. 출연사업비	14-2	3,020,304,256,000	2,428,449,156,000
3. 기타이전비용	14-5	38,189,648,493	14,586,554,150
Ⅳ.국가운영비용	**15**	**290,436,224,499**	**279,055,975,044**
1. 인건비	15-3	139,462,066,585	135,863,336,504
2. 이자비용	15-4	16,193,960	-
3. 운영비	15-5	56,971,579,827	57,907,110,158
4. 감가상각비	15-6	17,461,987,356	16,954,092,952
5. 자산평가손실	15-7	-	450,710,940
6. 기타국가운영비용	15-8	76,524,396,771	67,880,724,490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4,044,568,006,996**	**3,283,615,140,051**

일반회계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4조 2,172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1,726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4조 446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4.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 (단위: 원)

	주석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1,233,661,602,819	686,573,145,157	1,290,294,942,744	3,210,529,690,720
1. 보고금액		1,233,661,602,819	686,573,145,157	1,290,294,942,744	3,210,529,690,720
Ⅱ.재정운영결과		-	3,283,615,140,051	-	3,283,615,140,051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3,314,353,020,118	-	3,314,353,020,118
1. 재원의조달		-	5,537,083,604,088	-	5,537,083,604,088
(1) 국고수입		-	5,508,722,285,940	-	5,508,722,285,940
(2) 제재금수익	12-3	-	1,803,436,880	-	1,803,436,880
(3) 기타이전수익	12-4	-	26,557,881,268	-	26,557,881,268
2. 재원의이전		-	2,222,730,583,970	-	2,222,730,583,970
(1) 국고이전지출		-	155,386,583,970	-	155,386,583,970
(2) 기타이전비용	14-5	-	2,067,344,000,000	-	2,067,344,000,000
Ⅳ.조정항목		-	-	(3,416,290,314)	(3,416,290,314)
1. 자산재평가이익	18, 3-3	-	-	(3,416,290,314)	(3,416,290,314)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233,661,602,819	717,311,025,224	1,286,878,652,430	3,237,851,280,473
Ⅵ.당기 기초순자산		1,233,661,602,819	717,311,025,224	1,286,878,652,430	3,237,851,280,473
1. 보고금액		1,233,661,602,819	717,311,025,224	1,286,878,652,430	3,237,851,280,473
Ⅶ.재정운영결과		-	4,044,568,006,996	-	4,044,568,006,996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4,044,149,546,724	-	4,044,149,546,724
1. 재원의조달		-	6,780,097,015,235	-	6,780,097,015,235
(1) 국고수입		-	6,743,084,573,440	-	6,743,084,573,440
(2) 국고이전수입		-	-	-	-
(3) 사회보험수익	8	-	-	-	-
(4) 부담금수익	12-2	-	-	-	-
(5) 제재금수익	12-3	-	5,116,356,710	-	5,116,356,710
(6) 기타이전수익	12-4	-	31,896,085,085	-	31,896,085,085
2. 재원의이전		-	2,735,947,468,511	-	2,735,947,468,511
(1) 국고이전지출		-	172,920,041,190	-	172,920,041,190
(2) 세출예산지출액		-	-	-	-
(3) 기타이전비용	14-5	-	2,563,027,427,321	-	2,563,027,427,321
Ⅸ.조정항목		(4,678,646,042)	(2,720,393,000)	(13,504,322,079)	(20,903,361,121)
1. 자산재평가이익	18, 3-3	-	-	(1,583,224,709)	(1,583,224,709)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23-1, 18	(4,678,646,042)	(2,720,393,000)	(11,921,097,370)	(19,320,136,412)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1,228,982,956,777	714,172,171,952	1,273,374,330,351	3,216,529,459,080

일반회계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3조 2,165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3조 2,379억원 대비 214억원이 감소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감소는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6조 7,801억원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운영결과 4조 446억원,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조 7,359억원 및 조정항목 209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5. 현금흐름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Ⅰ.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	13,059,910,731	-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6,917,119,580,930	-
(1) 부담금제재금수입		4,739,298,630	-
(2) 이자수입		190,670,910	-
(3) 기타유입		169,105,037,950	-
(4) 국고수입		6,743,084,573,440	-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904,059,670,199	-
(1) 보조금지급		876,096,105,970	-
(2) 출연금지급		3,020,304,256,000	-
(3) 인건비지급		139,452,695,370	-
(4) 기타유출		2,695,286,571,669	-
(5) 국고이전지출		172,920,041,190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2	(13,059,915,397)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3,059,915,397	-
(1)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취득		11,761,117,322	-
(2) 무형자산취득		1,258,798,075	-
(3) 기타유출		40,000,00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3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Ⅳ.현금의증감(Ⅰ+Ⅱ+Ⅲ)		(4,666)	-
Ⅴ.기초의현금		5,653	-
Ⅵ.기말의현금(Ⅳ+Ⅴ)		987	-

일반회계에서는 2025년도 중 운영활동으로 131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나, 투자활동으로 131억원이 유출되었으며, 현금은 총 4,666원 감소함에 따라 기초현금 5,653원에서 기말현금은 987원이 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자산	부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3,129,215,620,891	-
1. 국가채권현재액	6,270,559,030	-
2. 국유재산현재액	3,116,093,413,139	-
3. 물품현재액	6,851,648,722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3,217,736,564,282	1,207,105,202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88,520,943,391	1,207,105,202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56,079,476,461	831,755,806
4. 대상차이(D)	32,441,466,930	375,349,396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결산조정항목차이 :

- 선급금 1,160,494,780원, 선급비용 141,855,907원,
  미수채권 68,032,569,684원, 대손충당금 (-)13,255,443,910원
- 미지급비용 19,482,600원, 선수수익 1,468,986원,
  미지급금 781,204,220원, 충당부채 29,600,000원

② 대상차이 :

- 국고예금 987원, 건설중인자산 24,720,917,293원, 정부미술품 343,000,000원,
  기타의기타금융자산 110,019,850원, 미수제재금수익 7,267,528,800원
- 예수금 375,349,396원

4. 검토의견

(1) 기본경비: 집행시 이·전용 과다 및 편성시 환류 부족

① 결산 현황

‘본부기본경비(7111-251)’ 등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운영경비로[3],

산업통상부는 ‘본부기본경비(7111-251)’ 등 11개 세부사업에 164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37억 7,800만원을 이·전용하고, 143억 6,500만원을 집행한 후 2,000만원을 이월하고 2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5년도 기본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이체액						
본부 기본경비	7,278	7,278	0	△972	△317	0	6,307	6,112	0	195	6,438
본부 전산 운영경비	1,149	1,149	0	△110	0	0	1,039	1,034	0	5	1,145
무역투자실 기본경비	827	827	0	40	0	0	867	859	0	7	820
산업정책실 기본경비	1,113	1,113	0	350	0	0	1,463	1,437	0	26	1,121
산업기반실 기본경비	849	849	0	△55	0	0	794	782	0	11	837
무역위원회 기본경비	407	407	0	△131	0	0	277	264	0	13	401
통상정책국 기본경비	1,605	1,605	0	△343	0	0	1,263	1,227	20	16	1,613
자원정책국 기본경비	718	718	0	616	0	0	1,334	1,329	0	5	802
원전산업정책국 기본경비	749	749	0	△409	△293	0	340	337	0	4	285
통상협력국 기본경비	687	687	0	△315	0	0	371	363	0	8	700
통상교섭실 기본경비	1,064	1,064	0	△437	0	0	627	621	0	6	1,065
계	16,446	16,446	0	3,778	610	0	14,682	14,365	20	296	15,227

자료: 산업통상부

3)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5.

② 집행시 이·전용 과다 및 편성시 환류 부족

산업통상부는 기본경비 집행에 있어 2022년에는 126억 8,100만원의 예산액 중 12.5%에 해당하는 15억 8,300만원을 이용·전용하였고, 2023년에는 137억 7,600만원의 예산액 중 15.0%에 해당하는 20억 7,200만원을 이용·전용하였으며, 2024년에는 163억 7,800만원 중 27.3%에 달하는 44억 6,600만원을 이용·전용하였음.

이어 2025년에는 전체 예산 164억 4,600만원 대비 23.0%에 달하는 37억 7,800만원을 이용·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기본경비의 상당부분을 이용 및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산업통상부 기본경비 이전용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액 (이체액)	이·전용율 (전년 대비)
2022	12,681	1,583	12.5%
2023	13,776	2,072	15.0% (+2.5%p)
2024	16,378	4,466	27.3% (+12.3%p)
2025	16,446	3,778 (610)	23.0% (△4.3%p)

자료: 산업통상부

실·국별로 살펴보면 자원정책국이 전체예산 7억 1,800만원 중 85.8%에 달하는 6억 1,600만원을 이용·전용하여 집행하였고, 통상협력국이 전체예산 6억 8,700만원 중 45.9%에 달하는 3억 1,500만원을 이용·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통성교섭실이 전체 예산 10억 6,400만원 중 41.1%에 달하는 4억 3,700만원을 이용·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전체 예산 대비 40% 이상을 이용 또는 전용하여 집행하는 실·국이 다수 확인됨.

산업통상부 사업별 기본경비 이전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액 (이체액)	이·전용율 (이체율)
본부 기본경비	7,278	972 (317)	13.4% (9.0%)
본부전산 운영경비	1,149	110	9.6%
무역투자실 기본경비	827	40	4.8%
산업정책실 기본경비	1,113	350	31.4%
산업기반실 기본경비	849	55	6.5%
무역위원회 기본경비	407	131	32.2%
통상정책국 기본경비	1,605	343	21.4%
자원정책국 기본경비	718	616	85.8%
원전산업정책국 기본경비	749	409 (293)	54.6% (39.1%)
통상협력국 기본경비	687	315	45.9%
통상교섭실 기본경비	1,064	437	41.1%
계	16,446	3,778 (610)	23.0% (3.7%)

자료: 산업통상부

기본경비의 경우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위한 경비로 내역 및 비목 편성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경비이나, 예산편성 후 국회의결을 거쳐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등 일반적인 예산준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므로[4], 예산 이용·전용을 예외적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개정[5]으로 인한 이체로 인한 소요가 6억 1,000만원(전체 예산 대비 3.7%)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31억 6,800만원(전체 예산 대비 19.3%)의 금액 중 상당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부사업간 내역변경과 세부사업 내 운영비(210목)[6] 또는 여비(220목)[7]의 세목조정에 해당하였음.

기본경비의 경우 예산편성시 총액범위 내에서 부처 재량으로 예산구조조정이 가능하므로, 매년 반복적·누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간 내역변경과 사업내 세목조정에 대해서는 환류적 점검을 통해 예산구조조정을 실시하고,

4)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5)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065호

6) 일반수용비(210-01목), 임차료(210-07목), 일반용역비(210-14목), 관리용역비(210-15목) 등

7) 국내여비(220-01목), 국외업무여비(220-02목) 등

연중 예산 이·전용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결산 일반: 비목편성 및 세목조정 절차 관리강화 필요

① 결산 현황

세목조정은 행정과목인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집행행위[8]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주요사업비 5건에 대해 5억 1,400만원, 기본경비 55건에 대해 5억 5,400만원, 인건비 4건에 대해 6억 1,300만원 등 총 64건에 대해 16억 8,100만원 범위의 세목조정을 실시하였음.

'25년도 세목조정 실시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건수	금액
주요사업비	5건	514
기본경비	55건	554
인건비	4건	613
계	64건	1,681

자료: 산업통상부

8) 기획재정부, 「202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② 비목 특정 또는 규모 산정 오류에 따른 재조정 과다

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건비성 예비비 집행을 위해 2025년 2월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5143-301) 기관운영출연금 16억 5,400만원을 사업출연금으로 세목조정하였고, 이어 5일 뒤인 2월 25일 다시금 같은 금액을 사업출연금으로 세목조정하였음.

이어 2일 뒤인 2월 27일에는 사업출연금으로 세목조정한 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33억 800만원을 원 비목인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원복하였음.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세목조정

(단위: 백만원)

일자	감액 조정	증액 조정	금액	사유
2025. 2.20.	기관운영출연금 (350-01)	사업출연금 (350-02)	1,654	인건비성 예비비 비목 착오
2025. 2.25.	기관운영출연금 (350-01)	사업출연금 (350-02)	1,654	인건비성 예비비 비목 재착오
2025. 2.27.	사업출연금 (350-02)	기관운영출연금 (350-01)	3,308	착오 원복

자료: 산업통상부

기관운영출연금(350-01)은 정부출연금 중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이고, 사업출연금(350-02)은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9],

인건비 목적의 예비비는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로서 원래 편성된 것과 같이 기관운영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함.

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소관 인건비성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해당 예산이 기관운영출연금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음에도 비목 착오를 반복하여 기관운영출연금을 사업출연금으로 2차례 세목조정한 뒤 해당 금액을 2일 뒤 원복한 것임.

다음으로 산업통상부는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위탁운영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2025년 4월 22일 본부기본경비(7111-251) 일반수용비 8,0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였으나, 바로 다음날인 4월 23일 그 중 3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원복하였음.

본부기본경비 세목조정

(단위: 백만원)

일자	감액 조정	증액 조정	금액	사유
2025. 4.22.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용역비 (210-14)	80	역량평가 위탁운영 비목 미수정
2025. 4.23.	일반용역비 (210-14)	일반수용비 (210-01)	3	규모 오산

자료: 산업통상부

9)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5.

일반수용비(210-01)는 사무용품 구입비, 일신비 및 유인비 등 사무일반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이고, 일반용역비(210-14)는 기관 업무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으로 대행하는 비용으로[10],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산업통상부는 해당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년 예산 편성시 해당 비목을 일반용역비로 수정하지 않고 전년 편성된 것과 같이 일반수용비로 편성함에 따라 매년 해당예산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5년의 경우 세목조정시 필요예산 규모를 잘못 산정함에 따라 전년과 같이 일반수용비로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였음에도 다음날 조정된 금액 중 일부를 원복하게 된 것임.

10)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5.

③ 집행시 오류 반복 및 편성시 환류 부족

이와 같은 비목 오편성과 그에 따른 잦은 세목조정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의 경우에도 산업통상부는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민생토론회, 유튜브영상제작 등 사업성격상 일반용역비로 편성해야 할 사업 상당수를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후 집행과정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집행해 왔음.

2024년 일반수용비 편성 후 일반용역비 조정집행 사례

(단위: 백만원)

일자	세부사업	감액 조정	증액 조정	금액	사유
2024. 1.22.	산업정책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용역비 (210-14)	70	민생토론회 위탁
2024. 2.28.	국가기술표준원 기본경비			49	유튜브 영상제작
2024. 3.13.	원전산업정책국 기본경비			118	행사개최 위탁
2024. 3.15.	본부 기본경비			73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2024. 9.19.	행정능률향상 및능력개발			90	행사개최 위탁
2024. 12. 3.	신기술제품 인증			50	행사개최 위탁

자료: 산업통상부

구체적으로 통상교섭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산업통상부는 통상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1937-401)와 관련하여 FTA 20주년 행사를 편성하면서도 해당 사업에 행사위탁을 위한 일반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음.

이후 예산집행에 있어 2024년 2월 15일 통상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가 아닌 통상분쟁대응(1936-401) 일반수용비 9,0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한 다음,

세부사업 조정 오류를 발견하고 같은 날 통상분쟁대응 일반용역비를 원복하고 다시금 통상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일반수용비 9,0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음.

2024년 FTA 20주년 행사 예산 집행 사례

(단위: 백만원)

일자	세부사업	감액 조정	증액 조정	금액	사유
2024. 2.15.	통상분쟁대응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용역비 (210-14)	90	FTA20주년 행사위탁
2024. 2.15.	통상분쟁대응	일반용역비 (210-14)	일반수용비 (210-01)	90	세부사업 오지정 수정
2024. 2.15.	통상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용역비 (210-14)	90	세부사업 오지정 수정

자료: 산업통상부

예산집행지침 상 이전용 등 편성예산 변경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11],

비목에 대한 환류적 검토 없이 비목을 편성한 후 집행과정에서 비목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세부사업과 비목의 오지정 및 규모의 오산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임.

예산변경은 정부사업 집행의 신뢰 및 책임성과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년 계속되는 확정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비목을 편성할 수 있도록 편성과정의 환류절차를 강화하고,

세목조정 등 예산조정에 있어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세목조정에 대한 예산집행절차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1)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1.

(3)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무역안보관리원 기능 확대에 대응한 재정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① 결산 현황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1133-501) 사업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및 무역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지원하고, 전문판정,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YESTRADE) 운영, 무역안보 정책 지원 및 수출기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0억 9,800만원이 무역안보관리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2025년도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략물자수출입 통제기반구축	11,098	11,098	-	-	-	11,098	11,098	-	-	11,829
무역안보관리원기관운영	5,746	5,746	-	-	-	5,746	5,746	-	-	6,039
전략물자안전수출지원	1,517	1,517	-	-	-	1,517	1,517	-	-	1,507
전략기술수출관리선진화	619	619	-	-	-	619	619	-	-	619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확산	796	796	-	-	-	796	796	-	-	806
온라인시스템의안정적운영	2,420	2,420	-	-	-	2,420	2,420	-	-	2,858

자료: 산업통상부

② 무역안보관리원 기능 확대에 대응한 재정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24년 8월 「대외무역법」[12] 개정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개편되면서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산업영향 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국가 무역안보 관련 정책지원 기능과 법정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음.

전략물자관리원과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비교

구분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
기관 역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지원	국가 무역안보 정책 지원
주요 기능	전략물자 전문판정, 정보시스템 운영, 기업 교육	기존 기능 + 정책수립 지원, 산업영향 분석·실태조사, 국제협력, 보고·검사 지원 등

자료: 산업통상부

12) **「대외무역법」**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⑤무역안보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2. 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3. 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판정
5.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검사 등 지원
8.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기관 주요 연혁
- '04. 8 :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개소
- '07. 6 :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 '24. 8 :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무역안보관리원은 수지차보전기관[13]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총지출에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구조임.

이에 따라 자체수입은 기관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으로서 사업수입과 전년도 결산에서 이월된 결산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1~2026년 자체수입 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수입	319	386	505	557	443	697
이월결산잉여금*	263	306	251	692	541	604
기타수입 (이자 등)	-	-	175	38	29	-
자체수입 합계	582	692	931	1,287	1,013	1,301

* 이월결산잉여금은 전기이월금과 전전기이월금을 합산한 금액임.
주: 2021~2025년은 결산액 기준이며, 2026년은 예산(계획)액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부

이 중 사업수입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4억 4,300만원으로 전년(5억 5,700만원)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3) 수지차보전기관은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사업수입·사업외수입 등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부족분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말하며, 자체수입 규모와 기관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조정할 수 있음.

이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개편된 이후 정책지원 및 신규 법정 업무가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수행할 실제 운영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기존 수탁사업 수행 인력을 정책지원 및 법정업무에 우선 배치하면서 자체수입 사업 수행 여력이 축소된 것이 사업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5년에는 기관 정원이 70명에서 82명으로 확대되었음에도 결원 발생 및 신규채용 과정 등의 영향으로 실제 운영인력은 2023년 말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음.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전후 정원 및 현원 현황

구분	2023년 말	2025년 말	2026년 3월
정원(A)	70명	82명	82명
현원(B)	64명	63.4명	74.4명
결원률 ((A-B)/A)	8.6%	22.7%	9.3%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후 2026년에는 결원 충원 등에 따라 실제 운영인력이 증가하면서 인력 여건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정원을 모두 충원하지는 못한 상황임.

2026년에는 사업수입 계획도 전년 결산액보다 크게 증가한 6억 9,700만원으로 편성[14]되었으며, 산업통상부는 전략물자 분류 컨설팅

14) 2026년 사업수입 계획액은 2025년 결산액(4억 4,300만원) 대비 57.3% 증가한 규모이며, 무역안보관리원은 최근 3개년 사업수입 실적 등을 기준으로 자체수입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결과 6억 9,7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

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6년 6월말 현재 사업수입은 연간 계획의 15.6%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사업수입 확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략물자 분류 컨설팅 사업도 아직 계획 대비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6년 6월 기준 사업수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계획액	2026년 6월 수입	계획대비 달성률
전략물자 분류 컨설팅	536	35	6.5%
교육사업	107	39	36.4%
수탁사업	54	35	64.8%
합계	697	109	15.6%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를 종합하면 무역안보관리원의 조직·인력 여건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확대된 기관 기능과 사업수입 확대 계획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으며,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 여건의 개선이 사업수입 확보와 공공적 기능 수행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및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으로 국가 무역안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무역안보관리원이 수행하는 정책지원 및 법정업무도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여건에서는 사업수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확대되는 공공적 기능 수행과 자체수입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확대되는 기관 기능과 사업수입 확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입 추진현황과 조직·인력 운영 여건을 함께 관리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공적 기능 확대에 따른 기관의 역할 변화와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재정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③ 처분전결산잉여금의 적정 관리 필요

무역안보관리원의 자체수입에는 사업수입 외에도 전년도 결산에서 이월된 결산잉여금이 포함되며, 결산 결과 발생한 처분전결산잉여금은 차기이월금 및 차차기이월금으로 처분되어 다음 연도 이후 자체수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임.

최근 처분전결산잉여금은 2021년 4억 8,600만원에서 2025년 7억 5,1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결산부터는 경영평가성과급이 처분전결산잉여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처분전결산잉여금 전액이 차기이월금 및 차차기이월금으로 처분되었음.

최근 5년간 처분전결산잉여금 구성 및 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처분전결산잉여금[1](A+B+C)	486	559	578	745	751
경영평가성과급(A)	132	140	102	110	-
이월금(B+C)	354	419	476	635	751
차기이월금[2](B)	306	203	476	541	510
차차기이월금[3](C)	48	216	-	94	241

1)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으로서 차기이월금, 차차기이월금 및 경영평가성과급 등으로 처분하기 전의 금액임.
2) 처분전결산잉여금 중 다음 연도 예산의 전기이월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금액임.
3) 처분전결산잉여금 중 차기이월금으로 반영되지 않고 차차년도 예산의 전기이월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금액임.
주: 종전에는 전년도 처분전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예산에 별도 편성함에 따라 2025년 결산부터 처분전결산잉여금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산업통상부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결산까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처분전결산잉여금에서 지급하여 왔으며[15], 이 과정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액보다 큰 규모의 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잔여 재원이 처분전결산잉여금으로 누적되었음.

최근 4년간 경영평가성과급 확보 및 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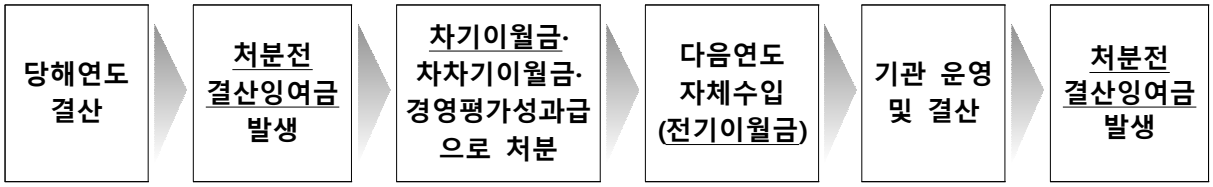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성과급 협의액	132	140	102	110
실제 지급액	81	66	64	81
집행잔액	51	74	38	29

자료: 산업통상부

15) 산업통상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까지는 처분전결산잉여금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차기이월금(최근 3년 평균 결산잉여금 기준)으로 우선 확보한 후, 그 잔여분을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처분전결산잉여금의 순환 구조



주: 차기이월금은 다음 연도 예산의 전기이월금으로 편성되어 자체수입 재원으로 활용되며, 2025년 결산부터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차년도 예산에 별도 편성함.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처분전결산잉여금의 순환 구조를 살펴보면, 결산 결과 발생한 처분전결산잉여금은 차기이월금 및 차차기이월금으로 배분되고, 이 중 차기이월금은 다음 연도 예산의 전기이월금으로 편성되어 자체수입 재원으로 활용됨.

또한, 차기이월금은 최근 3년 평균 처분전결산잉여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처분전결산잉여금 규모가 확대될수록 차기이월금(전기이월금)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산정방식이 반복되면서 처분전결산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은 예측 가능한 지출인 만큼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고, 차기이월금 및 차차기이월금 규모를 보다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산업통상부는 이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경영평가성과급을 보조금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하였음[16].

16) 이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위해 처분전결산잉여금을 별도로 적립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처분전결산잉여금의 구조적인 누적 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임.

다만 2025년 결산 기준 처분전결산잉여금은 여전히 7억 5,100만원의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경영평가성과급 예산편성 방식이 개선되었음에도 그 효과가 아직 결산 결과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경영평가성과급 예산편성 방식 개선의 효과가 실제 결산 운영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처분전결산잉여금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관리목표와 활용·축소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임.

(4)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 성과를 저하하는 신청요건 변경 지양 필요

① 결산 현황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1139-301)은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전시회를 육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효율적인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려는 보조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9억 3,100만원을 전액 집행함.

’25년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6,631	10,931	-	-	-	10,931	10,931	-	-	6,966

자료: 산업통상부

② 지역특화전시회 선정요건 변경의 적정성 검토 필요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의 내역사업인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은 주관기관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연초에 국고 지원대상인 전시회를 선정하고, 해당 전시회의 주최사업자에게 해외마케팅비·수출상담회 개최비·국내 중소기업 유치비 등의 용도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에 따른 지원 유형은 ① 우수전시회를 지원하여 국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려는 우수무역전시회,

②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우수한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 전시회, ③ 국내 전시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K브랜드 전시회로 구분됨.

이 중 지역특화전시회의 경우, 전시면적·참가업체·참관객(해외 바이어) 등 전시회 규모에 따라 4가지 지원유형으로 세분화되고, 신청요건, 건당 지원수준, 지원금 사용항목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음.

지역특화전시회 지원유형

지원유형	내 용	건당 지원수준*
① 지역글로벌톱전시회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비수도권 전시회	~80백만원
② 지역유망전시회	지역글로벌톱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비수도권 전시회	~55백만원
③ 지역신규무역전시회	지역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비수도권 초보 전시회	~40백만원
④ 지역전략전시회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시회**	~80백만원

주: * 국가 및 주최사업자 5:5 매칭(단, 지역전략전시회는 8:2)
**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관계부처합동, '23.2.)에 따른 지역별 주력산업품목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동 사업 중 지역특화전시회 예산액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20억 1,600만원에서 4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을 통해 2025년 9월 9일에 '2025년 2차 지역특화전시회 하반기 선정계획 공고'를 진행하여 총 69개의 전시회를 선정·지원하였음.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선정·지원된 2차 지역특화전시회의 신청요건이 기존 지역특화전시회에 비해 완화되었음.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기존 신청요건에서는 4가지 지원유형에 따라 일정 규모의 참가업체·해외참가업체 및 해외 바이어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데,

2차 지역특화전시회는 각 지원유형에 대한 총 참가업체·해외참가업체 참여 규모 요건을 완화하였고, 해외 바이어 참여 규모 요건을 참관객·바이어 참여 규모 요건으로 변경하였음.

2025년 1차·2차* 지역특화전시회 신청요건 비교

요건	지원유형	1차 지역특화전시회 신청요건	2차 지역특화전시회 신청요건
해외 참가업체	지역글로벌톱전시회	100개사	50개사
	지역유망전시회	10개사	-
	지역신규무역전시회	-	-
	지역전략전시회	-	-
해외 바이어 수	지역글로벌톱전시회	해외 바이어 1,000명	참관객 3,000명 바이어 100명
	지역유망전시회	해외 바이어 100명	참관객 1,000명 바이어 70명
	지역신규무역전시회	해외 바이어 20명	참관객 500명 바이어 10명
	지역전략전시회	해외 바이어 80명	참관객 500명 바이어 50명
총 참가 업체	지역글로벌톱전시회	400개사	200개사
	지역유망전시회	100개사	70개사
	지역신규무역전시회	60개사	40개사
	지역전략전시회	120개사	80개사

주: * 1차 지역특화전시회: 2025.1.20. 선정계획 공고에 따른 선정·지원사업
2차 지역특화전시회: 2025.9. 9. 선정계획 공고에 따른 선정·지원사업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따라, 2차 지역특화전시회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유망 전시회 28개 중 85.7%에 해당하는 24개의 전시회와, 지역신규무역전시회 35개 중 94.2%에 해당하는 33개의 전시회가 기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2차 지역특화전시회 중 지역유망전시회 운영 현황

유형	전시회 명칭	총 참가 업체 수	해외참가 업체 수	해외 바이어 수
지역 유망 전시회	2025 대구카페쇼	111	8	1
	2025 부산 브랜드페스타	151	0	0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	241	12	0
	대전맘아랑베이비페어 8월	121	12	0
	구 베이비&키즈페어	150	22	16
	2025 케이펫페어 대구	139	0	3
	제25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	216	22	70
	2025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71	0	71
	2025 부산캣쇼	99	0	2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234	45	176
	부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152	25	20
	2025 부산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109	0	0
	2025 부산코리아빌드	110	7	3
	2025 대전콘텐츠페어	100	0	9
	2025 대구경향하우징페어	145	0	0
	2025 부산카페쇼	122	10	2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143	0	0
	2025 대구콘텐츠페어	162	0	16
	2025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	214	12	143
	대전 국제 와인 EXPO 2025	249	64	96
	2025 부산펫쇼	219	0	6
	코리아 렙타일 포럼 in 대구	80	0	0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103	5	45
	제37회 부산드림베이비페어	134	15	0
	광주경향하우징페어	125	0	0
	부산 핸드메이드페어 윈터	170	11	0
	대전맘아랑베이비페어 12월	120	10	0
	부산국제주류박람회	144	31	2

주: 음영 표시한 수치는 기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
자료: 산업통상부

2차 지역특화전시회 중 지역신규무역전시회 운영 현황

유형	전시회 명칭	총 참가 업체 수	해외참가 업체 수	해외 바이어 수
지역 신규 무역 전시회	2025 더골프쇼&더캠핑쇼 in 청주	64	0	0
	제79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80	0	0
	2025 K-에듀 웨이브 부산	67	0	0
	2025 국제차&티푸드박람회	96	9	10
	2025 대전 체험형 모빌리티쇼	40	0	30
	2025 케이펫페어 청주	117	5	0
	2025 대구가구쇼	69	0	0
	2025 북앤콘텐츠페어	94	0	4
	제13회제일창업박람회in 대전	58	0	0
	2025 원주 K-골프 WITH 파크골프	40	0	0
	2025 더골프쇼&더캠핑쇼 in 창원	47	0	0
	2025 울산가구쇼	75	0	0
	2025 대구 캠핑&레저차량 박람회	41	0	0
	제40차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	47	5	10
	2025 우수급식·외식산업전 - 부산	119	0	0
	2025 국제 수소전기에너지 전시회 및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대전	41	0	9
	경남디지털위크 THE NEXT AI	64	1	8
	2025 충청가구쇼	96	0	0
	제주 디저트페스타	44	0	0
	2025 남도김치큰장	42	0	1
	2025 경남국제해양레저 및 낚시박람회	51	0	0
	2025 스마트경제생활박람회	62	1	0
	2025 대전펫페어	65	0	1
	2025 대한민국 대드론박람회	47	2	10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	69	0	1
	로컬브랜드페어 2025	124	3	15
	미래모빌리티·부품전시회	53	7	12
	2025 더골프쇼&더캠핑쇼 in 광주	63	0	0
	대구 크리스마스페어	162	0	0
	iok 베이비&키즈페어	81	14	0
	청주오송맘아랑베이비페어	92	10	0
	밀림페어	132	0	0
	2025 경남콘텐츠페어	149	0	0
	2025 광주 밀리언쇼	124	2	0
	2025 간편식밀키트전시회	60	0	0

주: 음영 표시한 수치는 기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
자료: 산업통상부

당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동 사업 예산을 증액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해외참가업체 수·해외 바이어 수 등 기존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동 사업의 본래 취지인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전시회 육성’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운영으로, 전시회를 통한 수출 마케팅 확대 효과를 반감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지역특화전시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향후 신청요건을 변경하는 등으로 인해 사업의 성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운영 계획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수출지원기반활용: 지사화사업 모집시기·선정기준 개선을 통한 성과 제고 필요

① 결산 현황

‘수출지원기반활용’(1139-307)은 중소·중견기업의 민·관수출지원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등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801억 7,100만원을 전액 집행함.

’25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수출지원기반활용	91,364	180,171	-	-	-	180,171	180,171	-	-	181,074

자료: 산업통상부

② 진입단계 지사화사업 운영 일정 및 선정 기준 개선 필요

‘수출지원기반활용’의 내역사업인 ‘개별지원사업’은 해외무역관 전담직원 등이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에 따른 지원 유형은 ① 잠재바이어 조사·네트워크 교류 등 기초 마케팅을 지원하는 진입단계, ② 현지 전시 참가·현지 유통망 입점·인허가 취득 지원 등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발전단계, ③ 기술수출·조달진출 등 현지화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확장단계로 구분됨.

2025년 지사화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지원 기간	기업 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40만원	KOTRA
		9개월	225~375만원 *지역별 차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년	300~5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9개월	6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5년 동 사업 중 진입단계 지사화사업의 경우, 참여한 기업의 수출액이 1,100만달러에서 290만 달러로 대폭 감소(△73.64%)하였는데, 진입단계에 참여한 기업당 수출액으로 환산하면 422만 8천원(1,439원/달러 기준)에 불과함.

같은 기간 발전단계(32억 3,300만달러 → 28억 6,500만달러, △12.9%) 및 확장단계(2억 7,100만달러 → 2억 6,800만달러, △6.7%)의 수출액도 감소하였으나, 진입단계 지사화사업의 감소폭은 이를 현저히 상회하고 있음.

2021 ~ 2025 지사화사업 단계별 현황

단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진입	사업 예산(억원)	39.11	33.16	32.67	29.16	29.16
	지원 기업 수	1031.00	1104.00	1089.00	996.00	987.00
	수출액(억 달러)	0.09	0.11	0.13	0.11	0.029
	기업 당 수출액(달러)	8632.40	9510.87	12029.38	10943.78	2938.20
발전	사업 예산(억원)	269.84	229.00	225.60	232.16	235.34
	지원 기업 수	4265.00	4149.00	4003.00	3568.00	3631.00
	수출액(억 달러)	34.70	43.21	49.45	32.33	28.65
	기업 당 수출액(달러)	813599.06	1041455.77	1235323.51	906109.87	789038.83
확장	사업 예산(억원)	46.79	39.68	39.09	36.04	32.86
	지원 기업 수	370.00	399.00	394.00	365.00	387.00
	수출액(억 달러)	2.20	2.40	3.70	2.71	2.68
	기업 당 수출액(달러)	594594.59	601503.76	939086.29	742465.75	692506.46
전체	사업 예산(억원)	355.74	301.84	297.36	297.36	297.36
	지원 기업 수	5,666	5,652	5,486	4,929	5,005
	수출액(억 달러)	36.99	45.72	53.28	35.15	31.36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이 진입단계 지사화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출 실적이 급감한 것과 관련하여 ① 2025년 진입단계 지사화사업의 모집 시기가 연초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과 ② '현지거점 보유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진입단계 지사화사업의 모집 시기가 2월·4월·6월·8월로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2025년 진입단계 지사화사업의 모집 시기는 1 ~ 4월로 한정되었음[17].

이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5년부터 동 사업의 예산 운영 방식이 연내 소진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진입단계(6개월) 종료 후

17) 2023년 진입단계 지사화사업 신청마감일 : 2. 9.(목), 4.11.(화), 6.12.(월), 8.11.(금)
2024년 진입단계 지사화사업 신청마감일 : 2. 8.(목), 4.11.(목), 6.12.(수), 8.12.(월)
2025년 진입단계 지사화사업 신청마감일 : 1.17.(금), 2.11.(화), 3.11.(화), 4.11.(금)

차기 사업을 즉시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모집시기가 1 ~ 4월로 한정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한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18]에 따라 이월이 허용됨.

연내 소진을 이유로 동 사업의 모집 및 지원 시기를 연초로 한정하게 되면 연중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기초 마케팅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예산을 연내 소진하기 위해 사업의 모집 및 지원시기를 연초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지사화사업의 신청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부규정 「지사화사업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지사화사

18)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업을 신청한 도시에 현지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19], 현지직원 1명 또는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에 포함됨.

수출실적이 낮은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현지직원 또는 해외 마케팅 인력 없이 기초 마케팅 지원 만으로 일정 수준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실적이 적은 수출초보기업이 진입단계 지사화사업에 다수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요건의 조정이 필요해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진입단계 지사화사업의 모집 및 지원 일정을 연중 고르게 편성하고[20], 해외 거점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더라도 지사화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업무매뉴얼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19) 「지사화사업 업무매뉴얼」
다. 평가 시 참고사항
1) 지원(선정) 불가 기업 : 대기업 및 출자회사, 유관기관, 현지거점 보유기업, 휴·폐업 기업

20) 한편, 2025년 확장단계 지사화사업 또한 연초로 모집 및 지원시기가 한정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 성과는 진입단계 지사화사업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연중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사업의 모집 및 지원시기도 연중 고르게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확장단계 지사화사업 신청마감일 : 2. 9.(목), 4.11.(화), 6.12.(월), 8.11.(금)
- 2024년 확장단계 지사화사업 신청마감일 : 2. 8.(목), 4.11.(목), 6.12.(수), 8.12.(월)
- 2025년 확장단계 지사화사업 신청마감일 : 1.17.(금), 2.11.(화)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조직망운영비 예산 편성 기준 개선 필요

① 결산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39-310)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조직망운영비, 인건비,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3,346억 600만원과 이용액 83억 6,6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3,429억 7,200만원 중 3,428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을 불용함.

’25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329,290	334,606	-	8,366	-	342,972	342,876	-	96	341,429

자료: 산업통상부

② 조직망운영비 예산의 효과적 심의를 위한 편성 기준 보완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내역사업인 ‘조직망운영비’는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 무역관 및 국내 조직망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운영비·임차료·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조직망운영비 항목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결산	비고
조직망운영비(해외무역관)		75,096	75,042	
	기본운영비	8,404	8,168	무역관 제세공과, 부귀임여비, 소모품비, 차량보험 등
	임차료 (관옥·차량·주택 등)	49,253	49,079	관옥, 주택, 차량, 주차장 등
	지원사업비(일반)	3,759	3,667	관옥보수이전, 주택임차 부대비용, 사택 개보수 비용 등
	지원사업비 (복리후생)	4,026	4,655	해외 파견직원 자녀교육비, 의료보조비, 전지휴가 및 기복휴가 등 지원비용
	조직망관리	9,654	9,473	조직망 감사, 결산, 성과관리, 무역관장 회의 등
조직망운영비(공항사무소)		100	154	인천공항 사무소 1개소 (바이어 출입국 지원 등)

동 내역사업 예산 중 해외무역관 관리·운영에 편성된 예산(이하 “해외무역관 조직망운영비”)은 해외무역관의 수 × 지원단가로 산출되며, 지원단가는 2024년에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변동 없이 유지되었음.

2025년에는 지원단가가 5억 4,600만원에서 5억 900만원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2024년까지 해외무역관 조직망운영비에 포함되었던 ‘해외근무직원 자녀교육비’ 항목(’25년 예산 48억 4,800만원)이 인건비로 이관되면서 3,700만원(48억 4,800만원 ÷ 131개소)이 감액된 것으로, 실질적인 단가는 2024년과 동일한 수준임.

최근 5년간 해외무역관 조직망운영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해외무역관 조직망운영비		67,864	67,864	67,864	70,472	66,730
	산출내역	129개소× 526백만원	129개소× 526백만원	129개소× 526백만원	129개소× 546백만원	131개소[21]× 509백만원

2025년 해외무역관 현황

구 분	개소	해외무역관 현황(총 131개소)
유럽	24개소	암스테르담(네덜란드), 뮌헨(독일), 함부르크(독일), 프랑크푸르트(독일), 브뤼셀(벨기에), 베오그라드(세르비아), 취리히(스위스), 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 빈(오스트리아), 프라하(체코), 리스본(포르투갈), 파리(프랑스), 부다페스트(헝가리), 아테네(그리스), 코펜하겐(덴마크), 부쿠레슈티(루마니아), 소피아(불가리아), 스톡홀름(스웨덴), 마드리드(스페인), 런던(영국), 밀라노(이탈리아), 자그레브(크로아티아), 바르샤바(폴란드), 헬싱키(핀란드)
북미	10개소	달라스(미국), LA(미국), 뉴욕(미국), 디트로이트(미국), 시카고(미국), 실리콘밸리(미국), 애틀랜타(미국), 워싱턴DC(미국), 벤쿠버(캐나다), 토론토(캐나다)
중남미	13개소	과테말라(과테말라), 산토도밍고(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시티(멕시코), 몬테레이(멕시코), 상파울루(브라질),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키토(에콰도르), 산티아고(칠레), 보고타(콜롬비아), 아바나(쿠바), 파나마(파나마), 아순시온(파라과이), 리마(페루)
동남아시아	15개소	오클랜드(뉴질랜드), 비엔티안(라오스),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양곤(미얀마), 다낭(베트남), 하노이(베트남), 호치민(베트남), 싱가포르(싱가포르), 수라바야(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인도네시아), 프놈펜(캄보디아), 방콕(태국), 마닐라(필리핀), 멜버른(호주), 시드니(호주)
서남아시아	9개소	다카(방글라데시), 콜롬보(스리랑카), 뉴델리(인도), 뭄바이(인도), 벵갈루루(인도), 암다바드(인도), 첸나이(인도), 콜카타(인도), 카라치(파키스탄)
CIS	11개소	노보시비르스크(러시아), 모스크바(러시아), 블라디보스톡(러시아), 샹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 울란바토르(몽골), 민스크(벨라루스), 바쿠(아제르바이잔),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키이우(우크라이나), 트빌리시(조지아), 알마티(카자흐스탄)
동북아시아	25개소	도쿄(일본), 나고야(일본), 오사카(일본), 후쿠오카(일본), 광저우(중국), 난징(중국), 다롄(중국), 베이징(중국), 상하이(중국), 샤먼(중국), 선양(중국), 선전(중국), 시안(중국), 우한(중국), 정저우(중국), 창사(중국), 창춘(중국), 청두(중국), 충칭(중국), 칭다오(중국), 톈진(중국), 하얼빈(중국), 항저우(중국), 홍콩(중국), 타이페이(대만)
중동	15개소	트리폴리(리비아), 카사블랑카(모로코),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다마스커스(시리아), 두바이(아랍에미리트), 알제(알제리), 무스카트(오만), 암만(요르단), 바그다드(이라크), 테헤란(이란), 텔아비브(이스라엘), 카이로(이집트), 도하(카타르), 쿠웨이트(쿠웨이트), 이스탄불(튀르키예)
아프리카	9개소	아크라(가나), 라고스(나이지리아), 요하네스버그(남아공), 마투푸(모잠비크),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 나이로비(케냐), 아비장(코트디부아르), 다레살람(탄자니아), 카르툼(수단)

21) 2025년에 멕시코 몬테레이 해외무역관, 조지아 트빌리시 해외무역관이 신설됨.

그런데 131개 해외무역관 중 3곳은 소재지에서의 내전 발생을 이유로 2023년부터 현지 사무실 운영이 중단되어 인근 해외무역관장이 겸임하여 업무를 축소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무역관 조직망운영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해외무역관에 대해 동일한 지원단가를 적용하였음[22].

현지 사무실 운영이 중단된 해외무역관 현황

명칭	소재지	설치 연도	겸임 무역관	운영 중단 시점	비고
다마스커스 해외무역관	시리아 다마스커스	2009년	암만 해외무역관	2023년 * 현지직원 1명 근무중	내전 지속으로 정상 운영 어려움
트리폴리 해외무역관	리비아 트리폴리	1974년	카이로 해외무역관	2023년 * 현지직원 1명 근무중	경제재제·내전 지속으로 정상 운영 어려움
카르툼 해외무역관	수단 카르툼	2009년	카이로 해외무역관	2023년 * 2026.1.1. 폐쇄	내전 지속으로 정상 운영 어려움

운영이 중단된 해외무역관은 파견 인원 없이 현지 직원만으로 운영되며 운영 재개를 대비해 최소한의 관리·운영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해외무역관에 비해 각종 관리비·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무역관 조직망운영비 예산 편성 시 운영이 중단된 해외무역관에 대하여도 동일한 지원단가를 적용하면 실제 소요보다 큰 금액이 산출될 수 있음.

---

22)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무역관 조직망운영비 편성기준에는 평균 지원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실제 배분되는 조직망운영비는 해외무역관 별로 각각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집행 경비 부족’을 이유로 발생한 해외무역관 조직망운영비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3171-364) 사업 내 본예산 불용액 83억 6,600만원을 동 사업 예산으로 이용하였음[23].

동 사업 예산은 원화기준으로 편성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외무역관에서 외화로 집행되는 경비이므로 환율 상승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편성기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운영이 중단된 해외무역관에 대하여도 동일한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소요보다 큰 금액이 산출될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산 부족에 따른 이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무역관 조직망운영비에 대한 현행 예산 편성 기준이 실제 해외무역관 운용 소요를 반영하는 산정 기제가 미흡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조직망운영비 예산 산출 시 운영이 중단된 무역관에 대해서도 동일 단가를 적용한 것에 대해 “전체 조직망운영비 예산은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편성·관리되므로 3개 무역관의 포함 여부는 총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음.

23) 이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예산 심의에서 원화로 편성되고 환율·물가와 같은 외부요인이 미반영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환율 변동으로 자체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관 임차료 등 해외조직망 운영 필수경비가 부족하였다”고 답변하였음.

따라서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무역관 조직망 운영비에 대한 국회 심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무역관의 운영 상태 등을 감안한 실제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외무역관 조직망 운영비 예산 편성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7) 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사업: 내역사업 통합운영 및 홍보체계 개편필요

① 결산 현황

‘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사업(3133-301)’은 각 개별산업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산업통상부는 산업연구원(KIET)을 통해 본예산 6억 400만원 전액을 민간경상보조(320-01)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25년도 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604	604	-	-	-	604	604	-	-	596

자료: 산업통상부

② 내역사업 통합운영 필요

동 세부사업은 산업통계분석시스템(http://istans.or.kr) 콘텐츠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동향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통계분석시스템의 통계 콘텐츠 개발 및 확대' 내역사업(1억 3,500만원)과

국내외 산업통계 DB를 확충하고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포털을 개선하는 '산업통계 포털 및 분석시스템 확충·강화' 내역사업(3억 4,900만원) 등으로 구성됨.

[표 1] 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사업 내역사업별 수행내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세부내용
산업통계분석시스템의 통계 콘텐츠 개발 및 확대 (135백만원)	- ISTANS 산업통계분석 콘텐츠 유지 관리 : 50백만원 - 산업통계를 활용한 산업동향분석 정보 제공 : 55백만원 - 신규산업통계 기획 및 구축 : 30백만원
산업통계 포털 및 분석시스템 확충·강화 (349백만원)	- 국내 및 해외 산업통계 DB확충 및 업데이트 : 100백만원 - 산업통계코드 연계 및 산업분류체계 관리 : 30백만원 - ISTANS 포털 개선, 시스템 유지 SW, 서버: 119백만원 - ISTANS 이용 확산 및 활성화: 1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계분석시스템의 통계 콘테츠 개발 및 확대 내역사업은 ISTANS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업무와 ISTANS 통계를 활용해 산업동향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통계 포털 및 분석시스템 확충·강화 내역사업은 ISTANS에 국내외 산업통계 DB를 업데이트 하는 업무와 ISTANS 포털을 관리하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등 두 내역사업 모두 ISTANS 콘텐츠 제작과 시스템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산업통상부는 두 내역사업과 미시산업통계 설문조사 내역사업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산업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4년 동 세부사업이 편성된 이래 20년 이상 동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을 일괄하여 산업연구원이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내역사업을 구분하여 수탁·운영하게 하는 경우 사업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행정비용이 추가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한편 세부사업 내용상 일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음.

③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홍보체계 개편 필요

동 세부사업은 산업통계분석시스템의 이용 홍보를 위해 산업통계 포털 및 분석시스템 확충·강화 내역사업에 논문경진대회 2,200만원, 우수활용사례 공모전 1,300만원 등 매년 1억원의 홍보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표 2] 202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집행액	내역산정
논문경진대회	22	22 x 1회 = 22
우수활용사례 공모전	13	13 x 1회 = 13
퀴즈이벤트	4	1 x 4회 = 4
전문가사업평가	5	5 x 1회 = 5
이용자만족도 조사	6	6 x 1회 = 6
이용자 피드백 및 콘텐츠 개선	50	25 x 2회 = 50
계	100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은 홍보예산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산업통계분석시스템의 경우 2024년에는 6만 1,000명의 이용자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이용자 중 41.0%에 해당하는 2만 5,000명이 감소한 3만 6,000명의 이용자를 기록하였음.

반면 국가운영 통계사이트 중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https://kosis.kr/index/index.do)의 경우 2025년 전년 대비 38.4%에 해당하는 753만 4,000명이 증가한 2,718만 5,000명이 방문하여 이용하였고,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enara)의 경우 2025년 전년 대비 79.0%에 해당하는 870만 3,000명이 증가한 1,972만 2,000명 이용객을 기록하는 등 매년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3] 국가통계포털별 방문자수 추이

(단위: 천명)

소관	포털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산업통상부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	-[24]	32	61 (+29)	36 (△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15,423	19,315 (+3,892)	19,852 (+537)	19,651 (△201)	27,185 (+7,534)
	지표누리	1,083	5,957 (+4,874)	6,031 (+74)	11,024 (+4,993)	19,727 (+8,703)

자료: 산업통상부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지표누리의 경우 자체생산 통계자료 뿐 아니라 400여 국가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를 통해 주제별 통계와 기관별 통계, 지방지표와 시각화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결과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4) 2023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이용자 수 집계 개시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국가통계포털의 경우 2025년 27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2,718만 5,000명이 이용하였고, 지표누리의 경우 6억 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1,972만 2,000명이 이용하는 등 예산액 100만원 당 1만명에서 10만명에게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동 사업에 따른 산업통계분석시스템은 예산액 100만원 당 6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4] 국가통계포털별 방문자수 추이

소관	포털	이용자수	예산액	예산액 100만원당 이용자 수
산업통상부	산업통계분석시스템 (ISTANS)	36천명	604백만원	60명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KOSIS)	27,185천명	2,790백만원	9,700명
	지표누리	19,727천명	192백만원	10만 2,700명

자료: 산업통상부 / 국가데이터처

향후 동 사업의 이용자 수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이나 지표누리와 같이 기존 이용자 수가 확보되어 있는 국가통계포털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통계 지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동 사업의 차별성을 살려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사업집행 구조 점검필요

① 결산 현황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3133-304)’은 산업통상정책 관련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 관련 비R&D 장비 도입시 심의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 11억 9,900만원과 이월액 1억 1,000만원에 대해 8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원을 이용·전용하는 한편, 1억 4,200만원을 이월하고 3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5년도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결산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199	1,199	110	320	-	1,309	843	142	324	838

자료: 산업통상부

② ‘산업통상정책연구’ 연구용역 지연발주 및 수의계약 과다

‘산업통상정책연구’ 내역사업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학 등을 통해 산업통상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2025년 산업통상부는 일반연구비 8억 7,900만원과 이월액 1억 1,100만원 등 예산현액 9억 9,000만원에 대해 81.0%에 해당하는 8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4.3%에 해당하는 1억 4,200만원을 이월하는 한편, 4.5%에 해당하는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표 1] 산업통상정책연구 내역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879	879	110	-	-	989	802	142	45	518

자료: 산업통상부

2023년 우리 위원회 결산심의과정에서 동 내역사업의 이월집행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자[25] 산업통상부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 공고를 확대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하였음[26].

25)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2022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3.8.

26) 산업통상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II-1)」, 2026.3.

또한 2025년 우리 위원회 결산심의과정에서 동 내역사업의 경우 연말에 계약이 체결되는 연구용역의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자[27] 산업통상부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조기 개최하여 예산을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음[28].

이와 같은 답변 취지에 따라 2023년의 경우 전체 40건의 연구용역 중 17건을 상반기에 공고하는 등 전년 대비 30.3%p 증가한 42.5%의 상반기공고비율을 보였으나,

이후 2024년에는 전체 26건의 연구용역 중 9건을 상반기에 공고하고(34.6%, 전년 대비 7.9%p 감소), 2025년에는 전체 18건의 연구용역 중 6건을 상반기에 공고하는 등(33.3%, 전년 대비 1.3%p 감소) 다시금 상반기 중 연구용역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2] 산업통상정책연구 내역사업 상반기 공고비중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구용역사업 (수의계약 제외)	41건	40건	26건	18건
상반기공고 건수	5건	17건	9건	6건
상반기공고 비율	12.2%	42.5% (+30.3%p)	34.6% (△7.9%p)	33.3% (△1.3%p)

자료: 산업통상부

27)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5.8.

28) 산업통상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II-1)」, 2026.3.

또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2024년에는 연구용역주제 선정 등을 위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2월 28일에 최초로 개최하였으나, 2025년에는 3월 14일에 최초로 개최하는 등 연구용역주제의 선정과 발주가 다시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처럼 연구용역 주제선정과 발주의 지연이 누적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2023년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11.9%이던 것이 2024년에는 17.9%로 전년 대비 6.0%p 상승하였고, 2025년에는 18.9%로 전년 대비 1.0%p 상승하는 등 이월 및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표 3] 산업통상정책연구 내역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불용	현액대비 이월+불용
2023	2,692	2,371	165	156	321	11.9%
2024	1,044	857	110	77	187	17.9% (+6.0%p)
2025	989	802	142	45	187	18.9% (+1.0%p_

자료: 산업통상부

주제선정과 발주 지연에 따라 이월 및 불용률이 상승하고 있음은 물론 전체 연구용역 대비 수의계약의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과제 연평균 28.3건 중 70.6%에 해당하는 20.0건에 대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액기준으로는 2025년 전체 8억 7,900만원의 예산 중 59.4%에 해당하는 5억 2,200만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집행하여 지난 3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집행하였음.

[표 4] 산업통상정책연구 내역사업 중 수의계약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평균
과제 수	41건	26건	18건	28.3건
수의계약 과제 수	32건	17건	11건	20.0건
비율	78.0%	65.3%	61.1%	70.6%
계약금액	1,776	836	879	1163.7
수의계약 계약금액	1,011	432	522	655.0
비율	56.9%	51.6%	59.4%	56.2%

자료: 산업통상부

수의계약의 경우 일반경쟁입찰계약에 비해 절차가 간이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방을 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과제의 특수성과 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에도 불구하고,

동 내역사업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4분기 중 계약기간이 시작된 과제 중 76.0%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등 주제선정과 발주 지연이 계속됨에 따라 일반경쟁계약 등이 아닌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과제의 지연발주 및 수의계약 편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5] 산업통상정책연구 내역사업 중 수의계약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평균
과제 수	41건	26건	18건	28.3건
4분기 시작과제 수	6건	12건	7건	8.3건
4분기 시작과제 중 수의계약과제 수	6건	8건	5건	6.3건
4분기 시작과제 중 수의계약과제 비율	100%	66.7%	71.4%	76.0%

자료: 산업통상부

③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 심의지원’ 편성시 사업계획 미흡

‘산업기술개발장비도입심의지원’ 내역사업은 비R&D 분야 기술개발장비 도입시에도 R&D 분야와 같이 투자 효율성 및 구축 타당성 등 사전심의 절차를 신설하기 위해 2025년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산업통상부는 사업출연금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2.8%에 해당하는 4,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표 6]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 심의지원 내역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320	320	-	320	-	320	41	-	279	320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동 예산의 편성 당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소속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 필요예산을 출연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비R&D 분야 기술개발장비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출연금(350-02) 비목을 편성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29]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30]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 수령근거가 있으나, 비R&D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수령할 명시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31]이 밝혀져서 동 사업 출연금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25년 6월 10일 사업출연금 3억 2,000만원을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하여 동 사업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 형식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

29)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등의 추진)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운영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생 략)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 략)

31)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예산전용 후에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의 협의지연으로 인해 비R&D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심의 연구용역 1건에 대해 4,100만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7,900만원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음.

2026년의 경우에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협의지연으로 2026년 6월 30일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여 차년도 기반구축 사업의 장비도입 타당성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국가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업편성 전에 충분한 확인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 전용 등 예산조정을 거쳤음에도 편성예산 중 87.1%에 해당하는 부분을 불용하게 되었고 올해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적용 법률 등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집행시에도 사업예산의 편성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 보완 필요 등

① 결산 현황

‘반도체아카데미구축’(3161-329)은 반도체 기업의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하여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57억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반도체아카데미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4,710	5,710	-	-	-	5,710	5,710	-	-	8,620

자료: 산업통상부

②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 보완 필요

동 사업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경남·부산테크노파크 및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교육·실습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산업 수요에 기반하여 미취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사업임.

2025년도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사업 집행내역

○ **반도체아카데미구축** : 5,710백만원 - **수도권 1개소(본예산)**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4,710백만원 - **비수도권 2개소(1회 추경)** • 경남·부산테크노파크 : 500백만원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5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를 '교육(수료)인원'으로 설정하여 반도체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연도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명)	520	800	**1,000**	1,200
실적(명)	619	988	**1,244**	-
달성도(%)	119	123.5	**124.4**	-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교육 수료인원은 교육 제공 규모를 나타내는 단순 산출지표로서 교육을 통한 반도체 기업의 인력 부족 완화라는 사업목적을 어느 정도로 달성하였는지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미취업자 대상 교육의 경우, 교육 수료 후 반도체산업 또는 관련 직무에 취업하여 실제 산업현장에 인력이 공급되었는지가 사업성과를 판단하는 데 보다 적합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동 사업과 유사한 취지로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나노융합산업생태계 조성촉진’(3688-321)의 내역사업인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은 사업 대상인 특성화고 및 전문대 졸업(예정)생의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내역사업 간 성과지표 비교

구분	반도체아카데미구축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사업목적	산업계 수요 기반 반도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나노기술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실증 중심 현장직 인력 양성
교육대상	미취업자 및 재직자	특성화고·전문대 졸업(예정)생
성과지표	교육(수료)인원	인력양성 취업률
측정방법	교육 수료인원 집계	(취업인원/교육 수료인원) * 100
성과지표의 성격	교육 제공 규모를 나타내는 산출지표	교육 이후 산업현장 인력공급 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두 사업은 각각 반도체 및 나노기술 분야에서의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은 교육 이후 취업 성과를 별도의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반도체아카데미구축’은 단순 교육 수료인원만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성과지표는 사업목적의 달성 정도와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으므로[32],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에서 교육 수료인원

32) 「2026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은 성과지표를 사업의 최종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지표로 설정하고, 단순한 활동 또는 수행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지표와 함께 수료인원 중 미취업자의 반도체 관련 직무 취업인원 등 실제 인력공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성과계획서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질적인 인력 양성 효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③ 미취업자와 반도체 기업 간 취업연계 강화 필요

동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와 별도로 교육 수료인원 중 취업인원을 집계하고 있으나, 취업인원은 2023년 275명에서 2024년 252명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미취업자 교육 수료인원 취업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수료인원(명)	338	380	**488**
취업인원(명)	275	252	**66****
취업률*(%)	81.4	66.3	**13.5**

*취업률은 (취업인원/미취업자 교육 수료인원) * 100으로 산정함.
**'25.12 집계 기준이며, 취업에 소요되는 평균 시기(8~9개월)를 고려하여 '26.8에 재조사 예정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Basic(기초) 수준 20개 및 Advanced(심화) 수준 13개 총 33개로 구성된 교육과정 중 재직자 전용 교육과정 5개를 제외한 28개의 교육과정이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에 해당하나, 교육 수료가 직접적인 취업연계로 이어지는 과정은 Advanced 수준 5개 과정으로 미취업자 수강 가능 교육 28개 중 약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반도체아카데미구축 교육과정 중 취업연계 가능 교육

구분	교육명	운영기관	대상자	취업연계 여부*
Advanced (심화)	파운드리향 반도체 Design 전문가 양성과정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미취업자	○
	차세대 반도체 장비 제어 및 SW 전문가 양성과정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미취업자	○
	반도체 패키징 개발 및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미취업자	○
	차세대 반도체 장비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미취업자	○
	반도체 테스트 개발 및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미취업자	○

*취업연계 여부는 연차보고서상 교육과정별 '취업연계 여부'를 기준으로 함.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취업연계가 가능한 5개의 교육과정은 모두 수도권에서 오프라인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연계 교육과정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비수도권 교육과정이 확대되었음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교육과정에만 취업연계 가능 교육이 개설되어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취업연계 과정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미취업자 대상 교육과정 중 반도체 기업의 채용수요와 연결되는 교육과정의 수를 확대하여 미취업자와 반도체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교육과정에서도 참여기업의 직무 수요를 반영한 기업연계 프로젝트, 현장실습, 기업설명회 및 채용면접 연계 등을 확대함으로써 비수도권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넓히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반도체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10) 한국세라믹기술원출연(R&D): 성과지표 재고 필요

① 결산 현황

‘한국세라믹기술원출연(R&D)(3171-306)’은 세라믹 분야 R&D 전문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 운영경비와 연구사업비 및 시험설비비를 연구개발출연금 형식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한국세라믹기술원을 통해 본예산 203억 1,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5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출연(R&D) 결산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20,316	20,316	-	-	-	20,316	20,316	-	-	23,119

자료: 산업통상부

② 성과지표 재고 필요

한국세라믹기술원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33]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동조 제2항에 따라 세라믹 기술 관련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및 표준화사업을 주력으로 실시하고 있음.

한국세라믹기술원의 2025년 수입은 연간 총 940억원으로, 그 중 수탁사업, 기술료, 시험분석 수수료 등 사업수입이 719억 2,100만원으로 전체 대비 76.5%를 구성하고 있고,

동 사업 연구개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비사업수입이 220억 7,900만원으로 전체 대비 23.5%를 구성하고 있음.

3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표 1] 한국세라믹기술원 수입 구성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 수입	수탁사업 수입	66,821 (71.4%)	70,629 (70.8%)	68,245 (71.8%)	55,893 (68.4%)	64,477 (68.6%)
	기술료 수입	1,616 (1.7%)	2,977 (3.0%)	1,882 (2.0%)	1,401 (1.7%)	1,423 (1.5%)
	기타 수입 (시험분석수수료, 임대료 등)	2,107 (2.3%)	2,192 (2.2%)	4,897 (5.2%)	3,841 (4.7%)	6,021 (6.4%)
	소계	70,544 (75.3%)	75,798 (76.0%)	75,024 (79.0%)	61,135 (74.9%)	71,921 (76.5%)
비사업 수입	동 사업 연구개발출연금	19,047 (20.3%)	19,998 (20.1%)	16,807 (17.7%)	17,373 (21.3%)	20,316 (21.6%)
	이자수입	160 (0.2%)	506 (0.5%)	645 (0.7%)	577 (0.7%)	253 (0.3%)
	이월금	3,887 (4.2%)	3,409 (3.4%)	2,520 (2.7%)	2,587 (3.2%)	1,510 (1.6%)
	소계	23,094 (24.7%)	23,913 (24.0%)	19,972 (21.0%)	20,537 (25.1%)	22,079 (23.5%)
수입합계		93,638	99,712	94,996	81,672	94,000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기술료수입을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2023년의 경우 6억 9,3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18억 8,2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고(달성도 271%), 2024년에는 7억 2,8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14억 1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달성도 192%), 2025년에는 7억 6,4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14억 2,3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음(달성도 186%)

[표 2] 한국세라믹기술원출연 성과지표

(단위: 백만원)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기술료 수입	목표	660	693	728	764	803
	실적	2,977	1,882	1,401	1,423	-
	달성도	450%	271%	192%	186%	-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의 경우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사업수입 총 719억 2,100만원 중 수탁사업 수입이 644억 7,700만원으로 89.7%, 기술료 수입이 14억 2,300만원으로 2.0%, 시험분석수수료 등 기타 수입이 60억 2,100만원으로 9.3%를 구성하고 있음.

이처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사업수입 중 절대적인 비중이 정부수탁사업으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사업수입 중 2.0%를 차지하는 데에 불과한 기술료 수입 실적으로 전체 출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매년 타 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산업통상부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계 정부기관으로부터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분야의 정부수탁사업을 수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탁사업 수입이 사업수입 중 89.7%를 차지함에 따라,

기관의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탁사업의 성과도 일정부분 반영할 필요는 것으로 보임.

[표 3] 2025년 한국세라믹기술원 정부수탁사업 수주현황

(단위: 개, 억원)

분야	개수		예산	
	수	비율	금액	비율
반도체	38	14.0%	51.27	12.1%
이차전지	26	9.6%	47.80	11.3%
우주·항공	22	8.1%	36.24	8.6%
첨단바이오	25	9.2%	20.70	4.9%
전통세라믹	28	10.3%	32.16	7.6%
AI·디지털	14	5.1%	46.02	10.9%
에너지	47	17.3%	93.81	22.1%
기타	72	26.5%	95.68	22.6%
합계	272	100.0%	423.68	100.0%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의 PBS(수탁사업 중심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의 연구성과와 산업지원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완지표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구체적인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매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서도 목표 설정시에 과년도 실적에 대한 환류적 분석 없이 전년도 목표치에 5%를 더하여 목표로 삼고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이에 따른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은 예산사업과 연계되는 성과목표는 과년도 성과에 대한 환류적 검토를 거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34]을 고려하여, 차년도 목표설정 시 과년도 성과를 반영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34) 국무조정실, 「2025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25.3.

(11)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체계의 실효성 제고 필요

① 결산 현황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3171-316) 사업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 기술보호 컨설팅·교육 및 보안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2억 8,300만원 중 41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9,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4,283	4,283	-	-	-	4,283	4,193	-	90	3,931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4,053	4,053	-	-	-	4,053	3,968	-	85	3,786
무역안보기반조성	230	230	-	-	-	230	225	-	5	145

자료: 산업통상부

②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체계의 실효성 제고 필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35]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36]의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에

3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37]는 실태조사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1년마다, 현장방문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대상기관이 보유한 산업기술의 보호·관리 현황,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및 보안취약점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및 보유 예상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의 실태조사(이하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음.

먼저, 온라인 실태조사의 최근 5년간 응답현황을 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응답률은 최근 5년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보유 예상기관을 포함한 전체 대상기관의 응답률은 58.5~69.8% 수준으로 나타났음.

---

3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는 설문조사: 1년마다 실시
2. 현장방문조사: 2년마다 실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장소 및 내용 등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온라인 실태조사 응답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92.1%	81.0%	83.9%	86.4%	84.3%
국가핵심기술 보유 예상기관	48.0%	62.5%	44.2%	52.3%	45.3%
전체 대상기관	58.5%	69.8%	61.5%	67.5%	66.5%

자료: 산업통상부

온라인 실태조사에서는 매년 미응답 기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상당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예상기관에 해당하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서도 미응답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2년 연속 미응답 기관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3년 연속 미응답 기관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온라인 실태조사 미응답 기관 현황(누적)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당해연도 미응답	110(5)	60(15)	82(15)	75(14)	78(20)
2년 연속 미응답	9(1)	23(3)	38(3)	48(6)	50(8)
3년 연속 미응답	8(0)	5(0)	16(1)	29(2)	36(4)

주: 괄호 안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수이며, 당해연도 미응답에는 2년 연속 및 3년 연속 미응답 기관이 포함되며, 2년 연속 미응답에는 3년 연속 미응답 기관이 포함됨.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이와 같은 반복 미응답 기관에 대해 유선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 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후속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5년 기준 3년 연속 온라인 실태조사 미응답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4개사는 모두 현장방문조사 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상 여건 및 업무 일정 등 개별 사정으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복 미응답 기관에 대한 현행 후속관리만으로는 보안관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적기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방문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시 미수검 기관, 신규 등록기관, 기술침해 우려가 높은 분야 및 기업, 기존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최근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보면, 취약 또는 위험등급으로 분류된 기관이 매년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에는 연간 10~12개사가 취약 또는 위험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현장방문조사 결과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체	-	6	30	34	37
우 수	-	2	2	1	3
양 호	-	2	11	10	12
보 통	-	1	7	11	10
취 약	-	-	3	4	7
위 험	-	1	7	8	5

주1: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수행한 국내 현장방문조사 기준으로, 국정원과 공동 실시한 실태조사 및 해외 실태조사는 제외함.
*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받고, 교육 지원 및 기술보호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안내하는 등의 후속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개선 계획은 취약·위험요인의 내용과 개선에 필요한 기간 및 자원 등이 사안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도, 그 이행 여부나 추진상황을 별도로 점검하는 절차 없이 차기 현장방문조사 시 확인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어 취약·위험요인의 개선 여부를 적기에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기술보호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를 안내하고 있으나, 그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신청과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구조임에 따라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취약·위험요인이 실제 지원과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온라인 실태조사와 현장방문조사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기술보호 관리체계를 스스로 점검하고 취약·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방문조사 대상 선정 및 기술보호 지원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관리수단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온라인 실태조사 미응답 기관이 장기·반복 미응답 기관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미응답 초기 단계부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참여 유도와 단계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현장방문조사에서 확인된 취약·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 이행상황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현장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개선 여부를 적기에 확인·관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인·허가 절차 미비 등 추경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등

① 결산 현황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3171-364)은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의 적기 투자 및 생산시설 준공·가동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338억 5,500만원 중 1,148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190억 4,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25,213	142,221	-	△8,366	-	133,855	114,812	-	19,043	-
포항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7,130	11,930	-	-	-	11,930	-	-	11,930	-
청주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3,593	5,791	-	-	-	5,791	5,791	-	-	-
새만금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10,780	17,290	-	△8,366	-	8,924	1,881	-	7,043	-
울산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3,430	6,930	-	-	-	6,930	6,930	-	-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 확충	-	49,930	-	-	-	49,930	49,930	-	-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2단지 변전소 신설	-	49,930	-	-	-	49,930	49,930	-	-	-
기획평가관리비	280	420	-	-	-	420	350	-	70	-

자료: 산업통상부

② 인·허가 절차 미비 등 추경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이 상향됨에 따라[38], 동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 252억 1,300만원 대비 464.1%에 달하는 1,17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 지원비율 변화

구분	단지별 투자 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100조원 이상 **(용인·평택)**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포항, 울산)**	30%	25%
中	10~100조원	3~30조원 **(천안·아산)**	1~10조원 **(청주, 새만금, 울산)**	25%	20%
下	10조원 미만 **(구미)**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20%	15%

⇩

구분	단지별 투자 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100조원 이상 **(용인·평택)**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포항, 울산)**	**50%**	**40%**
下	100조원 미만 **(구미)**	30조원 미만 **(천안·아산)**	10조원 미만 **(청주, 새만금)**	**40%**	**30%**

자료: 산업통상부

내역사업 중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염처리수 지하관로 구축 공사[39]를 추진하기 위

38)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2025.4.

39) 블루밸리국가산단 내 이차전지(양극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처리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공동 지하관로 구축

하여 2025년도 본예산 71억 3,0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8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공사에 착공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전액 불용하였음.

2025년도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현액	집행액 (C)			
한국산업단지공단	7,130	11,930	-	-	-	-	-	-	-	-	-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처리수 지하관로 설계 완료('24.7) 후 수행기관인 포항시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이용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영향 최소화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해양이용협의에 부동의 하였다는 점을 예산 불용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염처리수의 해양방류는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에 해당하며[40],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은 공유수면 점용·사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용허가를 받기 전에 ‘해양이용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41].

즉, 염처리수 지하관로 구축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위하여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었으나,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임.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부 고시)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로서 예산 교부연도 내 집행 완료 가능한 사업인지를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42].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제도인 만큼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지는 사업일수록 사업의 시급성뿐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43],

---

4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4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5호)
제6조(예산검토기준 및 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로 예산 교부 연도 내 집행 완료 가능한 사업

43) 예산정책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6.4., p.43.

산업통상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 인·허가 관련 협의의 진행상황, 관계기관의 보완 요구 가능성 및 연내 착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③ 투자계획 검증을 통한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필요

내역사업 ‘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은 새만금국가산단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국가산단과 비응1·비응2 변전소를 연결하는 배전선로 연장 공사[44]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A社 등 4개社의 투자계획을 전제로 추진되어 2025년도 본예산 107억 8,0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65억 1,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이 중 18억 8,100만원만 집행되었음.

44) 154kV 배전선로(6km) 및 22.9kV 배전선로(5.2km) 연장으로 540MW 용량 추가확보

2025년도 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전년도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본예산	추경(A)						예산현액	집행액(C)			
한국산업단지공단	10,780	17,290	1,881	1,881	-	1,881	1,881	1,881	1,881	-	-	10.9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전기차 캐즘(Chasm)[45] 및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이차전지 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 4개社 중 3개社의 투자계획이 철회되었다는 점을 주된 예산 불용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대상 기업별 사업내용 및 공사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대상기업	사업내용	국비 교부액	추진현황
1	A	·비응1(22.9kV, 2.4km) ·비응2(154kV, 1km) *용량: 120MW	1,881	준공 ('26. 3)
2	B	·비응1(22.9kV, 2.8km) ·비응2(154kV, 1km) *용량: 130MW	-	투자 철회 ('25. 12)
3	C	·비응2(154kV, 1km) *용량: 200MW	-	투자 철회 ('25. 12)
4	D	·비응2(154kV, 3km) *용량: 90MW	-	투자 철회 ('25. 12)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5) 신기술이 시장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 구간을 의미함.

민간기업의 투자계획은 산업경기 및 통상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투자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특정 기업의 투자계획을 전제로 대규모 국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전력공급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계획을 세우기보다,

지원대상 선정 시 기업의 신청서뿐 아니라 투자규모·투자시점·이행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투자확약서 등을 함께 제출받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최종 투자 결정 여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3)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R&D): 장비의 적기 도입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① 결산 현황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R&D)’(3171-419)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46]를 중심으로 첨단전략기술 구현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 및 입주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6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연대협력지원(R&D)	6,300	6,300	-	-	-	6,300	6,300	-	-	12,122
기술개발지원	2,750	2,750	-	-	-	2,750	2,750	-	-	3,150
테스트베드구축지원	3,150	3,150	-	-	-	3,150	3,150	-	-	8,400
인력양성지원	400	400	-	-	-	400	400	-	-	572

자료: 산업통상부

4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장비의 적기 도입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테스트베드구축지원’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장비를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성능평가 및 신뢰성 검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은 2025년도에 이차전지 및 반도체 분야에서 총 3건의 계속과제를 수행하였으나, 2025년 말 기준 계속과제의 실집행액은 13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48억 900만원 대비 27.4%에 그쳤음.

2025년 말 기준 테스트베드구축지원 과제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국비 교부일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	2025.7.29.	1,830	359	19.6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구축	2025.7.29.	1,979	818	41.3
인공지능 및 1nm 이하급 초미세 시스템반도체 소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2025.7.29.	1,000	141	14.1
계	-	4,809	1,318	27.4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부는 동 내역사업의 2단계 사업기간이 2025년 7월부터 시작되어 당해연도에는 장비심의, 조달·입찰 등의 절차를 주로 진행하였으며, 장비심의에 3~5개월, 조달·입찰에 2~3개월 및 제작에 5~6개월 등이 소요되어 2025년 중 장비 대금 지급이 어려웠다는 점을 주된 집

행 부진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연구시설·장비는 심의, 조달·입찰, 제작 및 설치 등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2025년도 사업기간이 6개월('25.7～'25.12)이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테스트베드구축지원 집행내역

○ **테스트베드구축지원** : 3,150백만원 - 3개 과제(계속) * 2,100백만원 * 6/12개월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동 과제들은 모두 2024년 10월부터 수행된 계속과제로서 2025 회계연도 예산이 반영된 장비는 당초 2026년 5월 또는 10월까지 구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테스트장비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의 준공 지연 및 일정 변동에 따라 2026년 5월 구축 예정이었던 장비 2종은 2026년 8월, 2026년 10월 구축 예정이었던 장비 2종은 2027년 1월에야 가동 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

2025회계연도 예산 반영 시설·장비 구축 현황

(단위: 백만원)

시설·장비명	2025년도 예산	구축 예정시기 (당초)	구축 예정시기 (변경)	지연 사유
레이저 용접기 세트(4kw)	730	’26.5	’26.8	전용공간 조기 준공 (’26.12→’26.8) 에 따라 임시공간에 장비를 구축하지 않고 전용공간에 직접 구축
열관리 성능 평가 챔버	300	’26.5	’26.8	
폐배터리 모듈 안전방전 및 진단시스템	800	’26.10	’27.1	전용공간 준공 지연(’26.12)
재활용 공정 용수 분석시스템	380	’26.10	’27.1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장비 구축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며, 특히 폐배터리 모듈 안전방전 및 진단시스템과 재활용 공정 용수 분석시스템은 2027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므로 2026년도에는 해당 시설장비를 활용한 기업 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2026년도에는 2025년도 도입대상 장비의 제작·설치와 함께 추가 장비의 도입도 병행되고 있어 전용공간 준공과 기존 장비의 가동이 변경된 계획보다 다시 지연되는 경우 사업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전체 테스트베드 구축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도입대상 장비별로 계약에 따른 제작·운송·설치 및 기술검수 일정[47]을 면밀히 확인하여 변경된 구축 예정시기보

다 장비 구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7)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6-25호)**

제26조(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설치를 완료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성능 등 제반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완료는 최종적으로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14)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R&D): 기업연구소 지원정책의 정책성과 관리 및 환류 강화 필요

① 결산 현황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R&D)’(3174-308)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 주도의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68억 8,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R&D)	46,888	46,888	-	-	-	46,888	46,888	-	-	23,142

자료: 산업통상부

② 기업연구소 지원정책의 정책성과 관리 및 환류 강화 필요

동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을 개편하여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으로, ATC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었으며[48], 이후 ATC+ 사업으로 이어져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48)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몰제 적용에 따라 종료되었음.

이처럼 약 20여 년간 추진된 기업연구소 지원정책은 산업환경과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의 중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초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후 신성장동력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을 거쳐 최근에는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와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기업연구소 지원정책의 주요 정책방향 변화

사업	기간	정책 방향	정책적 특징
ATC	2003~2008	기술자립 기반 조성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기반 확충
	2009~2014	신성장동력 육성	신산업 중심 기술혁신 지원
	2015~2018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 확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
ATC+	2020~2026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기업연구소 역량 고도화 및 협력 생태계 조성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ATC와 ATC+를 통해 총 701개 과제에 약 1조 1,63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산업통상부의 성과분석 결과에서도 사업화, 특허 및 신규고용 등 다양한 성과가 축적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ATC·ATC+ 주요 성과

구분	ATC·ATC+*	산업통상부 전체 R&D**
사업화율	64.7%	50.7%
사업화 매출액 (정부출연금 10억원당)	37.6억원	15.4억원
특허 창출 (정부출연금 10억원당)	5.2건	2.6건
신규고용 (정부출연금 10억원당)	7.0명	3.8명

*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ATC+) 20년사 성과백서」(KEIT, 2025), 2009~2023년 착수과제(442개) 성과분석 결과
** 「2023년도 성과활용보고서」(KIAT, 2024), 2019~2023년 종료과제(7,989개) 성과분석 결과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산업통상부의 기업연구소 지원정책은 ATC와 ATC+를 통해 축적된 정책성과와 정책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R&D)'(3174-368)을 통해 새로운 정책단계로 추진되고 있음.

GATC 사업은 기존의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서 나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연구소 육성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을 보다 고도화한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ATC+와 GATC 주요 지원기준 비교

구분		ATC+	GATC
사업 목적		우수 기업연구소 R&D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 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
지원 방향		국내 기술역량 강화 중심	**글로벌 R&D 역량 고도화 및 수출 연계**
지원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글로벌 진출 역량 보유** 중소·중견기업
지원 요건	기본 요건	연구전담요원 8~30인 R&D집약도 2%(일반)/4%(해외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5년 이상	**종사자 50인 이상** 연구전담요원 8인 이상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경쟁력 요건	-	**매출**(100억~5,000억)· **수출비중**(20% 이상)· **R&D역량**진단 결과 상위 20% 중 1개 이상 충족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GATC는 기업연구소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에 따라 기존 사업과 비교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을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원기준에도 일부 변화가 이루어졌음.

특히 연구개발 역량 외에도 종사자 규모, 수출실적 및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지원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사업과는 지원기준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음[49].

49) 참고로 ATC+ 지원기업은 종사자 50인 미만 기업이 34.4%(63개사), 50인 이상 기업이 65.6%(120개사)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ATC+ 사업은 당초 202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연구개발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과제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총사업기간이 2026년까지로 조정되었음.

사업 추진계획 변경 내역

구분	당초 계획	변경
사업기간	2020~**2027년**	2020~**2026년**
신규과제	**2024년까지** 신규과제 선정	**2023년까지** 신규과제 선정
계속과제	과제별 4년	변경 없음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 결과 기존 계속과제는 당초 연구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신규과제 지원은 2024년부터 중단되어 기업연구소 지원정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새로운 정책단계로 전환하게 되었음.

그러므로 현시점은 장기간 추진된 기업연구소 지원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그동안 축적된 정책성과가 후속 정책단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성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ATC+ 지원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

종사자 규모	기업수	분포율
50인 미만	63개사	34.4%
50~100인 미만	57개사	31.1%
100인 이상	63개사	34.4%
합 계	**183개사**	**100.0%**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ATC+ 사업 종료 이후 이루어질 성과관리가 사업 자체의 성과평가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추진된 기업연구소 지원 정책의 정책효과와 정책단계 전환의 적정성도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는 지원 종료 이후 기업연구소의 성장경로와 혁신역량 축적 과정, 후속 정책과의 연계 현황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분석하여 정책성과가 새로운 정책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책단계 변화에 따라 지원기준이 변경된 만큼, 이러한 변화가 기존 지원기업의 성장경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지원기준의 변화가 기업연구소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15)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R&D): 시범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 검증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강화 필요

① 결산 현황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R&D)’(3174-315)은 대학 연구소를 산업기술거점센터로 육성하여 미래산업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축적하고, 산업계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2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도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산업기술거점센터 육성시범사업(R&D)	2,250	2,250	-	-	-	2,250	2,250	-	-	-

자료: 산업통상부

② 시범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 검증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강화 필요

동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되었고, 1단계에서는 대학 연구소의 미래산업 원천핵심기술을 개발·축적하고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보한 기술과 협력 기반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기업 맞춤형 기술공급 및 실용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 종료 이후에도 거점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였음.

이를 위해 1단계에서 구축한 협력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회원제(VCM: Value Chain Membership[50])를 도입하고, 멤버십 회비와 민간 연구개발 수주 등을 통해 거점센터의 자립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함께 설계하였음.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R&D)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대학 연구소를 통한 미래산업 원천핵심기술 개발·축적 및 산업계 핵심기술 지속 공급체계 마련
사업기간	2020~2025년
1단계 (2020~2022년)	원천핵심기술 개발·축적 및 산학협력 기반 구축
2단계 (2023~2025년)	기술이전·산업계 공급 확대 및 기업회원제(VCM)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사업 종료 후	구축된 자립기반을 활용한 거점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50) VCM(Value Chain Membership)은 협력기업과의 지속적인 산학협력 및 기업수요 발굴 등을 위해 도입된 기업회원제임.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복합소재·부품, 초임계 소재 및 AI 분야의 산업기술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사업기간 동안 기업회원제(VCM)를 통해 성균관대학교 71개사, 연세대학교 41개사, 한양대학교 33개사의 협력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산업기술거점센터 구축 현황

분야	거점센터	주관기관	기업회원 수
부품	복합재료 동시설계 산업기술거점센터	성균관대학교	71개사
소재	초임계 소재 산업기술거점센터	연세대학교	41개사
AI	제조·공정·물류 산업지능화 산업기술거점센터	한양대학교	33개사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업성과는 기술이전 수입액과 민간 연구개발 건당 수주금액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였으며, 기술이전 수입액은 2024년부터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반면, 민간 연구개발 건당 수주금액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음[51].

51) 산업통상부는 2024년 사업예산이 전년 4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참여교수가 40명에서 18명으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특허출원, 기술이전 및 민간 연구개발 수주 등의 성과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였음.

주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정부지원금 10억원당 기술이전 수입액	목표	0.95	1.00	1.05
	실적	0.94	1.13	1.43
	달성률	**98.9%**	**113.0%**	**136.0%**
민간R&D 건당 수주금액	목표	1.64	1.69	1.74
	실적	0.85	0.65	1.49
	달성률	**51.8%**	**38.5%**	**85.6%**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동 사업의 2단계 전략목표에서는 기업회원제 도입과 자립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되는 성과지표는 기술이전 수입액과 민간 연구개발 건당 수주금액 등 개별 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점센터 전체의 자립재원 확보 수준이나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의 구축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동 사업은 2025년 종료 이후 2026년부터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한 사후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나[52], 현재 성과활용보고서 및 성과활용평가 항목은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및 고용창출 등 일반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5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제1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전문기관이 이를 종합·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으며, 거점센터의 운영 지속 여부, 기업회원제 운영 현황 또는 자립기반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후속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산업기술거점센터시범사업 후속사업 기획연구[53]'를 수행하였으며, 동 기획연구에서는 동 사업의 성과목표·지표 달성 현황을 분석하여 산학협력 활동 부족, 수요·공급기술 간 미스매치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업수요 분석 및 수요·공급기술 간 연계 강화 등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동 기획연구의 성과분석 또한 주로 기존 성과지표의 달성 현황과 미달 원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단계 전략목표로 명시된 자립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를 토대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거점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확인하기 어려움.

반면, 동 기획연구에서 제시한 후속사업의 성과지표에는 '재정 자립화율'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지원금 외에 컨소시엄 가입비, 기술이전료, 민간 위탁과제 수입 등을 자체수입으로 산정하여 최종 40%의 자립화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53)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성과분석 및 후속사업 기획 등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산업기술거점센터시범사업 후속사업 기획연구'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이 거점센터의 자립기반 마련은 동 사업의 2단계 전략목표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속사업 기획에서도 '재정 자립화율'이 별도의 성과지표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중·종료 후 성과관리뿐 아니라 후속사업 기획을 위한 성과분석에서도 자립기반 마련 여부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시범사업은 새로운 정책모델의 효과성과 향후 확대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선행 시범사업의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후속사업의 추진 여부와 추진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함.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동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논문·특허 등 연구개발성과와 함께 사업 종료 시 각 대학이 제시한 자립화 계획의 이행 여부, 거점센터의 운영 지속성, 기업회원제 운영 현황, 민간 연구개발 수주 및 자체 운영기반 확보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함으로써 2단계 전략목표에서 제시한 자립기반 마련의 달성 여부와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한계, 개선과제를 토대로 후속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적정한 사업방식 및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구조 설계 필요

① 결산 현황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3174-362) 사업은 신진연구자[54]의 우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기업 수요기술을 확보하고 기업과 신진연구자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R&D)	4,000	4,000	-	-	-	4,000	4,000	-	-	6,850

자료: 산업통상부

②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구조 설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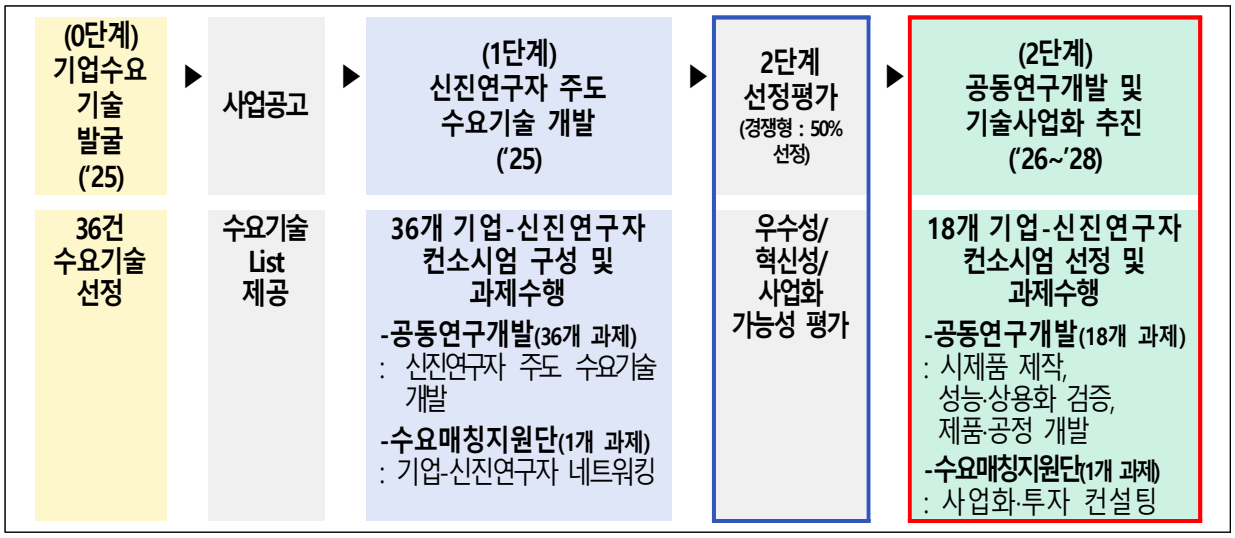
동 사업은 기업의 기술수요와 신진연구자의 혁신역량을 연계하여 연구자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2025년 신규사업임.

54) 동 사업의 사업명 및 일부 제출자료에서는 '차세대연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기획보고서 및 사업설명자료에서는 동일한 지원대상을 '신진연구자'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업기획보고서 등의 용례에 따라 이하 '신진연구자'로 통일하여 기술하였음.

지원대상은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진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출연연 등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고, 기술애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됨.

동 사업은 산업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과 신진연구자를 1:1로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인 수요매칭지원단을 통해 사업화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고 있음.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 사업추진 절차



* (0단계 : 수요기술 발굴) 기업이 당면한 애로기술 발굴
* (1단계/9개월 : 수요기술 개발) 신진연구자 주도로 수요기술 개발(과제당 1.1억원)
* (2단계/2년9개월 : 공동연구) 1단계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혁신성을 평가하여 50%를 선정하고 수요기업과 공동연구개발 지원(과제당 13.75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기업의 기술수요를 먼저 발굴(0단계)한 후 신진연구자가 주도하는 수요기술 개발을 지원하고(1단계), 이후 기술의 우수성·혁신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상위 50% 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2단계) 경쟁형 구조로 운영됨.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기획하면서 신진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연구비와 기업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연구환경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으며, 최근 제출자료에서도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25년 신진연구자 규모를 약 5만 8천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신진연구자 규모 현황 및 추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진연구자(명)	49,385	51,300	53,505	55,711	57,918

주: 2023~2025년은 산업통상부가 사업기획 당시 분석한 2018~2022년 신진연구자 증가 추세(연평균 4.3%)를 적용하여 추정한 수치임.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신진연구자의 우수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공동연구 기회 확대와 기술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며, 신진연구자 대상 현황조사에서도 기업과의 공동연구, 후속 연구 연계 및 신진연구자 전용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동 사업은 총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사업기간 중 신규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 첫해인 2025년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최초 선정된 과제에 대한 계속지원만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즉, 동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신진연구자를 지원하기보다는 2025년에 선정된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단계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사업기간(2025~2028) 중 동 사업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지원 규모

구분	2025	2026	2027	2028
신규과제수(건)	37	-	-	-
계속과제수(건)	-	19	18	18
정부출연금(백만원)	4,000	6,850	9,000	9,000

자료: 산업통상부

더욱이 동 사업은 시행 첫해 기업수요 발굴 단계에서 총 134건의 기술수요가 접수되어 36건이 선정(3.7:1)되었고, 이후 공동연구개발 과제 공모에서도 62명의 신진연구자와 53개 기업이 공동연구 공모에 참여하여 36개 기업-신진연구자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등 사업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정책수요가 확인되었음.

또한, 1단계 수행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92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으며, 1단계 수행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55].

55) (1단계)설문조사 주요 의견

■ (00연구원) 기업수요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자로서 높은 성취감. 기업애로기술 해결을 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음
■ (00대학교) 신진 연구자들의 경우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초기 연구를 세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함과 동시에 신진 연구자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2025년 동 사업 추진 및 공모 결과

단계	주요 내용	실적	비고
0단계 기업수요 발굴	기업 기술수요 접수	134건	경쟁률 3.7:1
	기술수요 선정	36건	
1단계 공동연구 공모	참여 신진연구자	62명	
	참여 기업	53개	
	최종 선정 컨소시엄 (기업-신진연구자)	36개	
사업 운영	참여자 만족도	92점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동 사업은 시행 첫해부터 사업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확인되었음에도, 사업기간 중 신규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사업 첫해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원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이 지원모델의 효과성과 현장 수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초기 시범사업 성격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사업 첫해에만 신규과제를 선정하도록 설계하였다고 설명하였음[56].

향후 산업계 수요를 고려한 연구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함. 산업부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 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00연구원) 신진연구자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제
- (00대학교) 평소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회가 제한적인 신진연구자로서, 이번 국가 과제를 통해 산업계와 실질적인 협업을 경험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 연구의 확장성과 실용적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연구 방향 설정에도 큰 도움이 됨.
- (00대학교 등) 사업비 증액 요청 등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의견

자료: 산업통상부

56) 산업통상부는 예비검토 과정에서 동 사업을 '초기 시범사업' 성격으로 기획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사업기획보고서에서는 신진연구자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그러나 사업기획 단계에서는 신진연구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연구환경의 취약성, 기업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 등을 사업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신진연구자 전용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기획 배경을 고려하면,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진연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구조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사업목적과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사업기간 중 신규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거나 정책 확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음.

(17)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대규모 불용 방지 필요

① 결산 현황

‘미래 판기술[57] 프로젝트(R&D)’(3174-367)는 향후 10~20년 후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전략기술이 티핑포인트에 미리 도달하여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솔루션(요소기술, 실증·시제품, 생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0억원 중 8억원이 집행되었고 42억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5,000	5,000	-	-	-	5,000	800	-	4,200	4,030

자료: 산업통상부

②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대규모 불용 방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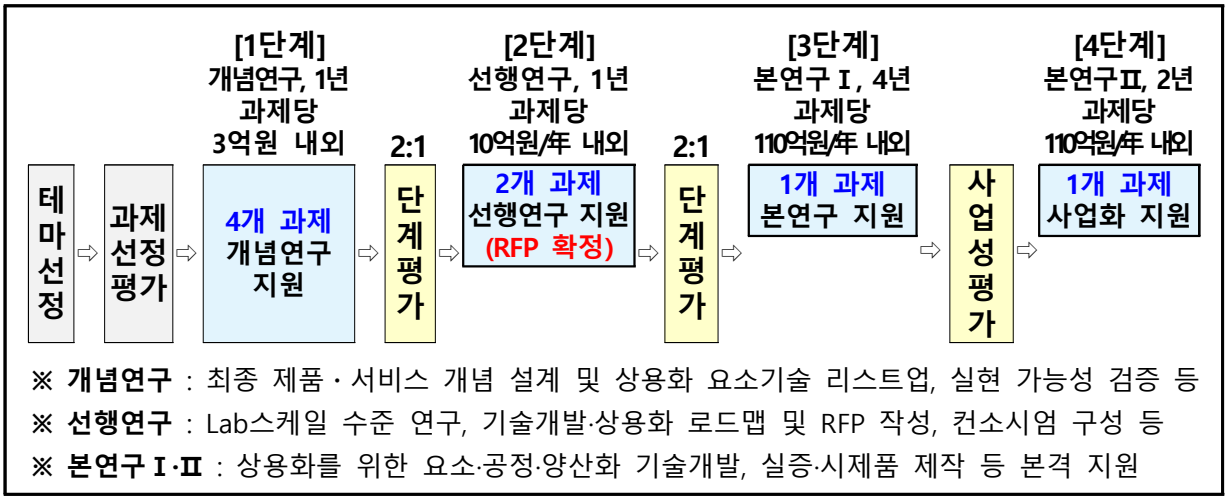
동 사업은 기존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경쟁형 연구개발(R&SD[58]) 방식을 적용하여 단계별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별·지원하는 구조로

57) 판기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을 혁신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을 의미

58)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단순 기술개발 목표 달성이 아닌 新시장 창출을 위한 통합솔루션(요소기술, 실증·시제품, 생산공정 등) 종합 개발 지원

설계되었으며, 연구개발과제 지원과 함께 신규 테마 기획, 연구역량 분석, 특허동향 분석, 기술가치평가 및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는 총괄 지원과제를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음.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4단계 경쟁형 R&SD 추진체계



※ 2025년도 예산편성 당시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당초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5대 전략분야[59] 10개 연구테마를 대상으로 경쟁형 방식을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3개 테마 12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총괄지원과제를 통해 신규 테마 기획과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었음.

한편, 동 사업은 총사업비 9,785억 8,200만원(국비 7,250억원) 규모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59) 생산자동화·로봇, 에너지, 모빌리티,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60]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하였음[61].

그러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사업이 2025년도 예산으로 신규 반영되었고, 총사업비 미확정 및 관련 절차 미완료를 이유로「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62]되었음.

그 결과 수시배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예산 배정이 제한되었으며,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출연금 교부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는 이루어질 수 없었음[63].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2024년 9월 착수된 이후 추가자료 제출 및 보완협의 등이 반복되면서 약 1년 2개월이 소요되

---

6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61) 2026년 2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1천억원 이상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사전점검 제도를 통해 사업기획의 완성도와 사업내용·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체계로 개편되었음.

62)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을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3) 산업통상부는 수시배정 기간 중 총괄지원과제 공고(2025.8.~9.) 및 2026년도 신규 연구테마 기획 등 일부 사전절차를 병행 추진하였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2025.11.19.) 이후 수시배정이 해제되어 총괄지원과제 협약을 체결(2025.12.8.)하였음.

어 2025년 11월 19일 완료되었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추진 경과

일시	내용
2024. 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2024. 9.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착수
2024. 10. ~ 2025. 10.	추가자료 제출·보완협의 및 중간·최종 점검회의 등 사업계획 보완 추진
2025. 11. 19.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동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될 연구테마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 시행 첫 해에는 신규 테마를 발굴하고, 2차연도인 2026년부터 연구개발과제를 단계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되었음.

또한 기존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R&D)'(3174-333)의 경쟁형 연구개발 지원방식[64]을 준용하여 연구단계별 지원규모를 재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9,785억 8,200만원에서 3,026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사업기간은 2025~2034년(10년)에서 2025~2035년(11년)으로 1년 연장되었음.

64) 단계별 연구개발 지원규모는 1단계(1년) 2억원, 2단계(1년) 5억원, 3·4단계(6년간) 연 40억원으로 구성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전·후 비교

구분	검토 전	검토 후
총사업비 (정부/민간)	9,785.82억원 (7,250억원/2,532.82억원)	3,026억원 (2,726억원/300억원)
사업비 구성	테마별 연구비 : 평균 961.7억원 총괄과제 : 168.5억원	테마별 연구비 : 평균 288억원 총괄과제 : 146억원
사업기간	2025~2034(10년)	2025~2035(11년)
테마	5대 분야 10개 테마 제시	10개 테마 신규 발굴
	일반테마 및 성과연계 테마(알키미스트 사업 연계)로 구분 추진	일반테마만 추진

자료: 산업통상부

총사업비 조정 이후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

구분	테마 발굴	개념연구 지원	선행연구 지원	본연구(1,2단계) 지원	총괄지원과제 지원 ('26~'35년)
'26년	3개 테마	12개(3개 테마) 과제	-	-	○ 신규 테마 기획 및 테마별 맞춤형 R&SD 지원 - (기획)신규 테마 기획 - (선정 지원)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수행 역량분석 - (R&SD 지원) 특허동향 심층분석, 기술가치평가 등 - (성과관리) 성과분석, 성과홍보, Renewal-Go 프로그램 지원 등
'27년	4개 테마	12개(3개 테마) 과제	6개 과제	-	
'28년	-	16개(4개 테마) 과제	6개 과제	3개 과제	
'29년		-	8개 과제	6개 과제	
'30년			-	10개 과제	
'31년				10개 과제	
'32년				10개 과제	
'33년				10개 과제	
'34년				7개 과제	
'35년				4개 과제	

자료: 산업통상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연구개발과제 착수 시점이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순연되고 사업기간도 1년 연장되는 등 사업 추진일정 전반에 지연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당초 계획한 3개 테마의 12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지원하지 못한 채 신규 테마 기획을 위한 총괄지원과제만 추진하였으며, 총괄지원과제 기획비 8억원만 집행[65]되어 당초 편성예산 50억원 중 42억원(84.0%)이 불용되었음.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과제 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첫해에 편성한 연구개발과제 지원예산의 대부분이 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바, 이는 회계연도 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따라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테마, 사업규모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준비를 보다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업계획을 적기에 확정하고, 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동 사업은 연구개발과제 착수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순연된 만큼 향후 연구개발과제 선정, 협약 체결 및 단계평가 등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65) 총괄지원과제는 2025년 12월 8일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기획비 8억원 중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실질집행액은 3억 5,700만원(실실집행률은 44.63%)임.

(18) 로봇산업기술개발(R&D): 신규과제 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 필요

① 결산 현황

‘로봇산업기술개발(R&D)’(3541-301)은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조·안전·돌봄로봇 등 로봇 응용분야의 핵심부품·원천기술 개발 및 관련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486억 1,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로봇산업기술개발(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로봇산업기술개발	148,612	148,612	-	-	-	148,612	148,612	-	-	173,529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137,822	137,822	-	-	-	137,822	137,822	-	-	162,629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사업	5,390	5,390	-	-	-	5,390	5,390	-	-	-
재난및위험작업현장 근로자의사고방지를위한 안전로봇기술개발	3,400	3,400	-	-	-	3,400	3,400	-	-	3,000
사회적약자자립지원 로봇기술개발	2,000	2,000	-	-	-	2,000	2,000	-	-	2,000
휴머노이드로봇AX 기술개발	-	-	-	-	-	-	-	-	-	5,900

자료: 산업통상부

② 신규과제 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은 성장·유망분야의 핵심 로봇제품 개발 및 다양한 로봇제품의 기반이 되는 원천·공통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신규과제 27건은 모두 4월 협약체결을 전제로 9개월분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 국비 242억 4,600만원이 반영되었음.

2025년도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집행내역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 137,822백만원
- (계속) 71건 * 1,271백만원 * 12/12개월 = 90,228백만원
- (종료) 19건 * 1,229백만원 * 12/12개월 = 23,348백만원
- (신규) 27건 * 1,197.3백만원 * 9/12개월 = 24,246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동 내역사업의 신규과제 27건 중 25건이 2025년 9월에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국비 교부 또한 대부분 2025년 12월에 이루어져 2025년에는 사실상 신규과제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국비 교부 현황

(단위: 건)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협약 체결(계획)	27	-	-	-	-	-	-	-	-	27
협약 체결(실제)	-	-	-	-	-	25	-	1	1	27
국비 교부	-	-	-	-	-	-	1	6	20	27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말 기준 신규과제 실집행내역

○ **2025년 신규과제 예산현액** : 35,007백만원 - 2025년도 국비 : 24,246백만원 - 기관부담금 등 매칭액 : 10,761백만원 ○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액(실집행률)** : 4,674백만원(13.4%)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한 재기획 과정에서 M.AX 얼라이언스[66]를 통한 휴머노이드 로봇개발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 및 연구과제 선정 등을 포함하면서 신규과제 27건의 공고가 6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협약이 9월 이후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주된 협약 체결 지연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부(現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과제형 R&D 사업의 신규과제는 원칙적으로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66) 제조 AX(AI Transformation; AX)를 위해 1,000여개 이상 제조기업·AI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25.9 출범)

과제형 R&D 예산 편성 기준

상반기 협약과제	하반기 협약과제
9개월분 (단, 단년도과제는 12개월분 반영)	6개월분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동 내역사업 신규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총 9개월로 설정되었으나 실제로 2025회계연도에는 대부분 2025년 9월부터 약 4개월만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2025년 말 기준 신규과제의 실집행률은 13.4%에 그쳤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신규과제의 공고, 선정 등 절차와 관련된 일정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중요한 연구과제 예산의 집행 및 성과도출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가피하게 하반기 협약체결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부터 실제 집행가능한 연구과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과 회계연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9) 국가필수전략기술고도화를 위한 고부가정밀화학소재개발(R&D): 연구개발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① 결산 현황

‘국가필수전략기술고도화를 위한 고부가정밀화학소재개발(R&D)(3541-350)’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12대 국가 필수전략기술[67] 관련 전후방산업에 소요되는 정밀화학소재를 개발하는 R&D 사업으로,

2025년 산업통상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을 통해 본예산 40억 4,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5년도 국가필수전략기술고도화를위한고부가정밀화학소재개발 결산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4,045	4,045	-	-	-	4,045	4,045	-	-	6,696

자료: 산업통상부

67)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② 연구개발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반도체 2건, 디스플레이 1건, 배터리 2건 등 총 5건의 과제를 편성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계속 연구개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표 1] 국가필수전략기술고도화를위한고부가정밀화학소재개발 연구과제

(단위: 백만원)

과제명		기간	사업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반도체	반도체 패터닝 공정용 광산·광염기발생제 개발	'23.10 -'26.12	596	794	825	1,369	3,584
	포토레지스트용 PHS 소재기술 개발	'23.7 -'26.12	645	868	895	1,469	3,877
디스플레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모듈 일체화용 고유연 접착소재 개발	'23.7 -'26.12	645	869	900	1,493	3,907
배터리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 공정기술 개발	'23.7 ~'26.12	596	794	675	1,120	3,185
	리튬이차전지용 불연성 고분자 첨가제 개발	'23.7 ~'26.12	546	720	750	1,245	3,261
전체			**3,028**	**4,045**	**4,045**	**6,696**	**17,814**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미국・유럽・일본 등 3개국에 대한 특허 출원[68]을 의미하는 삼극특허 출원 수를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사업 3년차인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건의 삼극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목표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집행에 있어 2025년 삼극특허 출원 성과가 없었고, 2026년의 경우 상반기 중 1건의 삼극특허가 출원됨에 그침.

[표 2] 국가필수전략기술고도화를위한고부가정밀화학소재개발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삼극특허 출원	목표	-	-	5건	5건
	실적	-	-	0건	1건[69]
	달성도	-	-	0.0%	20.0%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연구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없는 절차적 한계로 인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고,

68)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일본 특허청(Japan Patent Office, JPO),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69) 상반기 중 1건 출원

향후 계획단계에서 특허출원 단계별 추진전략, 미국・유럽・일본 등 국가별 심사대응 방안 등 출원 관련 로드맵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 삼국특허 출원을 유도할 계획임.

그런데 동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운영되는 계속과제로,

연구개발성과 정리에 충분한 시간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업 3년차에 해당하는 2025년부터 3개 국가에 대한 특허출원을 목표로 하게 하는 것은 일정상 지나치게 촉박한 측면이 있음.

또한 동 사업의 취지는 국가 주력산업용 고성능 정밀화학소재에 대한 해외의존도 완화 및 국내 생산품으로의 대체에 있는 것으로,

외국 특허 등재가 아닌 특허 출원 자체를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연구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리하게 하는 것은 성과지표가 사업관리의 수단이 아닌 목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국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과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1차년도에 성과지표를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70],

사업 전략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① 성과목표·지표가 부재하거나, ② 평가결과 또는 환경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③ 대규모 예산 증감이 있거나, ④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성과지표의 변경이 가능함[71].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결정시 기술개발 목표 달성도 등 사업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7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개요
2. 연구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작성안내서」, 2026.3.

(20)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 인력수 제고 필요

① 결산 현황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3551-302)’은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등 조선해양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등 8개 내역사업에 대해 1,191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을 통해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119,165	119,165	-	-	-	119,165	119,165		-	194,412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	66,840	66,840	-	-	-	66,840	66,840	-	-	106,855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3,910	3,910	-	-	-	3,910	3,910	-	-	-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23,000	23,000	-	-	-	23,000	23,000	-	-	21,854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선박해양의장 설계디지털전환핵 심기술개발	5,000	5,000	-	-	-	5,000	5,000	-	-	4,285
-선박소부재생산 지능화혁신기술개 발	7,270	7,270	-	-	-	7,270	7,270	-	-	6,163
-1액체수소운반선 상용화기반기술개 발	3,375	3,375	-	-	-	3,375	3,375	-	-	5,500
-해양모빌리티 스마트페인팅 시스템기술개발	6,480	6,480	-	-	-	6,480	6,480	-	-	7,415
-조선산업생산 협업디지털 전환기술개발	3,290	3,290	-	-	-	3,290	3,290	-	-	3,990
-조선소중대형 블록지능형 핸들링및취부/ 용접기술개발*	-	-	-	-	-	-	-	-	-	5,000
-선박용CO2포집 시스템기술개발 및실증*	-	-	-	-	-	-	-	-	-	5,500
-북극항로운항 선박핵심기술 개발*	-	-	-	-	-	-	-	-	-	6,000
-자율운항선박 AI데이터플랫폼 기술개발*	-	-	-	-	-	-	-	-	-	6,000
-AI완전자율운항 선박기술개발*	-	-	-	-	-	-	-	-	-	15,850

자료: 산업통상부

② 사업화 매출액 및 신규고용 인력수 제고 필요

동 사업은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등 조선해양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부는 사업비 10억원 당 매출액과 사업비 10억원 당 고용인력 수를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사업비 10억원 당 매출액의 경우 2022년 1억 4,8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9억 1,6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고(달성도 619%), 2023년에는 1억 5,2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2억 9,9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달성도 197%), 2024년에는 1억 5,7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1억 8,9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음(달성도 120%).

[표 1] 사업비 10억원 당 매출액 비교

(단위: 백만원)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R&D)	목표	148	152	157	159	160
	실적	916	299	189	-[72]	-
	달성도	619%	197%	120%	-	-
자동차산업 기술개발(R&D)	목표	1,909	1,947	1,986	498	508
	실적	2,062	1,968	1,936	-	-
	달성도	108%	101%	97.4%		-

자료: 산업통상부

72) 수행기관 집계 중

동 사업의 경우 2022년 9억 1,600만원의 실적을 기록한 이래 2023년 2억 9,900만원, 2024년 1억 8,900만원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사업비 10억원 당 매출액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한편 그린카·스마트카 등 자동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동차산업기술개발(3551-301) 세부사업의 경우 2024년 사업비 10억원 당 매출액이 19억 3,600만원으로 동 사업 대비 10.2배에 달하고 있음.

조선해양 R&D 사업의 경우 자동차 R&D 사업에 비해 산업 성격상 실증절차 등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2009년 동 사업이 편성된 이래 상당기간 R&D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사업비 10억원 당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구체적인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매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서도 목표 설정시에 과년도 실적에 대한 환류적 분석 없이 전년도 목표치에 1%를 더하여 목표로 삼고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이에 따른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은 예산사업과 연계되는 성과목표는 과년도 성과에 대한 환류적 검토를 거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73]을 고려하여, 차년도 목표설정 시 과년도 성과를 반영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사업비 10억원 당 고용인력의 경우를 보면, 2022년에는 2.36인의 목표를 설정하여 2.39인의 실적을 거두었고(달성도 101%), 2023년에는 2.38인의 목표를 설정하여 3.66인의 실적을 거두었으나(달성도 154%), 2024년에는 목표인 2.40인 대비 70.8%에 불과한 1.70인의 고용 실적을 기록하였음.

[표 2] 사업비 10억원 당 고용인력

(단위: 명)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R&D)	목표	2.36	2.38	2.40	2.42	2.45
	실적	2.39	3.66	1.70	-[74]	-
	달성도	101%	154%	70.8%	-	-
자동차산업 기술개발(R&D)	목표	2.45	2.5	2.55	2.06	2.10
	실적	3.20	3.02	2.75	-	-
	달성도	131%	121%	108%		-

자료: 산업통상부

73) 국무조정실, 「2025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25.3.

74) 수행기관 집계 중

이는 전년 실적 대비 53.6%가 감소한 것으로, 지난 수년 간 동 사업이 고용인력 관련 성과지표를 초과달성 해 온 것과 대비되는 결과임.

산업통상부는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2018년 시행된 「청년일자리 대책」[75]에 따라 정부 R&D 참여기업은 사업비 총액 5억원 당 만 34세 이하 청년인력 1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였으나[76]

2024년 청년인력 채용의무가 재량으로 변경됨[77]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세부사업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성과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55인의 목표 대비 108%에 해당하는 2.75인의 인력을 고용하는 성과를 기록하는 등 청년인력 신규채용제도 등 관련 제도 개정과 관계 없이 고용인력 관련 성과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75) 일자리위원회, 「청년일자리 대책」, 2018.3.

76)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0호) 제26조(협약의 체결) ⑪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거쳐 총수행기간에 걸쳐 각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한다.

77)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0호) 제26조(협약의 체결) ⑪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조선산업 분야에 대한 취업선호도가 높지 않아 신규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조선분야의 경우 조선경기 개선으로 조선분야 근무인력 수는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요 대비 인력 충원률은 2023년 90.1%, 2024년 85.3%, 2025년 82.9%로 매년 감소하는 등 수요 대비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표 3] 조선 분야 인력현황 및 미충원률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근무 인력수	108,000	116,000 (+7.4%)	116,000 (-)
인력 충원률	90.1%	85.3 (△4.8%p)	82.9 (△2.4%p)

자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선산업 분야 인력수급 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기획과 발주시 전문인력 채용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게 하는 등 고용인력 관련 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1) 친환경차보급지원을위한이차보전사업: 사업편성시 타 부처사업 대비 효용성 고려 필요

① 결산 현황

‘친환경차보급지원을위한이차보전사업(3551-326)’은 자동차 부품업체가 설비투자, M&A 등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관련 대출의 이자 중 일정 부분을 정부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본예산 54억 9,400만원과 추가경정예산 20억 1,900만원 등 75억 1,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5년도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5,494	7,513	-	-	-	7,513	7,513	-	-	7,379

자료: 산업통상부

② 사업편성시 타 부처사업 대비 효용성 고려 필요

2025년 4월 미국 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78] 산업통상부는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미국을 상대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중견기업의 경우 이자 중 1.5%p, 중소기업의 경우 2.0%p를 보전하는 내용의 이차보전사업으로,

산업통상부는 총 500개 기업이 각 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전제로 20억 1,9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음[79].

그러나 실제 집행에 있어 총 78개 기업이 평균 4.8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음에 따라 예산액 대비 11.5%에 불과한 2억 3,200만원이 집행되고 88.5%에 해당하는 17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는 대미 관세 대응을 위한 다른 금융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78) 2025.4.3. 대통령 행정명령 발효

79) 500개사(지원 업체수) x 500백만원(대출한도액) x 1.85%(평균지원 이자율) x 5/12(지원기간) = 1,927백만원 + 사업운영비 92백만원

2025년 정부는 대미 관세 대응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이차보전사업에 해당하는 동 사업을 편성하는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통상리스크 긴급자금 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관세대응저리지원프로그램 등 직접 융자사업을 별도 편성하였음.

[표 1]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한 대미 관세 피해기업 지원사업 현황

구분	친환경차보급촉진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지원방식	이차보전	융자		
소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실행기관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지원업종	자동차 부품업계	전 업종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기업
대출목표	2,500억원	1,000억원	5,000억원	시설자금(1조원), 운영자금(3조원)
이자율 / 이차보전율	**시중은행 대출금리 - 2.0%p(중소) - 1.5%p(중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p**	**재해: 1.9% 경영: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시설: 최저 국고채금리 운영: 산은 최저금리**

자료: 산업통상부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사업대상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일반금리에 따라 직접 대출을 받은 후에 산업통상부가 그 이자 중 2.0%p 또는 1.5%p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사업인 반면에,

직접융자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수요기업에 직접 운용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에 해당함.

직접융자사업의 경우 고정금리 1.9%[80] 또는 정책자금[81] 기준금리 대비 -0.3%p[82] 또는 +0.5%p[83] 수준의 이율을 적용받는 한편,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시중금리를 적용받되 그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됨.

2025년의 경우 대미 관세 영향과 경기 악화 등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가 중견기업의 경우 4.65%, 중소기업의 경우 4.73% 수준에서 운영됨에 따라 동 사업을 적용받는 수요기업의 실부담금리가 중견기업의 경우 3.15%, 중소기업의 경우 2.73%로 고정금리 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높게 나타났음.

또한 직접융자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은행 등을 통해 대출심사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종결되나,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기업이 대출자금을 활용할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전담기관의 지원대상 심사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받아야하는 구조이므로 운용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수요기업 입장에서 절차부담이 가중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80)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중 재해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81) 2025년 2분기의 경우 3.15%

82)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사업

83)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중 경영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한편 이와 같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각 지역별로 최대 3.0%p에서 4.0%p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수요기업 입장에서 동 사업을 이용할 유인이 적었던 것으로 보임.

[표 2]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사업 내역

사업명	지방정부	지원기간	대출한도	지원금리	지원대상
중소기업 운전자금	경북	1년	최대 5억원	3.0~4.0%p	경북도 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부산	3년	최대 10억원	1.0~1.5%p	부산시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관세피해기업 지원 '25년 4월 신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인천	1년	최대 5억원	2.0%p	미 관세부과 피해 대미 수출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관세피해기업 지원 '25년 7월 신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경기	5년	최대 5억원	2.5%p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 (관세피해기업 지원 '25년 4월 신설)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충북	2년	최대 5억원	1.8~2.8%p	충북도 소재 중소기업 중 관세부과 영향기업 우선지원 (관세피해기업 지원 '25년 5월 신설)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충남	2년	최대 5억원	2.0~3.0%p	충남도 소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	전북	2년	최대 7억원	2.0~3.0%p	전북도내 본사 및 제조업 공장 소재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강원	4년	최대 16억원	2.0~3.0%p	강원도내 본사 및 제조업 공장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	2년	최대 5억원	1.5~2.5%p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울산	최대 4년	최대 5억원	1.2~3.0%p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자료: 산업통상부

미국 관세부과에 대응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직접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던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별도의 금융지원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수요기업 입장에서 충분한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음.

동 사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실부담 이율 및 절차 면에서 직접 융자사업 대비 효용이 크지 않은 내용의 이차 보전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11.5% 수준의 집행률을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보임.

향후 금융지원 등 사업 편성시 관련 부처 사업추진방향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현황을 충실히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22)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R&D): 과제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① 결산 현황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R&D)’(3651-443)은 바이오기술경쟁력 제고 및 바이오제조 가속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파운드리의 DBTL[84] 단계별 핵심 워크플로와 통합플랫폼 구축,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등을 지원하는 다부처[85] 공동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51억 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 및활용기반구축	5,170	5,170	-	-	-	5,170	5,170	-	-	4,940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4,320	4,320	-	-	-	4,320	4,320	-	-	3.440
바이오파운드리 산업 생태계 확산	150	150	-	-	-	150	150	-	-	250
사업단 운영관리	700	700	-	-	-	700	700	-	-	1,250

자료: 산업통상부

84) 바이오파운드리는 Design(설계)-Build(구축)-Test(시험)-Learn(학습) 과정을 통해 합성생물학 연구에 필요한 유전자 후보물질을 로봇·자동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대량·반복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기반시설을 의미함.

85) 산업통상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과제 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하는 '국가바이오파운드리사업단'을 구성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63억원을 투입하여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건립과 자동화 장비 및 통합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있음[86].

동 사업은 ①DBTL 단계별 핵심 워크플로 구축 및 통합플랫폼 개발을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②바이오파운드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바이오제조 성능검증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산업생태계 확산', ③사업단 운영 및 내역사업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단 운영관리' 총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를 진행하였으나, 사업단 운영관리를 제외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및 '바이오파운드리 산업생태계 확산' 과제의 2025년 말 기준 연말 실집행률이 각각 9.1% 및 2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4.1.

2025년 말 기준 내역사업별 과제 실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비 교부일	2025년 국비	실집행액	실집행률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2025.6.18. 등 4차에 걸쳐 교부	4,320	391	9.1
바이오파운드리 산업생태계 확산	2025.6.18.	150	38	25.3
사업단 운영관리	2025.6.18.	700	443	63.3
계	-	5,170	1,068	16.9

주: 내역사업명과 과제명은 동일함.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부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과제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87]으로 지정되어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사전협의가 지연되었으며, '바이오파운드리 산업생태계 확산' 과제의 경우 위탁연구기관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과제 집행이 지연되었다는 점 등을 주된 집행 부진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87)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예산처훈령 제59호)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선박·항공기 건조사업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내역사업별 주요 집행 부진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구분		총사업비 관리대상	집행 부진 사유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세부1) DBTL 단계별 핵심 워크플로 구축	○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건축설계 완료('26.11 예상) 이후 장비 도입 가능하여 장비 도입비 집행 지연
	(세부2) DBTL 통합플랫폼 구축	○	총사업비 사전협의 등에 따라 정보화사업(ISP, ISMP) 관련 절차 일부 지연 *(경과) 총사업비 사전협의('25.7)→ISP('25.8~9)→ISMP('26.1~)
바이오파운드리 산업생태계 확산		-	위탁연구기관 선정 지연('25.11)으로 집행 지연
사업단 운영관리		-	사무실 구축 지연에 따른 사무실 환경 구축비 집행 지연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운ㅋ영관리규정에 따르면, 사용잔액을 원칙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88].

88)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산업통상부훈령 제1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08호))**

제19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장은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사용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용실적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액을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의 이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재원의 투입을 위해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지 당해 연도에 추진하기로 한 연구개발과제의 선행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을 당연히 허용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2025년도 예산 확정 이후 한 회계연도 동안 총사업비 사전협의, 건축설계, 위탁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사전 절차만이 주로 진행됨에 따라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및 산업생태계 확산 과제 수행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사실상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또한 동 사업의 기획 당시에는 바이오파운드리 센터를 완공할 때까지 임시공간[89]에 장비를 설치하여 초기 DBTL 워크플로 개발과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2026년 4월 기준 임시공간의 사무실 및 장비실 공사는 완료된 반면 아직 장비가 도입되지 않아 임시공간을 활용한 초기 연구개발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산업통상부는 임시공간에 설치하기로 계획된 장비를 시급히 설치하여 초기 연구개발 과제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워크플로 구축 및 통합플랫폼 개발 등 핵심 과제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층 부지를 일부 활용하여 국가바이오파운드리사업단 사무공간, 실험실 및 장비실 등 구축

(23)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과 선발 방식의 균형적 관리 필요

① 결산 현황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3688-321)은 나노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나노인프라의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나노소재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6억 1,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나노융합산업생태계 조성촉진	1,618	1,618	-	-	-	1,618	1,618	-	-	4,310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918	918	-	-	-	918	918	-	-	826
글로벌사업화촉진	700	700	-	-	-	700	700	-	-	1,700
협업생태계조성	-	-	-	-	-	-	-	-	-	1,784

자료: 산업통상부

②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과 선발 방식의 균형적 관리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은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총 6개의 기관이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나노공정·장비 교육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에 따른 성평등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90], 이에 산업통상부는 ‘교육생 중 여성 비율’을 성인지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2025년도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사업 집행내역

○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 918백만원 - (인력양성) 200명 * 4.59백만원 = 918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90)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2025년도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교육기관별 교육인원

(단위: 명)

구분	특성화고	전문대학	합계
나노종합기술원	23	15	38
한국나노기술원	25	30	55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68	-	68
대구테크노파크	-	26	2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13	13
합계	116	84	200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동 내역사업은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성인지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특히 2025년에는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율·인원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성과목표를 전년 27.9%에서 24.9%로 하향 조정 하였음에도 여성 교육생 비율은 22%에 그쳤음.

최근 2개년도 성인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분	2024년	2025년
사업대상자(공학계열 특성화고 3학년, 전문대학 2학년) 중 여성 비율 및 인원	12.4% (10,728명)	13.2% (11,150명)
성인지 성과목표	27.9%	24.9%
총 교육생 수	200명	200명
여성 교육생 수(비율)	36명(18%)	44명(22%)
달성 여부	미달성	미달성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내역사업은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여성의 교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행기관[91]에서 교육생 선발 시 여성 지원자에게 3점의 가점[92]을 부여하는 등 여성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에는 교육을 신청한 여성 지원자 36명 전원을, 2025년에도 44명의 여성 지원자 전원을 선발하였음.

최근 2개년도 교육 신청인원 및 선발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교육인원	여성		남성	
		신청인원	선발인원 (경쟁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경쟁률)
2024년	200명	36	36(1:1)	196	164(1.2:1)
2025년	200명	44	44(1:1)	238	156(1.53:1)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여성 지원자가 모두 선발되었음에도 2년 연속 성인지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내역사업의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은 선발 단계에서의 우대 부족보다 여성 지원자 규모 자체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여성 지원자는 모두 선발된 반면, 남성 지원자의 경우 2024년에 비해 2025년에 경쟁률이 증가하여 성별에 따라 선발 과정에서의 경쟁 여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91)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대구테크노파크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92) 여성 지원자에게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에서 각 1.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발 단계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법과 함께 지원자 모집 단계에서 여성 교육수요를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및 직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여성 지원자 확대 조치가 남성 지원자의 선발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함으로써 성인지 성과목표와 교육생 선발 절차의 공정성이 균형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4)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국제표준 개발과제 중단 사례 분석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① 결산 현황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3731-305)은 우리 기술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ISO/IEC) 개발 및 국가표준 제정, 참조표준 데이터 개발·보급,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화 연계, 주요국과의 국제표준화 협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3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표준기술 개발및보급(R&D)	53,100	53,100	-	-	-	53,100	53,100	-	-	56,486
국가표준 기술력향상	42,582	42,582	-	-	-	42,582	42,582	-	-	45,968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5,097	5,097	-	-	-	5,097	5,097	-	-	5,097
R&D사업화 표준연계	2,984	2,984	-	-	-	2,984	2,984	-	-	3,484
국제표준화협력	2,437	2,437	-	-	-	2,437	2,437	-	-	1,937

자료: 산업통상부

② 국제표준 개발과제 중단사례 분석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동 사업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R&D사업화표준연계’, ‘국제표준화협력’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은 국제표준 개발과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기준 동 사업예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 내역사업임.

국제표준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인 동시에 세계시장의 진입기준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국가가 국제표준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기술 경쟁력과 시장 선점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경쟁요소임.

이에 주요국들은 국제표준 확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93]에서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 촉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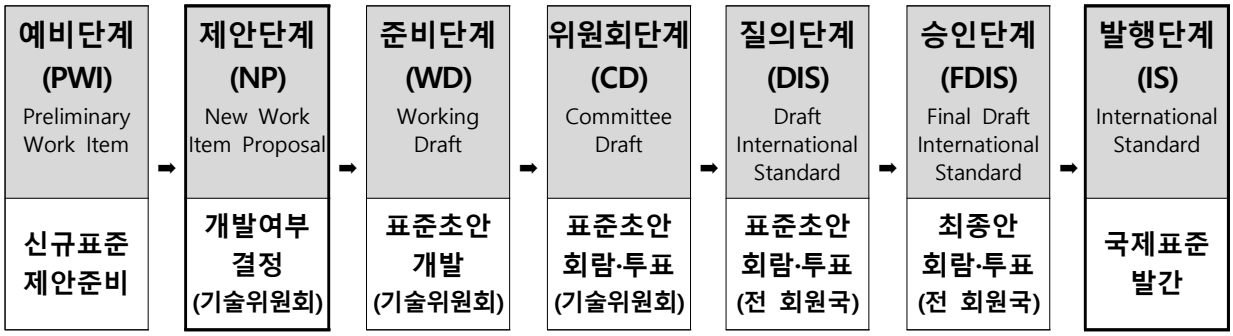
'국가표준기술력향상' 내역사업은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것만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국제표준기구(ISO·IEC)의 절차에 따라 신규표준 제안(NP)[94]이 승인된 이후에도 다수 국가의 참여와 합의를 거쳐 최종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되는 과정을 수반하므로, 국제협력과 국제적 합의 형성 여부가 최종 사업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음.

93)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94) NP(New Work Item Proposal)는 국제표준기구에서 신규 국제표준 개발 프로젝트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임.

또한, 신규표준 제안(NP)에서 최종 국제표준(IS) 제정까지는 6단계의 절차를 거쳐 통상 3~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국제표준기구의 절차 진행, 국가 간 협의, 국제 기술환경 변화 등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음.

국제표준 제정 절차 흐름도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사업 특성이 실제 과제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매년 일부 과제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통해[95] 중단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동 내역사업 중단과제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원과제수	234	240	246	239	303
중단과제수	9	7	8	4	14
중단비율	3.8%	2.9%	3.3%	1.7%	4.6%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95) 단계평가에서는 신규표준 제안(NP) 승인 여부 등 국제표준 개발 진척도와 최종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단계평가 이후에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여부를 검토함.

중단과제는 연도별로 전체 지원과제의 약 2~5% 수준으로 비중 자체는 높지 않은 편이나, 최근 5년간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단과제가 어떠한 시점과 사유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먼저, 중단과제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전체 중단과제 42건 중 35건(83.3%)이 신규표준 제안(NP) 승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6건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단계인 예비단계(PWI)에 착수하기 이전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동 내역사업 중단과제의 NP 승인 전후 분포

구분		과제수	비중
NP 승인 이전	예비단계(PWI) 이전*	6건	14.3%
	예비단계(PWI)	13건	31.0%
	NP 제안단계	16건	38.1%
소 계		**35건**	**83.3%**
NP 승인 이후	NP 승인단계	3건	7.1%
	위원회단계(CD) 이후	4건	9.5%
소 계		**7건**	**16.7%**
총 계		**42건**	**100%**

* '예비단계(PWI) 이전'은 국제표준 제정절차가 시작되기 이전 단계를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중단사례의 대부분이 국제표준 제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

에서 과제 중단이 주로 어느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음으로, 중단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부분이 연구개발 자체의 실패보다는 국제표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환경 변화와 국제협력 과정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국제표준 개발과제 중단사유 유형별 분석

유형	주요 내용	과제수	비중
국제적 합의·참여국 확보 곤란	국가 간 합의 불발, 참여국 부족, 전문가 부족, WG 내 합의 실패 등	14건	33.3%
국제표준 환경 변화	타국 선점, 표준 병합, 표준유형 변경(IS→TS/TR), 시장환경 변화 등	11건	26.2%
국제표준기구 운영·절차 변경	TC 변경, WG 변경·매칭 지연, 운영체계 변경, 운영 이슈, 우선순위 조정 등	13건	28.6%
국제환경·외부 변수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2건	4.8%
연구수행 여건	연구책임자 퇴사, 소속기관 변경 등	2건	4.8%
합 계		**42건**	**100%**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특히 국제적 합의 불발, 참여국 확보 실패, 기술위원회 운영 변경, 타국의 선제적 표준 제안 등 유사한 사유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중단사례가 개별 과제의 특성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동 내역사업 추진과정에서 내재된 위험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동 내역사업은 최종 국제표준(IS) 제정을 사업목표로 추진하면서도 성과지표는 신규표준 제안(NP) 승인 건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표준 제정이 통상 3~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핵심 이정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됨.

최근 5년간 국제표준 제정 단계별 성과 현황

연도	NP승인 목표	NP승인 실적	현재 단계(2026년 6월 기준)						
			NP 승인	WD 채택	CD 승인	DIS 승인	FDIS 승인	IS 발간	프로젝트 취소
2021	38	40	-	-	1	1	1	33	4
2022	39	43	-	1	1	4	-	35	2
2023	40	43	-	-	7	3	1	32	-
2024	36	39	3	2	10	5	3	16	-
2025	37	38	11	14	9	2	-	2	-
합계	190	203	14	17	28	15	5	118	6

자료: 산업통상부

최근 5년간 NP 승인 목표는 총 190건이었으나 실제 203건이 승인되어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들 과제의 추진현황을 추적한 결과 2026년 6월 기준 118건은 국제표준(IS) 발간을 완료하였고, 79건은 현재 준비단계(WD)~승인단계(FDIS)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NP 승인을 받은 과제의 상당수가 이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거나 최종 국제표준(IS) 제정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점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시점은 신규표준 제안(NP) 승인 이전인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국제표준 제정이라는 최종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NP 승인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과제가 중단되는 사유는 기술 분야별 특성과 국제표준기구의 운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중단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위험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동 내역사업의 과제 중단사례를 단순한 개별 사례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축적된 분석 결과를 과제 기획 및 선정, 단계평가 및 사업관리 과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험요인의 발생 징후를 보다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25)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계량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의 고도화 필요

① 결산 현황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3731-308) 사업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법정계량 제도의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억 6,100만원 중 10억 9,817만원을 집행하고, 6,283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정계량 선진화기반구축	1,161	1,161	-	-	-	1,161	1,098.17	-	62.83	1,157
선진법정계량체계확립	581.18	581.18	-	△0.2	-	580.98	525.82	-	55.16	581.18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221	221	-	-	-	221	213.36	-	7.64	217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358.82	358.82	-	0.2	-	359.02	358.99	-	0.03	358.82

자료: 산업통상부

② 계량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의 고도화 필요

동 사업은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및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내역사업은 계량기 기술기준 및 지침 개발, 계량공무원 및 계량사업자 교육,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및 소비자감시원 운영, 국제협력 등을 통해 법정계량제도의 관리·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내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은 계량공무원[96]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계량사업자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직무전문교육, 권역별 순회교육 및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계량공무원 간 정보공유 및 업무지침 제공 등을 통해 상시적인 업무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97].

계량공무원 교육·지원체계 운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직무전문교육	신규 담당자 대상 계량행정·정기검사 등 실무교육(연 3회)
권역별 순회교육	정기검사 실시연도 권역별 현장교육(연 6회)
워크숍	분임토의·현장의견 수렴 및 지역 간 정보교류(연 1회)
상시지원	온라인 강좌(6개) 운영, 소통 커뮤니티를 통한 질의·자료 공유
매뉴얼·지침서	계량검사핸드북 및 정기검사지침서 제작·배포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96) 동 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관리 계량기의 정기검사, 조사·단속, 계량사업자 관리 등 계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계량공무원’으로 지칭하고 있음.

97) 계량공무원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5.
만족도	90.6%	95.6%	87.7%	93.3%	90.0%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교육·지원체계의 운영과 함께 계량업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및 교육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2025년 지자체 계량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98].

동 조사에 따르면, 계량업무 담당인력이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2.6%였고, 계량업무 수행경력은 1년 미만이 73.7%, 1년 이상 2년 미만이 20.0%로 응답자의 93.7%가 계량업무 수행경력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량업무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나타났음.

지자체 계량공무원 업무여건 관련 실태조사 결과

구분	주요 응답	응답 결과
계량업무 담당인력	1명	88명(92.6%)
	2명 이상	7명(7.4%)
계량업무 수행경력	1년 미만	70명(73.7%)
	1년 이상 2년 미만	19명(20.0%)
	2년 이상	6명(6.3%)
계량업무 난이도	매우 어려움	13명(13.7%)
	어려움	44명(46.3%)
	보통 이하	38명(40.0%)

주: 2025년 지자체 계량업무 실태조사에 응답한 계량검사공무원 95명의 응답 결과임.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98) 동 조사는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운영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라 계량업무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법령과 검사기준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계량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인이 계량업무를 담당하고 담당자의 업무경력도 전반적으로 짧은 현재의 여건에서는 개별 담당자가 충분한 업무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동 조사에서는 계량공무원의 업무여건과 함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정기검사의 수행방식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바, 지자체가 단독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였으며, 나머지 78.0%는 외부인력 또는 외주업체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기검사 수행방식 실태조사 결과

수행 방식	응답 결과
지자체 단독 수행	**20명(22.0%)**
지자체+외부인력 수행	42명(46.2%)
지자체+외주업체 수행	18명(19.8%)
외주업체 전면 위탁 수행	11명(12.1%)
합 계	91명(100.0%)

주: 정기검사 수행방식 문항의 유효응답자 91명을 기준으로 함.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99]은 일정한 계량기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검사를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재 계량공무원에 대한 정기검사 교육도 이러한 현행 법체계에 따라 계량공무원이 정기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검사 방법과 실습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앞서 살펴본 실제 정기검사 수행방식과 현행 제도·교육체계 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검사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100]되어 있음.

이처럼 정기검사의 수행방식 개선과 계량공무원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계량공무원에 대한 교육체계도 지자체별 정기검사 수행방식과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운영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99)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①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00) 본회의 부의안건(2026. 7. 29. 법사위 의결)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정기검사의 수행방식에 따라 계량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정기검사의 상당 부분이 외부인력이나 외주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직접수행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체계를 직접수행과 위탁 수행 등 수행방식별 직무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분화·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기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6)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 지속적인 정책수요를 고려한 사업 운영방식 적정성 검토 필요 등

① 결산 현황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3731-320)은 신기술·융복합 제품의 등장에 따른 위해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품안전 기준 및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제품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R&D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4억 2,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융복합 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 기술지원(R&D)	4,425	4,425	-	-	-	4,425	4,425	-	-	-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2,545	2,545	-	-	-	2,545	2,545	-	-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1,880	1,880	-	-	-	1,880	1,880	-	-	-

자료: 산업통상부

② 지속적인 정책수요를 고려한 사업 운영방식 적정성 검토 필요

동 사업은 내역사업인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과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으로,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은 융복합 신기술제품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안전성 시험·평가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역사업임.

제품안전기준의 개발·관리는「제품안전기본법」 제4조[101]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정·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품안전기준의 개발·관리는 신유형 제품의 등장에 대응한 신규 기준 마련뿐 아니라 기존 안전기준의 정비와 관리가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로서,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안전기준을 제·개정하고 제품안전관리 기반을 구축·개선해 나가는 정책적 성격이 강한 연구개발 분야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정책적 특성은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경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사업명과 일부 세부 추진내용은 변경되어 왔으나 제

101)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품안전기준 개발 기능은 2009년 이후 후속사업에서도 계속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품안전기준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경과

기간	세부사업(내역사업)	사업 형태
2009~2017년	표준·안전기반구축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프로그램형 사업*
2018~2020년	안전인증산업역량강화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프로젝트 기반 사업
2021~2025년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프로젝트 기반 사업

*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몰제 도입 이후 프로그램형(장기계속) 사업을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개편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동 사업의 수행내용을 보더라도 사업명은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이지만 안전기준 개발 과제의 대부분은 일반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안전기준 개발 과제 구성 현황

구분	과제수	비중
융복합·신기술 제품	4개	5.6%
일반 제품 안전기준	**67개**	**94.4%**
합 계	71개	100.0%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2026년부터 추진되는 후속사업인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R&D)'(3731-339) 사업은 기존 '제품안전기준 개발' 내역사업을 유지하면서 '사고다발제품 안전성 실증'과 '제품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가하여 총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의 2026년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액	비중
제품안전기준 개발	**3,570**	**66.4**
사고다발제품 안전성 실증	750	14.0
제품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1,050	19.6
합 계	**5,370**	**100**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후속사업은 사고다발제품 안전성 실증 및 제품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을 추가하여 연구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전체 사업예산의 66.4%가 제품안전기준 개발에 편성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연구내용은 확대·보완하면서도 제품안전기준 개발이 여전히 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사업을 재기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후속사업을 통해 연구내용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와 같이 지속적인 정책수요가 존재하고 장기간 동일한 정책기능이 유지되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 종료와 신규사업 편성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운영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러한 운영방식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연구수요를 반영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 종료 시마다 후속사업을 새로 기획·편성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의 연속성이 후속사업의 신규 편성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 특성에 적합한 운영방식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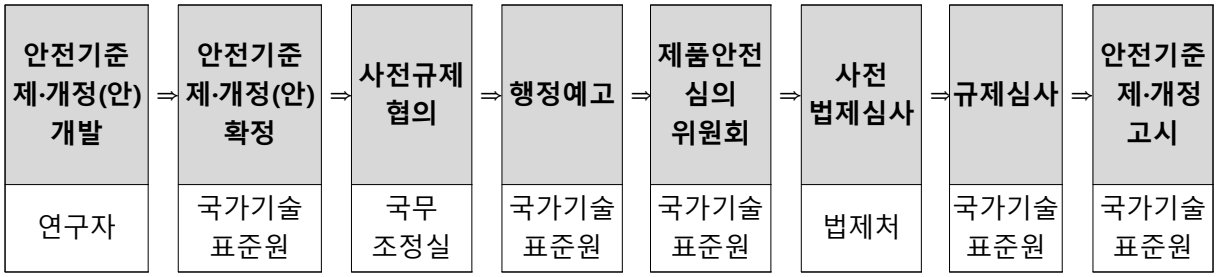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운영 결과와 후속사업의 기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품안전기준 개발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정책기능이 유지되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와 신규사업 편성을 반복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의 핵심 기능을 '계속사업'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장기간 성과 창출 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동 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안전기준(안)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안전기준으로 제·개정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성과로 하는 사업임.

안전기준(안)은 연구과제 종료 이후에도 기술적 검증, 이해관계자 협의, 국제표준 정합성 검토 및 사전규제협의, 행정예고,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되므로, 연구개발 종료 이후에도 안전기준 제·개정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구조임[102].

제품안전기준 제·개정 절차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성과지표로 안전기준(안) 개발건수와 안전기준(안) 채택률을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안) 채택률은 실제 안전기준이 제·개정되어 고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동 사업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발된 안전기준(안)은 총 71건이며, 이 중 2026년 3월 현재 안전기준으로 고시가 완료된 과제는 24건(33.8%)이고, 나머지 47건(66.2%)은 이해관계자 협의 및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 채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102) 산업통상부는 안전기준(안) 채택률을 개발된 안전기준(안) 중 실제 제·개정 고시가 이루어진 건수로 관리하고 있으며, 채택되지 않은 안전기준(안)은 수정·보완 등을 거쳐 최종 고시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안전기준(안) 개발 및 채택 현황

구분	건수	비중
안전기준(안) 개발	71건	100%
고시 완료	24건	33.8%
채택 절차 진행	47건	66.2%

자료: 산업통상부(2026년 3월 기준)

이처럼 안전기준 채택은 연구개발 종료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 성과와 최종 정책성과가 서로 다른 사업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 성과관리체계는 사업기간 단위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어 사업 종료 이후 창출되는 정책성과를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연구개발 성과와 최종 정책성과 간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한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최종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축적된 정책성과를 향후 사업기획이나 성과관리 개선에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에서 개발한 안전기준(안)에 대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것은 물론, 축적되는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최종 성과를 평가하

고 그 결과를 향후 제품안전기준 개발사업의 기획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안전기준 채택에 소요되는 기간, 채택률 변화 및 정책 활용도 등 장기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와 최종 정책성과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7)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과제별 면밀한 사업관리·감독으로 집행 부진 최소화 필요

① 결산 현황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4301-313)은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에 대한 R&D 집중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84억 3,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도 월드클래스프로젝트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월드클래스프로젝트지원	28,433	28,433	-	-	-	28,433	28,433	-	-	28,433

자료: 산업통상부

② 과제별 면밀한 사업관리·감독으로 집행률 부진 최소화 필요

동 사업을 통해 매년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를 선정하여 3~4년간 과제당 총 30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2025년의 경우 10개 신규과제 및 31개 계속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예산 284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그런데 산업통상부가 사업 담당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교부한 금액(집행액)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중견기업 등 연구개발

기관에 교부한 금액(실집행액)은 예산 대비 전액 교부로 집행률이 100%이지만,

연구개발기관이 연말까지 연구개발비로 실제 집행한 금액(실실집행액)은 2025년의 경우 69.5%에 불과하고, 연례적으로도 다소 낮은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월드클래스프로젝트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A)	집행액·실집행액	실실집행액(B)	집행률(B/A)
2022	24,000	24,000	18,797	78.3%
2023	34,500	34,500	25,043	72.6%
2024	15,984	15,984	10,674	66.8%
2025	28,433	28,433	19,763	69.5%
신규과제	7,583	7,583	5,540	73.1%
계속과제	20,850	20,850	14,223	68.2%

* 실실집행액은 매년 연말(12.31.)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우선 신규과제부터 살펴보면, 예산액 75억 8,300만원 중 5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집행률 73.1%),

2025년 월드클래스프로젝트지원 신규과제(10건)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제명	협약 체결일	국비 교부일	국비 (A)	매칭액 (B)	현액 (C=A+B)	집행액 (D)	집행률 (D/C)
미래차(EV/HEV) 적용 전력 저감 및 안전성이 확보된 PTC 필름 히터 상용화 모듈 개발	7. 4.	8. 13.	500	12	512	396.9	77.5%
자율운전 기반 실내환경제어 기술 및 초고성능 청정건강환기시스템 개발	7. 9.	8. 13.	700	19	719	442.2	61.5%

과제명	협약 체결일	국비 교부일	국비 (A)	매칭액 (B)	현액 (C=A+B)	집행액 (D)	집행률 (D/C)
비만치료제 펩타이드 신약 플랫폼 기술 개발	7. 4.	8. 13.	900	107	1,007	524.6	52.1%
극한 환경 반도체 공정에서 플라즈마와 할로겐 가스에 대한 내식성이 향상되어 공정 중 파티클 발생이 저감된 세라믹 서셉터	7. 9.	8. 13.	900	37	937	737.4	78.7%
Hybrid Type의 고강성 Al/Ni 도금 금속소재를 베리어층으로 활용한 Thermal Propagation의 화재안전성이 확보된 EV용 배터리 파우치 개발	7. 11.	8. 13.	700	75	775	617.4	79.7%
준중형 SUV급 V2X 기능을 탑재한 통합 전력변환장치 개발	7. 14.	8. 13.	800	29.8	829.8	476.3	57.4%
전력반도체 초고온 열처리 공정용 고기능성 CVD-SiC 소재부품 개발	6. 25.	8. 13.	900	45	945	885.4	93.7%
미래모빌리티 EV Motor 핵심부품 초정밀 가공용 연삭 휠 시리즈 개발	7. 14.	8. 13.	800	36	836	711.3	85.1%
미래 모빌리티용 4륜 독립 구동 전동화 모듈 개발	7. 3.	8. 13.	850	72	922	661.4	71.7%
실시간 전력시장을 위한 소규모 분산자원 플랫폼 기술 및 사업화 연구 개발	7. 11.	8. 13.	533	73.3	606.3	448.4	74.0%

* 집행액은 연말(12.31.)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10개 과제 중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과제는 52.1%이고, 대부분 과제의 집행률이 70% 내외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예산의 연내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일 또는 국비 교부일이 늦은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동 사업 예산 편성 근거를 보면 신규과제의 연구 기간을 9개월로 산정하여 계산하지만[103] 실제 협약은 주로 7월에 체결되고 국비는 8월에 교부되어 실질적인 연구 수행 기간은 4~5개월에 불과함.

103) **2025년 월드클래스프로젝트지원 예산 편성 근거**

○ 28,433백만원
- 계속과제 : 20,850백만원(31개×672.6백만원×12/12)
- 신규과제 : 7,583백만원(10개×1,011백만원×9/12)

최근 5년간 신규과제 협약 체결일을 보더라도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협약 체결 및 연구 수행 시기가 연례적으로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최근 5년간 신규과제 협약 체결 시기

연도	신규과제 협약 체결 시기*
2022	2022.06.27. ~ 2022.08.25
2023	2023.06.15. ~ 2023.08.25
2024	신규과제 미선정
2025	2025.06.25. ~ 2025.07.14
2026	2026.04.30. ~ 2026.05.06

* 가장 빠른 협약체결 시점 ~ 가장 늦은 협약체결 시점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수정·보완을 거치므로 불가피하게 일정한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고, 2022년과 2025년에는 최초 사업공고시 모집이 미달되어 추가로 연장공고를 실시하였는데[104],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업 수행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다만, 연내 집행 곤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예산안 집행지침」[105]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를 신속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므로,

104) 2022년: 최초공고(2.14.~3.29.) → 연장공고(~4.15.) → 재연장공고(~4.22.)
2025년: 최초공고(1.20.~2.28.) → 연장공고(~3.14.)

105)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2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전 준비절차를 시작하여 연초에 사업을 공고하고, 모집 미달로 연장공고를 하지 않도록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사업 구조상 불가피하게 일정한 준비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 신규과제의 연구 기간을 9개월이 아닌 6개월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여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계속과제(31건)의 경우 평균 집행률이 68.2%이고 대부분의 과제의 연말 집행률이 70%~90% 수준이지만, 과제수행 기업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의 집행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5년 집행률 부진 계속과제(3건)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과제명	국비	매칭액	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스마트팜 고기능 표준화 재배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소재 및 글로벌 제품개발('23~'26)	672.6	181.8	854.4	278.9	**32.6**	- 외주용역 과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활동비 집행 시점이 '26으로 변경 - 가족간 경영권 분쟁으로 자금 집행에 차질 발생
연속흐름 공정을 이용한 이나보글리플로진의 친환경 자동화 생산 공정 개발('23~'26)	672.6	449.6	1,122.2	7.2	**0.6**	- 환율 상승으로 재료비가 급등하여 당초 계획된 업체와 계약 추진 곤란
원통형 이차전지 캡어셈블리 제조 공정 및 자동화 조립장비 개발('23~'26)	672.6	124.5	797.1	282.6	**35.5**	- 시제품의 목표 스펙 중 일부 스펙의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의 85%를 차지하는 시제품 제작 재료비 중 일부만 집행

집행액은 연말(12.31.)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다년도 R&D 수행과제에 대하여 과제 착수 당시 일괄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기업은 당해연도에 배정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하지 않고 차년도에 집행할 수 있으나,

특정 연도에 집중하여 최종집행되는 방식으로 집행 쏠림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짧은 시간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결과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진도점검[106]을 통해 과제별 연구 수행 현황 및 연구비 집행 상태를 점검하고 당해연도내 연구비 집행을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차년도 사업비의 증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구기관의 성과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과제별 사업비 집행 부진 현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06)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의2(진도점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계속수행 대상과제로 판정하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에 준하는 서식의 변경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8) 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수행 과업 내실화 필요 등

① 결산 현황

‘유통물류기반조성’(4302-302)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 ‘유통산업 실태조사’, ‘코리아세일페스타’, ‘가맹사업 선진화 기반 구축’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1억 5,300만원 중 21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유통물류기반조성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유통물류 기반조성	2,153	2,153	-	-	-	2,153	2,107	-	46	1,975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	194	194	-	-	-	194	186	-	8	181
유통산업 실태조사	297	297	-	-	-	297	259	-	38	268
코리아세 일페스타	1,583	1,583	-	-	-	1,583	1,583	-	-	1,452
가맹사업 선진화 기반구축	79	79	-	-	-	79	79	-	-	74

자료: 산업통상부

②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수행 과업 내실화 필요 등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은 유통산업의 상생 사례 발굴, 유통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상생협력 모

델 개발, 유통의 디지털전환으로 유통산업 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고,

2025년에는 ①유통산업 상생협력 증진방안 연구, ②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③유통 AI 트렌드와 전략 연구, ④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 도입 연구, ⑤식자재마트 현황 및 영향분석 연구 등 5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보다 구체적으로 '①유통산업 상생협력 증진방안 연구'의 사업계획서나 입찰 제안요청서를 보면,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거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홍보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통산업 상생협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과업 수행 내용

□ **과업 수행 내용**

○ **유통산업 전문가포럼 구성 및 운영**

-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운영
  * 업계·학계·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현안에 따라 자문회의 등 개최
- 유통법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및 자문
  * 유통법 전문가 자문회의, 법 개정 공청회, 법률자문 등
- 해외 유통산업 전문가 초청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포럼 전반에 관한 기획 수립·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연사 섭외 등
- 전국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설명회 개최

○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 유통산업 상생협력 사례 발굴
  * 모집·신청, 심사 및 선정(유통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 우수 협력사례 포상 및 홍보
  * 유통 상생분야 유공자 포상, 우수사례 홍보, 상생 홈페이지 게시 등 운영

자료: 산업통상부(2025년 유통산업 상생협력 증진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2025년 ‘유통산업 상생협력 증진방안 연구’ 예산으로 7,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산업통상부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게 전액을 교부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음.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107] 또는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 협력[108]에 관한 주제는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로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전문가 자문회의나 이해관계자 간 공청회 등을 구성·운영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는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임.

유통산업 상생협력 증진방안 연구 사업 과업별 추진 실적

과업 구분	추진 실적	수행 시기
유통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2025년 유통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포상응모 공모·심사·표창	8월~12월
	2025년 유통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홍보	
유통법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및 자문	대규모 점포 관리자 자격취소 판단 기준에 대한 법률자문	5월~12월
	업태별 분쟁조정 해결 위한 유통업태 심의위원회 개설여부 법률자문	
	유통법상 시행규칙 조문(안) 검토 관련 법률자문	
	대규모 점포 관리자 자격의 법적 해석에 관한 법률자문	
	유통상생기금 관련 법률자문	
	유통법상 준대규모 점포 일몰규정의 효력 관련 법률자문	
	유통법상 상점가의 판단기준 관련 법률자문	
	대규모 점포 개설 및 관리자 규정 변경 관련 법률자문	
해외 유통산업 전문가 초청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제13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및 컨퍼런스 개최	6월
전국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설명회 개최	광역·기초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준비	10월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107) 서울신문, “대형마트 ‘새벽배송 족쇄’ 풀릴까.. ‘공정경쟁 vs 골목상권 침해’ 팽팽, 26.6.14.

108) 머니투데이,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 출범...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의”, 22.10.7.

다만 구체적인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유통법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및 자문’ 사업의 경우 로펌·협회 등을 통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데[109],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한 법률자문의 경우 기관운영비인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편성·집행[110]하는 점에서 정책연구비 비목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적정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업계·학계·소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한다거나 현안에 대한 자문회·공청회를 개최한 내역이 적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실무설명회도 한 차례 개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과업 수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중소유통 간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소통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발굴한 상생협력 방안을 지역에 보급하여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매출액이 동반 상승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 과업을 보강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사업의 내실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 6년간 세부사업인 ‘유통물류기반조성’

109)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민원·현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법제처 협업만으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동 사업의 과업으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110)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0

과 내역사업인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의 편성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실효적인 과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어렵고 기존 과업도 매년 축소 시행해야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임.

최근 6년간 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1	’22	’23	’24	’25	’26
유통물류기반조성	5,876	4,604	3,098	2,533	2,153	1,975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	300	270	228	228	194	182

자료: 산업통상부

유통산업 상생협력에 관한 문제는 대형마트가 처음 생기기 시작한 시점[111]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난제이고 향후에도 관련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대형마트와 지역상권 간 상생협력에 관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수행 과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등 능동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1) 연합뉴스, “외국유통업체 속속 진출, 중소상권과 마찰”, 1996.2.8.
연합뉴스, “대형할인매장 진출에 지역상권 대책 고심”, 1999.3.12.

③ 유통산업 정책연구 관련 예산 비목 편성 부적정 등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유통산업 실태조사’는 유통산업[112] 또는 가맹사업[113]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2025년 동 내역사업 예산은 민간위탁사업비[114] 비목으로 2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00만원은 불용되었음.

’25년도 유통물류산업 실태조사 사업 수행 내역

연도	과제명	집행액 (백만원)
2025	유통산업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대규모점포 출점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39
	오프라인 유통 실태조사(식자재마트 현황 및 법·제도)	50
	2024년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61
	2024년도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84

자료: 산업통상부

112)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민간위탁사업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
(출처: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98)

2025년 유통물류산업 실태조사 사업 수행 내역을 보면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와 ‘기업물류비 실태조사’는 주기적인(2년) 실태조사의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유통산업에 관하여는 정책연구[115]의 성격을 가진 실태조사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116],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활용하여야 하며[117],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서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118],

---

11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1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 략)

11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8)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비목상 ‘정책연구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만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비 비목으로 편성·시행되는 동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행정업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정책연구를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임의로 수행할 경우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으므로 예산의 낭비 및 중복연구가 발생할 수 있고, 연구 결과 평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119],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연구 결과물의 활용성이 낮아질 수 있음[120].

이해관계자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유통산업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 현황에 대한 정보와 연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 연구용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21]에

119)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에 대해 「행정업무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과제 진행 전 PRISM을 통한 유사도 점검을 실시하고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는 등 중복 연구 방지 및 결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거치고 있다고 설명함.

120) 최근 5년간 동 사업이 실시한 실태조사·정책연구 30건 중 공개된 것은 5건임.

1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공개가 원칙[122]인 점을 고려할 때 유통산업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물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 관련 실태조사가 정책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행정업무규정」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정책연구비 비목으로 편성하는 한편,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 ④ (생 략)

1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9)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집행률 부진 및 사업 성과 달성 미흡

① 결산 현황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4302-303)은 지역 대·중소유통 간 상생 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0억원 중 8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2,000	2,000	-	-	-	2,000	848 [527]	-	1,152	50

자료: 산업통상부

② 집행률 부진 및 사업성과 달성 미흡

동 사업은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생존방안을 찾고자 했던 과거와 달리 오프라인 유통업과 온라인 유통업의 경쟁으로 유통환경이 변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지역별 상생협력 모델[123]을 발굴하여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23) 「지역유통 상생협력 구축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 해외사례로 스페인 산타마리아 시장, 영국 코번트리 시장, 호주 울워스 마트 등이 있음.

사업계획에 따르면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과제 유형으로 ⓐ배송·물류 지원형, ⓑ홍보·마케팅 지원형 ⓒ공동구매 지원형, ⓓ교육·컨설팅 지원형, ⓔ디지털전환 지원형 등의 예시가 있으나, 지역별로 상이한 유통환경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자체별 계획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과제 유형별 예시

○ **배송물류 지원형**
- 전통시장 내 중소유통, 소상공인 등이 공동 활용 가능한 배송·물류 플랫폼 설치·운영 지원

○ **홍보·마케팅 지원형**
- 전통시장, 대형유통 등 지역경제 유통산업 공통 수요진작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구매 지원형**
- 대형유통과 중소유통의 상품 구매력을 더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협력형 모델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형**
- 대형유통의 전문 인력을 활용, 중소유통 대상 각종 교육·컨설팅을 종합 프로그램으로 지원

○ **디지털전환 지원형**
- 대형유통의 디지털전환 관련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 중소유통에 대한 IT컨설팅과 이를 토대로 한 디지털전환 지원

자료: 산업통상부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협력 해외사례

○ **스페인 산타마리아 시장**
- 산타마리아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인 '메르까도나'와 제휴를 추진하였고 메르까도나는 한화 80억원 상당의 전통시장 재건축 비용을 지불하고 상인들은 메르까도나에 점포용 대지를 양도하기로 합의
- 전통시장은 생선, 고기,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대형마트는 각종 공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품목 차별을 통한 상생협력을 추진

○ **영국 코번트리 시장**
- 영국 코번트리 전통시장은 상품 구성의 차별화를 통해 대형 쇼핑몰과 보완관계를 유지
- 코번트리 시장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거쳐야만 각종 상점에 들어갈 수 있고 각 층마다 연결된 주차장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이용객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

○ **호주 울워스 마트**
- 호주의 대형마트 울워스는 지역에 매장을 열면 지역상인들을 매장에 입점시키고, 판매 품목을 차별화하여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협력을 추구
- 2013년부터 'Woolworths Local'이라는 등록상표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일부 식재료는 지역의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역화 전략을 추진 중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 동 사업의 예산인 20억원은 4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 5억원씩 경상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지만, 실제 보조금 집행액은 8억 4,800만원이고(42.4%), 사업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실집행액은 5억 2,700만원(26.4%)에 불과하여 집행률 및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공모를 통해 안성시, 청주시, 전주시, 부산시를 사업 시행 지역으로 선정하였는데, 부산시는 5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지만, 전주시는 2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안성시 및 청주시에는 약 5,000만원만 집행되어 사업 수행이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지방비 매칭 부담이 과중(50%)하고, 지자체 경상보조 비목의 한계[124]로 지자체가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신청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기획 단계에서 지자체 재정 여건과 비목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성시의 경우 보조사업비 1억원(국비 보조금 5,000만원, 지방비 매칭액 5,000만원) 중 2,917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스타필드 안성이 지역농협·로컬푸드 농가 등과 협력하여 '희망먹거리 나눔 축제'를 두 차례 개최하였고, 나머지 7,083만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124) 산업통상부는 공모 기간 중 다수 지자체에서 대형유통의 공간 레이아웃 구성 노하우 등을 활용한 중소유통 점포 리모델링 사업, 포스기 구매 등 카드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과 같은 자본보조성 과제 제출이 가능한지 질의하였으나, 경상보조 비목의 한계로 자본보조성 사업의 기획이 제한되었다고 설명함.

안성시 보조사업 추진 실적

(단위: 원)

국비보조금	지자체부담금	합 계	집행액	이월액
50,000,000	50,000,000	100,000,000	29,169,000	70,831,000
세부과제명	**추진일정**	**추진 실적 내용**		
희망먹거리 나눔축제	25년 6월, 10월	- 지역 농상물 홍보 및 판매 - 로컬푸드 요리 및 체험 - 스타필드안성, 지역농협, 로컬푸드 농가 등과 지역 유통 협력체계 구축		

자료: 산업통상부

청주시는 보조사업비 9,576만원(국비 보조금 4,788만원, 지방비 매칭액 4,788만원) 중 9,575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절별·테마별로 20번의 야시장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대형유통업체인 커넥트현대청주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행사 홍보를 지원하였으며,

청주시 보조사업 추진 실적

(단위: 원)

국비보조금	지자체부담금	합 계	집행액	이월액
47,880,000	47,880,000	95,760,000	95,747,100	-
세부과제명	**추진일정**	**추진 실적 내용**		
어게인 육거리야시장	25년 9월 (4회)	- 계절·테마별 시즌제 운영을 통해 컨셉에 따라 먹거리, 공연 등 분위기 차별화 - 야시장사업단의 역량강화 및 수익모델 발굴로 자립적인 정기운영 목표 - 커넥트현대청주가 홍보매체(디지털사이니지, 건물외부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하여 야시장 행사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대·중소유통간 협력체계 강화		
호프&라면 페스타	25년 10월~11월 (8회)			
육거리 포차 페스타	25년 12월 (8회)			

자료: 산업통상부

전주시는 보조사업비 5억원(국비 보조금 2억 5,000만원, 지방비 매칭액 2억 5,000만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차년도로 이월되었고,

전주시 보조사업 추진 실적

(단위: 원)

국비보조금	지자체부담금	합 계	집행액	이월액*
250,000,000	250,000,000	500,000,000	-	500,000,000
세부과제명	**추진일정**	**추진 실적 내용**		
-	-	-		

* 전주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 의회 회기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비 매칭이 지연되어 (25.12.18. 제4회 추경 편성) 연내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전액 이월되었고, 2026년 4월 집행을 완료하였음.

자료: 산업통상부

부산시는 보조사업비 10억원(국비 보조금 5억원, 지방비 매칭액 5억원) 중 9억 2,9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실시하였고, 부산시 소재 대형마트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행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부산시 보조사업 추진 실적

(단위: 원)

국비보조금	지자체부담금	합 계	집행액	이월액
500,000,000	500,000,000	1,000,000,000	929,110,000	-
세부과제명	**추진일정**	**추진 실적 내용**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 지원사업 (1차)	25년 11월	- 상품권 500백만원 환급 - 환급장소 100개소 운영, 참여인원 약 24천명 - 부산시 대형마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환급행사 홍보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 지원사업 (2차)	25년 12월	- 상품권 379.11백만원 환급 - 환급장소 96개소 운영, 참여인원 약 38천명 - 부산시 대형마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환급행사 홍보		

자료: 산업통상부

각 지역별 추진 실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성시와 전주시의 당해연도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산업통상부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125]할 필요가 있

었을 것으로 보이고,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이 대형유통업체의 인프라·노하우·인력 등 보유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유통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 사례가 추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를 단발성으로 홍보해주는 형식의 지원에 치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홍보·마케팅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일회성 사업[126]인데, 온라인유통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로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이 동반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호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6) 동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지만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하여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2025년 지자체 대상 공모 당시 2개년 과제를 제출한 지자체(안성시)에 대한 2026년 사업 예산임.

산업통상부는 향후 유사 취지의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별 과제 유형을 정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대형마트·지역상권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에 관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30) 자유무역지역관리: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 계획적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① 결산 현황

‘자유무역지역관리’(7135-301)는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건물(표준공장·관사 등) 및 국유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고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16억 6,800만원 중 109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자유무역지역관리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자유무역 지역관리	11,814	11,814	39	185	-	11,668	10,936	94	638	11,473

자료: 산업통상부

②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 계획적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물류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2025년 12월 기준 13개 지역에 국내·외투기업 등 총 1,510개사[127]가 입주하여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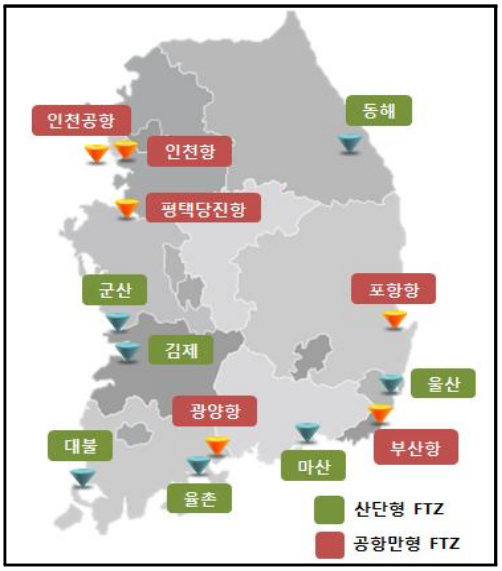
산업통상부는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등 7개 지역

127) 산단형 313개사, 항만형 424개사, 공항형 772개사

에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인 7개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을 통해 지역별 자유무역지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25년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지정일	면 적	관리권자*
산단형 (5.8㎢)	마 산	’70. 1. 1	0.96㎢	산업부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군 산	’00.10. 6	1.26㎢	
	대 불	’02.11.21	1.16㎢	
	동 해	’05.12.12	0.25㎢	
	율 촌	’05.12.12	0.34㎢	
	울 산	’08.12. 8	0.82㎢	
	김 제	’09. 1. 6	0.99㎢	
항만형 (25.6㎢)	부 산 항	’02. 1. 1	12.2㎢	해수부 (해양청/항만공사)
	광 양 항	’02. 1. 1	9.05㎢	
	인 천 항	’03. 1. 1	1.96㎢	
	포 항 항	’08.12. 8	0.93㎢	
	평택당진항	’09. 3.30	1.43㎢	
공항형 (3.46㎢)	인 천 공 항	’05. 4. 6	3.46㎢	국토부 (항공청/공항공사)
합 계			34.81㎢	



*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정책·제도·법 총괄은 산업부가 하되, 관리는 유형별로 3개 부처(산업부, 해수부, 국토부)로 나누어 담당

자료: 산업통상부

자유무역지역관리 예산 중 관리원 예산은 크게 인건비, 운영비 및 공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공사비는 각 관리원에서 제출하는 당해연도 필요예산 소요에 대해 부내심의 절차를 통해 검토 및 가감하여 기획예산처 제출 예산으로 최종 확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각 관리원별 결산 내역을 보면 편성 예산액과 집행액이 서로 상이하여 부정확한 측면이 있고, 특히 마산관리원의 경우 3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25억 3,500만원만 집행되어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자유무역지역관리 사업 관리원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 예산(A)	집행액(B)	차액(A-B)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	3,914	2,535	1,379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	1,034	1,455	△421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	1,105	1,484	△379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	447	403	44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	381	375	6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	731	706	25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	912	866	46
자유무역지역행정지원	3,290	3,109	181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마산관리원의 집행차액(13억 7,900만원)에 관하여 대불관리원과 군산관리원에 시급한 추가 공사 소요가 발생하여 내역변경을 통하여 부족분을 재배정하였고, 본부 인건비에 일부 전용하였다고 설명함.

자유무역지역관리 예산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목		세부사업명	목	
내역변경 (2025.4.)	자유무역 지역관리	공사비	535	자유무역 지역관리	공사비	- 마산관리원 공사비를 대불관리원 공사비로 재배정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으로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검사항목이 강화됨에 따라 화물용 승강기의 안전장치 추가 설치를 위해 세목조정된 예산으로 공사비 집행
내역변경 (2025.4.)	자유무역 지역관리	공사비	510	자유무역 지역관리	공사비	- 마산관리원 공사비를 군산관리원 공사비로 재배정 - 청사·표준공장의 안전진단 실시('19.2.) 결과 및 외부 벽체 균열 등으로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우려로 인해 세목조정된 예산으로 공사비 집행
전용 (2025.12.)	자유무역 지역관리	상용 임금	133	본부 인건비	인건비	- 산업통상부 본부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 집행잔액 전용
전용 (2025.12.)	자유무역 지역관리	고용 부담금	52	본부 인건비	인건비	- 산업통상부 본부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 집행잔액 전용

자료: 산업통상부

내역변경의 경우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 변경(전용·이용·이체 등)과 달리 변경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자체 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하면 되므로, 내역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일정한 재량을 갖는 측면이 있지만[128],

일반적으로 경상경비와 비교할 때 공사비는 비교적 큰 액수의 비용 지출을 동반하고 차년도 집행 소요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으므로 계획적인 예산 편성·집행이 필요한 비목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군산관리원의 경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의 안전검사 기준이 강화된 시점은 2022년 3월[129]로 화물용승강기의 노후화 정도(21년)를 고려할 때 안전장치 추가 설치 필요성을 미리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대불관리원의 경우에도 청사 및 표준공장 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점이 2019년 2월이라는 점에서 시설 보수공사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130].

---

128) 내역변경(조정)이란 단위사업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변경(전용·이용·이체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 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함.(기획예산처, 「예산 집행지침」, p.396)

129)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2.3.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6호, 2022.3.2. 일부개정]

130) 산업통상부는 당초 재정당국에 시설 보수공사 예산을 요청하였지만 미반영되었다고 설명함.

최근 5년간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편성 예산(A)	집행액(B)	이·전용등*	불용액
2021	1,825	1,667	-	158
2022	4,559	3,993	-	566
2023	2,133	1,791	-	342
2024	4,806	4,254	140	412
2025	3,914	2,535	1,142	237

* '이·전용등'은 마산관리원에서 다른 지역 관리원으로 이전용·세목조정·내역변경 한 경우를 산정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최근 5년간 마산관리원의 결산 내역을 보면 기관의 규모가 비교적 큰 마산관리원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한 뒤 이를 불용 또는 내역변경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예비적으로 편성한 것이라면 예산의 계획적 편성과 집행,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국가재정 운용의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변경을 한 것이라면, 마산관리원의 경우 1970년에 개소하여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한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시설 안전을 위해서 유지·개보수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이므로 가급적 해당 예산은 계획된 대로 집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131][132].

131) 자유무역지역관리 사업의 공사비 비목 예산은 실질적으로 노후된 건물·시설에 대한 유지비의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고,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 p.157)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132)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용 등을 한 예산이 당초 계획하였던 마산관리원 시설 공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보다 시급한 타 관리원의 공사비로 예산을 조정하였다고 설명함.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연례적인 전용, 내역변경 또는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편성 공사비 미집행 내역

미실시 공사	금액	미실시 사유
CCTV증설 및 종합상황실 구축	7억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선정 시 스마트산단 지정 및 국토부, 산업부 주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지원 수혜 가능
제2,3공구 도로 포장공사	4.8억	창원시 주관 도시침수예방사업 추진 시 2,3공구의 전반적인 도로굴착 및 재포장이 예상되어 제외 가능('25.1. 공문수신)
미집행 총액	11.8억	

자료: 산업통상부

Ⅲ.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세입결산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과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증감 (B-A)	증감사유
합계	5,910,301	3,968,298	△1,942,003	
투자계정	5,422,650	3,669,879	△1,752,771	
재산수입	11,861	34,367	22,506	
▪ 토지대여료	13	13	-	
▪ 정부출자수입	8,596	24,396	15,800	출자기관 경영개선으로 배당금 수입 증가
▪ 기타재산수입	3,252	9,958	6,706	세출사업 발생이자 반납률 제고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경상이전수입	1,892,232	1,378,078	△514,154	
▪ 과태료	105	1,241	1,136	고액 과태료(10억, 1건) 발생
▪ 징계부과금	-	3	3	
▪ 과징금	56	-	△56	
▪ 가산금	75	276	201	폐업 등에 의한 체납업체의 과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증가
▪ 법정부담금	1,837,282	1,357,118	△480,164	
- 석유수입부과금	1,498,810	1,026,243	△472,567	업종 경기침체 및 LNG징수단가 인하 연장으로 인한 부과금 수입 감소
- 석유판매부과금	188,878	184,793	△4,085	업종 경기침체로 인한 부과금 수입 감소
- 가스안전관리부담금	142,469	130,854	△11,615	LPG 수요감소로 부담금 수입 감소
- 광해방지부담금	7,125	15,228	8,103	가행광산 사업비 승인 금액 증가에 따른 징수결정액 증가

과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증감 (B-A)	증감사유
▪ 기타경상이전수입	54,714	19,440	△35,274	과년도 출연금 및 보조금 잔액 반납건 및 반납금액 감소
세계잉여금	355,452	-	△355,452	
▪ 전년도세계잉여금	355,452	-	△355,452	정부조직개편(′25.10.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예산 전액이체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163,105	2,257,434	△905,671	
▪ 기금전입금	757,434	757,434	-	
▪ 계정간전입금	158,244	-	△158,244	정부조직개편(′25.10.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예산 전액이체
▪ 기금예수금	2,247,427	1,500,000	△747,427	정부조직개편(′25.10.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예산 일부이체
융자계정	**487,651**	**298,419**	**△189,231**	
기타민간이자수입	24,488	32,932	8,444	환율 상승으로 해외융자금 이자수익 증가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63,163	265,488	△197,675	융자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정기상환원금 감소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3조 9,682억 9,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조 9,103억 100만원 대비 1조 9,420억 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금예수금 7,474억 2,700만원 감소, 법정부담금 4,801억 6,400만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임.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불납결손및 미수납사유
합계	3,968,298	3,964,241	-	4,057	
투자계정	3,669,879	3,665,822	-	4,057	
재산수입	34,367	34,190	-	178	
▪ 토지대여료	13	13	-	-	
▪ 정부출자수입	24,396	24,396	-	-	
▪ 기타재산수입	9,958	9,780	-	178	납기미도래에 따른 미수납
경상이전수입	1,378,078	1,374,198	-	3,879	
▪ 과태료	1,241	1,184	-	56	업체 폐업에 따른 미수납
▪ 징계부과금	3	3	-	-	
▪ 과징금	-	-	-	-	
▪ 가산금	276	7	-	269	업체 폐업에 따른 미수납
▪ 법정부담금	1,357,118	1,354,406	-	2,712	
-석유수입부과금	1,026,243	1,025,387	-	856	업체 폐업에 따른 미수납
-석유판매부과금	184,793	184,793	-	-	
-가스안전관리부담금	130,854	130,854	-	-	
-광해방지부담금	15,228	13,372	-	1,856	광업권자 재정악화(파산, 부도)에 따른 미수납
▪ 기타경상이전수입	19,440	18,597	-	842	납기미도래에 따른 미수납
세계잉여금	-	-	-	-	
▪ 전년도세계잉여금	-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257,434	2,257,434	-		
▪ 기금전입금	757,434	757,434	-	-	
▪ 계정간전입금	-	-	-	-	
▪ 기금예수금	1,500,000	1,500,000	-	-	
융자계정	298,419	298,419	-	-	
기타민간이자수입	32,932	32,932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65,488	265,488	-	-	

2025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3조 9,642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0억 5,700만원임. 주요 미수납액은 사업자 재정악화 및 납부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한 부담금 미납분 27억 1,200만원, 가산금, 과태료 등 미납분 3억 2,500만원, 납기미도래로 인한 기타경상이전수입 미납분 8억 4,200만원 등에서 발생하였음.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2025년도 에특회계의 예산액은 투자계정 2조 1,942억 6,400만원, 융자계정 5,096억 6,500만원인 총 2조 7,039억 2,900만원으로, 정부조직개편(25.10.1.) 시행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 △3,459억 6,700만원을 이체 후, 이월액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조 3,582억 2,200만원 중 2조 3,202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187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92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① 투자계정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체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①에너지자원정책	697,554	-	-	△59,457	638,097	638,097	-	-
○에너지자원정책지원	10,994	-	-	△241	10,753	10,753	-	-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2,857	-	-	-	2,857	2,857	-	-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160	-	-	△125	35	35	-	-
-에너지정보통계센터	3,124	-	-	-	3,124	3,124	-	-
-에너지센서스	592	-	-	-	592	592	-	-
-에너지국제협력	3,943	-	-	△100	3,843	3,843	-	-
-회계위탁관리비	279	-	-	-	279	279	-	-
-회계관리비	39	-	-	△16	23	23	-	-
○에너지이용합리화	87,961	-	-	△16,885	71,076	71,076	-	-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8,900	-	-	-	8,900	8,900	-	-
-한국에너지공단지원	79,061	-	-	△16,885	62,176	62,176	-	-
○가스안전관리	97,234	-	-	△359	96,875	96,875	-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85,218	-	-	-	85,218	85,218	-	-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7,895	-	-	-	7,895	7,895	-	-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	3,203	-	-	-	3,203	3,203	-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체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수소안전기반구축및안전관리강화	918	-	-	-359	559	559	-	-
○에너지복지지원	501,365	-	-	-41,972	459,393	459,393	-	-
-에너지바우처	501,365	-	-	-41,972	459,393	459,393	-	-
②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66,714**	-	-	**-3,817**	**63,058**	**63,058**	-	-
○기후변화협약대응	24,542	-	-	-	24,542	24,542	-	-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	2,395	-	-	-	2,395	2,395	-	-
-탄소포집활용(CCU)실증지원센터구축	14,715	-	-	-	14,715	14,715	-	-
-폐갱도를활용한이산화탄소육상저장시범사업	1,520	-	-	-	1,520	1,520	-	-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저감종합실증센터	5,912	-	-	-	5,912	5,912	-	-
○에너지신산업	42,172	-	-	-3,817	38,516	38,516	-	-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9,185	-	-	-17	9,329	9,329	-	-
-수소유통기반구축	5,869	-	-	-	5,869	5,869	-	-
-저탄소암모니아유통구조구축시범연구사업	2,150	-	-	-2,150	-	-	-	-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	1,650	-	-	-1,650	-	-	-	-
-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구축	10,700	-	-	-	10,700	10,700	-	-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구축사업	5,718	-	-	-	5,718	5,718	-	-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6,600	-	-	-	6,600	6,600	-	-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300	-	-	-	300	300	-	-
③에너지공급체계구축	**962,326**	-	-	-	**962,326**	**924,310**	**18,768**	**19,248**
○석유안정공급	98,216	-	-	-	98,216	79,448	18,768	-
-석유비축사업출자	79,901	-	-	-	79,901	61,133	18,768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5,859	-	-	-	15,859	15,859	-	-
-석유유통구조개선	811	-	-	-	811	811	-	-
-친환경석유대체연료보급기반구축사업	1,645	-	-	-	1,645	1,645	-	-
○석탄수급안정및지역지원	38,872	-	-	-	38,872	38,872	-	-
-석탄비축자산구입비	1,634	-	-	-	1,634	1,634	-	-
-대한석탄공사출자	35,812	-	-	-	35,812	35,812	-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426	-	-	-	1,426	1,426	-	-
○광산지역진흥	166,368	-	-	-	166,368	147,153	-	19,215
-폐광대책비	166,368	-	-	-	166,368	147,153	-	19,215
○광해광업공단	554,880	-	-	-	554,880	554,880	-	-
-광해방지사업	88,000	-	-	-	88,000	88,000	-	-
-탄가안정대책보조	51,433	-	-	-	51,433	51,433	-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415,447	-	-	-	415,447	415,447	-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체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가스수급안정	74,983	-	-	-	74,983	74,983	-	-
-LPG소형저장탱크보급	7,635	-	-	-	7,635	7,635	-	-
-읍면단위(중규모)LPG배관망구축사업	67,348	-	-	-	67,348	67,348	-	-
○국내외유전개발	837	-	-	-	837	837	-	-
-유전개발사업출자	837	-	-	-	837	837	-	-
○광물안정공급	28,170	-	-	-	28,170	28,137	-	33
-일반광업육성지원	21,984	-	-	-	21,984	21,984	-	-
-해외자원개발조사	4,674	-	-	-	4,674	4,674	-	-
-자원협력기반구축	460	-	-	-	460	427	-	33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1,052	-	-	-	1,052	1,052	-	-
④에너지기술개발	**246,240**	-	-	**△20,323**	**225,917**	**225,917**	-	-
○에너지수요기술	224,590	-	-	△20,323	204,267	204,267	-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197,961	-	-	△18,946	179,015	179,015	-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R&D)	9,022	-	-	-	9,022	9,022	-	-
-수소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R&D)	495	-	-	-	495	495	-	-
-액화수소(LH2)인수기지핵심설비 및 시설안전기술개발(R&D)	3,000	-	-	△1,377	1,623	1,623	-	-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R&D)	3,822	-	-	-	3,822	3,822	-	-
-천연가스배관망수소혼입안전성검증 및 안전기술개발(R&D)	10,290	-	-	-	10,290	10,290	-	-
○에너지공급기술	21,650	-	-	-	21,650	21,650	-	-
-저품위산화광대상 니켈원료제조공정기술개발(R&D)	3,000	-	-	-	3,000	3,000	-	-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 개발활용기술개발(R&D)	3,889	-	-	-	3,889	3,889	-	-
-공급망안정화를위한국내 타이타늄최적화기술개발(R&D)	2,767	-	-	-	2,767	2,767	-	-
-차세대친환경바이오 연료생산기술개발(R&D)	6,994	-	-	-	6,994	6,994	-	-
-저품위염호대상리튬추출 및 소재화기술개발(R&D)	5,000	-	-	-	5,000	5,000	-	-
⑤에너지기술기반확충	57,911	100	-	△3,977	54,034	54,034	-	-
○국제협력	44,018	-	-	△3,645	40,373	40,373	-	-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44,018	-	-	△3,645	40,373	40,373	-	-
○기술정책	1,230	100	-	△332	998	998	-	-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630	-	-	-	630	630	-	-
-에너지자원정책연구(R&D)	600	100	-	△332	368	368	-	-
○기반구축	12,663	-	-	-	12,663	12,663	-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체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R&D)	1,542	-	-	-	1,542	1,542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에특)(R&D)	11,121	-	-	-	11,121	11,121	-	-
⑥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63,519	-	-	△100,149	63,370	63,370	-	-
○회계기금간거래	163,519	-	-	△100,149	63,370	63,370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163,519	-	-	△100,149	63,370	63,370	-	-
계	2,194,264	260	-	△187,723	2,006,802	1,968,786	18,768	-

② 융자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체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①에너지자원정책	296,869	-	-	-	296,869	296,869	-	-
○에너지이용합리화	291,038	-	-	-	291,038	291,038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291,038	-	-	-	291,038	291,038	-	-
○가스안전관리	5,831	-	-	-	5,831	5,831	-	-
-가스안전관리(융자)	3,970	-	-	-	3,970	3,970	-	-
-장기사용석유저장시설안전관리(융자)	1,861	-	-	-	1,861	1,861	-	-
②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552	-	-	-	54,552	54,549	-	3
○가스수급안정	15,552	-	-	-	15,552	15,549	-	3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15,552	-	-	-	15,552	15,549	-	3
○광물자원개발융자	39,000	-	-	-	39,000	39,000	-	-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39,000	-	-	-	39,000	39,000	-	-
③계정간거래(전출금)	158,244	-	-	△158,244	-	-	-	-
○타계정전출금	158,244	-	-	△158,244	-	-	-	-
-투자계정전출	158,244	-	-	△158,244	-	-	-	-
계	509,665	-	-	△158,244	351,421	351,418	-	3
합계(투자+융자)	2,703,929	260	0	△345,967	2,358,222	2,320,202	18,768	19,251

(2) 예산변경 내역

① 전년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전년이월	260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잔금 이월	260
합 계	**260**		**260**

2025년도의 전년도 이월액은 2억 6,000만원으로 연구용역사업의 계약 만료 미도래로 인한 미지급금(2억 6,000만원)에 따른 것임.

② 전 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전 용	±586	○ 예산의 집행목적상에 맞는 비목정정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586 ±586
합 계	**±586**		**±586**

2025년도의 전용 내역은 에특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에서 광해광업공단으로 위탁관리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리용역비(210-15)에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전용된 것임.

③ 이 체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이 체	△345,967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 사업 예산 집행잔액 이체 △345,967
합 계	**△345,967**	△345,967

2025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이체액은 △3,459억 6,700만원이며, 정부조직개편(25.10.1.)시행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을 이체하였음.

④ 예비비 사용액 : 해당사항 없음

(3)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다음연도 이 월	18,76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 18,768 - 석유비축사업출자
합 계	**18,768**	**18,768**

2025년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87억 6,800만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임.

(4)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불 용	19,215	○ 폐광대책비 근로자대책비 추정치 대비 하회, 석탄공사 광해복구비 연기에 따른 불용 19,215
	37	○ 기타 집행잔액 등 37
합 계	**19,252**	**19,252**

2025년도 불용액은 192억 5,2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폐광대책비 중 근로자대책비 추정치 대비 하회 등에 따른 불용(192억 1,500만원), 기타 집행 잔액(3,700만원) 등으로 구성됨.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자산			
Ⅰ.금융자산	2	1,332,946,496,066	2,692,482,242,897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	25	33
2. 투자증권	2-3	-	-
3. 정부출자금	2-4	179,332,962,150	199,332,962,150
4. 대여금	2-5	1,122,661,055,258	2,487,172,933,024
5. 미수채권	2-6	30,896,478,633	5,920,347,690
6. 기타금융자산	2-7	56,000,000	56,000,000
Ⅱ.유·무형자산	3	153,434,680,970	153,621,655,155
1. 일반유형자산	3-1	153,434,678,970	153,448,575,822
2. 무형자산	3-4	2,000	173,079,333
Ⅲ.기타자산	4	28,449,328,087	23,402,149,595
자산계		1,514,830,505,123	2,869,506,047,647
부채			
Ⅰ.차입부채	5	2,059,200	3,331,436,786,564
1. 차입금	5-2	-	3,310,479,000,000
2. 기타차입부채	5-4	2,059,200	20,957,786,564
Ⅱ.충당부채	6	-	-
Ⅲ.기타부채	7	3,578,409	2,923,853
부채계		5,637,609	3,331,439,710,417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4,701,391,053,533	14,701,391,053,533
Ⅱ.적립금및잉여금		(12,610,730,068,081)	(14,587,489,444,159)
Ⅲ.순자산조정	18	(575,836,117,938)	(575,835,272,144)
순자산계		1,514,824,867,514	(461,933,662,770)
부채와순자산계		1,514,830,505,123	2,869,506,047,647

에특회계의 2025년도 총자산은 1조 5,148억원으로 전기 2조 8,695억원 대비 1조 3,547억원(47.2%)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자산이 1조 3,839억원 감소한 것에 기인함.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16-1	2,037,999,901,965	(146,869,509,578)	1,891,130,392,387	2,181,212,905,888	(244,601,308,417)	1,936,611,597,471
1.에너지자원정책		676,572,838,739	(45,865,884,288)	630,706,954,451	866,211,773,216	(54,509,291,984)	811,702,481,232
2.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63,393,100,000	(2,050,047,720)	61,343,052,280	51,287,566,160	(690,277,246)	50,597,288,914
3.에너지공급체계구축		1,017,907,243,416	(95,093,262,450)	922,813,980,966	895,666,623,722	(169,701,965,227)	725,964,658,495
4.에너지기술개발		225,917,176,000	(2,944,619,350)	222,972,556,650	294,940,000,000	(10,792,013,102)	284,147,986,898
5.에너지기술기반확충		54,209,543,810	(915,695,770)	53,293,848,040	73,106,942,790	(8,907,760,858)	64,199,181,932
Ⅱ.관리운영비	16-2			-			-
Ⅲ.비배분비용	16-3			89,584,622,381			74,169,882,956
Ⅳ.비배분수익	16-3			24,631,183,727			4,356,087,609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956,083,831,041			2,006,425,392,818
Ⅶ.재정운영결과(Ⅴ-Ⅵ)				1,956,083,831,041			2,006,425,392,818

에특회계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프로그램총원가 2조 380억원, 비배분비용 896억원 등을 투입하였으며, 프로그램수익 1,469억원, 비배분수익 246억원 등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1조 9,561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수익(I+II)		**171,500,693,305**	**248,957,396,026**
Ⅰ.이전수익	**12**	**-**	**-**
Ⅱ.국가운영수익	**13**	**171,500,693,305**	**248,957,396,026**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3-1	4,515,469,442	178,273,405
2. 이자수익	13-3	87,969,098,659	98,093,984,367
3. 배당수익	13-4	24,396,107,620	3,721,155,900
4. 자산평가이익	13-6	511,630,383	98,679,517,208
5. 기타국가운영수익	13-7	54,108,387,201	48,284,465,146
비용(III+IV)		**2,127,584,524,346**	**2,255,382,788,844**
Ⅲ.이전비용	**14**	**1,499,157,259,215**	**1,763,688,968,795**
1. 국고보조사업비	14-1	810,728,450,000	975,590,758,970
2. 출연사업비	14-2	554,972,061,000	659,730,000,000
3. 기타이전비용	14-5	133,456,748,215	128,368,209,825
Ⅳ.국가운영비용	**15**	**628,427,265,131**	**491,693,820,049**
1. 재화및용역제공원가	15-1	1,285,889,732	166,161,189
2. 인건비	15-3	50,370,660	48,514,670
3. 이자비용	15-4	89,290,163,579	73,659,995,011
4. 운영비	15-5	434,122,198	623,409,473
5. 감가상각비	15-6	51,922,958	66,078,568
6. 자산평가손실	15-7	19,952,035,981	-
7. 기타국가운영비용	15-8	517,362,760,023	417,129,661,138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1,956,083,831,041**	**2,006,425,392,818**

에특회계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2조 1,276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1,71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1조 9,561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4.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14,701,391,053,533**	**(12,900,337,271,621)**	**(575,834,426,348)**	**1,225,219,355,564**
1. 보고금액		14,701,391,053,533	(12,900,337,271,621)	(575,834,426,348)	1,225,219,355,564
Ⅱ.재정운영결과		**-**	**2,006,425,392,818**	**-**	**2,006,425,392,818**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319,273,220,280**	**-**	**319,273,220,280**
1. 재원의조달		-	5,280,371,945,730	-	5,280,371,945,730
(1) 국고수입		-	2,576,932,540,770	-	2,576,932,540,770
(2) 부담금수익	12-2	-	(10,408,438,460,740)	-	(10,408,438,460,740)
(3) 제재금수익	12-3	-	74,581,650	-	74,581,650
(4) 기타이전수익	12-4	-	1,307,376,000,000	-	1,307,376,000,000
2. 재원의이전		-	4,961,098,725,450	-	4,961,098,725,450
(1) 국고이전지출		-	4,961,098,725,450	-	4,961,098,725,450
Ⅳ.조정항목		**-**	**-**	**(845,796)**	**(845,796)**
1. 자산재평가이익	18, 3-3	-	-	(845,796)	(845,796)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4,701,391,053,533**	**(14,587,489,444,159)**	**(575,835,272,144)**	**(461,933,662,770)**
Ⅵ.당기 기초순자산		**14,701,391,053,533**	**(14,587,489,444,159)**	**(575,835,272,144)**	**(461,933,662,770)**
1. 보고금액		14,701,391,053,533	(14,587,489,444,159)	(575,835,272,144)	(461,933,662,770)
Ⅶ.재정운영결과		**-**	**1,956,083,831,041**	**-**	**1,956,083,831,041**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480,598,172,930**	**-**	**480,598,172,930**
1. 재원의조달		-	4,444,839,007,410	-	4,444,839,007,410
(1) 국고수입		-	2,320,201,835,050	-	2,320,201,835,050
(2) 국고이전수입		-	-	-	-
(3) 사회보험수익	8	-	-	-	-
(4) 부담금수익	12-2	-	1,365,995,957,260	-	1,365,995,957,260
(5) 제재금수익	12-3	-	1,207,215,100	-	1,207,215,100
(6) 기타이전수익	12-4	-	757,434,000,000	-	757,434,000,000
2. 재원의이전		-	3,964,240,834,480	-	3,964,240,834,480
(1) 국고이전지출		-	3,964,240,834,480	-	3,964,240,834,480
(2) 세출예산지출액		-	-	-	-
(3) 기타이전비용	14-5	-	-	-	-
Ⅸ.조정항목		**-**	**3,452,245,034,189**	**(845,794)**	**3,452,244,188,395**
1. 자산재평가이익	18, 3-3	-	-	(845,794)	(845,794)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23-1, 18	-	3,452,245,034,189	-	3,452,245,034,189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14,701,391,053,533**	**(12,610,730,068,081)**	**(575,836,117,938)**	**1,514,824,867,514**

에특회계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1조 5,148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4,619억원 대비 1조 9,767억원(427.9%) 증가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및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5조 9,202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부담금수입 등 재원의 조달 4조 4,448억원 증가 및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른 조정항목 3조 4,522억원 증가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5. 현금흐름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Ⅰ.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	**(900,841,016,148)**	**-**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4,518,983,313,830	-
(1) 부담금제재금수입		1,355,628,842,490	-
(2) 이자수입		32,931,518,690	-
(3) 기타유입		810,221,117,600	-
(4) 국고수입		2,320,201,835,050	-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5,419,824,329,978	-
(1) 보조금지급		832,278,731,170	-
(2) 출연금지급		554,972,061,000	-
(3) 인건비지급		50,370,660	-
(4) 이자지급		63,397,993,750	-
(5) 기타유출		4,884,338,918	-
(6) 국고이전지출		3,964,240,834,480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2	**(599,158,983,860)**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265,487,546,140	-
(1) 대여금회수		265,487,546,14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864,646,530,000	-
(1) 금융상품, 투자증권취득		513,228,780,000	-
(2) 대여금지급		351,417,750,00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3	**1,500,000,000,000**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500,000,000,000	-
(1) 차입금차입		1,500,000,0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Ⅳ.현금의증감(Ⅰ+Ⅱ+Ⅲ)		**(8)**	**-**
Ⅴ.기초의현금		**33**	**-**
Ⅵ.기말의현금(Ⅳ+Ⅴ)		**25**	**-**

에특회계에서는 2025년도 중 운영활동으로 9,008억원, 투자활동으로 5,992억원의 현금이 각각 유출되었으나 재무활동으로 1조 5,00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며, 현금은 총 8원 감소함에 따라 기초현금 33원에서 기말현금은 25원이 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자산	부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2,703,829,941,107**	**-**
1. 국가채권현재액	2,371,006,297,987	-
2. 국유재산현재액	332,823,236,797	-
3. 물품현재액	406,323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1,514,830,505,123**	**5,637,609**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1,188,999,435,984)**	**5,637,609**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1,207,371,676,644)	3,578,409
4. 대상차이(D)	18,372,240,660	2,059,200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해당없음

② 국가기관상호간채권·채무차이 : : 해당없음

③ 결산조정항목차이 : 각 개별법상 결산서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작성하나,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재정상태표는 발생주의에 의해 작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
- 미수채권 : 29,758,575,923원
- 대손충당금 : (-)1,237,130,252,567원
- 선수수익 : 3,578,409원

④ 대상차이 : 각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부채의 범위와 국가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산·부채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
- 국고예금 : 25원
- 저장품 : 28,449,328,087원
- 융자금 : (-)10,133,327,302원
- 과태료채권 : 56,239,850원
- 예수금 : 2,059,200원

4. 검토의견

(1) 법정부담금: 수납실적 저조에 따른 에특회계 재원 부족 문제 시정 필요

① 결산 현황

‘법정부담금’(59-593)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광해방지부담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등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사업자 부담금이 수납되는 과목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8,372억 8,200만원 중 1조 3,571억 1,8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이 중 1조 3,544억 600만원이 수납되었음.

2025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정부담금	1,837,282	1,837,282	1,837,282	1,357,118	1,354,406	2,712	-	1,734,195

자료: 산업통상부

② 수납실적 저조에 따른 에특회계 재원 부족 문제 시정 필요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등으로 구성된 법정부담금(2025년 예산액 기준 1조 8,372억 8,200만원) 과목임. 이 중 단일 과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석유수입부과금으로, 2025년도 예산 기준 원유/석유제품에 대하여 8,637억 3,000만원, 천연가스(LNG)에 대하여 6,350억 8,000만원을 합한 1조 4,98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법정부담금의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예산 대비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천연가스(LNG) 발전용 외(민수용, 상업용 등) 용도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30% 가량 인하되면서, 2024년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총 1조 8,944억 4,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1조 4,092억 900만원에 불과하여 수납률이 74.4%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이어서,

2025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은 1조 8,372억 8,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된 금액은 1조 3,571억 1,800만원이고, 수납된 금액은 1조 3,544억 600만원으로 수납률이 전년 대비 0.7%p 하락한 73.7% 수준을 보였음.

2022~2025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650,005	1,650,005	1,650,005	1,812,875	1,803,073	109.3
2023	1,821,355	1,821,355	1,821,355	1,225,225	1,218,059	66.9
2024	1,894,449	1,894,449	1,894,449	1,411,635	1,409,209	74.4
2025	1,837,282	1,837,282	1,837,282	1,357,118	1,354,406	73.7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신청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8월부터는 수출 환급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

실제로,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연내 최초 부과금액 대비 당해연도 환급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의 경우 최초 부과금액은 3조 5,060억 2,900만원 수준을 보였으나, 이 중 환급액이 2조 4,806억 4,200만원으로 환급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1~2025년 기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내 최초 부과금액(A)	3,530,115	3,678,181	3,578,573	3,674,530	3,506,029
부과건수	473	523	535	573	543
건당 부과금액	7,463	7,033	6,689	6,413	6,457
연내 당해연도 환급금액(B)	2,231,943	2,168,936	2,660,207	2,601,871	2,480,642
환급건수	2,231	2,183	2,765	2,800	2,659
건당 환급금액	1,000	994	962	929	933
순징수금액 (C=A-B)	1,298,172	1,509,245	918,366	1,072,658	1,025,387
환급 비율(B/A)	63.2	59.0	74.3	70.8	70.8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수납실적이 매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는 산업통상부의 톤당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에 대한 결정 사항이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기여한 것으로 보임. 특히,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에 대하여 발전용 외(민수용, 상업용)의 경우 총 2,330만톤에 대하여 톤당 24,242원의 부과금(총 5,648억 4,000만원)을, 발전용의 경우 총 1,848만톤에 대하여 톤당 3,800원의 부과금(총 702억 4,0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 하에 총 6,350억 8,000만원의 부과금 수입을 예산액으로 반영하였으나,

실제 발전용 외(민수용, 상업용) 천연가스에 대하여 적용된 징수단가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16,730원이었고, 2025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는 20,605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예산편성 단가인 24,242원의 85.0%에 불과한 수준이었음.

이와 같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차년도 예산에 반영된 톤당 부과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정부 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부과금 수준을 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석유수입부과금 등 법정부담금의 예산액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정부는 에특회계 소관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수납계획에 기초하여 적정 수입예산 규모를 산출·반영하는 등 법정부담금의 예산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133]

133)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4년 및 2025년 LNG 수입부과금에 대한 감면조치는 러-우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100%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자원의 특성상 유가와 수급 상황은 대외적 영향을 크게 받으며, 불안정 상황 발생시 수급 및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부과금 단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음.

(2) 석유비축사업출자: 석유비축계획 수립 과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① 결산 현황

‘석유비축사업출자’(5432-301)는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석유비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축유를 구입하고, 비축기지 건설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99억 100만원 중 611억 3,300만원이 집행되고, 187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5년도 석유비축사업 출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석유비축사업 출자	79,901	79,901	-	-	-	79,901	61,133	18,768	-	55,300
비축유구입	49,281	49,281	-	-	-	49,281	30,733	18,548	-	26,300
비축기지 유지보수	30,620	30,620	-	-	-	30,620	30,400	220	-	29,000

자료: 산업통상부

② 석유비축계획 수립 과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내역사업인 ‘비축유구입’ 사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연차별 비축유를 확보하여 석유수급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총 비축량 79만 배럴

중 정부 출자금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는 비축유 43만 배럴에 대한 재정 소요 492억 8,100만원이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고, 이 중 307억 3,300만원이 한국석유공사에 교부·집행되었으며, 185억 4,800만원은 이월[134]되었음.

매년 비축유 구입 소요는 동 내역사업을 통한 정부 출자금 부담분과, 한국석유공사 자체재원 부담분으로 나누어짐. 2025년도 총 비축량 79만 배럴 중 나머지 36만 배럴은 한국석유공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재원을 조달, 비축유 구매가 완료되었음.

2024~2026년 비축유 구매 예산에 대한 정부 및 한국석유공사 부담 현황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비축유 구입	· 원유 320천B × 단가 $88.14/B ×환율 1,301.0원/$	· 원유 **430천B** × $85.07/B × 환율 1,347.2원/$	· 원유 255천B × $74.66/B × 환율 1,380.0원/$
총 비축량	909천B(정부출자 320천B, 석유공사 부담 589천B)	**790천B(정부출자 430천B, 석유공사 부담 360천B)**	500천B(정부출자 255천B, 석유공사 부담 245천B)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이 매년 비축유 구입 소요 중 정부 출자 부담분을 도출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구조가 타당성 및 책임성을 갖기 위해서는,

134)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2025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에 따라 일부 예산이 2026년도 이월된 것으로, 기체결한 비축유 구입 계약 대금 493억원 중 이월액 185억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가 2026년 1월 6일 자체 재원으로 우선 부담하였고, 이후 2026년 에특회계 본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1월 29일 한국석유공사에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하였음.

① 연차별 비축유 구입 소요의 도출 근거가 예산의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유되고, ② 매년 비축유 구입 소요를 정부 출자 부담분과 한국석유공사 자체부담분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익-비용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선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135]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136]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매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1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 중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油種), 정부 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년)」의 비축목표인 1억 100만 배럴을 2025년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여 왔고, 해당 계획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2025년 12월 5일에는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1억 260만 배럴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즉, 2026년도 비축유 구입을 위한 정부 출자금 예산 소요가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2025.12.2.)된 이후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석유비축계획을 산업통상부가 수립하여 발표한 것임.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안 편성 및 제출은 9월에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9~11월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연도 말에 수립·발표하는 석유비축계획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회는 매년 정부의 차년도 비축유 구매 소요에 대한 출자금 예산을 심의하여야 하는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둘째,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비축사업 부문 영업이익 및 지출 현황에 따르면, 비축자산 활용수익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영업이익은 2025년 기준 822억원으로 2020~2025년의 기간 동안 202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20~2025년 비축사업부문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수익 A)	비축유 활용수익(a)		1,506	498	2,033	1,580	2,345	2,217
	비축시설 활용수익(b)		1,098	898	858	1,037	1,088	1,090
	비축자산활용수익(a+b)		2,604	1,396	2,891	2,617	3,433	3,307
매출 원가 (비용 B)	비축기지운영 인건비		492	402	418	473	507	508
	비축기지 운영경비	기타경비	610	626	675	723	732	807
		감가상각비	845	838	1,028	1,075	1,111	1,171
	소계		1,947	1,866	2,121	2,271	2,350	2,485
영업이익(A-B)[주]			657	△470	770	346	1,083	822

주: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상의 비축사업부문 영업이익과의 차이 사유 : 감사 보고서 부문별 손익은 비축사업부문/석유사업부문/개발사업부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중 '석유상품(재고자산)의 판매 수익 및 매출원가'는 석유사업부문으로 집계됨

자료: 한국석유공사

이를 고려하면, 연차별 비축유 구매 소요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와 정부 간의 재원부담 배분을 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유 구매를 위한 정부 출자금 예산 소요가 확정된 이후에야 석유비축계획을 수립·발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연차별 비축유 구매 소요에 대한 정부 출자금과 한국석유공사 자체 재원 간 분담 기준 및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비축기지 구축 사업의 출자금 실집행 부진 문제

① 결산 현황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5440-304)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154억 4,700만원을 전액 집행,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교부하였음.

2025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광해광업 공단 출자	200,727	415,447	-	-	-	415,447	415,447	-	-	76,929

자료: 산업통상부

②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의 실집행 부진 문제

내역사업인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정부 핵심광물(희소금속) 비축확대 정책 및 조달청 희소금속 이관에 따른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26억 3,700만원이 전액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교부되었으나, 이 중 공사비 826억 300만원과 감리비 28억 4,1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음.

2024년 및 2025년 출자 예산 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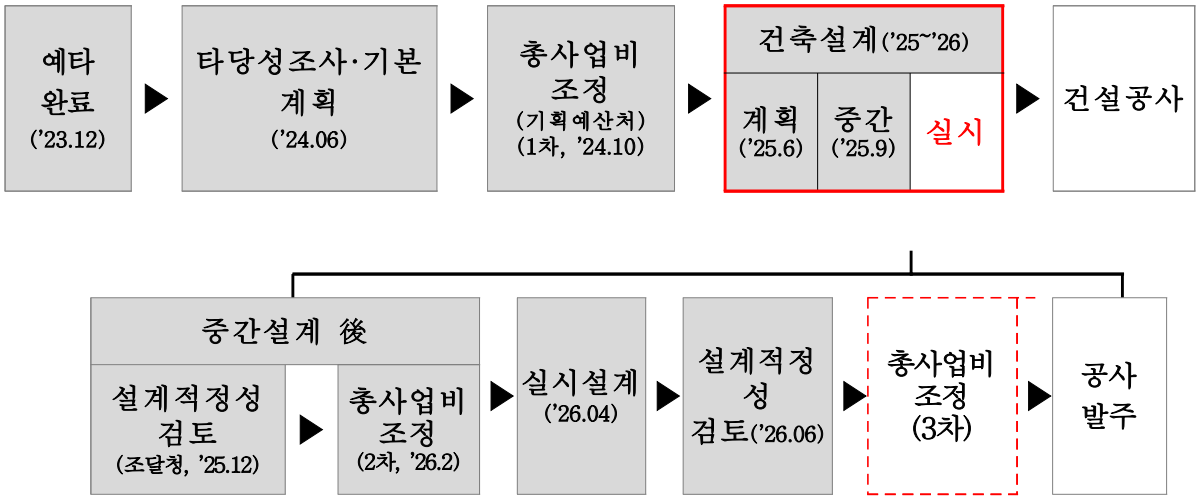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예산	교부	실집행	예산	교부	실집행
부지매입비	12,847	12,847	12,847	15,472	15,472	14,708
설계비	5,853	5,853	183	1,540	1,540	3,277
공사비	-	-	-	82,603	82,603	-
감리비	-	-	-	2,841	2,841	-
시설부대비	-	-	-	181	181	42
합 계	18,700	18,700	**13,030**	102,637	102,637	18,027

자료: 산업통상부

뿐만 아니라, 동 내역사업의 2026년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2026년 6월에서야 실시설계 결과물에 대한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해당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총사업비 3차 조정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 추진단계 : 現 총사업비 조정(3차)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비축출자금은 계좌 및 누적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타 계정 혼입을 방지토록 관리 중이며, 이후 건설공사 발주 및 착공을 통해 이연된 공사비 등을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다만, 당초 계획 대비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편성된 출자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공사비 및 감리비 명목으로 편성된 출자금 예산 854억 4,400만원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교부한 것은 에특회계 법정부담금 수납실적 저조로 인하여 재원 운용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원 투입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출자금 교부 시 출자기관의 출자금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교부 결정을 하도록 시정하고,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2026년 내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읍·면단위(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보조사업비 정산 부실에 따른 과다 교부 시정 필요

① 결산 현황

‘읍·면단위(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5443-308)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에너지사용 환경개선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읍·면단위로 LPG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73억 4,800만원(지자체 자본보조금)이 전액 집행·교부되었음.

’25년도 읍·면단위(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읍·면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67,348	67,348	-	-	-	67,348	67,348	-	-	51,522

자료: 산업통상부

② 보조사업비 정산 부실에 따른 과다 교부 시정 필요

동 사업은 개별 용기를 배송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배관망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집단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LPG 저장시설(제조소 또는 소형저장탱크, CCTV 설치 등), 공급관, 입상배관, 부대설비(가스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90%를 국가(50%) 및 지방자치단체(40%)가 지원하는 사업임[137].

동 사업은 2024년부터 최초 시작하여 2개년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는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들에 대하여 1차년도에는 설계 및 인허가를 수행·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시공 및 공급을 수행·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1차년도의 경우 주민설명회 및 대상지 선정, 조사 및 설계,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차년도에는 시설 구축, 옥내 개선 및 검수, 준공 및 가스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1차년도 및 2차년도 단계별 사업 내용 예시

사업 연도	주요 단계	세부 사업 내용
1차년도 (설계 및 인허가)	대상지 선정	주민 설명회 개최, 신청 접수 및 최종 대상지 확정
	설계 및 조사	현장 정밀 조사, 지형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행정 절차	도로점용·개발행위 등 유관기관 인허가 협의 및 완료
	계약 체결	시공업체, 가스 공급업체, 감리업체 입찰 및 선정
2차년도 (시공 및 공급)	저장시설 구축	마을 공용 소형저장탱크(LPG 부지) 기초 공사 및 설치
	배관망 매설	도로하부 가스 공급 배관 매설 및 가구별 인입관 공사
	옥내 시설 전환	가구별 가스 계량기 설치, 옥내 배관 연결 및 LPG 보일러 교체
	안전 및 검수	안전관리 시스템(CCTV 등) 구축, 한국가스안전공사 준공 검사
	공급 개시	가스 인입, 기기 시운전 완료 및 최종 가스 공급 개시

자료: LPG사업관리원,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설명자료」

137)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반액을 지원함.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는 2024년 사업시작연도에 선정된 1차 사업지역의 2차년도 사업비 833억 2,800만원과 2025년 신규 선정된 2차 사업지역의 1차년도 사업비 513억 6,800만원을 합한 1,346억 9,600만원의 50%인 67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산업통상부는 해당 보조금 예산을 모두 지자체에 교부하였음.

2025년도 예산편성 근거

세사업 명	구분	편성 근거
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구축	본예산	○ 67,348백만원 - (1차사업 지역의 2차년도 사업비 83,328백만원 + 2차사업 지역의 1차년도 사업비 51,368백만원) x 50%(국비보조율)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된 673억 4,800만원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중 621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고, 51억 9,400만원이 연말 자금배정과 지방비 미확보로 인하여 이월되었다고 보고하였음. 이월액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임실군의 경우 일부 주민의 도시가스 도입 가능성에 따른 반대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20억 6,4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유지 토지사용동의, LPG 용기판매업자의 반대 등의 사유로 3개 지역에서 총 31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밝혔음.

그런데, 산업통상부가 2025년 결산상 집행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621억 5,400만원의 지자체 자본보조금의 실제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대상지별로 시공사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월이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예로, 2024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25년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된 이천시 모가면의 경우 산업통상부는 2024년 교부한 6억 8,200만원, 2025년 교부한 10억 2,300만원의 국비 보조금 예산이 모두 집행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당초 실시설계를 2024년 9월 완료하고 2024년 10월까지 시공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음에 비해 실제로는 각각 2024년 11월과 2024년 12월에 실시설계와 시공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등 일부 지연이 발생하였고, 최종적인 시설공사비 지급은 2026년 4월에야 이루어졌음.

또한, 경남 창녕군 영산면의 경우 2024년 국비 35억 2,600만원, 2025년 52억 8,7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24년 및 2025년 보조금 집행 현황(경남 창녕군,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축사업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2024년도 사업비 지출액 (12월 말 기준)				2025년도 사업비 지출액 (12월 말 기준)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경남 창녕군 영산면	'25.09.01	'26.10월	3,526	2,820	705	7,051	5,287	4,230	1,057	10,574

자료: 산업통상부

2024년 국비 35억 2,600만원 중 실제 실시설계비 및 관급자재비,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정산된 금액은 연말 기준 21억 7,000만원에 불과하였음. 뿐만 아니라, 당초 2025년 2차년도 사업

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됨을 전제로 1차년도와 2차년도로 나누어 배정된 총사업비를 전액 교부한 것과 상반되게, 사업추진 중 문화재 발굴 등의 사유로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0월까지로 지연·추진되었음.

이에 따라 2025년 해당 사업의 2차년도 총 사업비 105억 7,400만원 중 2026년 6월까지 집행된 것으로 보고한 금액은 52억 9,600만원에 불과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 37억 100만원은 미집행된 상태에서 국비만 우선 집행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음.

2025년 보조금 실정산 현황(경남 창녕군, 2026년 6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광역)	지방비(기초)	자부담
예산액 (총사업비)	10,574	5,287	529	3,701	1,057
집행액	5,296	5,287	9	-	-
집행잔액 (이월금액)	5,278	-	520	3,701	1,057

자료: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138]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13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공고)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 지침 제25조제3항[139]은 보조사업비의 이월을 위해서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업수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말 기준 국비를 우선 집행하여 별도의 이월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보조금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실제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보다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집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13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공고)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천연가스 배관망 수소 혼입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R&D): 연구비 조달 애로사항에 따른 집행지연 재발방지 필요

① 결산 현황

‘천연가스 배관망 수소 혼입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R&D)’(5701-409)은 도시가스 배관 공급압력별 수소혼입 공급 안전성 검증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2억 9,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천연가스 배관망 수소 혼입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천연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안전성검증 및 안전기술개발 (R&D)	10,290	10,290	-	-	-	10,290	10,290	-	-	3,500

자료: 산업통상부

② 연구비 삭감에 따른 R&D 집행지연 문제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를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의 정압기지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시설에 수소혼입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와 천연가스를 혼합한 에너지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함.

도시가스 수소혼입을 통해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전국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망을 사용하여 수소를 공급함으로써 수소 전용배관망이 갖춰지기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소 누출, 도시가스와 수소의 분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배관망 및 사용기기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 검증이 선제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1년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도시가스업계가 탄소중립목표에 대응하고,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손쉽게 국민 생활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어서 산업통상부는 2022년 2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구성·발족하였음.

동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4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5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천연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안전성검증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비 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세부과제	사업기간 (총사업비(국비))
<천연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	'23.4~'26.12 (24,090)
1. (통합형-총괄) 도시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전주기(제조-공급-사용)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실증	'23.4~'26.12 (445)
2. (세부1) 주택용/산업용 연소기·가스기기 연소성능 안전성 검증 안전기술 개발	'23.4~'26.12 (6,130)
3. (세부2) 비금속 재료 수소침투 적합성 평가 및 가스유량 오차 검증 안전기술 개발	'23.4~'26.12 (4,071)
4. (세부3) 도시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안전성 평가/실증 및 안전기준 개발	'23.4~'26.12 (8,684)
5. 수소혼입 도시가스 배관 수소취성 평가 및 수명예측 안전기술 개발/실증	'23.4~'26.12 (4,760)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2025년 위 5개 세부과제의 연구개발비 102억 9,000만원의 최종 연구기관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비금속 재료 수소침투 적합성 평가 및 가스유량 오착 검증 안전기술 개발' 과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의 최종 집행률이 전부 7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5년 하위 과제별 연도말 기준 최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2025년 국비 (a)	2025년 매칭액 (b)	전년도 이월 (c)	2025년도 현액 (d=a+b+c)	2025.12.말 기준 최종집행액(e)	연말 집행률 (e/d)
(총괄)도시가스 배관망 수소 혼입 전주기(제조-공급-사용)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실증	210	-	27	237	154	65%
(세부1)주택용/산업용 연소기·가스기기 연소성능 안전성 검증 안전기술 개발	2,770	139	419	3,328	1,770	53%
(세부2)비금속 재료 수소침투 적합성 평가 및 가스유량 오차 검증 안전기술 개발	1,510	-	622	2,132	1,698	80%
(세부3)도시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안전성 평가/실증 및 안전기준 개발	3,450	322	997	4,769	2,630	55%
수소혼입 도시가스 배관 수소취성 평가 및 수명예측 안전기술 개발/실증	2,350	138	445	2,933	1,651	56%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이 최종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2023년 최초 R&D 시작 이후 2024년 연구비 대폭 삭감에 따라 설비구축 등 일부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과제별 장비 구축 계획 대비 실제 현황(7월 기준)

(단위 : 천원)

번호	구 분	장비명	계획 구축일	계획 예산	실제 구축일	실제 금액	지연구축사유
1	세부 1 (연소기/가스기기)	주물연소기용 성능시험장치	'24.09	239,350	'25.09	100,000	'24년도 예산 삭감
2		상업용 보일러 성능시험장치	'24.09	130,000	'26.03	182,765	'24년도 예산 삭감
3		산업용 연소기 성능시험장치	'24.09	100,500	'25.09	90,000	'24년도 예산 삭감
4		연료전지 성능시험장치	'24.07	55,000	'24.10	52,000	조달절차 지연
5		주택용 성능시험장치	'24.01	98,000	'25.10	7,474	'24년도 예산 삭감
6		가스레인지용 성능시험장치	'23.06	25,000	'23.10	28,600	부품수급(해외) 지연
7		가스오븐용 성능시험장치	'24.01	60,000	'25.10	6,013	'24년도 예산 삭감
8		가스밥솥용 성능시험장치	'24.01	27,000	'25.10	13,713	'24년도 예산 삭감
9		의류건조기용 성능시험장치	'24.01	60,000	'25.10	18,150	'24년도 예산 삭감
10	세부 2 (비금속 재료)	폴리머 전용 만능재료시험기	'24.05	130,000	'25.07	54,935	장비도입 심의기관 변경으로 지연
11		현미경 부착 푸리에변환 적외선 분광계	'24.05	197,000	'25.07	174,570	조달절차 지연
12		수소혼입 계량기 유량 시험용 시작품	'24.01	840,000	'25.11	505,274	'24년도 예산 삭감
13		수소품질 시험용 시작품	'24.01	80,000	'25.11	83,150	'24년도 예산 삭감
14		수소혼입 계량기 내구성 시험용 시작품	'24.01	180,000	'25.12	98,736	'24년도 예산 삭감
15		호스투과 시험 시작품	'25.07	130,000	'25.08	295,515	예산 삭감으로 설계변경 및 인허가 지연 (3종→1종통합)
16		내압 및 누설, 기밀시험 시작품	'24.07	430,000	'25.08		
17		과류차단 측정 시작품	'24.07	221,000	'25.08		
18	세부 3 (수소혼입 실증)	층분리 설비	'23.11	1,240,000	'25.02	68,990	'24년도 예산 삭감
19		Pilot 설비	'24.12	1,780,000	'26.07	909,860	'24년도 예산 삭감

번호	구 분	장비명	계획 구축일	계획 예산	실제 구축일	실제 금액	지연구축사유
20	일반형 (배관재료)	고온 수소침지 설비	'23.10	96,000	'24.04	90,000	조달절차 지연
21		수소취성 평가설비(피로파괴)	'24.10	350,000	'25.11	330,000	'24년도 예산 삭감
22		수소취성 평가설비(SSRT)	'23.10	230,000	'26.06	460,000	예산삭감·부품수급(해외)지연(2종→1종통합)
23		수소취성 평가설비(파괴)	'24.06	250,000	'26.06		
합계			-	6,948,850	-	3,569,745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2차년도인 2024년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62억원 삭감됨에 따라 장비·설비 구축이 지연되면서 일부 안전성 및 내구성 검증 연구가 순연되었고 연구 종료시점이 당초 2026년 3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또한, 2025년 말 기준 집행률 70% 미만 4개 과제에 대해 2026년 6월 기준 평균 85% 집행을 완료하였고, 연구 종료기간(2026년 12월)까지 최종집행을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지난 1월 산업통상부는 도시가스 수소 혼입을 제도화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소 취성[140]으로 인한 추가적인 배관 안전관리 소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안, 제2215683호)에 대하여,

140) 수소 원자가 금속 내부로 침투하여 금속의 연성(늘어나는 성질)과 인성을 감소시켜, 갑작스러운 파괴(취성 파괴)를 일으키는 현상

동 R&D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 및 내구성 검증을 완료하고 나면 이후 추가적으로 지역실증 연구사업(2027~2029)을 추진하여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6년 7월 현재 기준 산업통상부는 동 1차 R&D 사업(실험실 규모 안전성·내구성 검증) 종료 후, 실제 도시가스 사용 환경에서의 실증을 위한 2차 R&D 사업을 기획 중임.

이를 고려할 때, 산업통상부는 연구비 삭감으로 인하여 장비 도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동 R&D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적인 지연을 최소화하여 후속 사업으로의 전환 및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Ⅳ.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결산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증 감 (B-A)	증 감 사 유
합 계	53,044	84,229	31,185	
기타재산이자수입	2,921	5,975	3,054	- 출연금·보조금사업 정산이자 반납금 증가
기타경상이전수입	50,123	78,254	28,131	- 출연금·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증가

산업통상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25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842억 2,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30억 4,400만원 대비 311억 8,500만원(58.8%)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출연사업 및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이 예산액보다 281억 3,100만원 증가하였고, 출연사업 및 보조사업의 정산이자 반납금이 예산액보다 30억 5,400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임.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불납결손 및 미수납 사유
합 계	84,229	82,234	0	1,995	
기타재산이자수입	5,975	5,590	0	385	연말 징수결정분 납기미도래, 지자체 예산미반영 등 사유
기타경상이전수입	78,254	76,644	0	1,610	연말 징수결정분 납기미도래, 지자체 예산미반영 등 사유

산업통상부 소관 지특회계의 2025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842억 2,900만원 대비 19억 9,500만원(2.4%)이 감소한 822억 3,400만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주로 연말 징수 결정분의 납기 미도래 및 지자체 예산 미반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2026년 세입으로 귀속 예정임.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산업통상부 소관 지특회계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지역자율계정 256억 3,300만원, 지역지원계정 1조 2,491억 4,1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65억 1,5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73억 8,100만원으로 총 1조 2,886억 7,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억 9,200만원, 전용액 ±7,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1조 2,930억 6,200만원이었음.

이 중 1조 1,083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 1,258억 9,2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88억 4,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음.

① 지역자율 계정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전년이월	변 경			예산현액	지출	차년이월	불용
			이체	전용	예비비				
합 계	25,633	-	-	-	-	25,633	25,633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0)>	25,633	-	-	-	-	25,633	25,633	-	-
□에너지및자원개발(115)	25,633	-	-	-	-	25,633	25,633	-	-
○에너지자원정책(5100)	12,799	-	-	-	-	12,799	12,799	-	-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12,799	-	-	-	-	12,799	12,799	-	-
○에너지기술기반확충(5800)	12,834	-	-	-	-	12,834	12,834	-	-
・기반구축(5804)	12,834	-	-	-	-	12,834	12,834	-	-

② 지역지원 계정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전년이월	변 경			예산현액	지출	차년이월	불용
			이체	전용	예비비				
합 계	1,249,141	4,392	-	±74	-	1,253,533	1,069,486	125,335	58,71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0)>	1,206,656	4,364	-	±74	-	1,211,020	1,027,133	125,289	58,598
□에너지및자원개발(115)	200	-	-	-	-	200	200	-	-
○에너지기술기반확충(5800)	200	-	-	-	-	200	200	-	-
·기반구축(5804)	200	-	-	-	-	200	200	-	-
□산업혁신지원(117)	1,206,456	4,364	-	±74	-	1,210,820	1,026,933	125,289	58,598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2700)	5,376	-	-	-	-	5,376	5,376	-	-
·경제자유구역지원(2733)	5,376	-	-	-	-	5,376	5,376	-	-
○지역경제활성화(3300)	788,761	4,364	-	±74	-	793,125	725,036	9,658	58,431
·기업입지환경개선(3333)	397,958	-	-	-	-	397,958	397,958	-	-
·지방시대위원회운영(3334)	3,664	314	-	±74	-	3,978	3,580	59	338
·지역산업경쟁력강화(3362)	105,204	4,050	-	-	-	109,254	105,204	4,050	-
·지역투자유치활성화(3363)	221,831	-	-	-	-	221,831	158,190	5,549	58,093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3365)	60,104	-	-	-	-	60,104	60,104	-	-
○주력산업진흥(3500)	3,188	-	-	-	-	3,188	3,188	-	-
·섬유패션생활용품산업육성(355)	1,810	-	-	-	-	1,810	1,810	-	-
·수송기기기술개발(3551)	1,378	-	-	-	-	1,378	1,378	-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4900)	409,077	-	-	-	-	409,077	293,300	115,631	146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4901)	409,077	-	-	-	-	409,077	293,300	115,631	146
○회계기금간거래(8000)	54	-	-	-	-	54	33	-	21
·회계기금간거래(8001)	54	-	-	-	-	54	33	-	21
<교통및물류(120)>	42,485	28	-	-	-	42,513	42,353	47	114
□물류등기타(126)	42,485	28	-	-	-	42,513	42,353	47	114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2700)	42,485	28	-	-	-	42,513	42,353	47	114
·경제자유구역지원(2733)	42,485	28	-	-	-	42,513	42,353	47	114

③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전년이월	변 경			예산현액	지출	차년이월	불용
			이체	전용	예비비				
합 계	6,515	-	-	-	-	6,515	6,515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0)>	6,515	-	-	-	-	6,515	6,515	-	-
□에너지및자원개발(115)	664	-	-	-	-	664	664	-	-
○에너지자원정책(5100)	664	-	-	-	-	664	664	-	-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664	-	-	-	-	664	664	-	-
□산업혁신지원(117)	5,851	-	-	-	-	5,851	5,851	-	-
○지역경제활성화(3300)	5,851	-	-	-	-	5,851	5,851	-	-
·지역산업경쟁력강화(3372)	3,100	-	-	-	-	3,100	3,100	-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3375)	2,751	-	-	-	-	2,751	2,751	-	-

④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전년이월	변 경			예산현액	지출	차년이월	불용
			이체	전용	예비비				
합 계	7,381	-	-	-	-	7,381	6,689	557	13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0)>	7,381	-	-	-	-	7,381	6,689	557	136
□산업혁신지원(117)	7,381	-	-	-	-	7,381	6,689	557	136
○지역경제활성화(3300)	7,381	-	-	-	-	7,381	6,689	557	136
·지역산업경쟁력강화(3362)	3,100	-	-	-	-	3,100	3,100	-	-
·지역투자유치활성화(3363)	4,281	-	-	-	-	4,281	3,589	557	136

(2) 예산변경 내역

① 전년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4,392	
전년도 이월	314	○ 지방시대위원회지원 - 계약체결 지연 및 용역기간 미도래 등으로 연구용역비 이월
	4,050	○ 사회적경제혁신성장 - 지자체의 매칭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이월
	28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 홈페이지 관리 계약잔금 및 연구용역 계약금 이월

전년도 이월액은 총 43억 9,200만원이며, 지방시대위원회지원 사업에서 용역 미완료에 따른 잔금 3억 1,400만원 및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사업에서 지자체의 매칭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40억 5,000만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사업에서 용역 미완료에 따른 잔금 2,8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② 전 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74	
전용	±74	○ 지방시대위원회의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

지방시대위원회의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7,400만원을 자체전용하였음.

③ 이 체 : 해당사항 없음

④ 예비비 사용액 : 해당사항 없음

(3)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125,892	
차년도 이월	59	○ 지방시대위원회지원 - 계약체결 지연 및 용역 기간 미도래 등으로 연구용역비 이월
	4,050	○ 사회적경제혁신성장 - 지자체의 매칭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이월
	5,549	○ 지역투자촉진 - 지자체의 매칭 지방비 미확보 및 정산 지연에 따른 이월
	557	○ 지역투자촉진(세종) - 지원기업의 중요재산 부기등기 지연으로 정산금 이월
	115,631	○ 투자유치기반조성 - 외투기업 투자심리, APEC 계기 투자소요 등으로 이월 필요
	47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 홈페이지 관리 계약잔금 및 연구용역 계약금 이월

차년도 이월액은 1,258억 9,200만원으로 지방시대위원회지원 사업에서 용역 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5,900만원,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사업에서 지자체의 매칭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40억 5,000만원, 지역투자촉진 사업에서 지자체의 매칭 지방비 미확보 등에 따른 55억 4,900만원, 지역투자촉진(세종) 사업에서 지원기업의 중요재산 부기등기 지연으로 인한 정산금 5억 5,700만원,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에서 외투기업 투자소요 등에 따른 1,156억 3,100만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사업에서 연구용역 계약잔금에 따른 4,7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4)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58,848	
불용	34	○ 지방시대위원회인건비 집행잔액 - 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305	○ 지방시대위원회지원 집행잔액 - 위원회 운영경비 집행잔액
	21	○ 공무원연금기금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잔액 - 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집행잔액
	58,093	○ 지역투자촉진 집행잔액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136	○ 지역투자촉진(세종) 집행잔액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142	○ 투자유치기반조성 집행잔액 - 경상경비 집행잔액
	4	○ 외국교육연구기관등유치지원 집행잔액 - 지방단체경상보조 집행잔액
	114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집행잔액 - 경제자유구역단 운영경비 집행잔액

불용액은 588억 4,800만원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인건비 사업의 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3,400만원, 지방시대위원회지원 사업의 위원회 운영경비 집행잔액 3억 500만원, 공무원연금기금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사업의 퇴직수당부담금 집행잔액 2,100만원, 지역투자촉진 사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580억 9,300만원, 지역투자촉진(세종) 사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00만원,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의 경상경비 집행잔액 1억 4,2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등유치지원 사업의 지방단체경상보조 집행잔액 400만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사업의 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자산			
Ⅰ.금융자산	2	307,881,664,779	185,286,265,886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	60	56
2. 투자증권	2-3	-	-
3. 정부출자금	2-4	301,516,600,000	184,536,600,000
4. 미수채권	2-6	6,365,064,719	749,665,830
Ⅱ.유·무형자산	3	696,811,962,920	646,589,600,128
1. 일반유형자산	3-1	696,806,621,870	646,574,551,981
2. 무형자산	3-4	5,341,050	15,048,147
Ⅲ.기타자산	4	296,053,447	340,409,780
자산계		1,004,989,681,146	832,216,275,794
부채			
Ⅰ.차입부채	5	73,359,516,084	16,718,193,324
1. 기타차입부채	5-4	73,359,516,084	16,718,193,324
Ⅱ.충당부채	6	4,573,267	90,190,247
1. 기타충당부채	6-5	4,573,267	90,190,247
Ⅲ.기타부채	7	-	-
부채계		73,364,089,351	16,808,383,571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	-
Ⅱ.적립금및잉여금		847,899,709,777	735,111,067,445
Ⅲ.순자산조정	18	83,725,882,018	80,296,824,778
순자산계		931,625,591,795	815,407,892,223
부채와순자산계		1,004,989,681,146	832,216,275,794

지특회계 2025년도 총자산은 1조 50억원으로 전기 8,322억원 대비 1,728억원(20.8%) 증가하였음.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16-1**	**1,001,632,536,776**	**(88,331,823,988)**	**913,300,712,788**	**985,501,700,501**	**(80,970,183,662)**	**904,531,516,839**
1.에너지자원정책		13,462,512,000	(180,910)	13,462,331,090	11,085,596,000	-	11,085,596,000
2.에너지기술기반확충		13,034,000,000	(2,705,465,810)	10,328,534,190	-	-	-
3.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5,391,519,500	(638,424,810)	4,753,094,690	5,376,000,000	(4,938,606,319)	437,393,681
4.지역경제활성화		627,218,420,166	(67,931,199,911)	559,287,220,255	611,626,672,240	(65,478,515,615)	546,148,156,625
5.주력산업진흥		3,188,000,000	(545,231,860)	2,642,768,140	1,378,000,000	-	1,378,000,000
6.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296,993,190,700	(15,372,254,485)	281,620,936,215	310,276,324,320	(4,425,103,964)	305,851,220,356
7.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42,344,894,410	(1,139,066,202)	41,205,828,208	45,759,107,941	(6,127,957,764)	39,631,150,177
Ⅱ.관리운영비	**16-2**			**-**			**-**
Ⅲ.비배분비용	**16-3**			**-**			**-**
Ⅳ.비배분수익	**16-3**			**-**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913,300,712,788**			**904,531,516,839**
Ⅶ.재정운영결과(Ⅴ-Ⅵ)				**913,300,712,788**			**904,531,516,839**

지특회계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프로그램총원가 1조 16억원을 투입하였으며, 프로그램수익 883억원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총 9,133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수익(I+II)		**88,331,823,988**	**80,970,183,662**
Ⅰ.이전수익	**12**	**-**	**-**
Ⅱ.국가운영수익	**13**	**88,331,823,988**	**80,970,183,662**
1. 이자수익	13-3	106,006	-
2. 기타국가운영수익	13-7	88,331,717,982	80,970,183,662
비용(III+IV)		**1,001,632,536,776**	**985,501,700,501**
Ⅲ.이전비용	**14**	**988,442,719,970**	**976,153,765,000**
1. 국고보조사업비	14-1	539,670,658,970	593,676,765,000
2. 출연사업비	14-2	447,632,000,000	382,477,000,000
3. 기타이전비용	14-5	1,140,061,000	-
Ⅳ.국가운영비용	**15**	**13,189,816,806**	**9,347,935,501**
1. 인건비	15-3	747,170,966	738,103,256
2. 운영비	15-5	2,901,836,062	2,525,304,507
3. 감가상각비	15-6	97,519,348	157,818,708
4. 자산평가손실	15-7	5,363,243,860	2,554,137,312
5. 기타국가운영비용	15-8	4,080,046,570	3,372,571,718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913,300,712,788**	**904,531,516,839**

지특회계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1조 16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883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총 9,133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4]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	**506,877,186,674**	**79,070,443,588**	**585,947,630,262**
1. 보고금액		-	506,877,186,674	79,070,443,588	585,947,630,262
Ⅱ.재정운영결과		**-**	**904,531,516,839**	**-**	**904,531,516,839**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1,132,765,397,610**	**-**	**1,132,765,397,610**
1. 재원의조달		-	1,219,421,195,870	-	1,219,421,195,870
(1) 국고수입		-	1,219,418,279,550	-	1,219,418,279,550
(2) 기타이전수익	12-4	-	2,916,320	-	2,916,320
2. 재원의이전		-	86,655,798,260	-	86,655,798,260
(1) 국고이전지출		-	86,655,798,260	-	86,655,798,260
Ⅳ.조정항목		**-**	**-**	**1,226,381,190**	**1,226,381,190**
1. 자산재평가이익	18, 3-3	-	-	1,226,381,190	1,226,381,190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735,111,067,445**	**80,296,824,778**	**815,407,892,223**
Ⅵ.당기 기초순자산		**-**	**735,111,067,445**	**80,296,824,778**	**815,407,892,223**
1. 보고금액		-	735,111,067,445	80,296,824,778	815,407,892,223
Ⅶ.재정운영결과		**-**	**913,300,712,788**	**-**	**913,300,712,788**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1,026,089,355,120**	**-**	**1,026,089,355,120**
1. 재원의조달		-	1,108,323,424,860	-	1,108,323,424,860
(1) 국고수입		-	1,108,321,843,550	-	1,108,321,843,550
(2) 국고이전수입		-	-	-	-
(3) 사회보험수익	8	-	-	-	-
(4) 부담금수익	12-2	-	-	-	-
(5) 제재금수익	12-3	-	-	-	-
(6) 기타이전수익	12-4	-	1,581,310	-	1,581,310
2. 재원의이전		-	82,234,069,740	-	82,234,069,740
(1) 국고이전지출		-	82,234,069,740	-	82,234,069,740
(2) 세출예산지출액		-	-	-	-
(3) 기타이전비용	14-5	-	-	-	-
Ⅸ.조정항목		**-**	**-**	**3,429,057,240**	**3,429,057,240**
1. 자산재평가이익	18, 3-3	-	-	3,429,057,240	3,429,057,240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	**847,899,709,777**	**83,725,882,018**	**931,625,591,795**

지특회계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9,316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8,154억원 대비 1,162억원(14.3%) 증가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9,133억원 및 국고이전지출 822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조 1,083억원 및 조정항목인 자산재평가이익 34억원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4] 현금흐름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Ⅰ.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	**174,918,152,004**	**-**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190,895,587,086	-
(1) 기타유입		82,573,743,536	-
(2) 국고수입		1,108,321,843,550	-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015,977,435,082	-
(1) 보조금지급		477,345,427,970	-
(2) 출연금지급		447,632,000,000	-
(3) 인건비지급		832,681,940	-
(4) 기타유출		7,933,255,432	-
(5) 국고이전지출		82,234,069,740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2	**(174,918,152,000)**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74,918,152,000	-
(1) 금융상품, 투자증권취득		116,980,000,000	-
(2)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취득		57,936,832,000	-
(3) 무형자산취득		1,320,00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3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Ⅳ.현금의증감(Ⅰ+Ⅱ+Ⅲ)		**4**	**-**
Ⅴ.기초의현금		**56**	**-**
Ⅵ.기말의현금(Ⅳ+Ⅴ)		**60**	**-**

지특회계에서는 2025년도 중 운영활동으로 1,749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나, 투자활동으로 1,749억원이 유출되었으며, 현금은 총 4원 증가함에 따라 기초현금 56원에서 기말현금은 60원이 됨.

자산 · 부채조정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자산	부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1,000,017,264,777**	**-**
1. 국가채권현재액	1,994,560,970	-
2. 국유재산현재액	997,870,523,491	-
3. 물품현재액	152,180,316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1,004,989,681,146**	73,364,089,351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4,972,416,369**	73,364,089,351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4,666,557,196	73,364,089,351
4. 대상차이(D)	305,859,173	-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결산조정항목차이 :
- 선급금 295,995,990원, 선급비용 57,457원, 미수채권 4,822,831,229원, 대손충당금 (-)452,327,480원
- 미지급금 73,359,516,084원, 충당부채 4,573,267원

② 대상차이 :
- 국고예금 50원, 임차개량자산 305,859,113원

4. 검토의견

(1) 기타 기반시설지원: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필요

① 결산 현황

‘기타 기반시설 지원’(2733-409)은 경제자유구역 내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141]의 도로,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45억원 7,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기타 기반시설 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타 기반시설 지원	24,576	24,576	-	-	-	24,576	24,576	-	-	27,159

자료: 산업통상부

②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필요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보조금[142]을 교부하면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방비를 매칭하여 집행하는데, 산업통상부는 매년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게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보조사업비 실집행률이 다소 부진하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141) 기타/주요 기반시설지원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원 이상인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예타대상)은 주요 기반시설, 500억원 미만은 기타 기반시설로 구분되며, 국비 지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 중임.

142)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최근 5년간 기타 기반시설 지원 보조금 교부 및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교부액 (C)	지자체				
	본예산	추경(A)			예산 현액(D)	집행액 (E)	이월액	불용액*	E/D
2021	53,871	53,871	53,871	53,871	54,856	40,936	13,518	-	74.6
2022	36,241	32,641	32,641	32,641	46,326	31,295	15,031	-	67.6
2023	43,656	43,656	43,656	43,073	58,104	46,124	11,980	-	79.4
2024	34,550	34,550	34,550	34,550	44,677	33,930	10,744	3	75.9
2025	24,576	24,576	24,576	24,576	38,773	23,400	14,949	424	60.4

* (2024) 세풍산단 간선도로 집행잔액('22년도 예산 2,573,350) 반납 완료
(2025)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연내 반납 예정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도 기타 기반시설 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2025 국비			2025 지방비			실집행률 (국+지)
			예산 현액*	실집행	실집 행률	예산 현액*	실집행	실집 행률	
세풍산단 2단계 간선도로	'24~'29	29,756 (14,002)	3,000	0	0.0	3,000	0	0.0	0.0
해룡산단 간선도로	'24~'28	27,468 (13,734)	3,799	3,799	100.0	3,800	2,300	60.5	80.3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간선도로	'19~'26	24,753 (10,892)	1,216	0	0.0	797	0	0.0	0.0
웅동지구 진입도로	'13~'27	45,332 (22,376)	6,891	6,854	99.5	5,352	4,479	83.7	92.6
두동지구 진입도로	'18~'27	19,487 (9,741)	1,476	1,476	100.0	1,430	766	53.6	77.2
명지지구 2단계 간선도로 확장	'20~'28	32,713 (13,806.5)	1,500	1,500	100.0	1,500	1,500	100.0	100.0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	'20~'27	22,340 (11,170)	2,620	1,164	44.4	3,318	1,761	53.1	49.3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23~'27	29,101 (10,912)	1,105	88	8.0	1,461	411	28.1	19.4
R&D지구 간선도로	'23~'28	19,238 (9,187)	3,515	1,052	30.0	3,180	719	22.6	26.5
R&D지구 간선도로 2단계	'23~'29	6,689 (3,333.5)	2,789	8	0.3	1,000	8	0.8	0.4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17~'27	53,875 (24,200)	2,808	352	12.5	292	113	38.7	15.0
미단시티 진입도로	'19~'26	69,956 (22,190)	3,157	3,155	99.9	9,039	2,510	27.8	46.4

* '예산현액'은 2024년 이월 예산과 2025년 예산을 포함

자료: 산업통상부

구체적으로 2025년도 동 사업 결산 내역을 보면 보조금 예산이 집행된 12개 내역사업 중 실집행률(국비+지방비)이 70% 미만인 내역사업이 8개이고, 20%에 미치지 못한 내역사업도 5개임.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산자중기위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실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산업통상부가 지자체의 실집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연례적인 이월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아직 적정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

2024년 및 2025년 실집행 부진 내역사업

(단위: %)

내역사업	실집행률(국비)		집행부진 사유	향후 사업추진 계획
	'25	'24		
R&D지구 간선도로	30.0	59.7	-간선도로 위 지장물 이전 지연 및 하천 교량 설치를 위한 울주군 소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공사 중지	-지장물 이전 대체부지 확보 및 소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26.9.) 후 공사 추진
R&D지구 2단계 간선도로	0.3	0.7	-토지 협의보상이 불발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및 관련 절차 진행에 따라 보상비 지급 지연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 완료('26.11.)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12.5	66.7	-시공사의 자금 경색으로 '25.7. 이후 실질적인 공사가 중단되어, '25.11. 공사계약이 해지	-시공사 재선정('26.6.) -공사 재개('26.8.)

*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의 경우 2024년에 2023년도의 이월 예산 사용(당해연도 예산 미편성)
자료: 산업통상부

특히 토지보상 문제, 행정협의, 민원 제기 등 일단 공사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2024년과 2025년에 연속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내역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24년 공사중단 사유나 사업 추진 속도 등 실집행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면 불용·이월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내 전년도 이월액, 사업 추진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143], 교부된 보조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관서의 장이 지자체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144],

공사비 비목(420-03)은 계속사업의 경우 잔여사업비, 집행실적,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투자소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145],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각 공사의 추진현황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국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3)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12
144)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p.32
145)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81

한편, 2025년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모든 내역사업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고, 보조금 관련 법령[146]에 따라 보조금을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였는데,

이는 2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1차 보조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음.

2025년 내역사업별·회차별 보조금 교부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지급회차	지급일(월일)	지급액
세풍산단 2단계 간선도로	3,000	3,000	1차	4. 25.	1,500
			2차	5. 20.	1,500
해룡산단 간선도로	1,500	1,500	1차	5. 26.	1,000
			2차	12. 8.	500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간선도로	1,216	1,216	1차	4. 28.	608
			2차	5. 30.	608
웅동지구 진입도로	4,873	4,873	1차	2. 20.	2,000
			2차	3. 21.	2,000
			3차	5. 26.	873
두동지구 진입도로	1,018	1,018	1차	2. 20.	422
			2차	3. 21.	205
			3차	4. 28.	216
			4차	5. 26.	175

14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지급회차	지급일(월일)	지급액
명지지구 2단계 간선도로 확장	1,500	1,500	1차	5. 26.	500
			2차	6. 23.	1,000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	1,678	1,678	1차	1. 20.	1,000
			2차	2. 21.	678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1,000	1,000	1차	1. 20.	200
			2차	6. 23.	800
R&D지구 간선도로	2,465	2,465	1차	2. 21.	1,409
			2차	8. 25.	686
			3차	12. 8.	370
R&D지구 간선도로 2단계	1,150	1,150	1차	4. 28.	575
			2차	12. 8.	575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2,409	2,409	1차	4. 28.	1,209
			2차	5. 26.	1,200
미단시티 진입도로	2,767	2,767	1차	2. 20.	1,400
			2차	3. 24.	1,367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2025년 각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예컨대 ‘세풍산단 2단계 간선도로’,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와 같이 1차 보조금을 교부한 뒤 한 달 이내에 2차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중앙관서의 장이 1차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짧은 시간 내에 2차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R&D지구 간선도로’, ‘R&D지구 간선도로 2단계’와 같이 당해연도 집행 상황이나 남은 집행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남은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금 교부 시기나 방법에 대한 산업통상부내 통일적인 내부 규율이 없어 각 내역사업마다 보조금 교부 시점이 불규칙하고 산재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관리부서가 내역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1차 보조금이 시급하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초에 1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6개월 정도의 여유를 둔 뒤 하반기에 2차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교부 방법에 대한 통일적 내부 준칙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각 내역사업의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분할 교부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2) 산업단지환경조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수익금 관리 강화 필요 등

① 결산 현황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은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874억 7,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5년도 산업단지환경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산업단지 환경조성	331,378	387,478	-	-	-	387,478	387,478	-	-	409,920

자료: 산업통상부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수익금 관리 강화 필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은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미함.

동 사업의 내역사업들 중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물류플랫폼’,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AX실증산단구축’, ‘지역특성화제조기반구축’ 등 총 6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62억 5,000만원의 사업출연금이 전액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교부·집행되었음.

’25년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합관제센터	23,000	23,000	-	-	-	23,000	23,000	-	-	20,000
스마트물류플랫폼	16,000	16,000	-	-	-	16,000	16,000	-	-	15,000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14,000	14,000	-	-	-	14,000	14,000	-	-	14,000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23,000	23,000	-	-	-	23,000	23,000	-	-	8,000
지역특성화제조기반구축	30,250	30,250	-	-	-	30,250	30,250	-	-	25,300
AX실증산단구축	-	40,000	-	-	-	40,000	40,000	-	-	26,000
합 계	106,250	146,250	-	-	-	146,250	146,250	-	-	108,300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자에게 발생한 수익의 사용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제정·시행 중임.

이 중 수익금의 사용·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현행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은 위 6개 내역사업 모두에 대하여 사업종료 이후 성과물을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을 의미함147))의 소유로 하고 있고, 성과활용기간 또한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148)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세부유형별 소유권 및 성과활용기간에 관한 사항

구분	사업종료 이후 소유권	성과활용기간
공정혁신시뮬레이션 센터	수행기관의 소유	5년 이내
스마트물류플랫폼	수행기관의 소유 ※ 단, 공동물류센터 내 설치한 물류첨단화 설비의 소유권은 공단 소유로 함	5년 이내
통합관제센터	지자체의 소유로 할 수 있음	5년 이내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수행기관의 소유	5년 이내
지역특성화제조기반구축	수행기관의 소유	5년 이내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수행기관의 소유	5년 이내

자료: 산업통상부

‘성과활용기간’은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수행결과의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지침은 각 과제별로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종료시까지 발생하는 당해연도 수익금을 적립하였다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149).

147)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거나 사업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추진·관리하는 단체, 학교, 기관 또는 기업을 의미하고,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학교, 기관 또는 기업을 뜻함.

148)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동 지침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및 과제별 특성에 따라 공단이 5년 이상의 성과활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동 지침에 첨부된 **세부사업별 가이드라인**에는 **내역사업별 성과활용기간이 5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음.

누적수익금 미사용 기관 현황(26년 6월 기준)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명)	세부사업-내내역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성과활용기간	사업기간 동안 총 누적 수익금 (A)	성과활용기간 수익금 누적 발생(B)	총액 (C=A+B)	C 중 수행기관 보유액
반월 시화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13,548 ('20.4~ '21.12)	5년	-	10	10	10
경북 구미	지역특성화 제조기반 구축	19,319 ('20~ '23)	5년	914	1,403	2,317	2,317
대구 성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25,953 ('23.4~ '25.12)	5년	447	2	450	450
대구 성서	지역특성화 제조기반 구축	11,400 ('24.04~ '25.06)	5년	22	22	44	44
전남 여수	스마트물류 플랫폼	5,600 ('22.07~ '24.12)	5년	-	90	90	-
전남 여수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9,691 ('21.5~ '22.12)	5년	-	25	25	25
전남 여수	지역특성화 제조기반 구축	25,646 ('23.4~ '25.12)	5년	255	19	274	274

자료: 산업통상부

149) **「스마트그린산단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제24조(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공단은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고 또는 협약으로써 수행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수익 활동을 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적립한 수익금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행기관의 장이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의 사용 목적 및 계획을 명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차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수입금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수익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그런데,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현재까지 수행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세부 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산업단지 내 총 7개 내역사업에 대해서 수익금의 성과활용기간 내 사용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례로, 경북 구미 산업단지 내 지역특성화제조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개발기간 동안 총 사업비 193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9억 1,400만원의 수익이 부가적으로 발생하였고, 2023년 성과활용기간이 개시된 이후 2026년 6월까지 14억 300만원의 수익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수익금 누적 총액 23억 1,700만원이 성과물의 운영·관리 소요에 활용되지 못한 채 전액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각 과제별 사업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수익금이 성과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에 적시에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개별 산업단지의 정주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및 프로그램 등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개별 성과물의 사용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의 관리대상기간을 현행처럼 성과활용기간 5년으로 한정하는

방침이 타당한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SPC 사업의 투자율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은 정부출자금과 민간투자금을 펀드로 조성하여 노후산단 내 업종고도화, 창업·혁신, 지원·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93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50].

매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 민간위탁사업비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교부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매년 펀드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예산액을 전액 지급하고, 운용사는 다른 민간기관과 투자약정액 등을 유치한 사업자(이하 “SPC”)[151]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투자협약에 따라 펀드운용기간 동안 해당 SP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단계별 협약체결 구조

위수탁협약	⇨	업무협약(펀드설정)	⇨	투자협약
산업부-산단공		산단공-운용사		운용사-SPC

자료: 산업통상부

150) 2025년까지 동 내내역사업에 간접비 성격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위탁관리비용 25억원이 2026년도부터 분리편성되었음. 이를 고려하면, 실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대한 순출자금 감액분은 493억원에서 25억원을 제외한 468억원임.

151)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와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SPC에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됨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2021, 2023,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실제 SPC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반복·제기된 바 있음.

2021~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구 분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수준	조치사항
2021회계연도 결산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투자사업별로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도개선	○ 주간사업자 선정과정을 삭제하는 등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시 조기에 자산운용사를 모집 공고하는 등 실제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음 - 사업관리지침 개정 및 자산운용사 모집 공고 조기 완료
2023회계연도 결산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출자된 자금의 실제 SPC 투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실제 결성 및 집행 가능한 규모를 고려하여 출자금 예산을 조정할 것	주의	○ 펀드 예산이 조기에 SPC에 납입될 수 있도록 2025년 자산운용사 선정 공모를 '24.10.31일 실시하였으며 자금흐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관리시스템 개편 용역 완료('24.9)
2024회계연도 결산	○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법인 설립 지연에 따른 사업 효과성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 기존의 자산운용사 및 투자사업을 동시에 선정하는 사업구조*에서, 투자사업 수시공모를 통해 사업 POOL을 확보하고 우선순위(출자 준비된 사업 등)에 따라 신속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 개선

그러나, 반복되는 제도개선 및 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결산 기준 1,193억원의 정부 출자금을 통해 모집한 총투자약정액 1조

1,824억원 중 실제 SPC 결성이 이루어져 투자된 금액은 331억원으로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동 펀드는 투자협약 체결 이후 인허가, 착공 등 사업 진척에 따라 펀드 운용기간에 걸쳐 투자금이 순차 집행되는 구조이며, 민간 대출약정액은 공정률에 따라 인출되는 특성상 결성 초기 연도의 총투자약정액 대비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산업통상부의 설명임.

최근 4년간 산단환경개선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26년 5월말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1,280	958	1,868	1,193
펀드 조성액(A)		1,277	964	1,885	1,204
	정부(B)	1,259	937	1,845	1,170
	민간(C)	18	27	40	34
그 외 민간투자(D)		4,872	7,264	11,596	10,620
총투자약정액(E)		**6,149**	**8,228**	**13,481**	**11,824**
SPC 집행액(F)		**5,134**	**1,079**	**4,744**	**331**
SPC 집행률(F/E)		**83.5%**	**13.1%***	**35.2%**	**2.8%**

주1) A, B, C: 펀드조성시 협약된 금액
D: SPC가 민간측 대출·투자받기로 약정받은 금액
E: A+D, 즉, 펀드조성액과 그 외 민간투자자가 협약한 금액 기준
F: 운용사 및 민간투자자가 SPC에 실제로 집행·지급한 금액
주2) 2026년 5월말 기준 작성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과거 교부된 출자금의 2026년 5월 말 기준 SPC 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13.1%, 2024년의 경우 35.2%에 불과하여 실제 산업단지 환경조성에 누적 투자된 금액의 총투자약정액 대비 비중이 현재까지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기준 총 9개 사업의 경우 운용사 해지, 사업자포기의 사유로 SPC 결성 이후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산단환경개선펀드 SPC 결성 이후 사업취소 건(2025년)

취소시기	산업단지	투자사업	정부투자액 (억원)	취소사유	선정 시기
2025.2.	시화	물류센터	350	운용사해지(사업 지연)	2022.2.
2025.2.	양산	물류센터	43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0.5.
2025.4.	광주평동	지식산업센터	250	운용사해지(사업 지연)	2021.4.
2025.5.	명지녹산	물류센터	10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3.2.
2025.6.	구미	비즈니스호텔	15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4.6.
2025.6.	울산미포	공업용수 공급시설	280	운용사해지(인허가 지연)	2024.2.
2025.6.	천안제3	업무복합시설	25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4.2.
2025.6.	여수	암모니아 배관망	100	운용사해지(인허가 지연)	2024.2.
2025.6.	창원	업무복합시설	400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2024.2.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회의 연례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산단환경개선펀드 내 SPC 결성이 지연됨에 따라 국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실태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 조성된 펀드의 SPC 결성·집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출자금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3) 지역균형발전지원: 비R&D 과제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간접비 계상 필요

① 결산 현황

‘지역균형발전지원’(3362-305)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성과 공유·확산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65억 2,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5년도 지역균형발전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균형발전 지원	16,528	16,528	-	-	-	16,528	16,528	-	-	21,163

자료: 산업통상부

② 비R&D 과제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간접비 계상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균형발전 정보협력 및 성과확산’ 사업은 지자체-부처-국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보를 제공·교류하는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사업의 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사업출연금 예산현액 16억 7,000만원이 전액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교부·집행되었음.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사업출연금 16억 7,0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고,

이 중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지역균형성장 비전에 따른 정책, 사업, 통계 등 다양한 균형성장 정보 제공 및 정보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사업출연금 16억 7,000만원 중 11억 7,200만원을 자체 집행하고, 4억 9,800만원을 산업연구원(6,000만원)과 한국사업기술문화재단(3억 3,800만원), 한국생산성본부(1억원)에 교부하였음.

균형발전 정보협력 및 성과협력 확산 자체사업비(산기평) 집행 내역

추진체계	추진 업무	예산	세부 내역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총괄 및 주관)	·"균형성장정책 정보협력 및 성과확산" 기획 및 사업총괄 ·균형성장 플랫폼 구축/운영 정보시스템 유지/보안관리 등 ·균형성장 빅데이터 구축 및 정보 확산, 공공데이터 정보 공개 및 데이터 연계 등 ·지역균형 콘텐츠 기획 및 제작/관리, NABIS 시상식 ·균형성장 관련 스토리텔링 공모전 등	1,172백만원	① 직접비(582백만원) - 수용비 및 수수료(530백) * NABIS 시스템운영 및 통합유지보수(280백), 균형발전 현황판 개선 및 유지보수(96백), 균형성장 DB 표준화 및 서비스 기능 개선(100백), 보고서 제본·인쇄비 등(54백) - 기술정보활동비(36백만원) * 정보협력 전문가 수당 및 회의비용, 콘텐츠 제작/관리, 정보협력 행사 등 - 여비 및 기타사업관리 등(16.3백만원) * 정보협력 회의 및 출장비, 사무용품, 조달수수료 등 ② 인건비(420백만원) **③ 간접비(17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해당 과제비 11억 7,200만원의 세부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직접비 5억 8,200만원, 인건비 4억 2,000만원 외에 간접비 1억 7,000만원(과제비의 15%)을 계상하여 기관운영비로 흡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균형발전사업 조사·분석·평가'(2025년도 예산현액 29억 7,000만원)는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균형발전사업의 성과종합,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반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29억 7,0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4억 3,300만원을 마찬가지로 간접비로 계상하여 기관운영경비로 흡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균형발전사업 조사·분석·평가 자체사업비(산기평) 집행 내역

추진체계	추진 업무	예산	세부 내역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직접수행, 주관+수행)	·지역균형성장사업 추진실적 종합평가 ·지방시대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지역균형성장사업 성과계획(성과목표·지표) 검토 ·지특회계 예산편성 및 차등지원 검토 ·균형성장사업 우수사례 발굴, 우수사례집 발간 및 성과공유 ·지역균형성장사업 종합평가 결과 부진사업 심층점검 ·지역균형성장사업 사업담당자 역량강화(설명회/간담회 등) ·지역균형성장사업 평가자문단 구성·운영 등	2,970 백만원	**① 직접비(13.52억원)** **- 기술정보활동비(891백만원)** * 균형성장사업 종합평가, 성과계획서 및 우수사례 회의 수당, 회의비 및 임차료 * 평가자문단 교육, 평가계획 설명회 등 **- 수용비 및 수수료(332백만원)** * 우수사례집 제작,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행사 * 균형성장사업 평가결과보고서 및 평가백서 인쇄 등 **- 여비 및 기타사업관리비(129백만원)** * 업무관련 근거리/국내/국외 출장비용 * 소모품비, 우편료 등 **② 인건비(11.85억원)** **③ 간접비 (4.33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이 자체 사업비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 개 내역사업에서 간접비로 계상하여 기관운영비로 흡수한 것과 관련하여, 산

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부 고시)」제114조제3항[152]에 따라 비영리기관 등에 적용되는 간접비 고시비율인 17%를 인용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해당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연구개발비 사용의 기준을 정한 것[153]으로, 동 내역사업과 같이 R&D 사업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출연금에 대해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간접비 계상의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5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제1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한다.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 통폐합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중 어느 하나를, 분리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산업통상부 소관 다른 세부사업인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내 사업출연금 비목으로 편성된 각 내역사업[154]은 동 내역사업과 유사하게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출연금을 전액 교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해당 사업출연금에 대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여 각 내역사업 수행에 따른 기관운영경비 추가 소요를 충당하고 있는데,

각 내역사업의 사업출연금 예산 대비 간접비 비율은 최대 5.26%로 동 내역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155]

'산업단지환경조성' 각 내역사업별 한국산업단지공단 간접비 계상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5년 정부출연금 (A)	25년 간접비 (B)	사업비대비 간접비 구성비율(B/A)
휴폐업공장리모델링	8,400	298	3.68
청년문화센터 건립	48,100	1,489	3.19
혁신지원센터 구축	1,575	63	4.17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플러스	29,253	1,006	3.56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15,600	624	4.17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3,000	98	3.36
청년친화형공용편의시설	5,000	250	5.26
합 계	230,228	6,148	2.67

자료: 산업통상부

154)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건립, 혁신지원센터구축, 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청년친화형공용편의시설

155)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수행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하는 간접 수행업무 중심이나, 동 사업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며 업무범위 및 역할과 사업성격이 상이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R&D 과제가 아닌 일반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도 R&D 과제에 적용되는 간접비 고시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관운영경비에 충당하는 집행 관행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목적의 사용이 증빙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출연금을 집행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예산 집행률 저조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① 결산 현황

‘지역산업위기대응’(3362-357)은 산업위기지역의 위기 산업 및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맞춤형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1억 6,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산업 위기대응	-	5,165	-	-	-	5,165	5,165	-	-	24,667

자료: 산업통상부

② 이차보전 예산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문제

동 사업 중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내역사업(2025년 2차 추경 신규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소재 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1.5~3%p의 이자율 차이를 보전·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금 지원 예산 11억 4,000만원과 사업운영비 2억원을 합한 2025년도 예산현액 13억 4,000만원이 전액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교부되었으며, 이 중 이차보전금 지원 예산 11억 4,000만원 중 3억 1,9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산업 위기대응 이차보전지원	-	1,340	-	-	-	1,340	1,340 (519)	-	-	15,145
이차보전금	-	1,140	-	-	-	1,140	1,140 (319)	-	-	15,145
기관운영 출연금	-	200	-	-	-	200	200 (200)	-	-	-

주: 괄호 안의 금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실집행 금액임. 2026년도 예산부터 사업운영비인 기관운영출연금을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액 미기재
자료: 산업통상부

사업수행체계를 살펴보면,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 이후 신청기업이 서류를 접수하면,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기업에 대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게 되고,

추천을 받은 기업이 취급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고, 이차보전분 1.5~3%p를 이차보전금 예산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관련 대출 진행단계

단계	주요내용
1. 추천서 발급	KIAT → 기업
▼	
2. 취급금융기관 상담	기업 → 취급금융기관 · 예상적용금리, 약정예정일자 등 상담
▼	
3. 신용평가 등	취급금융기관 · 신용도, 기존대출이력, 담보, 적용금리 등 사전검토
▼	
4. 대출접수(심사)	취급금융기관 · 접수·심사 이후 최종 대출약정 체결 여부 결정
▼	
5. 결과 통보	취급금융기관 → 기업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이차보전지원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차보전지원금으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규모는 3억 1,940만원으로 이차보전금 예산 11억 4,000만원 대비 28.0%에 불과하였음.

뿐만 아니라, 2026년 5월 말 기준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이차보전금 지급액은 18억 7,200만원에 불과하여 2026년 예산액 151억 4,500만원의 12.4%에 불과한 등 진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5년 9월 이후 이차보전지원 실시 현황

(단위: 건, %p, 백만원)

시기	이차보전지원 실시 건수	월별 실시 대출원금 총 평잔(A)	적용 평균 이차보전율(B)	이차보전지원금 실실집행액 (C=A*B)
2025.9월	5	22	3	1
2025.10월	50	587	3	18
2025.11월	126	3,651	3	110
2025.12월	162	6,387	3	192
소계 (25.9~12)	-	-	-	319
2026.1월	213	8,682	3	260
2026.2월	224	9,070	3	272
2026.3월	271	11,245	3	337
2026.4월	336	14,572	3	437
2026.5월	384	18,818	3	565
소계 (26.1~5)	-	-	-	1,872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당초에는 대출원금 1,140억원에 대하여 4개월(9~12월) 이차보전(3%p)을 전제로 11억 4,000만원의 이차보전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선행절차 등으로 실지원 시점이 지연되었고 사업 개시 초기에 수요기업 대상 인지도 확산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집행부진의 사유로 파악된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2025년 말 기준 총 278건의 대출 추천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까지 이루어진 건은 162건이었다고 밝혔음.

이를 고려할 때, 산업통상부는 수요기업·취급금융기관 대상 홍보 강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추천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실제 대출을 받는 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취급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이월 및 불용 과다에 따른 사업 수요 사전 점검 강화 필요

① 결산 현황

‘지역투자촉진’(3363-306)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218억 3,100만원 중 1,581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55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80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5년도 지역투자촉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투자 촉진	221,831	221,831	-	-	-	221,831	158,190	5,549	58,092	251,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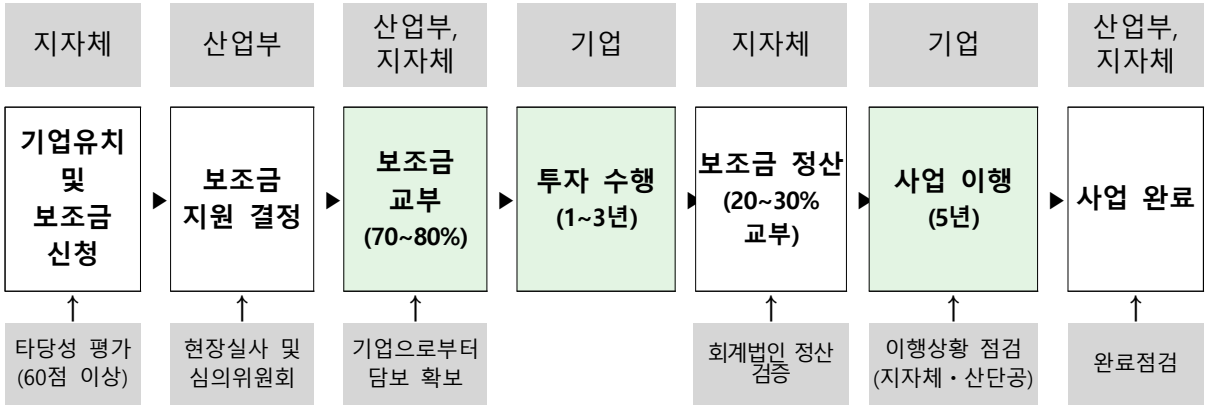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② 보조금 이월 및 불용 과다에 따른 사업수요 사전 점검 강화 필요

내역사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신·증설 투자보조금 1,785억원, 지방이전 보조금 55억 2,300만원, 투자완료 정산 지급 소요 367억 4,400만원을 합한 2,207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내역사업은 기업의 지방투자[156]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국비 및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방이전 시에는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방 신·증설 투자 시에는 설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자료: 산업통상부

동 내역사업은 기업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상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투자 수행 이후 보조금 정산 시점에 지방투자 기업의 투자 이행실적이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지급한 보조금을 투자이행률에 따라 환수 또는 반납받는 방식으로 지방투자의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결산 내역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 편성된 2025년도 지자체 자본보조금 예산 2,207억 6,700만원 중 실제 지자체에 교부·집행이 이루어진 금액은 1,571억 2,600만

156) 지방투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원으로 집행률이 71.2%에 불과하였고, 55억 4,900만원의 지자체 자본보조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580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

먼저, 이월액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지자체에서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 예산을 지자체 재정부족 및 추경편성 절차 등을 이유로 미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대구 지역은 15억 3,300만원, 경남 지역은 2억 4,400만원, 경기 지역은 7억 7,200만원의 지자체 자본보조금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또한 전북의 경우, 지자체에서 보조사업 정산을 완료하여 정산금액이 30억원으로 확정은 되었으나, 회계법인 정산검증보고서 발행이 지연되어 해당 금액이 이월되었음.

산업통상부는 향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보조금 정산 절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이와 같이 지방비 부족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보조금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들의 신규 설비투자 결정이 유보되었던 측면이 있고,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지방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다만,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157]제19조제9항에 따라 설비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액 소요의 70%를 선지급하겠다는 계획 하에 신·증설투자 보조금 1,785억원, 지방이전 보조금 55억 2,3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2025년도 예산 산출근거 대비 결산상 집행실적

구분	세부 내용
2025년도 예산 산출근거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 220,767백만원 • **(신·증설투자 보조금) 178,500백만원** * 85개사 × 3,000백만원(평균 국비지원액) × **70%(선지급)** • **(지방이전 보조금) 5,523백만원** * 3개사 × 2,630백만원(평균 국비지원액) × **70%(선지급)** • (투자완료 정산지급) 36,744백만원 *'25년 투자완료 예정기업 보조금 정산지급
2025년도 결산상 집행 실적	○ 157,126백만원 - 신·증설투자 : 125,914백만원(46개사×3,421.6백만원(평균지원액)×**80%(선지급)**) - 지방이전 : 8,360백만원(1개사×10,450백만원(평균지원액)×**80%(선지급)**) - 투자완료 정산지급 : 22,852백만원('25년 투자완료기업 정산지급액)

자료: 산업통상부

15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제21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지급과 정산 이후 지급비율을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동 내역사업을 신속집행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9조제10항 단서에 근거하여 선지급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여 집행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선지급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단순 집행실적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당초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사업 수요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된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사업추진에 앞서 지자체 투자유치 수요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보조금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 수요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투자유치기반조성: 금전적 유인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후 현금지원 규모 확대 여부 결정 필요

① 결산 현황

‘투자유치기반조성’(4901-302)은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매입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037억 9,600만원 중 2,880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156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200만원을 불용함.

’25년도 투자유치기반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투자유치기반조성	364,246	403,796	-	-	-	403,796	288,023	115,631	142	383,981

자료: 산업통상부

② 현금지원 규모 확대 외에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요인 분석 병행 필요

내역사업인 ‘현금지원’은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공장시설의 신·증설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통상부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② 평가위원회, 한도산정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③ 산업통상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간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현금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일정 요건[158] 충족)
지원요건	고도기술 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등 고려
지원자금	토지·건물 매입비, 임대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한도	40~50% (2025년 한시 50~75%)
국고 보조율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기회발전특구 80% ※ 첨단기술·연구개발(10%)과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분야(10%)는 80%의 한도 내에서 상향 가능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동 사업의 경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2,000억원에서 1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통해 '14개사 외국인투자 지원'에서 '16개사 외국인투자 지원'으로 목표가 상향되었음.

그런데 동 사업은 예산액 2,190억원 중 1,033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47.3%의 집행률을 기록하였고[159], 외국인투자 지원 수는 11개사로

15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일 것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신·증설(제1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신·증설(제2호) 등

*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 감면 가능

159) 집행 후 잔액 1,156억 3,1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 당시 투자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으나, 10월 APEC 행사를 계기로 기존 협의 대상 기업들과 추가로 협상을 하거나 신규로 발굴하는 등, 외투기업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상향된 목표인 ‘16개사’ 대비 68.7%의 성과 달성률을 보였음.

2025년 현금지원 대상 외국인기업 현황

기업명	현금지원 신청일	계약 체결일	현금지원액 (국비, 백만원)	업종 (KSIC 대분류 기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A사	’24.8.6	’24.10.17	7,488	반도체(C)	-
B사	’24.10.24	’25.1.22	3,542	화학(C)	-
C사	’24.10.18	’25.5.1	5,210	바이오(C)	-
D사	’24.9.30	’25.1.22	2,961	반도체(C)	-
E사	’25.3.28	’25.6.17	21,872	디스플레이(C)	-
F사	’23.11.2	’25.6.13	9,000	반도체(C)	-
G사	’25.2.24	’25.7.2	5,040	반도체(C)	-
H사	’25.2.18	’25.7.2	14,424	화학(C)	-
I사	’25.8.21	’25.12.4	4,800	컴퓨터(M)	-
J사	’25.10.30	’25.12.18	19,722	자동차(C)	-
K사	’25.8.28	’25.12.24	9,310	반도체(C)	-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및 심의 당시에는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 발표(’25.4월) 및 관세 협상 추진(’25.6월)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어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고,

2025년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기업 11개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일(’25.4.21.) 이전에 현금지원 계약이 체결된 기업은 3곳(A사, B사, D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 투자가 구체화됨에 따라 잔여예산을 이월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본예산 편성 시 설정한 목표 수치인 ‘외국인기업 14개 현금지원’의 달성 가능성 또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현금지원 사업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앞서, 하반기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당시 경제상황과 외국인기업이 평가하는 국내 투자유인 등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아울러, 2025년에 동 사업은 외국인기업 투자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160]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75%까지 확대하였으나,

2025년에 현금지원이 이루어진 11개 외국인기업 모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금전적 지원에 기반한 유인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이 또한 외국인기업 투자와 관련한 국내 규제가 미치는 영향 등에 기반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한도 확대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임.

16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외국인기업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예산 증액·특정 분야 지원 한도 확대에 앞서 금전적 유인책이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 확대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분석을 보다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1. 세입결산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증 감 (B-A)	증 감 사 유
합 계	2,284,287	2,331,813	47,526	
재산수입	19,663	37,543	17,880	
- 정부출자수입	4,757	12,685	7,928	출자 배당금 수입 증가
- 기타재산이자수입	14,906	24,858	9,952	발생이자 수입실적 증가
경상이전수입	43,818	57,300	13,482	
- 기타경상이전수입	43,818	57,300	13,482	사업비 회수금 수입실적 증가
전년도이월금	-	-	-	
- 전년도이월금	-	-	-	
세계잉여금	16,965	33,129	16,164	
- 전년도세계잉여금	16,965	33,129	16,164	전년도 세외수입실적 증가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203,841	2,203,841	-	
- 일반회계전입금	2,182,941	2,182,941	-	
- 기금전입금	20,900	20,900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소특회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임.

2025년도 소특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조 3,318억 1,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조 2,842억 8,700만원 대비 475억 2,600만원(2.08%) 증액되었는데, 이는 출자 배당금 수입 79억 2,800만원, 지원된 출연금 발생이자 99억 5,200만원, 회수금 134억 8,200만원, 전년도세계잉여금 161억 6,400만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임.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불납결손 및 미수납 사유
합 계	2,331,813	2,331,813	-	-	
재산수입	37,543	37,543	-	-	
- 정부출자수입	12,685	12,685	-	-	
- 기타재산이자수입	24,858	24,858	-	-	
경상이전수입	57,300	57,300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7,300	57,300	-	-	
전년도이월금	-	-	-	-	
- 전년도이월금	-	-	-	-	
세계잉여금	33,129	33,129	-	-	
- 전년도세계잉여금	33,129	33,129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203,841	2,203,841	-	-	
- 일반회계전입금	2,182,941	2,182,941	-	-	
- 기금전입금	20,900	20,900	-	-	

2025년도 소특회계 세입 수납액은 2조 3,318억 1,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조 3,318억 1,300만원 대비 100.0%가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5년도 소특회계의 예산현액 1조 8,228억 1,200만원 중 1조 8,228억 300만원이 지출되고,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단위: 백만원)

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예산	전년이월	변 경			예산현액	지출	차년이월	불용
			이체	전용	예비비				
합 계	1,822,812	-	-	-	-	1,822,812	1,822,803	-	9
□산업혁신지원(117)	1,822,812	-	-	-	-	1,822,812	1,822,803	-	9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3200)	1,822,812	-	-	-	-	1,822,812	1,822,803	-	9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3231)	1,551,853	-	-	-	-	1,551,853	1,551,853	-	-
·소재·부품·장비기반구축(3232)	263,926	-	-	-	-	263,926	263,926	-	-
·소재·부품·장비생태계구축(3241)	7,033	-	-	-	-	7,033	7,024	-	9

(2) 예산변경 내역

① 전년도 이월내역 : 해당 없음

② 전 용 : 해당 없음

③ 이 체 : 해당 없음

④ 예비비 사용액 : 해당 없음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해당 없음

(4)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경상경비 집행잔액	9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	9
합 계	**9**		**9**

2025년도 소특회계의 불용액은 900만원으로, 이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사업의 경상경비 집행 잔액임.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재 · 부품 · 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2025		2024	
자산				
Ⅰ.유동자산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2. 미수채권		-		-
3. 기타유동자산		-		-
Ⅱ.투자자산		**440,000**		**440,000**
1. 장기투자증권		440,000		440,000
Ⅲ.일반유형자산		**19**		**29**
1. 집기・비품・차량운반구	62		62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43	19	33	29
Ⅳ.사회기반시설		**-**		**-**
Ⅴ.무형자산		**-**		**-**
1. 소프트웨어		-		-
Ⅵ.기타비유동자산		**-**		**-**
자산계		**440,019**		**440,029**
부채				
Ⅰ.유동부채		**-**		**-**
1. 기타유동부채		-		-
Ⅱ.장기차입부채		**-**		**-**
Ⅲ.장기충당부채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부채계		**-**		**-**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440,019**		**440,029**
Ⅲ.순자산조정		**-**		**-**
순자산계		**440,019**		**440,029**
부채와순자산계		**440,019**		**440,029**

소특회계의 2025년도 자산은 4,400억 1,900만원임.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재 · 부품 · 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단위: 억원)

	주석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18,228	(690)	17,538	17,391	(474)	16,917
1.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강화		18,228	(690)	17,538	17,391	(474)	16,917
Ⅱ.관리운영비				-			-
Ⅲ.비배분비용				-			-
Ⅳ.비배분수익				259			234
1.이자수익				12			5
2.기타수입				247			229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7,279			16,683
Ⅶ.재정운영결과(Ⅴ-Ⅵ)				17,279			15,908

소득회계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프로그램총원가 1조 8,228억원 등을 투입하였으며, 프로그램수익 690억원 등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1조 7,279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재 · 부품 · 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	4,408	-	4,408
Ⅱ.재정운영결과		16,683		16,683
Ⅲ.재원의조달및이전		16,675		16,675
1. 재원의조달		37,930		37,930
(1) 국고수입		17,390		17,390
(2) 기타이전수익		20,540		20,540
2. 재원의이전		21,255		21,255
(1) 국고이전지출		21,255		21,255
Ⅳ.조정항목	-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4,400		4,400
Ⅵ.당기 기초순자산	-	4,400		4,400
1. 보고금액	-	4,400		4,400
Ⅶ.재정운영결과		17,279		17,279
Ⅷ.재원의조달및이전		17,279		17,279
1. 재원의조달		40,266		40,266
(1) 국고수입		18,228		18,228
2. 재원의이전		22,987		22,987
(1) 국고이전지출		22,987		22,987
Ⅸ.조정항목	-	-		-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	4,400		4,400

소특회계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4,400억원임.

<별 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440,019**	**-**
1. 국가채권현재액	-	-
2. 국유재산현재액	440,000	-
3. 물품현재액	19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440,019**	**-**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
4. 대상차이(D)	-	-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1. 대상차이
   - 자산(국고예금) 37원

4. 검토의견

(1)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R&D): 성과지표 항목 개선 필요

① 결산 현황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R&D)(3133-304)’은 산화마그네슘과 수산화마그네슘 등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의 수입 대체와 응용제품 개발을 위해 해당제품의 국내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을 통해 본예산 2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5년도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R&D) 결산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2,500	2,500	-	-	-	2,500	2,500	-	-	-

자료: 산업통상부

② 성과지표 항목 개선 필요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소재개발단계(1단계, 2021년~2023년)와 시범생산단계(2단계, 2024년 이후)로 구분하여 소재개발단계인 2023년까지는 ① 수산화마그네슘의 순도와 ②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성과지표로 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하였고,

시범생산단계인 2024년부터는 ① 수산화마그네슘의 순도 외에 ③ 산화마그네슘과 수산화마그네슘의 생산량을 성과지표로 채택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표 1]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수산화 마그네슘 순도 (단위 %)	목표	97.0	97.5	98.0	98.5
	실적	97.8	99.2	99.8	99.9
	달성도	101%	102%	102%	101%
이산화탄소 저감률 (단위 CO2/Mg(OH)2)	목표	0.20	0.25	-	-
	실적	0.45	0.57	-	-
	달성도	225%	228%	-	-
산화마그네슘 생산량 (단위 톤/일)	목표	-	-	1.0	2.7
	실적	-	-	1.3	3.6
	달성도	-	-	130%	133%
수산화마그네슘 생산량 (단위 톤/일)	목표	-	-	0.4	0.8
	실적	-	-	0.4	10
	달성도	-	-	100%	1250%

자료: 산업통상부

소재개발단계와 시범생산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 동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소재개발단계에서 ① 수산화마그네슘의 순도와 ② 이산화탄소 저감률 등 소재와 개발과정의 우수성을 점검하고,

시범생산단계에서 ③ 산화마그네슘과 수산화마그네슘의 생산량 등 생산성을 추가로 점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시범생산단계에 해당하는 2025년 ① 수산화마그네슘의 순도는 성과지표로 계속 채택하면서도 2022년과 2023년 목표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둔 ② 이산화탄소 저감율을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시범생산단계에서 ① 순도 지표 등 성능지표는 계속 관리하면서도 ② 이산화탄소 저감율 등 친환경지표를 제외해야 하는 뚜렷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움.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161]에 따라 제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62]에 따라 지난 6년 동안 감축한 이산화탄소의 2배 이상을 감축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목표 감축량을 고려할 때 이미 편성된 이산화탄소 감축량 관련 성과지표를 폐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표 2]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단위: 백만톤

구분	'18-'24 감축량	'24-'26 감축필요량
전체	△88.6	△202.4
에너지 전환	△56.7	△67.0
산업	△17.8	△12.0
교통·수송	△3.5	△33.6
건물	△8.8	△8.3
농축수산·폐기물	△1.8	△6.1
국제감축 등	+2.4	△75.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6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162)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5.5.

또한 산업통상부는 시범생산단계 성과지표로 ‘수입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을 설정하고 시범생산된 수산화마그네슘의 가격이 수입 수산화마그네슘의 가격 대비 100% 이하일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의 경우 시범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수입제품 대비 81.4%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2025년의 경우에는 수입제품 대비 85.0% 수준임을 확인하는 등 시범생산제품의 가격이 수입제품 대비 저렴함을 확인하였음.

[표 3]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수입제품가격 대비 시범생산제품가격	목표	-	-	≤100%	≤100%
	실적	-	-	81.4%	85.0%
	달성도	-	-	달성	달성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이에 따른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상 예산사업과 연결되는 성과목표는 측정가능한 정량적 목표로서 환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163],

163) 국무조정실, 「2025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25.3.

현행과 같이 수입제품 대비 100% 이하일 것으로 성과지표를 통일하는 경우 전년도 대비 가격경쟁력의 변화와 관계없이 수입제품 대비 저렴하면 목표가 달성되는 가부평가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의 실적치를 바탕으로 차년도 목표치를 결정하게 하여 실적평가의 환류적 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음.

(2) 소재부품기술개발(R&D):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하반기 집행 집중

① 결산 현황

‘소재부품기술개발(R&D)(3231-302)’은 소재・부품 산업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사업으로,

2025년 산업통상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을 통해 본예산 1조 1,779억 9,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소재부품 기술개발 (R&D)	1,177,993	1,177,993	-	-	-	1,177,993	1,177,993	-	-	1,290,947
- 소재부품 패키지형	827,200	827,200	-	-	-	827,200	828,975	-	-	928,210
- 소재부품 이종기술융합형	324,040	324,040	-	-	-	324,040	324,040	-	-	344,124
-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8,903	8,903	-	-	-	8,903	7,128	-	-	-
-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17,850	17,850	-	-	-	17,850	17,850	-	-	18,613

자료: 산업통상부

②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하반기 집행 집중

2025년 산업통상부는 동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소재부품패키지형 내역사업에 대해 48개 과제 364억 6,300만원,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내역사업에 대해 110개 과제 525억 3,500만원 등 총 158개 과제 889억 9,800만원을 신규과제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표 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단위: 백만원)

구분		'22	'23	'24	'25
소재부품 패키지형	과제수	113	87	440	48
	예산액	88,624	63,103	296,553	36,463
소재부품 이종기술융합형	과제수	35	63	231	110
	예산액	17,818	37,429	114,813	52,535
전략핵심소재 자립화기술개발	과제수	-	-	-	-
	예산액	-	-	-	-
첨단전략산업 초격차(이차전지)	과제수	-	-	14	-
	예산액	-	-	16,000	-
계	**과제수**	**148**	**150**	**685**	**158**
	예산액	**106,442**	**100,532**	**427,366**	**88,998**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관련하여 2025년의 경우 산업통상부는 158개 신규 연구개발과제 중 92.4%에 달하는 146개 연구개발과제를 하반기협약과제로 집행하는 등 동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하반기협약 편중은 매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예컨대 2021년 신규과제 전부가 상반기 협약과제로 집행되던 것이 2022년과 2023년에는 하반기 협약과제의 비율이 68.9%와 68.0%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신규과제 685건 전부가 하반기 협약과제로 집행되었음.

[표 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협약기간 구분

(단위: 건)

구분		'21	'22	'23	'24	'25
소재부품 패키지형	상반기	252	41	15	-	12
	하반기	-	72	72	440	36
소재부품 이종기술융합형	상반기	40	5	33	-	-
	하반기	-	30	30	231	110
전략핵심소재 자립화기술개발	상반기	-	-	-	-	-
	하반기	-	-	-	-	-
첨단전략산업 초격차(이차전지)	상반기	-	-	-	-	-
	하반기	-	-	-	14	-
계	상반기	292 (100%)	46 (31.1%)	48 (32.0%)	- (0.0%)	12 (7.6%)
	하반기	- (0.0%)	102 (68.9%)	102 (68.0%)	685 (100%)	146 (92.4%)
	소계	292	148	150	685	158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하반기협약 편중은 타 사업과 비교할 때에도 이례적인 것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3731-305) 세부사업 등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제수 기준으로 전체 150건 대비 14.0%에 해당하는 21건, 예산액 기준으로 전체 865억 2,000만원 대비 1.4%에 해당하는 12억 2,000만원에 대해서만 하반기협약과제로 집행하고 있는 반면에,

동 사업의 경우 과제수 기준으로 전체 158건 대비 92.4%에 해당하는 146건, 예산액 기준으로 전체 889억 9,800만원 대비 86.3%에 해당하는 768억 4,800만원에 대해서 하반기협약과제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2025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 신규사업 중 하반기 협약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하반기 과제수		하반기 예산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3731-305)	6건 / 56건	10.7%	630 / 10,588	6.0%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3231-304)	0건 / 74건	-	0 / 74,492	-
산업기술R&D연구기획 (3171-321)	15건 / 20건	75.0%	590 / 1,440	41.0%
소계	21건 / 150건	14.0%	1,220 / 86,520	1.4%
소재부품기술개발	146건 / 158건	92.4%	76,848/ 88,998	86.3%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 신규과제 집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신규 연구과제의 대부분을 하반기 협약과제로 진행하였음.

신규사업과제의 증가와 사업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과제협약 시기를 일부 하반기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신규사업 중 대부분을 하반기협약과제로 집행하는 것은 R&D 사업의 선도효과를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신규과제 집행시 소재부품 기술개발의 경우 소재부품장비산업 뿐 아니라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협약이 편중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3) 투자연계형기술확보지원사업:
테크파인더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① 결산 현황

‘투자연계형기술확보지원사업(3241-358)’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해외 핵심기술과 M&A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외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2025년 산업통상부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A)를 통해 본예산 14억 4,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5년도 투자연계형기술확보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449	1,449	-	-	-	1,449	1,449	-	-	1,504

자료: 산업통상부

② 테크파인더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산업통상부는 2022년부터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보지원을 위한 플랫폼인 테크파인더(https://techfinder.or.kr/main/main.php)를 운영하고 있음.

동 사이트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기술제휴를 지원하고(글로벌 기술도입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 타겟기업을 조사·발굴하여 국내기업에게 해당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다만 동 사이트의 경우 개설 이래 가입자 수가 2022년에는 269명, 2023년에는 84명, 2024년에는 65명, 2025년에는 51명으로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요기업에 대한 해외기업 DB 제공 실적 수도 2022년 185건, 2023년 221건, 2024년 101건, 2025년 82건으로 나타나는 등 2023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테크파인더 운영실적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규 이용자	실적	-	269명	84명	65명	51명
	전년대비	-	(신규)	△185 (△68.6%)	△19 (△22.6%)	△14 (21.5%)
DB 정보제공	실적	-	185	221	101	82
	전년대비	-	(신규)	+36 (+19.5%)	△120 (△54.3%)	△19 (△18.8%)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파인더 사이트 외에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사이트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운영하는 소부장넷(https://www.sobujang.net/)이 있음.

동 사이트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관련 10만 명의 통합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인 등 ① 기술 지원 서비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와 양산성능 평가 등 ② 인프라 지원 서비스(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③ 글로벌 공급망 연계 서비스 등 해외 컨설팅 서비스(대한무역투자진흥공자(KOTRA))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또한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역시 동 사이트를 통해 해외 M&A 기술지원 등 ④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임.

[표 2] 소부장넷 제공정보 내역

유형	기관	서비스
기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EIT)	전문기업 확인
		핵심전략기술 확인
		경제안보품목 등 확인
		공급망안정화선도사업자 선정
		으뜸기업 선정
		협력모델 선정
인프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소부장 실증기반 강화
		융합력신지원단 운영
		신뢰성 지원
		양산성능 평가
		가상공학플랫폼 구축
		대학소부장기술전략자문단 운영
투자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KITIA)	해외M&A 기술지원
		VC 투자유치 지원
		민간투자유치 지원
		투자연계형R&D 사업
		해외기업인수 세액공제
해외 컨설팅		공급망안정화컨설팅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공급망안정화 종합지원
		글로벌 공급망 연계 서비스

자료: 산업통상부

소부장넷의 경우 누적 회원수가 10만 명에 달하는 포털 사이트로 KEIT, KIAT, KOTRA, KITIA 등과의 협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업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망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동 사업 예산으로 운영되는 테크파인더의 경우 해외 기술 및 업체 정보에 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결과 2025년 기준 누적 회원사가 469개사에 불과하고 매년 DB 정보 제공 건수가 하락하는 등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수요자 관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부장넷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Ⅵ.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결산 : 해당없음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5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의 예산현액 57억원 중 57억원이 지출되고 이월 및 불용은 없음.

(단위: 백만원)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예산	전년이월	변 경			예산현액	지출	차년이월	불용
			이체	전용	예비비				
합 계	**5,700**	**-**	**-**	**-**	**-**	**5,700**	**5,700**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0)>	5,700	-	-	-	-	5,700	5,700	-	-
□무역및투자유치(113)	2,414	-	-	-	-	2,414	2,414	-	-
○무역진흥(1100)	2,414	-	-	-	-	2,414	2,414	-	-
-수출역량강화(1139)	2,414	-	-	-	-	2,414	2,414	-	-
□산업혁신지원(117)	3,286	-	-	-	-	3,286	3,286	-	-
○지역경제활성화(3300)	3,286	-	-	-	-	3,286	3,286	-	-
-지역산업경쟁력강화(3362)	3,286	-	-	-	-	3,286	3,286	-	-

(2) 예산변경 내역

① 전년도 이월 : 해당 없음

② 전　용 : 해당 없음

③ 이　체 : 해당 없음

④ 예비비 사용액 : 해당 없음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해당 없음

(4) 불용내역 : 해당 없음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자산			
Ⅰ.금융자산	2	32,775,890	-
1. 미수채권	2-6	32,775,890	-
Ⅱ.유·무형자산	3	-	-
Ⅲ.기타자산	4	-	-
자산계		32,775,890	-
부채			
Ⅰ.차입부채	5	-	-
Ⅱ.충당부채	6	-	-
Ⅲ.기타부채	7	-	-
부채계		-	-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	-
Ⅱ.적립금및잉여금		32,775,890	-
Ⅲ.순자산조정	18	-	-
순자산계		32,775,890	-
부채와순자산계		32,775,890	-

고특회계의 2025년도 총자산은 3,300만원임.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16-1	5,700,000,000	(127,910,350)	5,572,089,650	15,926,000,000	-	15,926,000,000
1.무역진흥		2,414,000,000	(31,913,490)	2,382,086,510	2,682,000,000	-	2,682,000,000
2.지역경제활성화		3,286,000,000	(95,996,860)	3,190,003,140	13,244,000,000	-	13,244,000,000
Ⅱ.관리운영비	16-2			-			-
Ⅲ.비배분비용	16-3			-			-
Ⅳ.비배분수익	16-3			-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572,089,650			15,926,000,000
Ⅶ.재정운영결과(Ⅴ-Ⅵ)				5,572,089,650			15,926,000,000

고특회계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프로그램총원가 5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프로그램수익 1억원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56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수익(I+II)		**127,910,350**	**-**
Ⅰ.이전수익	**12**	**-**	**-**
Ⅱ.국가운영수익	**13**	**127,910,350**	**-**
1. 기타국가운영수익	13-7	127,910,350	-
비용(III+IV)		**5,700,000,000**	**15,926,000,000**
Ⅲ.이전비용	**14**	**5,700,000,000**	**15,926,000,000**
1. 국고보조사업비	14-1	2,414,000,000	2,682,000,000
2. 출연사업비	14-2	3,286,000,000	13,244,000,000
Ⅳ.국가운영비용	**15**	**-**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5,572,089,650**	**15,926,000,000**

고특회계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57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총 56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4)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	**-**	**-**	**-**
Ⅱ.재정운영결과		**-**	**15,926,000,000**	**-**	**15,926,000,000**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15,926,000,000**	**-**	**15,926,000,000**
1. 재원의조달		-	15,926,000,000	-	15,926,000,000
(1) 국고수입		-	15,926,000,000	-	15,926,000,000
Ⅳ.조정항목		**-**	**-**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	**-**	**-**
Ⅵ.당기 기초순자산		**-**	**-**	**-**	**-**
Ⅶ.재정운영결과		**-**	**5,572,089,650**	**-**	**5,572,089,650**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5,604,865,540**	**-**	**5,604,865,540**
1. 재원의조달		-	5,700,000,000	-	5,700,000,000
(1) 국고수입		-	5,700,000,000	-	5,700,000,000
(2) 국고이전수입		-	-	-	-
(3) 사회보험수익	8	-	-	-	-
(4) 부담금수익	12-2	-	-	-	-
(5) 제재금수익	12-3	-	-	-	-
(6) 기타이전수익	12-4	-	-	-	-
2. 재원의이전		-	95,134,460	-	95,134,460
(1) 국고이전지출		-	95,134,460	-	95,134,460
(2) 세출예산지출액		-	-	-	-
(3) 기타이전비용	14-5	-	-	-	-
Ⅸ.조정항목		**-**	**-**	**-**	**-**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	**32,775,890**	**-**	**32,775,890**

고특회계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3,300만원으로, 재정운영결과 56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57억원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5) 현금흐름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원)

	주석	2025	2024
Ⅰ.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	-	-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5,795,134,460	-
(1) 기타유입		95,134,460	-
(2) 국고수입		5,700,000,000	-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5,795,134,460	-
(1) 보조금지급		2,414,000,000	-
(2) 출연금지급		3,286,000,000	-
(3) 국고이전지출		95,134,460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2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3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Ⅳ.현금의증감(Ⅰ+Ⅱ+Ⅲ)		-	-
Ⅴ.기초의현금		-	-
Ⅵ.기말의현금(Ⅳ+Ⅴ)		-	-

고특회계에서는 2025년도 중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과 유출이 각각 58억원 발생하였으며, 현금의 증감액은 0원임.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기초현금과 기말현금 모두 0원이 됨.

Ⅶ.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1. 수입결산

(1) 기금수입 현황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산촉기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2014.12.)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하던 기술료와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통합하여 2015년 신설한 기금으로서, 산업기술혁신계정 및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

’25년도 기금수입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4년 결산	2025년 결산				
		계획(A)	변경(B)	실적(C)	증감 (C-B)	증감률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072	2,989	2,989	1,507	△1,482	△49.6
기타민간이자수입	138	1,440	1,440	272	△1,168	△81.1
기타재산이자수입	934	1,549	1,549	1,235	△314	△20.3
기타경상이전수입	60,159	57,279	57,279	75,937	18,658	32.6
법정부담금	1,991	1,485	1,485	1,648	163	11.0
기타경상이전수입	58,168	55,794	55,794	74,289	18,495	33.1
융자원금회수	2,106	1,336	1,336	1,245	△91	△6.8
정부예금회수	56,454	58,769	58,769	48,208	△10,561	△18.0
예수금	60,000	103,500	103,500	103,500	-	-
예탁원금회수	12,000	11,000	11,000	11,000	-	-
예탁이자수입	446	339	339	321	△18	△5.3
합계	192,237	235,212	235,212	241,718	6,506	2.8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도 산촉기금의 수입 실적은 2,417억 1,800만원으로 계획(2,352억 1,200만원) 대비 65억 600만원(2.8%) 증가하였음.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은 이자율 변동(하향)으로 계획액 29억 8,900만원 대비 49.6% 감소한 15억 7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법정부담금 및 기술료 수입이 증가하여 계획액 572억 7,900만원 대비 32.6% 증가한 759억 3,700만원임.

‘융자원금회수’는 융자잔액의 조기회수 감소로 계획액 13억 3,600만원 대비 6.8% 감소한 12억 4,500만원, ‘정부예금회수’는 전년도말 여유자금운용의 감소에 따라 계획액 587억 6,900만원 대비 18.0% 감소한 482억 800만원임.

‘예수금’은 사업비 지급 등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예수한 것으로 1,035억원임.

또한 ‘예탁원금 회수’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110억원임.

2. 지출결산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액은 2,352억 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17억 1,800만원으로 계획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증가 및 '정부예금회수'의 감소에 따른 것임.

'25년도 기금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4 실적	2025			증 감	
		계획(A)	변경(B)	실적(C)	(C-B)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110,876	140,030	140,030	140,030	-	-
산촉기금운영인건비	678	698	698	698	-	-
산촉기금운영관리비	303	285	285	285	-	-
대체물질활용지원	850	850	850	850	-	-
인건비(산촉기금-특물계정)	164	170	170	170	-	-
기본경비(산촉기금-특물계정)	42	42	42	42	-	-
사업비 소계	**112,913**	**142,075**	**142,075**	**142,075**	**-**	**-**
회계기금간거래	**20,116**	**46,780**	**46,780**	**27,694**	**△19,086**	**△40.8**
기금간거래(예탁금)	**11,000**	**9,000**	**9,000**	**9,000**	**-**	**-**
통화금융기관예치 (산촉기금-혁신계정)	**38,632**	**18,377**	**18,377**	**49,150**	**30,773**	**167.5**
통화금융기관예치 (산촉기금-특물계정)	**9,576**	**18,980**	**18,980**	**13,799**	**△5,181**	**△27.3**
합계	**192,237**	**235,212**	**235,212**	**241,718**	**6,506**	**2.8**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도 지출액 중 사업비는 총 운용규모의 58.8%인 1,420억 7,500만원이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109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 257억 9,400만원을 전출하였고 629억 4,900만원은 여유자금(사업성 대기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

2025년도 사업비 지출은 계획액 1,420억 7,500만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통화금융기관예치는 계획(373억 5,700만원) 대비 255억 9,200만원이 증가한 629억 4,900만원으로, 2025년 기술료 등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임.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단위: 억원)

	2025	2024
자산		
Ⅰ.금융자산	2,853	1,491
1. 현금및현금성자산	638	490
2. 대여금	2,056	964
3. 미수채권	159	37
Ⅱ.유 · 무형자산	-	-
Ⅲ.기타자산	-	-
자산계	2,853	1,491
부채		
Ⅰ.차입부채	2,706	1,770
1. 차입금	2,702	1,767
2. 기타차입부채	4	3
Ⅱ.충당부채	-	-
Ⅲ.기타부채	-	-
부채계	2,706	1,770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	-
Ⅱ.적립금및잉여금	147	(279)
Ⅲ.순자산조정	-	-
순자산계	147	(279)
부채와순자산계	2,853	1,491

산촉기금의 2025년도말 자산은 2,853억원, 부채는 2,706억원으로 순자산은 147억원임. 순자산은 2024년도 대비 425억원 증가한 규모임.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단위: 억원)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325	(73)	252	304	(31)	273
1.주력산업진흥	9	(1)	8	9	(1)	8
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316	(72)	244	295	(30)	265
Ⅱ.관리운영비			12			12
Ⅲ.비배분비용			70			40
Ⅳ.비배분수익			851			562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17)			(238)
Ⅵ.비교환수익 등			(93)			(143)
1.사회보험수익			-			-
2.부담금수익			16			20
3.제재금수익			-			-
4.기타이전수익 등			(109)			(163)
Ⅶ.재정운영결과(Ⅴ-Ⅵ)			(425)			(95)

산촉기금은 2025년도 재정운영에 프로그램총원가 325억원, 관리운영비 12억원 등을 투입하였으며, 비배분수익 851억원, 비교환수익 △93억원 등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42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	(374)	-	(374)
1. 보고금액	-	(374)	-	(374)
Ⅱ.재정운영결과	-	(95)	-	(95)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	-	-
Ⅳ.조정항목	-	-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279)	-	(279)
Ⅵ.당기 기초순자산	-	(279)	-	(279)
1. 보고금액	-	(279)	-	(279)
Ⅶ.재정운영결과	-	(425)	-	(425)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	-	-
(1) 국고수입	-	-	-	-
(2) 국고이전수입	-	-	-	-
(3) 사회보험수익	-	-	-	-
(4) 부담금수익	-	-	-	-
(5) 제재금수익	-	-	-	-
(6) 기타이전수익	-	-	-	-
(1) 국고이전지출	-	-	-	-
(2) 세출예산지출액	-	-	-	-
(3) 기타이전비용	-	-	-	-
Ⅸ.당기 기말순자산 (Ⅴ-Ⅵ+Ⅶ+Ⅷ)	-	147	-	147

산촉기금의 2025년 기말 순자산은 147억원으로, 2024년 기말순자산 △279억원 대비 4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425억원의 손익 감소가 발생한 것에 기인함.

4. 검토의견

(1) 기술성과활용촉진(R&D): 국가기술은행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체계적인 이행 및 활용 필요

① 결산 현황

‘기술성과활용촉진(R&D)’(5076-314) 사업은 국가 R&D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은행(NTB)을 구축·운영하고, 기술거래촉진기관 지정·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및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74억 3,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도 기술성과활용촉진(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술성과활용촉진(R&D)	7,435	7,435	-	7,435	7,435	-	-	16,185
기술이전사업화 기반구축	4,435	4,435	-	4,435	4,435	-	-	4,435
국가기술거래 플랫폼서비스	3,000	3,000	-	3,000	3,000	-	-	-
기술산업화 프로젝트	-	-	-	-	-	-	-	11,750

자료: 산업통상부

② 국가기술은행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체계적인 이행 및 활용 필요

국가기술은행(NTB)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국가 기술정보 플랫폼으로,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기술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동 사업의 핵심 기반 인프라에 해당하며, 2025년 말 기준 약 38만 건의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최근 5년간에는 매년 1만 5천~2만 3천 건의 신규 기술이 등록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정보가 축적되고 있으며, 등록기술, 신규 회원 수, 기술문의 건수 등을 주요 운영지표로 관리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가기술은행(NTB) 주요 운영실적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신규 등록기술(건)	16,665	23,729	20,074	15,770	16,466	380,349
신규 회원수(명)	1,025	972	867	644	574	69,839
기술문의 건수	417	573	443	233	197	1,863

자료: 산업통상부

현재의 운영체계는 기술정보의 등록과 공유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관리되는 운영지표 역시 기술정보의 축적 및 이용현황을 보여주는 운영실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기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이어졌는지, 기술 분야별 활용성과는 어떠한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음.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AI 기반 기술추천·기술매칭 기능을 도입하였고, 2023~2024년에는 민간 기술거래·특허분석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기술활용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등록기술의 기술이전 성사 건수와 계약금액을 집계하는 등 기술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국가기술은행(NTB) 등록기술의 기술이전 현황

구분	2023	2024	2025
기술이전 성사 건수	987건	867건	612건
기술이전 계약금액	741억원	277억원	533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기존 운영체계의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술이전 실적의 증감 원인이나 기술 특성별 활용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탐색부터 기술이전·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통상부는 국가기술은행의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2025년에 「국가기술은행 지능형 통합 지원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164]을 수립하였음.

동 ISP는 국가기술은행을 단순한 기술정보 제공 플랫폼에서 기술탐색, 기술매칭,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하는 지능형 통합 플랫폼으로 개편하기 위한 중장기 정보화전략으로, 국가기술은행의 운영방향과 주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국가기술은행 ISP의 주요 개선방향

현행 한계점	주요 개선방향
기술정보 등록·공유 중심 운영	기술사업화 지원 중심의 지능형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미흡	통합 데이터 허브 구축 및 데이터 품질 개선
검색·매칭 기능 한계	AI 기반 검색·추천 기능 도입
기술사업화 성과관리 미흡	기술사업화 통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ISP에서는 이러한 개선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통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 AI 기반 검색·추천 기능 도입 등을 포함한 27개 이행과제를 도출하고,

164) 국가기술은행(NTB)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개요
- (과 업 명) 국가기술은행 지능형 통합 지원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과업기간) 2025. 6. 30. ~ 2025. 10. 31.(약 4개월)
- (소요예산) 63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전담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요과업) 국가기술은행(NTB)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행계획을 제시하였음.

ISP가 제시한 단계별 구축계획

구분	주요 내용
2026년	데이터 품질 개선, Data Hub 기반 구축
2027년	AI 기반 검색·추천, 서비스 고도화
2028년	통합 플랫폼 완성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국가기술은행을 기술정보 등록·공유 중심에서 AI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지능형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ISP 수립이 2025년 10월에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는 ISP에서 제시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앞서 2026년 사업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향후 AI 기반 검색·추천 등 지능형 서비스 구현의 기반이 되는 '국가기술은행 데이터 정비 및 품질개선'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음[165].

165) 산업통상부는 2026년 '기술이전사업화 기반구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을 조정하여 기존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대신 '국가기술은행 데이터 정비 및 품질개선'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기술정보 전수조사 및 표준화,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AI Ready Data 전환, 데이터 품질 정제 및 분류체계 설계, 온톨로지 기반 관계구조 설계, 자연어 기반 검색체계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술은행 데이터 정비 및 품질개선 사업이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이 단순한 데이터 정비에 그치지 않고 ISP에서 제시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정보기술과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ISP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계획의 실효성과 활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ISP에서 제시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이 적기에 추진되어 핵심 개선과제가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Ⅷ. 무역보험기금

1. 수입결산

(1) 기금수입 현황표

'25년도 기금수입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실적	2025			증 감	
		계획(A)	변경(B)[1]	실적(C)	C-B	(%)
재산수입	429,428	248,123	248,123	445,074	196,951	79.4
경상이전수입	338,030	289,959	289,959	303,729	13,770	4.7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707,274	700,530	700,530	893,946	193,416	27.6
정부내부수입	70,000	80,000	380,000	380,000	-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621,921	4,462,121	4,462,121	2,795,844	△1,666,277	△37.3
합 계	5,166,653	5,780,733	6,080,733	4,818,593	△1,262,140	△20.8

주1): 최종변경

무역보험기금의 2025년도 수입실적은 4조 8,185억 9,300만원으로 계획액(6조 807억 3,300만원) 대비 1조 2,621억 4,000만원(△20.8%)이 감소하였음.

'재산수입'은 관유물대여료(사옥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당초 계획액(2,481억 2,300만원) 대비 1,969억 5,100만원(79.4%) 증가한 4,450억 7,400만원이 수납되었음.

‘경상이전수입’은 지급보험금 회수금 및 환변동보험 환수금, 기타영업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당초 계획액(2,899억 5,900만원) 대비 137억 7,000만원(4.7%) 증가한 3,037억 2,900만원이 수납되었음.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수입보험료’, ‘헷지거래이익’, ‘채권회수대행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당초 계획액(7,005억 3,000만원) 대비 1,934억 1,600만원(27.6%)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입보험료가 당초 계획액(6,828억 9,500만원) 대비 1,933억원 3,100만원(28.3%) 증가하였기 때문임.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현황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A)[1]	실적(B)	증감(B-A)	증감률
수입보험료	682,895	876,226	193,331	28.3
헷지거래이익	16,021	16,154	133	0.8
채권회수대행수입 등	1,614	1,566	△48	△3.0
합 계	700,530	893,946	193,416	27.6

주1) 최초계획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025년도 본예산 800억원 및 추경으로 3,000억원 등 총 3,800억원 수납되었음.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2조 7,958억 4,4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액(4조 4,621억 2,100만원) 대비 1조 6,662억 7,700만원(△37.3%) 감소하였는데, 이는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및 기타유가증권매각대가 계획 대비 감소한 것에 기인함.

2. 지출결산

'25년도 기금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실적	2025			증 감	
		계획(A)	변경(B)[1]	실적(C)	C-B	(%)
무역보험지원운영	402,950	511,132	511,132	410,543	△100,589	△19.7
무역보험환급금등	12,816	17,284	17,284	12,500	△4,784	△27.7
기금운영비	151,732	131,389	193,522	192,662	△860	△0.4
여유자금운용	4,599,155	5,120,928	5,358,795	4,202,888	△1,155,907	△21.6
지출 합계	5,166,654	5,780,733	6,080,733	4,818,593	△1,262,140	△20.8

주1) 최종변경

2025년도 무역보험기금 지출규모는 4조 8,185억 9,300만원으로 계획액(6조 807억 3,300만원) 대비 1조 2,621억원 4,000만원(△20.8%)이 감소하였음.

사업비 지출은 무역보험 사고발생시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금인 '무역보험지원운영'과 무역보험 해지·해제에 따른 '무역보험환급금등'으로 구성되며, 무역보험지원운영 4,105억 4,300만원 및 무역보험환급금등 125억원을 지출함.

기금운영비는 계획액(1,935억 2,200만원) 대비 8억 6,000만원(△0.4%) 감소한 1,926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운용은 계획액(5조 3,587억 9,500만원) 대비 1조 1,559억 700만원(△21.6%) 감소한 4조 2,028억 8,800만원임.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무역보험기금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자산			
Ⅰ.금융자산	2	8,840,300,945,674	7,540,364,830,845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	151,315,864,804	99,694,940,941
2. 금융상품	2-2	2,075,000,000,000	1,840,000,000,000
3. 투자증권	2-3	5,958,469,456,633	4,652,959,589,828
4. 대여금	2-5	212,527,957	320,031,977
5. 미수채권	2-6	582,641,162,595	771,541,014,706
6. 기타금융자산	2-7	72,661,933,685	175,849,253,393
Ⅱ.유·무형자산	3	202,867,109,386	201,549,541,406
1. 일반유형자산	3-1	193,221,972,274	189,395,915,831
2. 무형자산	3-4	9,645,137,112	12,153,625,575
Ⅲ.기타자산	4	5,050,897,835	4,736,270,379
자산계		9,048,218,952,895	7,746,650,642,630
부채			
Ⅰ.차입부채	5	138,254,215,719	106,994,467,165
1. 기타차입부채	5-4	138,254,215,719	106,994,467,165
Ⅱ.충당부채	6	622,795,189,984	619,739,410,527
1. 보증충당부채	6-3	24,526,418,064	30,180,211,107
2. 보험충당부채	6-4	564,997,959,231	560,299,392,749
3. 기타충당부채	6-5	33,270,812,689	29,259,806,671
Ⅲ.기타부채	7	2,348,342,390,951	2,244,357,427,609
부채계		3,109,391,796,654	2,971,091,305,301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780,134,804,021	1,780,134,804,021
Ⅱ.적립금및잉여금		3,901,872,697,145	2,865,340,536,113
Ⅲ.순자산조정	18	256,819,655,075	130,083,997,195
순자산계		5,938,827,156,241	4,775,559,337,329
부채와순자산계		9,048,218,952,895	7,746,650,642,630

무역보험기금의 2025년도 자산은 9조 482억 1,89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015억원 6,831만원(16.8%) 증가하였음.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역보험기금 (단위: 원)

	주석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16-1	830,121,930,929	(1,137,162,635,746)	(307,040,704,817)	1,042,752,842,493	(1,461,370,902,235)	(418,618,059,742)
1.무역보험지원		830,121,930,929	(1,137,162,635,746)	(307,040,704,817)	1,042,752,842,493	(1,461,370,902,235)	(418,618,059,742)
Ⅱ.관리운영비	16-2			49,703,475,515			47,049,566,789
Ⅲ.비배분비용	16-3			144,954,506,036			61,136,320,303
Ⅳ.비배분수익	16-3			438,499,437,766			435,937,653,111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50,882,161,032)			(746,369,825,761)
Ⅵ.비교환수익 등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550,882,161,032)			(746,369,825,761)

무역보험기금은 2025년도 재정운영에 1조 247억 7,990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1조 5,756억 6,21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5,508억 8,216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Ⅴ. ~ Ⅷ.)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Ⅰ. ~ Ⅳ.)

무역보험기금 (단위: 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1,780,134,804,021	1,985,770,710,352	152,781,138,519	3,918,686,652,892
1. 보고금액	1,780,134,804,021	1,985,770,710,352	152,781,138,519	3,918,686,652,892
Ⅱ.재정운영결과	-	(746,369,825,761)	-	(746,369,825,761)
Ⅲ.조정항목	-	133,200,000,000	(22,697,141,324)	110,502,858,676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22,601,560,381)	(22,601,560,381)
2. 자산재평가이익	-	-	(95,580,943)	(95,580,943)
3. 기타순자산의증감	-	133,200,000,000	-	133,200,000,000
Ⅳ.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	1,780,134,804,021	2,865,340,536,113	130,083,997,195	4,775,559,337,329
Ⅴ.당기 기초순자산	1,780,134,804,021	2,865,340,536,113	130,083,997,195	4,775,559,337,329
1. 보고금액	1,780,134,804,021	2,865,340,536,113	130,083,997,195	4,775,559,337,329
Ⅵ.재정운영결과	-	(550,882,161,032)	-	(550,882,161,032)
Ⅶ.조정항목	-	485,650,000,000	126,735,657,880	612,385,657,880
1. 투자증권평가손익	-		126,831,238,806	126,831,238,806
2. 자산재평가이익	-		(95,580,926)	(95,580,926)
3. 기타순자산의증감	-	485,650,000,000	-	485,650,000,000
Ⅷ.당기 기말순자산 (Ⅴ-Ⅵ+Ⅶ)	1,780,134,804,021	3,901,872,697,145	256,819,655,075	5,938,827,156,241

무역보험기금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5조 9,388억 2,716만원으로, 2024년도 기말순자산 4조 7,755억 5,934만원 대비 1조 1,632억원 6,782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운영결과 △5,509억원(이익)이 발생한 데 등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	-
1. 국가채권현재액	-	-
2. 국유재산현재액	-	-
3. 물품현재액	-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9,048,219**	**3,109,392**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9,048,219**	**3,109,392**
1. 보고대상기관차이(A)	9,048,219	3,109,392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
4. 대상차이(D)	-	-
5. 기타차이(E)	-	-

* 무역보험기금은 I.개별법 자산·부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1.보고대상기관차이로 차이내역을 분류

4. 검토의견

(1) 무역보험금지급: 재보험에 따른 보험책임잔액 모니터링 필요

① 결산 현황

‘무역보험금지급’(1531-400)은 무역보험에 가입된 수출입 계약 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770억원 중 3,773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996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5년도 무역보험금지급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본예산	수정								
무역보험금 지급	477,000	477,000	-	-	-	477,000	377,392	-	99,608	400,021

자료: 산업통상부

② 재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 감소 효과 모니터링 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성 수출보험 계약 중 일부를 글로벌 시장 재보험사 또는 수출신용기관(ECA)이 제공하는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계약에 수반되는 위험을 외부로 이전·분산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 중장기성 수출보험 계약 관련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진단하고 ② 이를 바탕으로 재보험 출재 후보군 선정 및 재보험 가입 계획을 수립한 뒤 ③ 후보군에 대해 재보험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재보험 규모 등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됨.

최근 중장기성 보험을 통한 지원 규모 증가, 건당 지원액의 급증, 국가·산업별 수출보험 계약 집중도 심화에 따라 2024년부터 재보험 가입 건수 및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음.

2021 ~ 2025년 재보험료 현황 및 재보험 신규 가입 건수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재보험료 지출 규모	5,119	5,184	6,869	43,938	49,988
재보험 신규 가입건수	1	1	1	8	12

한편, 어떠한 수출보험 계약에 대해 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에 대해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금액을 의미하는 '유효계약액'과 별개로, 재보험 가입에 따라 재보험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정도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보험책임잔액'이 존재함.

예를 들어, 지원 금액이 750억원[166]인 특정 수출보험 계약[167]에 대해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유효계약액이 300억원 감소[168]하여 450억원이 된 상황에서, 해당 계약에 대해 재보험사와 9:1의 위험분담 비율로 재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동 계약에 대한 보험책임잔액은 유효계약액보다 적은 405억원이 되는 것임.

수출계약에 대한 지원금액·유효계약액·보험책임잔액 관련 예시

시점	지원금액	유효계약액	보험책임잔액
계약 체결 당시	750억원	750억원 (지원금액과 동일)	750억원 (지원금액과 동일)
계약 체결 1년 경과	750억원	600억원 (750억 × (100-20)%)	600억원 (유효계약액과 동일)
계약 체결 2년 경과	750억원	450억원 (750억 × (100-40)%)	450억원 (유효계약액과 동일)
재보험 가입 시	750억원	450억원 (750억 × (100-40)%)	405억원 (450억 × 0.9)

* 재보험 조건에 대한 가정:
① 5년 만기·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 매년 지원금액의 20%가 상환되면서 유효계약액이 그만큼 감소
② 무역보험기금과 재보험사 간 위험 분담 비율은 9:1로 설정

즉, 재보험에 가입한 수출보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효계약액이 아닌 보험책임잔액이 무역보험기금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166) 원금 기준

167) 5년 만기·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년 지원금액의 20%가 상환되면서 유효계약액이 그만큼 감소하는 구조

168) (750억 × (20% × 2년)) = 300억

2025년에는 총 12건의 중장기성 수출보험 계약에 대해 재보험을 신규 가입하였는데, 2026년 5월 기준 12건의 계약에 대한 유효계약액은 17조 5,032억원인 반면, 보험책임잔액은 1조 7,024억원(유효계약액 대비 9.7%) 감소한 15조 8,008억원임.

2025년 재보험 신규 가입 현황 및 가입 건별 유효계약액·보험책임잔액

(단위: 억원)

중장기보험 사업명	지원 금액	유효계약액*	재보험 반영 보험책임잔액*	위험 전가 규모
OOO 방산 프로젝트	97,306	66,440	60,876	5,564
미국 EV 배터리 공장	24,829	20,653	19,869	784
인도네시아 NCC 건설	18,774	14,801	13,681	1,120
헝가리 분리막 생산공장	2,488	2,236	1,997	239
미국 양극재 공장	15,678	13,128	10,982	2,146
말레이시아 ECH 생산공장	2,104	1,790	1,252	538
영국 해상풍력 모노파일 공장	3,450	2,823	2,455	368
OOO 국부펀드 PPL	53,031	39,879	37,080	2,799
미국 자동차 부품공장	827	662	335	327
미국 ESS 부품공장	559	452	180	272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	9,358	6,558	5,205	1,353
헝가리 양극재 생산공장 신설	6,631	5,610	4,096	1,514
총액	235,035	175,032	158,008	17,024

* '26.5월말 기준

한편, 유효계약액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한도 설정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현재 무역보험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참고자료[169]로 제공되고 있는데,

169)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참고자료 Ⅲ. 무역보험 운영현황 中 연도별 무역보험 유효계약 현황

(단위 : 억원)

유효계약액에 더하여 보험책임잔액을 활용하면, 재보험 가입에 따라 무역보험기금이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심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또한, 재보험 가입 확대에 따라 재보험료 지출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보험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재보험료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회가 무역보험계약 한도 설정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무역보험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무역보험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실제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책임잔액 등 재보험을 통한 위험 분담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종 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7월
중장기수출보험	287,332	274,476	329,876	335,193
해외사업금융보험	170,224	199,767	263,405	274,146
이자율변동보험	-	-	-	-
단기수출보험	276,405	296,870	314,458	260,042
수출신용보증	22,836	24,218	24,231	25,834
수출보증보험	25,067	30,200	38,227	38,417
수입보험	3,945	8,454	4,823	5,571
해외투자보험	8,502	8,637	9,884	9,992
수출기반보험	6,840	16,868	18,072	34,204
서비스종합보험	-	-	-	-
해외공사보험	-	-	-	-
부품소재신뢰성보험	-	-	-	-
소 계	801,151	859,490	1,002,976	983,399
환변동보험(선물환)	2,745	6,029	6,264	7,061
총 계	803,896	865,519	1,009,240	990,460

(2) 기타경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확보를 위한 연례적 기금운용계획변경 방지 필요

① 결산 현황

‘기타경비’(1677-200)는 무역보험기금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로, 2025년도 계획현액 965억 5,300만원 중 957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5년도 기타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본예산	수정								
기타경비	33,720	96,553	-	-	-	96,553	95,781	-	772	32,745
민간기금출연금	-	1,650	-	-	-	1,650	1,650	-	-	-

자료: 산업통상부

② 연례적 기금운용계획변경 방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편성 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타경비’ 사업 중 ‘민간기금출연금(350-04)’ 비목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170]를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확보하고 있음.

170)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개 요) 한국무역보험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위해 관리·운용되는 기금
(법적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기금 현황) ´25년말 기준 기금 총액 210.2억원
- 기본재산 184.2억원, 목적사업비 26.0억원
(기금 운영현황)
- 사내대출(대부사업)
- 목적사업: 직원 단체보험 지원, 경조금·장학금 지원,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업

그런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계획안 편성시에 '민간기금출연금(350-04)'을 0원으로 편성하고, 연말에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여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 내 단위사업 계획액 감액분을 출연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이 반복되었음.

2021 ~ 2025년 사내근로복지지금 출연금 조달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법인세 납부 전 순이익	기타경비 중 민간기금출연금(350-04) 계획액		조달 방식	기금운용 계획변경일	비고
		당초	수정			
2021년	316,857	-	-	-	-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이 없어 조달하지 않음
2022년	376,964	-	3,500	기타유가증권매입 (△3,500)	'22.12.21 (자체변경)	2021년 순이익 실현하여 조달
2023년	282,782	-	3,500	기타유가증권매입 (△3,500)	'23.12.28 (자체변경)	2022년 순이익 실현하여 조달
2024년	793,409	-	2,0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000)	'24.12.30 (자체변경)	2023년 순이익 실현하여 조달
2025년	687,384	-	1,650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650)	'25.12.29 (자체변경)	2024년 순이익 실현하여 조달

자료: 산업통상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171]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전연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연을 할 수 없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까지는 당해연도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172] 차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최근 수입 증가 추세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하여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계획안 편성 시점에는 출연이 반복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안 편성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재원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이 매년 12월 말에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

추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정확한 출연금을 반영하더라도, 상반기 순이익 추이 등에 근거한 잠정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수치를 산출하여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을 계획안에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17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172) 2008 ~ 2013년, 2015년 ~ 2017년, 2020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기금운용계획 변경만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운영비 집행과정에서의 합리성 및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자체변경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전액을 조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나아가, 출연금 조달을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은 통상적인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30일 전) 이후인 매년 12월 말에 이루어졌는데,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순이익은 매년 초에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12월 말에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함에 따라 차년도 예산안 심의 시 당해연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규모는 여전히 0인 상태로, 이에 대한 정상적인 심사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연례적인 계획변경 방지 및 출연금에 대한 국회 심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계획안에 편성할 필요가 있고,

직전연도 순이익 확정에 따라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규모가 확정되면 곧이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차년도 예산안 심의 시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정확한 금액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처 소관

Ⅰ. 지식재산처 결산 개요

1. 총괄

(1) 세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C-A)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81,052	774,266	771,289	-	2,987	△9,763
합 계	**781,052**	**774,266**	**771,289**	**-**	**2,987**	**△9,763**

최근 5년간 세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C-A)
2021	639,308	723,333	723,333	-	-	84,025
2022	794,587	843,539	843,539	-	-	48,952
2023	867,220	851,542	851,542	-	-	△15,678
2024	792,258	730,122	727,180	-	2,942	△65,078
2025	781,052	774,266	771,289	-	2,987	△9,763

(2)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변경(B)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전년 이월	예비비	전 용	이용 (초과 승인액)				
일반회계	-	-	-	±2	-	1,605	1,122	113	371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81,052	-	-	±900	-	781,052	758,637	-	22,415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7,220	-	-	-	-	7,220	7,220	-	-
합 계	**788,272**	**-**	**-**	**±903**	**-**	**789,877**	**766,979**	**113**	**22,786**

최근 5년간 세출 결산내역

(책특회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변경(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 (E)	불용액 (F=C-D-E)
		전년 이월	예비비	전 용	이용 (초과 승인액)				
2021	639,308	-	-	±1,900	-	639,308	623,573	-	15,735
2022	794,587	-	2,379	±111	(2,344)*	799,310	786,627	-	12,683
2023	867,220	-	-	±423	-	867,220	834,888	-	32,332
2024	792,258	-	-	±322	±1,644	792,258	714,531	-	77,727
2025	788,272	-	-	±903	-	789,877	766,979	113	22,786

* 초과수입금(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실사용금액): 1,268백만원

2. 세입 결산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관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증 감 (B-A)	증 감 사 유	
총 계	781,052	774,266	△6,786	**예산 대비 0.9% 감소**	
< 손익계정 >	656,438	659,223	2,785		
○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642,016	639,648	△2,368	출원료 증가	922
				심사청구료 감소	△18,517
				설정등록료 증가	2,256
				연차등록료 증가	10,168
				기타 수수료 증가	2,803
○ 재산수입	2,198	2,393	195	국유특허실시료 등 수입 증가	
○ 경상이전수입	1,328	4,238	2,910	각종 반환금 등 증가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1	△0	폐기문서 매각대금 등 수입 감소	
○ 수입대체경비수입	342	326	△16	지식재산연수원 교육비 등 수입 감소	
○ 세계잉여금	10,553	12,616	2,063	'24년도 손익계정 수입 증가	
< 자본계정 >	124,614	115,044	△9,57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4,391	115,011	△9,380	이자 수입 및 계정간 거래액 감소	
○ 전년도 세계잉여금	223	33	△190	'24년도 자본계정 세계잉여금 감소	

2025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액 7,810억원 5,200만원 대비 67억 8,600만원(0.9%)이 감소한 7,742억 6,600만원이 수납되었음.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29억 7,8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이 예산액 6,420억 1,600만원 대비 23억 6,800만원(0.4%)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수입이 예산액 13억 2,800만원 대비 29억 1,000만원(219.1%) 증가하였음.

전년도 세계잉여금인 2024년도 결산잉여금 손익계정 수납액은 예산액 105억 5,300만원 대비 20억 6,300만원(19.6%) 증가하였음.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관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초과수납액 (C-A)
합 계	**781,052**	**774,266**	**771,289**	**2,978**	**△9,763**
<손익계정>	**656,438**	**659,223**	**656,245**	**2,978**	**△193**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42,016	639,648	639,648	-	△2,368
재산수입	2,198	2,393	2,393	-	195
경상이전수입	1,328	4,238	1,260	2,978	△68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1	1	-	△0
수입대체경비 수입	342	326	326	-	△16
세계잉여금	10,553	12,616	12,616	-	2,063
<자본계정>	**124,614**	**115,044**	**115,044**	**-**	**△9,57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24,391	115,011	115,011	-	△9,380
전년도 세계잉여금	223	33	33	-	△190

3. 세출 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예산변경(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 연도 이월 (E)	불용액 (F=C-D-E)
		전년 이월	예비비	전용	이용 (초과 승인액)				
합 계	788,272	-	-	±903	-	789,877	766,979	113	22,78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81,052	-	-	±900	-	781,052	758,637	-	22,415
<손익계정>	656,438	-	-	±900	-	656,438	643,594	-	12,844
1.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93,719	-	-	±302	-	93,719	93,037	-	682
- 심사·심판처리지원	80,788	-	-	△300	-	80,488	80,219	-	269
- 심사·심판역량강화	756	-	-	-	-	756	742	-	14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5,275	-	-	△2	-	5,273	4,967	-	306
- 특허고객서비스지원	6,900	-	-	+302	-	7,202	7,108	-	94
2. 지식재산창출기반 강화	125,177	-	-		-	125,177	123,305		1,872
-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44,544	-	-	-	-	44,544	44,388	-	156
-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64,769	-	-	-	-	64,769	64,182	-	587
- 지식재산 인력양성	15,522	-	-	-	-	15,522	14,412	-	1,110
- 지식재산교육확산 (수입대체경비)	342	-	-	-	-	342	322	-	20
3.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 시장 활성화	52,979	-	-	±294	-	52,979	52,809	-	170
- 지식재산 활용촉진	52,979	-	-	±294	-	52,979	52,809	-	170
4.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2,580	-	-	-	-	32,580	32,271	-	309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2,580	-	-	-	-	32,580	32,271	-	309
5.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42,801	-	-	-	-	42,801	42,674	-	127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42,801	-	-	-	-	42,801	42,674	-	127
6.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206,327	-	-	±304	-	206,327	205,688	-	639
7. 회계기금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20,344	-	-	-	-	20,344	20,110	-	234

구분	예산액 (A)	예산변경(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 연도 이월 (E)	불용액 (F=C-D-E)
		전년 이월	예비비	전용	이용 (초과 승인액)				
8. 계정간 거래	82,511	-	-	-	-	82,511	73,700	-	8,811
<자본계정>	**124,614**	**-**	**-**	**-**	**-**	**124,614**	**115,043**	**-**	**9,571**
1. 지식재산창출기반 강화	757	-	-	-	-	757	741	-	16
-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	634	-	-	-	-	634	618	-	16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123	-	-	-	-	123	123	-	0
2.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465	-	-	-	-	1,465	1,313	-	152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본)	1,465	-	-	-	-	1,465	1,313	-	152
3.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088	-	-	-	-	1,088	1,082	-	6
4. 회계간 거래(전출금)	102,579	-	-	-	-	102,579	93,182	-	9,397
5.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18,725	-	-	-	-	18,725	18,725	-	-
일반회계	**-**	**-**	**-**	**±2**	**-**	**1,605**	**1,122**	**113**	**34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	-	-	±2	-	1,605	1,122	113	340
- 미래대비 역량 강화	-	-	-	±2	-	1,575	1,122	113	340
- 본부 인건비	-	-	-	-	-	27	-	-	27
- 총액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	-	-	-	-	3	-	-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7,220**	-	-	-	-	**7,220**	**7,220**	-	-
1.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7,220	-	-	-	-	7,220	7,220	-	-
- 대학 지식재산 교육	7,220	-	-	-	-	7,220	7,220	-	-

2025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7,810억 5,200만원이었고 이 중 7,586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4억 1,500만원은 불용처리되음.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억 500만원 중 11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7,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억원 중 72억원이 지출되고 이월 및 불용은 없음.

(2) 예산변경 내역

① 전년도 이월 : 해당 없음

② 전 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전 용	±302	○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 - 지식재산권 관리 건수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전용
	±294	○ 지식재산 활용 촉진 - '아이디어로' 플랫폼 개편 예산 부족분 전용
	±304	○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총액인건비제팀 운영기간 연장 및 신설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전용 - 기준정원 미반영 및 處 격상에 따른 추가소요 발생 - 심판역량 강화 활동 국내여비 부족 - 지식재산처 고용부담금(건강보험료) 소요 증가
	±2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인한 전용
합 계	±903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용액	1,900	111	423	332	903

③ 이 체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이 체	+1,6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관 사업 예산 이체
합 계	**+1,605**	

2025년도 일반회계 이체액은 16억 500만원이며, 정부조직개편('25.10.1.)시행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련 예산을 이체받았음.

④ 초과수입지출: 해당 없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초과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초과수입 지출액	-	2,339*	-	-	-

* 초과수입금(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실사용금액): 1,263백만원

⑤ 예비비 사용액 : 해당 없음

(3)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다음연도 이 월	113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 수행 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
합 계	**113**	

2025년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300만원으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연차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용역 수행 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임.

(4)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 인건비 집행잔액	164	연중 퇴직,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등
○ 주요사업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977	사업 일정 지연 등 사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 기본경비 집행잔액	437	여비, 급식비 등 미집행액
○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9,397	일반회계 전출금 미집행액
○ 자본계정 전출금 집행잔액	8,811	자본계정 전출금 미집행액
합 계	**22,786**	

최근 5년간 연도별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불용액	15,735	12,683	32,332	77,727	22,786

4.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지식재산처 (단위: 원)

	2025	2024
자산		
Ⅰ.금융자산	396,665,253,720	408,127,237,47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2,652,025,385	12,649,165,557
2. 정부출자금	269,400,000,000	261,400,000,000
3. 대여금	111,073,513,500	129,363,226,500
4. 미수채권	2,643,023,000	3,861,726,946
5. 기타금융자산	896,691,835	853,118,471
Ⅱ.유·무형자산	107,127,759,238	105,704,201,017
1. 일반유형자산	90,508,014,395	92,459,747,380
2. 무형자산	16,619,744,843	13,244,453,637
Ⅲ.기타자산	323,607,001	3,810,523,011
자산계	504,116,619,959	517,641,961,502
부채		
Ⅰ.차입부채	8,701,611,930	9,851,286,326
1. 기타차입부채	8,701,611,930	9,851,286,326
Ⅱ.충당부채	64,558,540	15,643,471
1. 기타충당부채	64,558,540	15,643,471
Ⅲ.기타부채	243,900,931,340	243,912,168,640
부채계	252,667,101,810	253,779,098,437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230,318,252,033	229,491,904,538
Ⅱ.적립금및잉여금	(27,950,709,738)	(14,716,994,102)
Ⅲ.순자산조정	49,081,975,854	49,087,952,629
순자산계	251,449,518,149	263,862,863,065
부채와순자산계	504,116,619,959	517,641,961,502

지식재산처의 2025년도 총자산은 5,041억원으로, 전기 5,176억원 대비 135억원(2.6%) 감소하였음.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 (단위: 원)

	2025			2024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559,356,335,829**	**(644,247,574,803)**	**(84,891,238,974)**	**536,966,766,873**	**(592,924,515,958)**	**(55,957,749,085)**
1.심사·심판서비스 제공	271,353,238,312	(641,241,151,340)	(369,887,913,028)	260,053,906,380	(588,947,494,260)	(328,893,587,880)
2.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43,525,503,827	(1,535,324,854)	141,990,178,973	142,938,797,402	(1,834,004,447)	141,104,792,955
3.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44,250,472,119	(41,747,520)	44,208,724,599	41,092,715,230	(356,114,330)	40,736,600,900
4.지식재산행정정보화	45,441,597,971	(1,356,950,009)	44,084,647,962	43,264,641,620	(1,607,445,121)	41,657,196,499
5.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54,785,523,600	(72,401,080)	54,713,122,520	49,616,706,241	(179,457,800)	49,437,248,441
Ⅱ.관리운영비			**17,014,051,756**			**14,538,237,368**
Ⅲ.비배분비용			**334,573,604**			**-**
Ⅳ.비배분수익			**2,794,428,943**			**3,891,854,550**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70,337,042,557)**			**(45,311,366,267)**
Ⅵ.비교환수익 등			**(92,274,624,559)**			**(73,819,867,624)**
1.사회보험수익			-			-
2.부담금수익			-			-
3.제재금수익			149,212,000			2,977,524,750
4.기타이전수익 등			(92,423,836,559)			(76,797,392,374)
Ⅶ.재정운영결과(Ⅴ-Ⅵ)			**21,937,582,002**			**28,508,501,357**

지식재산처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프로그램총원가 5,594억원, 관리운영비 170억원 및 비배분비용 3억원 등을 투입하였으며, 프로그램수익 6,442억원, 비배분수익 28억원 및 비교환수익 △923억원 등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219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 (단위: 원)

	2025	2024
수익(I+II)	**647,949,379,187**	**600,662,502,884**
Ⅰ.이전수익	**907,375,441**	**3,846,132,376**
1. 제재금수익	149,212,000	2,977,524,750
2. 기타이전수익	758,163,441	868,607,626
Ⅱ.국가운영수익	**647,042,003,746**	**596,816,370,508**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641,257,056,050	588,966,499,480
2. 이자수익	2,696,053,723	3,748,730,149
3. 자산평가이익	-	123,860
4. 기타국가운영수익	3,088,893,973	4,101,017,019
비용(III+IV)	**669,886,961,189**	**629,171,004,241**
Ⅲ.이전비용	**175,524,979,150**	**162,882,544,310**
1. 국고보조사업비	77,894,000,000	77,592,000,000
2. 출연사업비	2,286,000,000	5,686,000,000
3. 기타이전비용	95,344,979,150	79,604,544,310
Ⅳ.국가운영비용	**494,361,982,039**	**466,288,459,931**
1. 인건비	187,256,538,615	175,159,704,850
2. 이자비용	321,419,169	385,766,565
3. 운영비	61,445,137,197	52,036,173,653
4. 감가상각비	12,203,459,033	11,550,748,367
5. 기타국가운영비용	233,135,428,025	227,156,066,496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21,937,582,002**	**28,508,501,357**

지식재산처는 2025년도 재정운영에 6,699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6,48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219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4.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 (단위: 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229,491,904,538	13,791,507,255	49,096,720,237	292,380,132,030
1. 보고금액	229,491,904,538	13,791,507,255	49,096,720,237	292,380,132,030
Ⅱ.재정운영결과	-	28,508,501,357	-	28,508,501,357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	-	-
Ⅳ.조정항목	-	-	(8,767,608)	(8,767,608)
1. 자산재평가이익	-	-	(8,767,608)	(8,767,608)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 - Ⅱ + Ⅲ + Ⅳ)	229,491,904,538	(14,716,994,102)	49,087,952,629	263,862,863,065
Ⅵ.당기 기초순자산	229,491,904,538	(14,716,994,102)	49,087,952,629	263,862,863,065
1. 보고금액	229,491,904,538	(14,716,994,102)	49,087,952,629	263,862,863,065
Ⅶ.재정운영결과	-	21,937,582,002	-	21,937,582,002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8,345,246,340	-	8,345,246,340
1. 재원의조달	-	8,345,246,340	-	8,345,246,340
(1) 국고수입	-	8,341,782,870	-	8,341,782,870
(2) 국고이전수입	-	-	-	-
(3) 사회보험수익	-	-	-	-
(4) 부담금수익	-	-	-	-
(5) 제재금수익	-	-	-	-
(6) 기타이전수익	-	3,463,470	-	3,463,470
(1) 국고이전지출	-	-	-	-
(2) 세출예산지출액	-	-	-	-
(3) 기타이전비용	-	-	-	-
Ⅸ.조정항목	826,347,495	358,620,026	(5,976,775)	1,178,990,746
1. 자산재평가이익	-	-	(5,976,775)	(5,976,775)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826,347,495	358,620,026	-	1,184,967,521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230,318,252,033	(27,950,709,738)	49,081,975,854	251,449,518,149

지식재산처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2,514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2,639억원 대비 124억(4.7%)원 감소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감소는 재정운영결과 219억원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기타이전수익 등 재원의 조달 83억원 및 조정항목 12억원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5. 현금흐름표

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 (단위: 원)

	2025	2024
Ⅰ.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46,699,858)**	**-**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655,807,009,803	-
(1) 부담금제재금수입	1,052,937,000	-
(2) 이자수입	3,436,542,210	-
(3) 기타유입	642,975,747,723	-
(4) 국고수입	8,341,782,870	-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56,853,709,661	-
(1) 보조금지급	79,600,167,000	-
(2) 출연금지급	2,286,000,000	-
(3) 인건비지급	187,090,273,720	-
(4) 기타유출	387,877,268,941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225,178,256**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38,414,000,000	-
(1) 대여금회수	37,874,000,000	-
(2) 기타유입	540,0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33,188,821,744	-
(1) 금융상품, 투자증권취득	8,000,000,000	-
(2) 대여금지급	18,725,000,000	-
(3)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취득	1,329,738,984	-
(4) 무형자산취득	4,471,092,840	-
(5) 기타유출	662,989,92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75,618,570)**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4,175,618,570	-
(1) 기타유출	4,175,618,570	-
Ⅳ.현금의증감(Ⅰ+Ⅱ+Ⅲ)	**2,859,828**	**-**
Ⅴ.기초의현금	**12,649,165,557**	**-**
Ⅵ.기말의현금(Ⅳ+Ⅴ)	**12,652,025,385**	**-**

지식재산처는 2025년도 중 운영활동으로 10억원, 재무활동으로 42억원의 현금이 유출되었으나, 투자활동으로 52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어, 현금이 3백만원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기초현금 126억 4,900만원에서 기말현금은 126억 5,200만원이 됨.

5. 검토의견

(1) WIPO 국제분담금(ODA): 의무분담금 차년도 지연지급 최소화 필요

① 결산 현황

‘WIPO 국제분담금(ODA)’(1035-301)은 UN 산하 국제기구인 WIPO[173]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개도국의 지식재산 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7억 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도 WIPO 국제분담금(ODA)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WIPO 국제분담금	1,706	1,706	-	-	-	1,706	1,706	-	-	2,218
WIPO 의무분담금	750	750	-	-	-	750	750	-	-	762
WIPO 한국신탁기금	956	956	-	-	-	956	956	-	-	1,456

자료: 지식재산처

② 의무분담금 차년도 지연지급 최소화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WIPO 의무분담금’은 WIPO 회원국의 의무분담금 납부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 및 국제기구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17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세계지재산권기구)

총 14등급으로 나누어진 분담금 체계 중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택일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며 우리나라는 4등급에 해당하여 매년 455,790 스위스프랑(이하 “CHF”)을 납부하고 있음.

WIPO 국제분담금 납부 등급표

등급	납부액(CHF)	국가
1	1,139,475	(5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	911,580	-
3	683,685	(5개국)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4	**455,790**	(10개국) 캐나다,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대한민국**[174] 등
4의2	341,842	(4개국) 멕시코, 남아공,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5	227,895	-
6	136,737	(6개국) 체코,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폴란드, 헝가리 등
6의2	91,158	(6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터키 등
7	45,579	(6개국) 인도네시아, 이란, 모나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8	22,789	(6개국)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등
9	11,394	(34개국) 태국, 칠레,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S	5,697	(19개국) 베트남, 파키스탄, 파나마, 모로코 등
S의2	2,848	(45개국) 북한, 케냐, 도미니카공화국, 가봉 등
S의3	1,424	(47개국) 부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

자료: 지식재산처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국제환율 상승으로 인해 예산안 편성 당시 기획예산처가 정하는 편성환율과 실제 집행할 때의 집행환율이 달라 연례적으로 원화경비 부족액(이하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6년간 의무분담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보면, 2021년 및 2022년의 환차손은 다른 내역사업인 ‘WIPO 한국신탁기금’의 미집행 잔액으로부터 조달하여 당해연도에 완납하였고, 2023년 및 2024년의

174) 2022년에 4의2에서 4등급으로 상향

환차손은 차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차년도에 완납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차년도 예산으로 완납하였고, 2026년에 발생한 환차손은 2027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6년간 의무분담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연도	분담금 (CHF)	예산액 (백만원)	편성환율 (원/CHF)	집행환율 (원/CHF)	환차손 (백만원)	집행일자	비고
'21	341,842	379	1,108.7	1,254.96	△50	21.8.10.	WIPO한국신탁기금에서 충당
'22	455,790	548	1,201	1,379.52	△81	22.8.3.	WIPO한국신탁기금에서 충당
'23	455,790	548	1,201	1,475.75	△130	23.6.30.	2024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후 완납
'24	455,790	774	1,425.3	1,506.83	△45	24.5.22.	2025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후 완납
'25	455,790	750	1,545	1,596.21	△25	25.1.23.	2026년 예산으로(미반영) 추후 완납
'26	455,790	762	1,673	1,861.77	△118	26.1.23.	61,848CHF 미납중

자료: 지식재산처

최근 1년간 원/CHF 환율 변동 그래프



자료: 네이버 환율 검색(2026년 7월 13일, 하나은행 고시)

예산안 편성 당시에 미래의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예산안 편성 기준 환율보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일정한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분담금 납부는 국제기구 회원국의 기본 의무로서 연례적으로 의무분담금을 2개년도에 걸쳐 납부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회원국이라는 신뢰가 약화되거나 국제기구 내 협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예산안 집행지침」[175]은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경비 부족액(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하여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당해연도 예산으로 완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연례적인 의무분담금의 차년도 지연지급을 최소화하고 당해연도에 완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75)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4

(2) 지식재산 창출지원: 일부 지역의 높은 수요 대응 및 지방비 매칭 협력 강화 필요

① 결산 현황

‘지식재산 창출지원’(1232-300)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한 지식재산 종합 인프라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06억 6,000만원 중 206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식재산 창출지원	20,660	20,660	-	-	-	20,660	20,642	-	18	24,373

자료: 지식재산처

② 일부 지역의 높은 수요 대응 및 지방비 매칭 협력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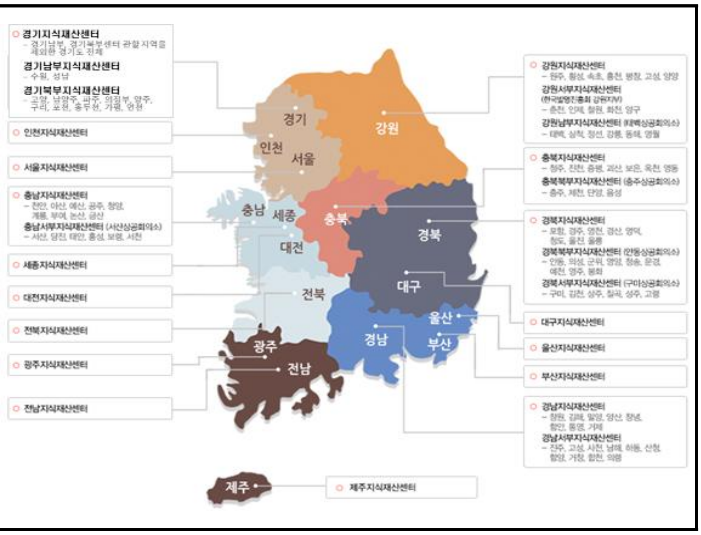
동 사업의 주요 내내역사업으로는 ⓐ해외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의 IP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등이 있음.

동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지식재산처가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별 지원 필요성,

기업수요, 지방비 매칭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임.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예산 및 소재지 현황

예산	630억원 (국비·지방비 1:1 매칭)	
운영기관	상공회의소	인천, 충남 등 15개
	발명진흥회	부산, 대전 등 6개
	지방 공기업	서울, 경기 등 5개
	자립형	부천, 강릉 등 2개



자료: 지식재산처

그런데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과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경우 지역지식재산센터별 신청 및 신규선정 현황을 보면 서울 지역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25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신규 선정 현황

센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세종	대전	충북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광주	전북	제주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서부	강원남부	충남서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경북서부	경남서부	계
신청 건수(社)	165	263	86	34	39	17	58	66	62	29	41	42	48	64	46	33	34	-	74	11	8	10	8	14	18	19	1,289
선정 건수(社)	6	27	16	7	10	5	13	15	11	13	13	8	5	13	11	6	9	-	14	4	4	4	3	3	3	3	226
경쟁률(%)	27.5	9.7	5.3	4.9	3.9	3.4	4.5	4.4	5.6	2.2	3.2	5.3	9.6	4.9	4.2	5.5	3.7	-	5.3	2.8	2	2.5	2.7	4.7	6	6.3	5.7

자료: 지식재산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 전국 경쟁률은 5.7:1이고,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의 경우 경쟁률이 2:1이지만 서울지식재산센터의 경우 165개 신청 기업 중 6개 기업이 선정되어 경쟁률이 27.5:1에 이름.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지원 현황

센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세종	대전	충북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광주	전북	제주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서부	강원남부	충남서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경북서부	경남서부	계
신청 건수(社)	494	808	322	168	179	80	157	108	236	114	222	203	318	316	168	226	173	125	498	133	61	62	55	131	115	189	5,661
지원 건수(社)	24	154	72	76	85	27	36	47	67	39	60	46	66	76	62	86	61	41	112	55	35	34	32	66	25	93	1,577
경쟁률(%)	20.6	5.2	4.5	2.2	2.1	3.0	4.4	2.3	3.5	2.9	3.7	4.4	4.8	4.2	2.7	2.6	2.8	3.0	4.4	2.4	1.7	1.8	1.7	2.0	4.6	2.0	3.6

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경우 전국 경쟁률은 3.6:1이고 강원남부 지식재산센터 및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의 경우 경쟁률이 1.7:1이지만 서울지식재산센터의 경우 494개 신청 기업 중 24개 기업을 지원하여 경쟁률이 20.6:1임.

지역별 경쟁률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하여 지식재산처는 동 사업이 지방의 지식재산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비 배정에 이를 고려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지방비 매칭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176] 서울시 소재 기업의 IP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서울과 서울 외 지역 간에 어느 정도 예산 배분의 차이를 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 선정 가능성의 차이가 너무 클 경우 형평성 및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176)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창업, 중소기업, 수출, 기업사업화, 디자인·브랜드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한정된 기업지원 예산 내에서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매칭 확대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높은 경쟁률로 인해 우수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소기업일지라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여 적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글로벌 IP스타기업 개수의 감소 등 사업 성과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지원 신청을 할 때 신청서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계획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기업에게 최소한의 적정한 선정 가능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신청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신청서	①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신청서
필수 첨부서류	②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중소기업 구분 입증서류
	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⑥ 재무제표
	⑦ 상시근로자 수 입증서류
	⑧ 수출증명 서류
	⑨ 회사소개서
선택 첨부서류	⑩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증빙서류(실적 기입시 필수 제출)
	⑪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류
	⑫ 가점 증빙서류(브랜드K, 국내복귀, 소부장, G-PASS, 지식재산공제, 혁신조달, 혁신특허사업화 수혜기업, 규제자유특구, 국가핵심기술특허 보유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AI 기업 증빙 등)
	⑬ 정부(지자체)발주 R&D 과제수행 실적 증빙서류

자료: 지식재산처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와 지역별 기업 수요, 지방비 매칭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되, 일부 고수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지방비 매칭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수요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여성발명진흥: 내역사업 유형의 다양화 노력 필요

① 결산 현황

‘여성발명진흥’(1232-304)은 생활발명을 발굴하여 여성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여성발명·기업인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4억 9,000만원 중 14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여성발명진흥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여성발명진흥	1,490	1,490	-	-	-	1,490	1,489	-	1	1,410

자료: 지식재산처

② 내역사업 유형의 다양화 노력 필요

동 사업은 창의력 있는 우수 여성 인력 발굴 및 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의적 여성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부문별로 맞춤형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생활발명코리아’와 여성발명품박람회 및 세계여성발명대회를 개최하여 여성 발명·기업인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여성발명왕EXPO’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함.

생활발명코리아 및 여성발명왕EXPO 비교

구분	생활발명코리아	여성발명왕EXPO
'25년 예산	800백만원	690백만원*
사업 내용	창의적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용이한 생활발명을 발굴, IP출원·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기반 창업을 유도	여성 발명·기업들에게 전시·홍보 기회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세계 여성발명·기업인들간 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매칭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 누구나	IP를 활용한 발명(제품)을 보유한 여성 및 여성기업인
지원 내용	- 선정된 지원작*을 대상으로 IP 출원, 시제품 제작 및 창업·사업화 교육 지원 * 연초에 모집한 발명 아이디어 중 생활용품으로의 상품성과 시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 - 상기 지원 완료 후 최종심사 통해 우수상 시상	- (발명품박람회) 전시를 통한 국내 여성발명품의 홍보 및 마케팅 기회 제공 - (세계대회) 심사 및 시상을 통해 여성발명품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증 - (판로 지원) 전시 기간 중 라이브커머스, 주요 유통망 상담 제공
수행 절차	(1~3월) 아이디어 등록·접수 (4~6월) 심사 및 지원대상작 선정 (6~10월) 지원프로그램 운영 (11월) 완성작 공개 및 최종심사 (12월)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 개최	(~3월) 참가신청 접수, 참여기업 확정 (~3월) 행사장 구성, 공식행사 등 확정 (4월초) 참가기업 교육, 내빈초청 (4월말) 세부운영계획 확정 (5월) 여성발명왕EXPO 개최

* 여성발명품박람회(300백만원) + 세계여성발명대회(390백만원)

자료: 지식재산처

그런데 이러한 내역사업은 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여성발명진흥 행사를 개최하는 유형의 사업으로서 여성발명 아이디어를 신속히 사업화하는 등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디어나 발명품을 보유한 여성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여성발명에 대한 기초 배경지식이 얕은 일반인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

고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발명의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여성발명진흥 사업 시행의 법률적 근거인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을 보면[177], 정부는 여성발명의 사업화(제2호)와 여성발명진흥행사의 개최(제3호)뿐만 아니라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강행규정) 규정하고 있고(제1호),

과거 실시한 주요 여성발명진흥 내역사업

내역사업명	수행 시기	주요 내용
발명정보지 발간	'02~'23	여성발명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 동향과 여성발명인 지원정책 및 우수발명 사례 등 정보 제공을 위해 월간 '발명하는 사람들' 발간(지면 및 온라인)
여성발명창의교실	'06~'23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여성(학부모·대학생·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발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발명의 이해, 창의적 사고와 발명, 지식재산권 제도와 출원절차, 발명공작실습 등의 내용을 학습함.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약 30~70회 운영되었으며, 매년 약 1,500~2,000여명 수강 인원을 기록
여성발명지도자 교육	'07~'16	미취학 아동보육기관이나 방과후교실 등에서 아동발명교육을 담당할 지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발명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총5회 60시간으로 진행되며 여성 사회 교육기관 및 대학 등에서 교육을 실시. 세부과목으로는 발명지도 이론·실습(54h), 어린이 교육의 교수방법(6h)이 있음.
여대생 발명캠프	'06~'13	여대생 대상(약80여명) 발명캠프를 운영(연1회, 2박3일)하여 지식재산권의 개요 및 중요성, 발명기법 및 요령, 발명창업 실습 등을 교육
세계여성발명포럼	'01~'23	국제적 IP 전문가 등을 연사로 초청하여 IP 주요 이슈와 여성발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이며 국제지식재산권기구의 지원(연사초청)이 중단되어 '23년까지만 운영

자료: 지식재산처

177) 「발명진흥법」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과거에 여성발명진흥에 관하여 여성발명창의교실, 여성발명지도자 교육 등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현재는 예산상 제약[178] 등을 이유로 제품 사업화·행사 유형에만 집중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OECD 주요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한 국	59.1	59.9	61.8	63.1	**63.9**
일 본	72.5	73.3	74.3	75.2	**76.1**
미 국	67.8	68.2	69.0	69.9	**70.3**
OECD 평균	63.7	64.8	65.8	66.6	**67.1**

자료: 지식재산처(2025년 OECD 통계)

최근 5년간 남녀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남성	139,134	139,658	119,238	119,858	115,292
여성	55,708	62,402	58,473	60,419	63,482
합계	194,842	202,060	177,711	180,277	178,774
여성비율	28.6	30.9	32.9	33.5	**35.5**

자료: 지식재산처

점차 개선되는 중이지만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해당하고[179], 국내 여성의 지식재산 출원 건수도 남성과 약 2배 차이인 상황으로,

178) **최근 10년간 여성발명진흥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예산	1,338	1,520	1,520	1,696	1,696	1,526	1,526	1,490	1,490	1,410

자료: 지식재산처

179)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31위('23년 기준)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의 시장 진입은 노동력 공백을 메우고 시장의 다변화를 이끌 수 있는 만큼 여성발명의 진흥은 여전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일반 여성이 특허 출원이나 아이디어 구체화 등 기초적인 법적·기술적 지식을 갖추게 되면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져 더 많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산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제품 사업화나 행사 개최 유형 외에 교육·인력양성 등 여성발명 저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해외 국유특허권 연차료 지연지급 문제 개선 필요

① 결산 현황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1241-300)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해 창출된 해외 국유특허권의 유지비용을 납부하여 국유재산인 해외 국유특허권의 소멸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억 2,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도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해외국유특허관리 (자본)	123	123	-	-	-	123	123	-	-	142

자료: 지식재산처

② 해외 국유특허권 연차료 지연지급 문제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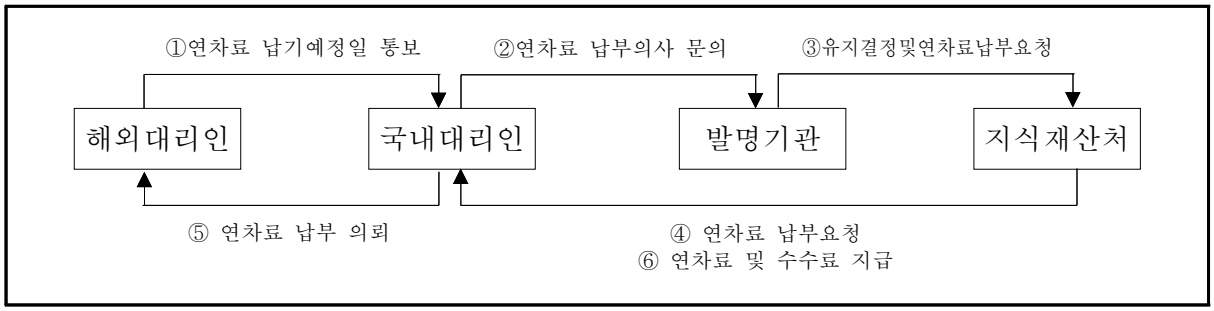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180]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승계할 수 있고 국가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180)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181]은 지식재산처장이 국유특허권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사업에 따라 해외 국유특허권에 대한 연차료를 납부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유특허권의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연차료 납기예정일이 정해지면 각국의 해외대리인이 국내대리인에게 연차료 납기 예정일을 통보하고, 국내대리인은 지식재산처에 연차료 납부 의사를 문의하며, 지식재산처장이 권리 유지 및 연차료 납부를 결정하고 요청하면, 국내대리인은 해외대리인에게 연차료와 수수료를 송부하여 권리 유지를 의뢰하고, 지식재산처는 국내대리인이 해외로 송금한 연차료와 수수료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여 보전하게 됨.

해외 국유특허권 연차료 납부 절차



자료: 지식재산처

181)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의 관장)** ① 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심판·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로 해외에 등록하는 국유특허권은 매년 증가하여 2025년 말 해외 국유특허권 보유 건수는 272건이고, 2026년의 경우에도 6월까지 39건을 추가로 등록하는 등 보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해외 국유특허권 보유 및 연차료 납부 건수

(단위: 건)

	'21	'22	'23	'24	'25
누적 보유	212	226	234	243	272
연차료 납부 대상	192	204	181	200	140

자료: 지식재산처

그런데 최근 5년간 해외 국유특허권 연차료 집행 내역을 보면, 매년 당해 연차료 납부 건수와 전년도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당해 연도에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해외 국유특허권 연차료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21	'22	'23	'24	'25	'26.6.
예산액	113	113	113	163	123	142
총 집행액	113	113	113	163	123	111
이전년도 미지급분	58	60	32	59	24	107
당해년도 지급분	55	53	81	104	99	4
연도별 지급소요	114	78	140	128	206	133[182]
당해연도 지급분	55	53	81	104	99	4
당해연도 미지급분	59	25	59	24	107	129

자료: 지식재산처

특히 2025년에 1억 7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 2026년 동 사업 편성 예산인 1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미지급금을 먼저 지급하

182) 2026년 지급소요에 대한 지식재산처 예상치

게 되면 2026년에도 1억원 내외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당해연도에 집행하였어야 할 연차료를 연례적으로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계리하는 재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또한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 때문에 국내대리인이 연차료를 먼저 납부하고 차년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매년 국내대리인에게 금융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연차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권리 유지를 위한 비용이므로 예산 편성 시점에 차년도 예산 소요를 적절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급 소요에 맞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해외 국유특허권은 2025년 기준 14건 활용되고 있어 활용률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는데, 미활용 특허의 경우에도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미활용 특허가 쌓이게 되면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지식재산처는 해외 국유특허권 포기에 관하여 우선 납부기간이 도래한 고연차 특허에 대해 활용 이력을 조사한 후 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의뢰하여 등급이 낮은 특허에 대해 발명기관에 포기 의견을 문의하고 최종 포기하는 방식(연차료 미납에 의한 자동 소멸)으로 처리

하고 있는데[183],

최근 5년간 해외 국유특허권 활용 및 포기 현황

(단위: 건, %)

	'21	'22	'23	'24	'25	'26.6.
활용(A)	8	9	10	15	14	14
미활용(B)	204	217	224	228	258	272
활용률(A/A+B×100)	3.8	4	4.3	6.2	5.1	4.9
해외 국유특허권 포기	0	0	**41**	0	0	**18**

자료: 지식재산처

2023년에 미활용 특허를 전반적으로 심사하여 활용 가능성이 낮은 41건을 일괄 포기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18건을 포기하였음.

최근 공무원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따라 등록 건수의 증가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예산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치가 낮은 특허권에 대한 연차료 지급 소요를 줄일 수 있도록 매년 상시적으로 일정한 건수의 미활용 특허권을 포기하는 등 해외 국유특허권 포기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지급 소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미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미활용 특허 포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연례적인 해외 국유특허권 연차료 지연 지급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83)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모태조합 출자: IP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대 편성 필요

① 결산 현황

‘모태조합 출자’(1332-304)는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에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결성한 자펀드를 통해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혁신기업과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8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년도 모태조합 출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모태조합 출자	8,000	8,000	-	-	-	8,000	8,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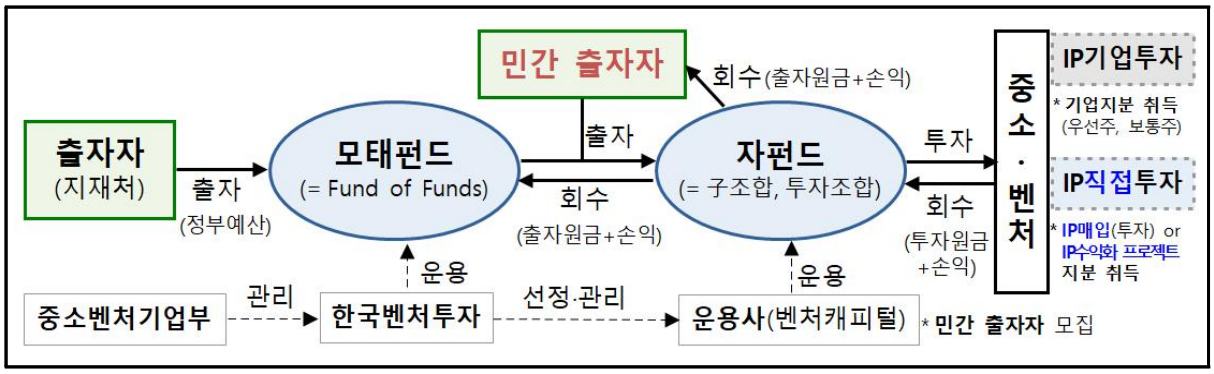
자료: 지식재산처

② IP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대 편성 필요

동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식재산처가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출자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심사를 통해 운용사를 선정하고, 해당 운용사가 민간 출자자를 유치하여 자펀드를 결성하며, 이후 자펀드별로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및 IP를 매입·활용하여 수익화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임[184].

184) 자펀드는 통상 8년 내외(투자 4년 + 회수 4년)로 운용된 후 청산됨.

모태펀드 특허계정 운영 구조



자료: 지식재산처

모태펀드 특허계정은 2006년부터 2025년말까지 예산 2,694억원을 바탕으로 86개 자펀드(2조 7,548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총 1,479개 기업에 2조 2,808억원을 투자하였음. 지식재산처는 국내 IP투자시장의 초기 인프라 형성을 위해 2006년부터 IP가치평가에 기반하여 'IP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왔으며 2020년부터는 IP 자체에 투자하는 'IP직접 투자 펀드'도 조성하고 있음.

모태펀드 특허계정 자펀드 운용 현황('06~'25년 누적)

(단위: 개, 억원)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조성		투자	
예산	회수금	소계	자펀드수	총 조성규모	기업수	투자금액
2,694	4,887	7,581	86	27,548	1,479	22,808

자료: 지식재산처

그런데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대하여 매년 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2023년에는 예산이 미반영되었고, 2025년도 편성 예산은 80억원으로 2024년 편성 예산(114억원) 대비 29.8% 삭감되었으며, 2026년에도 예산이 미반영되었음[185].

또한 회수금 규모도 함께 축소되는 추세로 합계 연평균 출자 규모는 '20년~'22년에 비해 '23년~'25년의 경우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규모('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정부예산	200	200	200	0	114	80
회수금	400	300	600	300	125	275
합계	600	500	800	300	239	355
연평균 출자	633			298		

자료: 지식재산처

출자 규모의 감소는 자펀드 조성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3년~'25년 자펀드 조성 규모는 '20~'22년의 5분의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투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며[186],

모태펀드 특허계정 자펀드 조성규모('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출자	600	500	800	0	239	355
자펀드 조성	2,472	4,569	3,448	583	1,353	202
연평균 자펀드 조성	3,496			713		

자료: 지식재산처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자펀드는 IP가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하여 IP투자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펀드 조

185) 지식재산처는 당초 2026년 모태펀드 출자 사업 예산으로 2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부처요구안),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순감되었음.

186) 자펀드는 조성 후 4년에 걸쳐 투자되므로, 자펀드 조성 규모의 축소는 향후 4년간 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됨.

성 규모 축소의 영향으로 IP투자의 신규공급[187] 규모도 '23년 이후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IP투자 신규공급 규모('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IP투자 신규공급	2,621	6,088	12,968	13,365	12,323	13,260
전년대비 증가율	-	132.3%	113.0%	3.1%	△7.8%	7.6%

자료: 지식재산처

투자 건을 회수한 회수금으로 다시 자펀드를 조성하고 재투자하는 모태펀드의 특성을 고려하면 출자 규모의 축소는 이후 회수금과 재투자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자펀드 조성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이나 IP 자체에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허계정은 정부 예산 1천억원당 상장기업 수가 40.8개社로 정부가 운영하는 전체 모태펀드 계정(4.8개社)과 비교할 때 투자 대비 성과가 우수하고, 특허계정의 IP투자로 유니콘 기업(5개社) 및 CES 2025 혁신상(14개社)을 다수 배출하는 등 IP투자 펀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향후 모태조합 출자 사업의 정부 예산이 확대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7) 모태펀드 신규 투자금액과 모태펀드 외 IP가치평가와 연계한 신규 투자금액을 합산한 수치

<참고> 특허계정의 혁신기업 발굴·육성 성과

□ **(IPO상장)** 모태펀드 전체계정(全부처) 대비 특허계정의 정부예산 1천억원당 상장기업수는 8.5배*, 투자기업 상장률은 2.3배**

* 정부예산 1천억원당 상장기업수(~'23년) : (특허) 40.8개 / (모태 전체) 4.8개

** 투자기업 상장률(~'23년) : (특허) 10.3% / (모태 전체) 4.5%

< 모태펀드 전체 대비 특허계정 상장 성과(~'23년) >

구분	정부예산 누계	투자 후 상장기업수	예산 1천억원당 상장기업수
특허계정(A)	2,500억원	102개	40.8개
전체계정(B)	8조 8,968억원	429개	4.8개
비율(A/B)	2.8%	23.8%	8.5배

※ 최초 투자 이후 코스닥 상장된 기업 추출(지식재산처 자체 분석, '24. 12월)

< 모태펀드 전체 대비 특허계정의 IPO상장 현황(~'23년) >

구분	투자기업수 (A)	상장			상장률 (B/A)
		합계(B)	코스닥	코스피	
특허계정	1,005	104	102	2	10.3%
전체계정	9,914	442	429	13	4.5%

※ '23. 12월까지 투자된 기업 대상, 한국벤처투자 분석 자료 참고

□ **(창업초기기업)** 특허계정이 투자한 창업초기기업은 일반 스타트업 대비 5년 이후 생존율이 2.4배로 높고 IPO소요기간은 0.6배로 짧음

< 특허계정의 투자기업의 5년 이후 생존율 및 IPO 소요기간 >

구분	특허계정 투자기업(A)	일반 스타트업(B)	비고(A/B)
투자 5년 이후 생존율	70% ('22. 8월 기준)	29% (5년차 기업 기준)	2.4배
창업 후 평균 IPO 소요기간	6.9년 (= 설립~투자 1.8년 + 투자~IPO 5.1년)	12년	0.6배

1) 국내기업의 5년차 생존율 : 29.2% (↔ OECD 주요국 평균 58.3%)

2) 출처 : 특허계정 운용성과 분석 연구용역(삼일회계법인, '22. 10월)

□ **(혁신기업 육성)** 유니콘 기업 5개社, CES 2025 혁신상 14개社 등 배출

구분	혁신기업 선정 사례
유니콘 기업	퓨리오사AI(FURIOSA), 갤럭시코퍼레이션(GALAXY CORP.), 직방( ) 등 5개社 (韓 '25년말 역대 총 27개社 /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CES 2025	㈜포스콤, ㈜버넥트, ㈜위로보틱스 등 14개社 혁신상 수상

자료: 지식재산처

(6)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 설치 국가 확대 필요

① 결산 현황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531-300)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특허 분쟁대응 지원’,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50억 4,800만원 중 250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25,048	25,048	-	-	-	25,048	25,016	-	32	-188)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5,486	5,486	-	-	-	5,486	5,486	-	-	4,986
특허 분쟁대응 지원	7,480	7,480	-	-	-	7,480	7,471	-	9	7,324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7,533	7,533	-	-	-	7,533	7,519	-	14	7,40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1,911	1,911	-	-	-	1,911	1,905	-	6	2,391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2,638	2,638	-	-	-	2,638	2,635	-	3	2,747

자료: 지식재산처

188) 2026년부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세부사업은 지식재산 권리별·사업성격 등에 따라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기술 분쟁대응 지원」,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세부사업으로 개편

② 해외지식재산센터 설치 국가 확대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은 주요 8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상담, 지재권 출원지원 및 침해조사·경고장 대응 등의 분쟁대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현황



자료: 지식재산처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해외 다양한 국가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각 센터가 인근 국가·지역을 담당하는 거점형 운영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협력 로펌 POOL[189]을 활용하여 총 40개국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189) 해외지식재산센터는 25년말 기준 협력 로펌 103개소와 네트워크 구축함.

해외지식재산센터는 2025년 기준 총 34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상담, 지재권 출원지원,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및 전문가 심층자문 등의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 해외지식재산센터별 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LA	워싱턴 D.C.	베이징	광저우	도쿄	프랑크푸르트	호치민	방콕	뉴델리	멕시코시티
지재권 상담	2,151	2,235	323	628	1,470	710	628	723	220	466
해외 지재권 출원 지원	179	50	80	59	79	56	64	38	17	16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10	2	3	18	6	6	-	-	1	3
전문가 심층자문	189	81	79	47	91	37	89	45	4	125

자료: 지식재산처

다만, 구체적인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소재한 국가에 대한 지원 비중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센터 비소재 국가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실적 및 센터 소재국가 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지원 국가	지원 실적	센터 소재국가 지원 건수(비중)
지재권 상담		31개국	9,554	8,936(93.5%)
현지 초기대응 지원	지재권 출원	30개국	638	510(79.9%)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8개국	49	45(91.8%)
	전문가 심층자문	24개국	787	703(89.3%)

자료: 지식재산처

예를 들어 동남아권 국가의 경우 K-브랜드의 인기가 높고 위조상품 발생 빈도가 높아 지재권 상담이나 현지 초기대응 지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등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소재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지재권 상담이나 현지 초기대응 지원 건수가 다소 낮은 측면이 있고,

중국 등 4개 국가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실적

(단위: 건)

센터 소재지	지원 지역	지재권 상담	해외 지재권 출원 지원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전문가 심층자문
중국 (베이징, 광저우)	**중국**	914	116	20	121
	대만	33	20	1	4
	몽골	4	3	-	2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562	30	-	74
	필리핀	31	7	-	1
	호주	2	14	-	9
	뉴질랜드	-	-	-	-
	싱가포르	33	13	-	4
태국 (방콕)	**태국**	480	16	-	15
	인도네시아	181	9	-	19
	말레이시아	37	6	-	7
	캄보디아	5	3	-	1
	미얀마	20	4	-	3
독일 (프랑크푸르트)	**독일**	704	33	3	32
	영국	2	13	-	3
	프랑스	-	1	-	-
	스페인	-	1	-	-
	스위스	-	-	-	-
	이탈리아	1	1	-	-
	네덜란드	-	1	-	-
	튀르키예	3	6	3	2
	스웨덴	-	-	-	-
	러시아	-	-	-	-

자료: 지식재산처

베트남 호치민 IP센터에서 호주를 담당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IP센터가 유럽 10개국을 담당하는 등 일부 센터의 관할 범위가 상당히 넓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발생·보호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제도 및 집행 환경도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하나의 센터가 평균 4개 국가 및 광범위한 권역을 담당하는 현재의 운영체계만으로 충분한 현지 대응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국가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차단실적

(단위: 건)

순번	국가	차단실적	순번	국가	차단실적
1	**중국**	29,673	17	캐나다	1,182
2	**베트남**	21,296	18	**멕시코**	961
3	필리핀	19,759	19	네덜란드	840
4	싱가포르	19,134	20	스페인	593
5	인도네시아	18,639	21	러시아	455
6	**태국**	18,563	22	프랑스	364
7	말레이시아	17,188	23	사우디아라비아	206
8	대만	14,338	24	체코	202
9	**일본**	10,531	25	폴란드	172
10	호주	6,766	26	아르헨티나	114
11	**미국**	6,400	27	튀르키예	33
12	브라질	3,611	28	UAE	33
13	**인도**	2,530	29	콜롬비아	5
14	영국	1,785	30	칠레	2
15	**독일**	1,469	31	이집트	2
16	이탈리아	1,184	32	오스트리아	1
			합 계		**198,031**

* **진한 글씨**는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소재한 국가 표시
자료: 지식재산처

현재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1531-304) 사업을 통해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혜기업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여 2025년 기준 32개국에서 총 198,031건의 판매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K-브랜드 정품을 인증하는 상표를 해외 70개국에 등록하고 국가인증상표가 적용된 제품이 위조되는 경우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를 요구하는 ‘K-브랜드 국가인증제도’(1531-308)를 도입할 예정으로 신속한 침해증거 확보와 외국 세관·경찰 등과의 단속 협력을 위해서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는 8개국 10개소에 불과하여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기업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 신설·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공백기간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등

① 결산 현황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531-301)는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미스터리 수사지원단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27억 8,200만원 중 126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12,782	12,782	-	±19	-	12,782	12,693	-	89	-190)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6,247	6,247	-	±19	-	6,247	6,187	-	60	-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2,214	2,214	-	-	-	2,214	2,212	-	2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4,109	4,109	-	-	-	4,109	4,084	-	25	-
미스터리 수사지원단 운영	212	212	-	-	-	212	211	-	1	-

자료: 지식재산처

190)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부터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중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수사·단속에 대한 사항을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1531-306)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을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1531-305)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등 과목 구조를 개편함.

②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공백기간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191][192]

2025년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관련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6,247	6,247	-	±19	-	6,247	6,187	-	60	-
민간위탁사업비	4,272	4,272	-	-	-	4,272	4,266	-	6	-

자료: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하여 ⓐ취업취약계층[193] 채용을 통해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글 등을 조사·수집하는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 지원', ⓑ상표 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비정형·신규플랫폼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협력·검수·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요원 단속 지원', ⓒ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19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의5에 따른 연구·교육·홍보 등 기반구축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92) 지식재산처는 2025년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사업'에 대하여 39억 6,500만원에,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사업'에 대하여 2억 900만원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193)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경력단절여성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이용하여 K-브랜드 및 소비자 건강·안전 관련 브랜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AI 모니터링 단속'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음.

2025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지원 사업을 통한 단속 건수를 보면 재택 모니터링단은 172,127건, 전문요원 단속은 59,107건, AI모니터링은 76,484건 등 준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수행 실적

(단위: 건)

구 분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지원	오픈마켓(A)	-	404	3,147	2,442	5,993
		포털사이트(B)	-	18,472	31,793	8,524	58,789
		SNS(C)	-	28,263	46,922	24,186	99,371
		해외플랫폼(D)	-	3,029	3,504	1,441	7,974
		합계(A+B+C+D)	-	**50,168**	**85,366**	**36,593**	**172,127**
	전문요원 단속지원	오픈마켓(A)	598	519	216	131	1,464
		포털사이트(B)	2,162	1,991	6,794	4,408	15,355
		SNS(C)	2,011	4,445	21,657	12,085	40,198
		쇼핑몰 등(D)	122	135	-	-	257
		해외플랫폼(E)	135	431	-	-	566
		동영상플랫폼(F)	87	494	412	274	1,267
		합계(A+B+C+D+E+F)	**5,115**	**8,015**	**29,079**	**16,898**	**59,107**
	AI 모니터링	오픈마켓(A)	-	67	484	117	668
		포털사이트(B)	-	67	2,188	730	2,985
		SNS(C)	-	1,635	35,198	34,021	70,854
		해외플랫폼(D)	-	202	1,536	239	1,977
		합계(A+B+C+D)	-	**1,971**	**39,406**	**35,107**	**76,484**

자료: 지식재산처

다만, 각 사업별로 분기별 단속 실적을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편중된 경향이 있고, 특히 1분기에는 재택 모니터링 및 AI 모니터링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단속 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재택 모니터링단을 채용하거나 AI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계약 체결 등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모니터링 업무의 수행은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임.

연초에 사업 관련하여 최소한의 준비 기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은 연중 시기를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으므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이 실시되지 못하여 유통 위조상품에 대한 차단조치가 적시에 실시되지 않는 경우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기업 및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전년도 연말 사전 준비 및 연초 준비 기간 단축 등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의 적극적인 집행 필요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194]

19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포상금 지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

그런데 2025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5,100만원 중 2,800만원을 집행하여 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5년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6,247	6,247	-	±19	-	6,247	6,187	-	60	-
포상금	51	51	-	-	-	51	28	-	23	-

자료: 지식재산처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결산 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낮은 현상은 연례적인 경향이 있는데,

2025년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1	103	94	9	91.2
2022	103	54	49	52.4
2023	103	26	77	25.2
2024	51	18	33	35.2
2025	51	28	23	54.9

자료: 지식재산처

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 2) (생 략)

「예산 집행지침」은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의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195],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적발금액	포상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만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0만원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00만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00만원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700만원
500억원 이상	1,000만원

자료: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별표1]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단속된 사건의 적발금액[196]이 3억원 이상이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야 하고, 신고내용이 위반자 단속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야 하며[197],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198], 적발금액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195)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97

196) 적발금액 = 상품 물량(판매수량 + 재고량) × 정품가격

197)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상표법」 제230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당해 위반자가 단속된 사건이 적발금액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단, 신고내용이 위반자 단속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98)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10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고 있음.

한편 2025년에 12건의 신고포상금 신청 건 중 8건에 대해 지급하고 4건은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지급하였는데, 특히 최소 적발금액(3억원) 미달이 3건 있었음.

2025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최소 적발금액 기준 미달 사례

연번	신고일자	포상금 신청일자	적발 품목	적발금액	최소 적발금액
1	2022.11.02.	2025.04.09.	의류	389,287,500원	10억원 이상*
2	2023.11.03.	2025.07.21.	의류	1,964,000원	3억원 이상
3	2025.08.04.	2025.08.28.	의류	750,000원	3억원 이상

* 훈령이 개정된 경우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하는데, 21.7.1.부터 22.12.31.까지는 최소 적발금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였음.

자료: 지식재산처

경미한 사건에 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요건으로서 일정한 적발금액 하한을 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적발금액이 낮더라도 유의미한 사건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명품 가방·의류와 같이 고가의 물건뿐만 아니라

---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4. 지식재산처·검찰청·경찰청·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6.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7.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신고 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K-POP 굿즈, K-뷰티 화장품과 같이 정품의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더라도 K-브랜드 보호를 위해 근절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한 규정 [별표1] 개정을 통해 최소 적발금액을 하향하거나 적발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안의 중요성 또는 포상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여 심의를 거쳐[199]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한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 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포상금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9)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만으로 포상금 지급여부 또는 지급금액등의 결정이 어려운 사건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① 결산 현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7034-301)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그 사무기구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2025년 예산현액 15억 7,500만원[200] 중 11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	-	-	+1,575 ±13	-	1,575	1,122	113	340	3,216

자료: 지식재산처

②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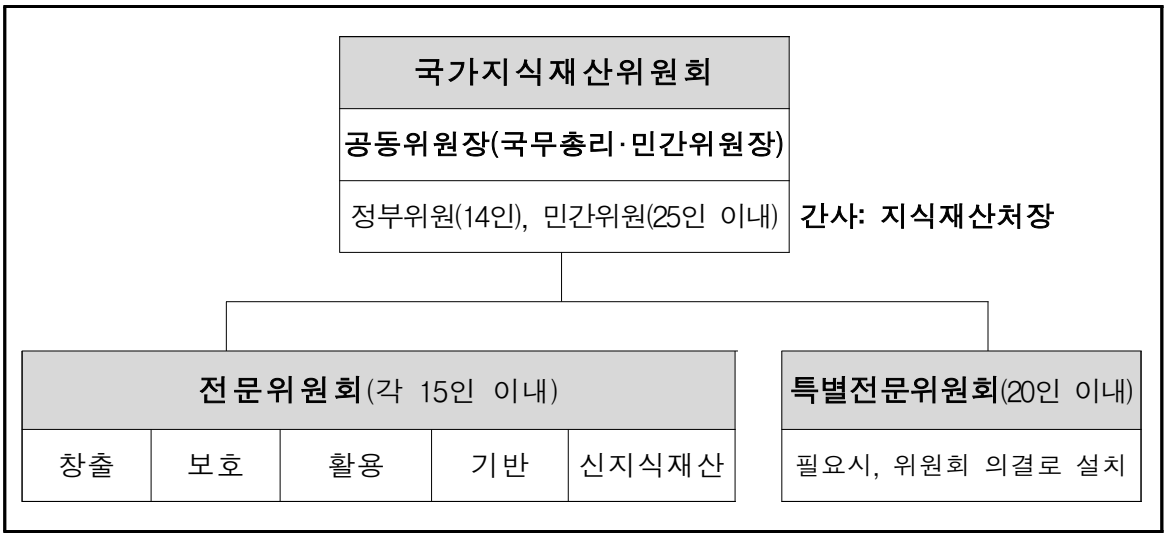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식재산(IP)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201] 자문위원회로서 2인의 공동위원장, 14인의 정부위원 및 25인

200)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부사업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7034-301)이 지식재산처 소관 세부사업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7034-301)으로 이관되었고, 당초 본예산 31억 9,600만원 중 9월 30일까지 집행잔액 15억 7,500만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체되었음.

201) 2026년 8월 12일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26.5.19.)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26.7.29.)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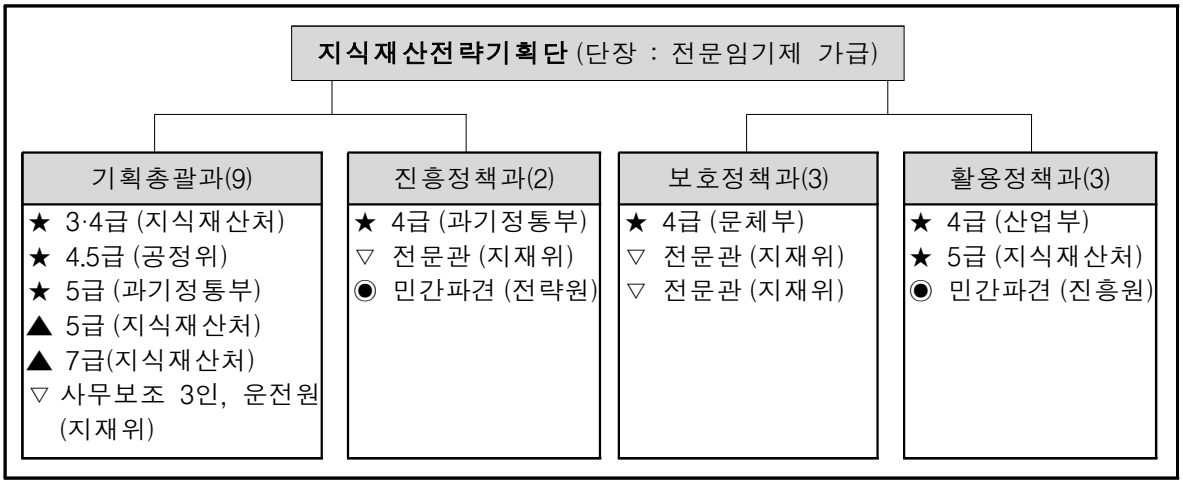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회 산하 사무기구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2026년 2월 기준 총 4과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업무의 지원, IP 관련 조사·연구사항의 발굴·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조직도

(2026년 2월 기준)



★: 별도정원(7명), ▲: 비별도(2명), ▽: 무기계약직(7명, 지재위채용), ◉: 민간파견(2명)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위원회 운영을 위한 IP 현안 및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9억 1,300만원의 정책연구비를 편성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5년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계약명	계약액	계약 상대방	계약 방법
1	공공기술 특허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 연구	20	특허법인PCR	수의계약
2	2024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현황 연구	6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한경쟁
3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성과 연구 용역	10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한경쟁→수의
4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특허권 강화 방안연구	7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한경쟁→수의
5	2026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연구	5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한경쟁→수의
6	2025년 국내외 지식재산 동향 조사 분석 연구 용역	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의계약
7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연구-TDM규정을 중심으로	20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수의계약
8	미국의 생성형 AI저작권 소송분석	20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수의계약
9	디지털 레플리카′ 국내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20	사단법인 한국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수의계약
10	영업비밀 침해 사건 손해 침해액 산정제도 개선 연구	8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한경쟁→수의
11	2025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소통협력분과 운영 정책연구	40	재단법인 한국 특허기술 진흥원 대전지점	제한경쟁
12	무형자산을 활용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연구	60	한국과학기술원 (박성필)	제한경쟁→수의
13	2025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의계약
14	202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및 2025년 시행계획 점검 평가 등 법정안건 수립방안 정책연구	14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한경쟁→수의
15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지식재산 쟁점 연구	20	주식회사 하랑브이앤에스	수의계약
16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 수립연구	14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한경쟁→수의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기부는 2025년 정책연구비 예산으로 9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업무 이관 전(1.1.~9.30.)까지 2억 8,300만을 집행하고 6억 3,000만원을 지식재산처로 이체하였으며, 지식재산처는 이 중 4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다만, 위원회의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사업을 수행·관리함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우선 2025년 정책연구비 예산 중 1억 1,300만원이 차년도에 이월되었고, 최근 5년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연구비 결산 내역을 볼 때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정책연구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1	913	706	**182**	25
2022	913	752	**140**	21
2023	913	536	**336**	42
2024	913	709	**194**	15
2025	913	781	**113**	19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5년의 경우 4개 과제에 대한 예산을 이월하였는데,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 수립 연구'는 실질적으로 2026년에 실시(25.12.18.~26.12.18.)하는 것으로 특별히 연구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할 사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2025년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하였을 것으로 보임.

차년도 종료 정책연구용역 과제 내역

연번	과제명	용역 기간
1	무형자산을 활용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연구	25.06.30 ~ 26.01.31
2	2025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25.08.13 ~ 26.03.31
3	202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및 2025년 시행계획 점검 평가 등 법정안건 수립방안 정책연구	25.09.22 ~ 26.05.20
4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 수립연구**	**25.12.18 ~ 26.12.18**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연구 사업의 경우 다양한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과제를 도출하고 선행 과제와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등 내부 절차를 거치므로 하반기에 협약이 체결되어 차년도에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예산 집행지침」[202]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고 예산의 연례적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결산시까지 과제에 대한 결산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어 결산 심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7

한편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사무를 총괄하는 부처이고 위원회는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양 기관의 업무·기능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마찬가지로 정책연구도 소관 업무 목적에 맞게 필요한 연구주제를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식재산처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업무 비교

구분	지식재산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목적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 총괄 및 집행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 부처간 이견 조정, 이행상황 점검·평가 및 환류
근거규정	정부조직법 제28조 제1항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주요업무	①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 수립 및 총괄 - 지식재산에 관한 총괄사무 수행 - 지식재산 기본법상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총괄기능 수행 ② 지식재산 주요 법령 총괄 - 지식재산기본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재산정보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변리사법 등	① 지식재산처가 총괄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포함한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최종심의, 부처이견에 대한 조정기능 수행 - (예) IP 보호·집행에는 국정원・법무부・지재처・경찰청・관세청・문체부 등 다부처가 관여하며, 일관된 보호·집행을 위해 지재위 주관 '범부처 보호정책협의회'를 주기적 개최 및 협의사항 논의 ② 수립된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 재원배분방향 마련 등 이행점검 및 환류 ③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필수적인 융합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 등 - (예) AI가 생성한 창작물 보호: 저작권법(문체부) 및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경법(지재처)이 동시에 적용 가능 → 권리 간 상호 저촉 및 중첩 보호 발생
정책연구 범위,목적	지식재산처가 직접 소관하는 '산업재산권'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연구 결과는 소관 법령·제도 개선 및 지원사업 설계에 활용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IP 현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연구 결과는 다부처 융복합·갈등 IP 이슈에 대한 부처 간 조정·합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출 자료 일부 수정

「예산 집행지침」[203]에 따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과제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복되거나 기관간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3)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7

예컨대, 앞선 ‘2025년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계약 내역’ 표를 보면 「공공기술 특허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 연구」,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특허권 강화 방안연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손해침해액 산정제도 개선 연구」[204] 등은 지식재산처가 소관하는 산업재산권에 한정된 주제로서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할 수 있음.

중복과제를 방지하고 위원회와 지식재산처 간에 정책연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과제선정 절차에서 해당 과제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주제인지에 대해 심사의 엄격성을 기하는 동시에,

과거 지식재산처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연구된 바 있는 주제인지 또는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연구와 중복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지식재산처 정책연구 담당 부서와 상시적으로 소통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정책연구 과제와 관련한 연례적인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정책연구와 중복과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4) 참고로 지식재산처는 2025년 「기술(영업비밀) 유출범죄 피해규모 산정기준 및 특허침해 손해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